

2001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촌개발

총 5권중 제4권

2000.11



Ministry of Agriculture & Forestry
Republic of Korea

국회 도서관



00853991



이 엠블럼은 한국농업의 이미지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체인 동시에 모든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요소이다.

새싹의 형상을 통하여 무한히 발전할 한국농업의 가능성과 친환경농업을 표현하였으며 이를 둘러싼 청색원은 인터넷 E-mail주소의 @형상을 활용하여 신식식·정보화된 농업과 서로 조화되고 상생(相生)하면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전세계로 뻗어가는 한국농업의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색상은 청·녹·황·적의 '색동'을 표현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구체화하였으며 청색과 적색의 변화로 조화와 화합을 표현하였다.



한국농업의 마스코트인 '새종이'는 '새로운 농업'이라는 의미로 발전가능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엠블럼의 기본요소인 푸른새싹을 의인화하여 농업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친근한 농업을 나타내는 어린이의 이미지로 앞으로 발전할 한국농업의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다.



일 리 두 기

이 지침서는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사업명 뒤에 *표시)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및 농림사업 대출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5권까지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과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축·삼협·산림조합, 농업기반공사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01년도 사업비는 잠정금액이므로 정부예산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 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및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임업및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입문의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총무과
 - 연락처 : 전화 031-299-8822~5, 팩스 031-299-8800

차 례

제4권 농촌개발

I. 생산 및 유통개선	1331
39. 친환경농업육성사업(자율)	1333
①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 ② 친환경농업지구조성	
③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	
40. 농촌가공산업육성사업(자율)	1386
① 농산물가공산업육성 ② 농산물가공산업 경영지도 ③ 특산단지육성	
41.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자율)	1477
II. 기술개발	1505
42. 농업기술개발사업(공공)	1507
43. 농촌활력화시범사업*(공공)	1516
①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② 지역특화시범사업	
44. 기술보급사업*(공공)	1535
① 새기술보급시범사업 ② 품목별전문교육 및 농업인학습단체육성	
③ 4-H회원과제활동지원 ④ 농업계 특성화대학 지원	
III. 인력육성	1575
45. 후계농업인육성지원(자율)	1577
46.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공공)	1621
47. 농업경영컨설팅지원(공공)	1634
IV. 소득보전	1675
48. 농업 직접지불제(공공)	1677
① 경영이양 직접지불 ②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③ 논농업 직접지불	
49.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공공)	1738
50. 농가도우미지원(공공)	1740
V. 소득원 개발	1753
51.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자율)	1755
52. 농공단지육성사업(공공)	1803
53. 한계농지정비사업(공공)	1820
54. 농축산경영자금지원(공공)	1834
① 농업경영자금 ② 축산경영자금	
VI. 생활환경개선	1845
55.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공공)	1847
① 정주권개발 ② 문화마을조성 ③ 농촌마을하수 처리시설 ④ 농가주거환경개선	
56.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공공)	1926

제1권 관계규정 해설 및 사업별주요변경사항

I.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주요골자	4
3. 주요 변경사항	7
4. 해설	9
제1장 총칙	9
제2장 자율사업	14
제3장 공공사업	22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4
제5장 보칙	26
II.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설	27
1. 배경	29
2. 주요골자	30
3. 주요 변경사항	34
4. 해설	38
III.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1050호)	57
IV.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1049호)	109
V. 농림사업별 주요변경사항	229
※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231

제2권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 확충	239
1. 영농규모화(쌀전업농육성)사업(차용)	241
2. 토양개량사업(차용)	297
① 토양개량제공급 ② 객토	
3. 주요농작물원원종 및 원종생산(공공)	317
4. 발기반정비사업(공공)	327
5. 경지정리사업(공공)	356
6.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공공)	399
7. 배수개선사업(공공)	415
8.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공공)	438
① 수리시설개보수 ② 저수지 준설사업	
③ 방조제개보수	
9. 농촌용수개발사업(공공)	473
① 대·중규모 용수개발 ② 지표수 보강개발	
10.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공공)	515
①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② 지하수 개발조사	
③ 농업용수 관리자동화 ④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	
⑤ 농업용수 수질조사연구	
11. 대단위농업개발사업(공공)	570
①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② 서남해안간척사업	
12. 지역특화사업(공공)	605
II. 농업기계화	631
13. 농기계구입지원(차용)	633
14. 농기계사후관리지원(차용)	635
①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② 농기계 수리봉사 지원	
15. 농기계생산지원(공공)	637
III. 생산 및 유통개선	639
16. 미곡종합처리장설치운영지원(차용)	641
17. 협동조합합병지원(공공)	665

제3권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I. 생산기반 확충	669
18. 고품질 우량종자개발(공공)	671
II. 사육기반확충	681
19. 사료 및 기자재 생산기반확충사업(자율)	683
①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② 사료제조시설 및 원료구입지원	
③ 축산기자재생산시설지원	
20.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자율)	723
21. 축산 계열화사업(공공)	751
① 가축계열화 ② 경주마육성	
22.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공공)	775
23. 가축개량사업(공공)	839
III. 원예 생산 및 유통개선	887
24. 농산물 표준 규격화사업(자율)	889
① 농산물물류표준화 ② 물류기기공농이용촉진 ③농산물 규격출하	
25. 농산물 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율)	935
① 산지농협유통활성화 ② 생산자단체유통활성화	
③ 공동규격출하촉진 ④ 인삼생산장려	
26. 농산물산지유통기반확충사업(자율)	973
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②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지원	
③ 산지유통인 출하선도금 지원	
27.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유통시설지원(공공)	1010
①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② 농산물공판장건설	
③ 농산물유통시설보완 ④ 농산물출하촉진자금지원	
28. 농수산물 소비지 유통기반확충사업(공공)	1052
①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건설 ② 소비자단체 물류시설지원	
③ 농산물직거래 시설지원 ④ 종합유통센터 출하촉진자금 지원	
29. 농축산물 자조금 조성지원(공공)	1099
30. 채소 수급안정 사업(공공)	1108
31.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공공)	1115
32. 농산물 수출진흥사업(공공)	1119
①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② 농수산물 무역진흥센터 건립 ③ 농산물 물류센터건설	
33. 우수농산물 수매·유통지원사업(공공)	1165
IV.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1185
34.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공공)	1187
35. 축산물 품질향상 및 유통시설지원사업(공공)	1195
① 도축도매시설 ② 가공판매시설	
③ 축산물등급판정 ④ 축종별 자율사업	
36. 축산물안전 및 경영안정사업	1283
① 축산물 안전성강화 ② 가축공제	
37. 축산물검사 및 가축방역사업(공공)	1295
① 축산물검사 ② 가축방역	
38. 학교 우유급식사업(공공)	1321

제5권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I. 경영기반 확충	1957
57. 산림경영장비지원(자율)	1959
58. 영림계획(자율)	1968
59. 사유림협업경영(공공)	1973
60.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공공)	1978
① 임도시설 ② 사방사업	
II. 생산 및 유통개선	1989
61. 임산소득증대(자율)	1991
① 단기소득임산물생산 ② 조경수·분재소재생산 ③ 산림복합경영	
62. 임산물이용가공 및 합판보드류시설지원(자율)	2017
① 임산물 이용·가공시설지원 ② 합판·보드류시설지원	
63. 산림조합육성(공공)	2034
64. 임산물유통개선지원(공공)	2038
①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② 임산물생산자 조직육성 ③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III. 인력육성	2083
65.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육성(자율)	2085
66. 임업전문인력양성 및 임업 기술지도(공공)	2090
IV. 산림복지 기능증진	2101
67. 산림휴양공간조성(공공)	2103
68. 산촌종합개발(공공)	2110
V. 산림자원조성	2119
69. 해외조림사업(자율)	2121
70. 산림조성(공공)	2128
① 조림·육림·묘목생산 ② 산림생태보전	

I. 생산 및 유통개선

여 백

- ※ 이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은 2000년 11월 현재 동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등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종합평가가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친환경농업과(과장 박중서, 사무관 김완수)입니다.

I.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1. 목 적

- 중소규모의 가족농이 유기·자연·토종농법 및 기타 농법에 의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2. 시책 및 추진방향

- 유기·자연·토종농법 및 기타 농법에 의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가족농 단지를 지역별 여건에 맞게 조성하고 필요한 시설을 지원
- 상수원 보호구역 및 중산간지를 중심으로 조성하되 필요한 경우 그 이외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 단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인증 참여유도 및 판매지원

3. 근거법령

- 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9	2000	2001(예산안)	2002~2004
사 업 량		개소 1,000	462	40	30	468
사 업 비	계	250,000	115,500	10,000	7,500	117,000
	보 조	72,900	46,000	2,000	1,500	23,400
	국고융자	77,100	23,300	4,000	3,000	46,800
	지방비	50,000	23,100	2,000	1,500	23,400
자	담	50,000	23,100	2,000	1,500	23,400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상수원보호구역 및 중산간지내 중소규모농가가 유기·자연농법 또는 토종농법을 통해서 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95년도 부터 사업시작

(2) 지원대상지역

- 상수원보호구역(기타 환경규제지역 포함) 및 중산간지
- 시장·군수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외 지역도 지원가능

(3) 지원대상자 (단지)

- 소유농지 2.0ha 이하인 농가로서 10농가 이상으로 구성된 영농조직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포함)
 - 다만, 단지조성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소유농지 2.0ha 이상인 농가가 일부 참여하거나, 10농가 이하(최소 5농가 이상)의 단지를 조성할 수 있음.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
- 유기농업을 비롯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표시 신고 포함)을 받은 농가가 대표농가로 참여하는 경우 우선 선정
- 단지내에는 벼재배농가가 반드시 포함(벼 재배면적이 없는 지역은 제외)토록 하여 축산과 경종을 연계한 순환농법을 실천토록 함.
 -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법(오리농법 포함)을 실천토록 지도

(4) 지원대상작목 : 벼, 일반농산물, 채소, 과수, 특작, 축산(단, 화훼는 제외)

(5) 지원조건

- 지원단가 및 기준 : 단지당 250백만원 이내, 국고보조 20, 지방비(교부세) 20%, 국고유자 40%, 자담 20%
- 용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6) 단지당 지원 시설·장비 범위

	시 설 · 장 비 내 역	지원한도
계		250백만원
○ 공동이용시설	○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및 부대시설·장비류 ○ 유기자원 생산시설·장비(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등) ○ 화학비료·농약 대체 자재 생산시설 (목초액 등) ○ 축산분뇨 액비화시설 · 장비 ○ 기타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 (오리농법, 유통·판매 시설·장비, 퇴비살포기 등)	125
○ 개별생산시설	○ 환경친화형 비닐하우스 (비가림시설 포함) ○ 환경친화형축사(유기축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기타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부직포 등)	125

- 단지별 공동이용시설과 개별 생산시설의 지원한도를 준수토록 하되,
 - 시장·군수가 영농여건과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단지 지원한도(250백만원) 범위내에서 공동이용시설과 개별생산시설간에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의 조정이 가능함.
- 축사의 신규지원은 제한, 다만 조사료, 발효사료 등 자급사료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선별 지원하되, 유기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유기축산 시범사업 기술지도는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수행
- 화학비료·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자재 생산시설 설치시 환경농산물 품질관리요령(농림부고시 제2000-64호) “토양개량과 시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과 농촌진흥청에서 효과 검증된 자재를 대상으로 함.
- 친환경농산물 유통·판매에 필요한 시설·장비 중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등은 가급적 지원 억제
- 농기계(트랙터, 콤팩트 등) 및 농업용 트럭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2001년도 예산내역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국 고 (농특세)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개소 30	백만원 7,500	4,500 (60%)	1,500 (20%)	3,000 (40%)	1,500 (20%)	1,500 (20%)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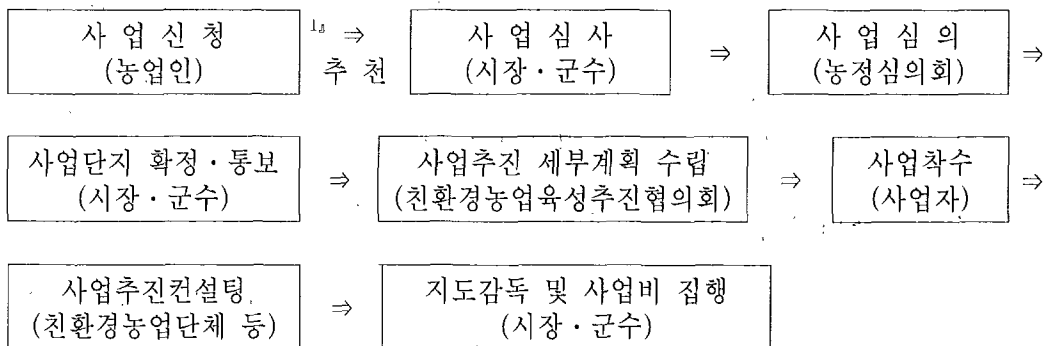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생산국 친환경농업과 (☎ 02-503-7284~5)
- 시·도 : 농정국 농산과(농업지원과, 농산지원과, 농산유통과)
- 시·군 : 산업·농정과

다. 사업시행

(1) 사업시행 체계



1. 추천기관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친환경농업단체 등

(2) 친환경농업육성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친환경농업육성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 : 참여농가대표 2~3인, 친환경농업단체(지회장 또는 지부장), 행정·지도·농관원·농협 관계자
 - 임무 : 사업자 선정심의, 세부사업계획 심사, 사후관리, 지도 등
- 세부사업계획 수립
 - 시설별(공동·개별) 소유자(이용자)를 명시하고, 단지 참여농가의 합의를 얻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대상 및 사업계획 변경
 -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승인된 단지(참여농가 포함) 및 사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참여 농가대표가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장 변경시 읍·면·리동간 변경은 시장·군수, 시·군간 변경은 시·도지사가 변경신청을 받아 승인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변경승인한 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유기축산 시범 지원

- 시장·군수는 사업참여농가중 유기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시범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세부내역을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 통보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검토를 포함한 기술지도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유기축산농가 교육용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시행전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특히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자체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상황 점검 등 기술지도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4) 축산분뇨액비화시설

-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원, 축산기술연구소)은 축산분뇨액비화시설이 살포대상면적 등을 고려 적정규모로 설치되도록 지도
- 특히, 액비살포대상 농경지의 토양검정 및 살포량, 살포시기 등 사용기술지도 적극실시

(5) 시설설계

- 환경친화형 비닐하우스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농가보급형 하우스(예: 1-2W형, 무기동형 등)를 선택하도록 하되, 참여농가가 타모델을 설치코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농가자율선택 가능
- 환경친화형축사 (유기축산에 필요한 시설 등)
 - 이미 개발되어 있는 『가변형축사표준설계도』 또는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사)한국자연농업협회가 공동 개발 보급한 『유기·자연농업형 축사설계도』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시공 가능
 - 유기축산과 관련된 사항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를 받아 시공
- 예냉시설
 - 이미 개발되어 있는 예냉시설 설계도를 이용 (농업과학기술원, 식품개발 연구원의 설계도)
- 토착미생물생산시설
 - 자체설계도 작성 시공
- 신규사업 발굴에 따른 기타시설
 - 유사모델이 있을 경우 또는 농가에서 직접 제작이 가능한 간단한 시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공하되, 유사모델이 없거나 고난도 시설의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육성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건설업법상 유사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 기존시설의 최대한 활용
 - 시장·군수는 예냉시설, 냉장차 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생산품목, 출하물량,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근의 기존예냉시설, 냉장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중복 또는 과잉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함

(6) 시공업체 선정

- 단지대표자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격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하되 농가에서 직접 시공이 가능한 간단한 시설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체 시공

(7) 준공검사

- 시장·군수는 시설물이 설계도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는 농업기반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준공검사 실시

(8)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관련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짐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즉시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검정후 시공업체에게 지급되어야 함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 단지대표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설계서를 요하는 정도의 건축물 기성고는 전문직이 확인)에 따라 검정후 사업비를 시공업체(농가 직접시공시는 농가)에 지급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농가 직접시공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자대표 및 시공업체로부터 거래할 은행 계좌를 제출받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회의비, 유인비 등 필요한 경비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

라. 기타사항

- 소유농지 토지대장상 논, 밭의 소유 개념이며 동일거주인(처, 부모)은 동일인으로 간주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단지내 공동이용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이용시설·운영 약관”을 만들어 운용
- 시장·군수는 시·군단위 친환경농업육성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심의 및 확정, 운영활성화방안 수립 등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유기축산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지원된 농가는 “codex 유기가축 및 축산물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는 유기축산 시범농가에 대한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토착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산된 유기질비료는 자가소비를 원칙으로 하되 판매시는 비료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생산업 등록을 받아서 판매 하여야 함
- 단지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은 반드시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또는 품질인증)를 받아 출하토록 적극 지도 하여야 함
- 추천단체는 추천사업장에 대한 기술·경영지도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기술·경영지도 실시 내용을 확인하여야함
 - 기술·경영지도단체에 대하여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단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년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사업비 회수 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는 사후관리기간내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동사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준공·구입 후	시설 10년, 장비 5년	타용도 및 사업 목적외에 사용 금지	시장·군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 사항을 기록

- 중요재산의 관리는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함

나. 보고 기타

○ 사업계획 보고

- 시·군 $\xrightarrow{(2월20일까지)}$ 시·도 $\xrightarrow{(2월말까지)}$ 농림부

○ 사업추진상황 보고

- 시·군 $\xrightarrow{(4월20일, 9월20일까지)}$ 시·도 $\xrightarrow{(4월말, 9월말까지)}$ 농림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결과

- 시·군 $\xrightarrow{(익년 3월20일까지)}$ 시·도 $\xrightarrow{(익년 3월말까지)}$ 농림부

6. 2002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신청안내

* 본 사업 시행지침은 2001년도에 변경·수정·보완될 수 있음.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자격

- “5<사업개요>의 “가(3)”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영농조직

다. 신청 및 심의절차

- 사업희망 영농조직의 대표는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또는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원단체의 추천을 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추천서(추천기관·단체는 기술, 경영지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함)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후 농정심의회 및 친환경농업육성추진 협의회에 상정하니 투자규모 적정성, 사업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심의하고 적격자를 선정
- 유기축산 시범농가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 사전검토 의뢰

라. 구비서류

- 추천서, 사업계획서 : 별지 1호 내지 별지 2호 참조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5(사업개요)의 '가(3)'항의 지원대상 기준에 맞는 영농조직으로 하되, 논에 타작물재배,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설치하는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시·군을 경유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이 가능함.
- 우선순위
 - 1순위**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또는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표시신고 포함)을 받은 농가가 대표농가로 참여하는 영농조직
 - 2순위** : 유기·자연·토종농법을 하고자 하는 영농조직
- 선정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후 농정심의회 심의 및 친환경농업 육성추진협의회를 거쳐 대상사업 및 대상자를 확정

바. 기타사항

-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사업 메뉴 외에도 타사업으로 지원되지 않는 사업(시설·장비)중에서 친환경농산물생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권자(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함

< 별지 1호 >

추천서

1. 사업신청자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외 명

2. 추천의견

- 지역적인 여건
- 친환경농업기술 등 영농여건
- 친환경농업교육 이수여부
- 친환경농산물 판매능력 (판로확보 등)
- 기타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기관 또는 단체명 ○○○○ (인)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가. 기본현황

- 소재지
- 참여농가현황
 - 농 가 수 :
 - 경지면적 : ha (논 , 밭)
 - 영농방법 : 경종 ha, 축산 두, 비닐하우스 ha 등
 - 농법 [친환경농법 : 농가, ha
 - [일반농법 : 농가, ha

나. 대표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포함)
- 학력 및 주요경력
- 친환경농업 실천정도
-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여부
- * 법인(영농조합 또는 농업회사 법인)인 경우 법인현황 첨부

2. 사업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내용 (자작목, 실천농법, 시설·장비 활용계획, 생산계획 등)

나. 세부사업계획

- 시설 및 장비투자계획

(단위 : 천원)

주요항목	시설·장비	사 업 비				소요 및 수혜자
		계	보 조	응 자	자 담	
계						

*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첨부

- 사업항목별 세부내용

다. 자부담 및 부지확보

- 자부담 확보 및 계획
- 사업장 부지 확보상황

라. 생산 및 판매계획

- 생산계획
- 판매계획 (판매방식, 판매처)
- 품질인증 참여 및 가격차별화 계획

마. 운영자금 확보계획

바. 투자에상효과

3. 붙임자료

- ① 사업참여농가 영농현황
- ②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 ③ 사업장부지 사용승인서

<붙임 1>

참여농가 영농현황

농가성명	주민등록번호	경작규모	품질인증		작목입식현황				판매방법	
			여	부	벼	축산	채소	기타	여	부
		ha								

- 주) * 작목입식현황은 주소득 기준으로 분류
 * 판매방법은 연간 생산량의 1/2 이상을 자체유통망(직거래 포함)을 통하여 판매한 농가
 * 품질인증은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 포함.

<붙임 2>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신청자 (대표자)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외 명

2. 검토의견

※ 각 기관별 소관사항 위주로 사업계획서 검토·조정

- 농업기술센터 : 품목별 재배기술 등 영농여건 및 사업성 검토
- 농관원 출장소 : 품질인증 등 농산물 품질실태
- 농협 : 재무구조(대출가능 여부 등), 유통·판매실태 및 장기운영 계획
- 시·군 : 종합 검토의견

※ 시장·군수는 농업기술센터, 농관원 출장소, 농협 등 각 기관별 소관사항 위주로 사업계획서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서를 제출받아 종합 검토의견서 작성

년 월 일

○○○○ 시장·군수 (인)

<붙임 3>

부지사용 승인서

지 번 :

지 목 :

지 적 :

상기 토지 m²(평) 중 m²(평)를 친환경가족농
단지조성사업의 ○○ 시설 설치용 부지사용을 승낙합니다.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승낙자(토지소유자) : (인)

년 월 일

○○ 시장·군수 귀하

II. 친환경농업지구조성

1. 목 적

-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지역단위로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
 -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최대한 줄이고 농업환경을 유지·보전
 - 안전농산물 생산·공급체계 확립으로 친환경농업을 확산·발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 농약, 화학비료 및 축산분뇨 등 오염원 경감
 - 농토배양을 통한 흙살리기 확산
 - 유기농업 등 친환경농업 실천
- 환경오염방지로 농촌생활 환경개선
 - 축산폐수 및 폐영농자재 수집 등
-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확립
- 기술지도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친환경농업의 조기 확산

3. 근거법령

- 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7	'98~'99	2000	2001 (예산안)	2002-2004
사 업 량	개소 189	-	11	9	9	160
사 업 비	계	378,000	20,000	10,000	10,000	338,000
	보 조	151,200	8,000	4,000	4,000	135,200
	국고용자	-	-	-	-	-
	지방비	151,200	8,000	4,000	4,000	135,200
자 담	75,600	-	4,000	2,000	2,000	67,600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농약·화학비료 및 축산분뇨 등 오염원을 경감하고, 농업환경을 유지·보전하며, 친환경농업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등 친환경농업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국내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 GR 등 친환경농업관련 국제적 논의에 대처하고자 함.

(2) 지원대상

○ 대상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변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이라도 지역단위로 친환경농업실천이 가능한 지역
- 사업참여농가가 50호 이상이고 그 지역내 전체농가의 1/2 이상이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원칙적으로 농경지 50ha 이상으로 집단화된 지역)
- 유기농업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 중에 있어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과 지역농협의 주관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선 선정
- 상수원보호구역중 정부가 시행중인 친환경가족농단지외로 지원받지 않은 지역을 선정하되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이미 지원받은 지역도 선정 가능 (동일한 시설·장비는 해당농가에 중복지원할 수 없음)

○ 대상자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을 희망하는 지역(마을)에서 사업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조직

○ 작 목

- 벼·일반밭작물·채소·과수·특작·축산 등 전작목 (화훼류는 제외)

(3) 지원조건

- 지원단가 : 지구당 1,0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4) 지원대상사업(사업메뉴)

구 분	세 부 사 업 메 뉴	비 고
<p><공동이용시설></p> <p>1. 농업환경오염 경감시설 및 장비(농약·화학 비료·축산분뇨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자원생산에 필요한 미생물 배양시설 및 부대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생물 배양기, 창고, 배합기, 로다, 운반차량, 분쇄기 등 - 목재파쇄기(톱밥제조기 포함), 팽연왕겨 제조시설 및 장비 ○ 환경친화적인 자재 제조시설·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비료·농약 대체 사용자재 생산시설 은 환경농산물 품질관리요령(농림부 고시 제2000-64호) 중 토양개량과 시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물질과 농촌진흥청에서 효과검증된 자재를 대상으로 함. ○ INM·IPM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 ○ 천적곤충증식 시설·장비 ○ 농산부산물 및 남은음식물의 퇴비·사료화 제조 시설·장비 ○ 축산분뇨 퇴비화시설 및 공동퇴비 제조시설·장비 ○ 축분액비 저장시설 및 살포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분뇨 자원화시설(퇴비, 액비 등)은 축산분뇨 발생량을 지구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 ○ 토양개량제 살포장비, 푸른들가꾸기와 연계한 사료작물 수확기 ○ 조사료 생산시설·장비 및 폐영농자재 수거시설·장비 ○ 토양유실방지시설 및 토양검정에 필요한 장비 ○ 기타 농업환경 오염경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p><개별생산시설></p> <p>2.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친화적 비닐하우스(부대시설 포함), 환경친화적 축사(유기축산에 필요한시설 포함) ○ 기타 친환경농법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직포, 비가림시설, 퇴비살포기, 오리 목책 등 	
<p><공동이용시설></p> <p>3.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장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냉시설, 냉장차, 선별기, 포장기 등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하장 또는 공동작업장 포함 ○ 산지직판장 및 기타 계통판매에 필요한 시설·장비 	
<p><공동이용시설></p> <p>4. 친환경농업 기술 지도·교육 관련 시설·장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장, 교육용기자재(PC 등), 기타 친환경농업기술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p>마을회관 신축, 휴폐교 임대료는 제외</p>
<p>5. 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감리비 등 부대비용 	

- 사업자는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4)지원대상사업(사업메뉴)중에서 영농여건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선택하여 사업을 추진
 - 농업환경오염경감시설, 유통시설, 교육용시설 등은 지구내 영농규모 등을 감안, 적정규모로 설치하여야 함
- 지원대상사업 중 1~3개 항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전체 사업비의 8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참여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되 농업환경오염경감시설 및 장비에 우선을 두고 추진
 - 1~5 항목 중 1개 항목이 전체사업비의 1/2를 초과할 수 없음.
- 축사신축은 지원을 제한, 다만 조사료, 발효사료 등 자급사료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선별 지원하고, 또 유기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유기축산 시범사업 기술지도 등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수행
-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액비시설 포함)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축사면적 및 가축사육두수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하되 처리방식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를 받아설치
 - 지구내 축산농가가 없는 경우에는 설치 제한(단, 액비화시설은 가능)
- 화학비료·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자재 생산시설 설치시 환경농산물 품질관리요령(농림부 고시 제2000-64호) 중 토양개량과 시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과 농촌진흥청에서 효과검증된 자재를 대상으로 함.
- 친환경농산물 유통·판매에 필요한 시설·장비 중 예냉시설·저온저장고 등은 가급적 지원억제(기존시설 최대한 활용)
-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등) 및 농업용트럭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구입비는 전체사업비에서 제외됨.
- 지원대상 사업메뉴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판단하에 지원이 가능함. 다만, 유기질 비료 등 소모성 자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대상 사업자 중 최근 5년 이내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로부터 동일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함.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규모를 확대하거나 증축시는 지원이 가능함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역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개소 9	백만원 10,000	4,000 (40%)	4,000 (40%)	-	4,000 (40%)	2,000 (2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생산국 친환경농업과(02-503-7284~5)
- 시·도 : 농정국 농산과(농산유통과, 농산지원과, 농업지원과)
- 시·군 : 산업 또는 농정과

다. 사업시행

(1) 사업시행체계



(2)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시행

○ 친환경농업육성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 : 대표농가 2~3인, 친환경농업단체 대표(지회장 또는 지부장), 행정·지도, 농관원·농협 관계자

- 임무 : 사업자 선정 심의 세부사업계획 심사·확정, 사후관리 지도 등

○ 세부사업 계획 수립·승인

- 시·도지사는 농림부로부터 통보된 사업물량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 (선정결과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표농가 등과 협의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시 시설별(공동, 개별), 소유자(이용자)를 명시하고 지구내 참여농가의 합의하에 추진해야 함.

○ 농업환경기초조사

- 농촌진흥청장은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사업실시전에 농업환경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도농업기술원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참여농가 대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를 경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별지 제2호서식), 시·도지사는 주요변경·승인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농가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설 계

- 설계도가 기 개발되어 있는 시설은 개발된 설계도에 따르고, 유사모델이 없거나 고난도 시설의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 또는 건설업법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 농가가 직접시공이 가능한 시설과 개발된 설계서의 규모를 현저히 늘리거나 변형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체설계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환경친화형 비닐하우스, 환경친화형 축사(유기축산에 필요한시설 포함), 예냉시설 등은 친환경가족농단지 사업추진요령(시설설계)에 준함

○ 공사감리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농업기반공사 또는 유자격 감리업체와 사업 착수전에 감리를 계약하여 철저한 감리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함.
- 시공업체가 공사감리를 할 수 없음

○ 준공검사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 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시장·군수는 농업기반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자는 사업내용중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준공검사 신청(별지 제5호서식)이 가능함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관련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짐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즉시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검정후 시공업체에게 지급되어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후 시공업체(농가 직접 시공시는 농가)에 지급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농가 직접 시공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시행 마을 대표자 및 시공업체로 부터 거래할 은행계좌를 신고받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

(3) 유기축산 시범지원 : 친환경가족농단지 사업지침의 (3)항에 준함

(4) 축산분뇨액비화지원 : 친환경농업지구구성사업지침 (4)항에 준함

라. 기타사항

- “지구(지역)” 개념에 충실하기 위하여 지구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시설·장비의 설치는 지구(사업지)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3호서식)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 “관리 카드”를 비치·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 터	까 지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시설설치 완료시부터	10년간	○ 친환경농업 이행기간 및 장비 내구연한을 감안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10년간(장비는 5년)타인에게 시설을 양도를 할 수 없음.	
○ “ 장비	장비구입시 부터	5년간	○ 단, 불가피한 사유발생시에는 농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친환경농업지구내에 설치된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이용시설 운영 약관”을 만들어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친환경농업지구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대상에 포함 경영컨설팅이 실시되도록 추진
- 참여농가
 - 참여농가는 친환경농업실천기록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개인별로 기록 유지하여야 함
 - 참여농가는 매월 농약·화학비료의 사용량과 축산분뇨의 발생·처리이용량을 기록하여 대표자의 확인(분기 1회)을 받아 비치하여야 함
 - 유기축산 시범농가는“ codex유기가축 및 축산물”에 관한 지침을 준수해야함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농업환경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구내 농업환경변동실태(토양, 수질 등 성분분석)를 매년 벼농사가 끝난 후 관련 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성적표를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속직원을 기술지도 전담자로 지정하여 농약안전사용, 작물별 시비추천량 준수,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시비개선, 종합농토배양 및 농산부산물 이용방법 등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해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출장소장)은 지구내 생산물(벼 등 대표작물)의 농약잔류분석을 매년 벼농사가 끝난 후 관련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성적표를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출장소장)은 소속 직원을 기술지도 전담자로 지정하여 농산물 품질관리, 각종농법,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의 재배조건 및 포장관리 지도를 강화하여 안전농산물 생산, 품질인증 및 참여농가가 많아 지도록 유도하여야 함
- 농 협
 - 지역농협장은 친환경농업지구에 판매한 농약·화학비료량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함
 - 지역농협장은 친환경농업지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농협자체유통망 이용 알선, 친환경농산물 판매시설(서울)이용, 위탁판매 주선, 민간단체와 직거래 알선 등 유통·판매 지원과 판매홍보를 강화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축산기술연구소)

- 유기축산 시범사업대상농가에 대해서는 유기축산농가교육용 지도지침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전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기술지도를 실시해야함
- 특히 사업대상농가의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해야함

○ 친환경농업단체

- 친환경농업실천 기술지도, 경영컨설팅 참여 및 지도 등 친환경농업지구내 참여농가에 대한 기술과 경영지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현지확인을 거쳐 친환경농업 이행상황을 평가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성고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친환경농업단체에서 사업추진협의회 및 기술지도, 경영컨설팅에 참여토록 적극 조치하여야 함.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친환경농업이행상황을 평가·분석하고 전년도 친환경농업 이행보고서를 다음년도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동 사업지구를 도내 친환경농업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사업효과를 제고시켜야 함.

나. 보 고

○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보고(별지 제3호서식)

- 시·군 → 시·도 → 농림부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친환경농업이행보고(별지 제4호서식)

- 사업자 → 시·군 → 시·도 → 농림부
(1.31.까지) (2.15.까지) (2.28.까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결과 보고

- 시·군 → 시·도 → 농림부
(익년3.20.까지) (익년3.30.까지)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본 사업시행지침은 2002년도에 변경·수정·보완될 수 있음.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자격

- “5<사업개요>의 가(2)”항의 지원대상기준에 맞아야 함

다. 신청절차

- 사업을 희망하는 지구의 대표, 친환경농업단체 또는 농협 등과 협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및 시설·장비를 선택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업 신청

라.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의 공통서식,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에 첨부할 서류(첨부서류 누락시 사업신청 불가)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붙임1)
 - 현재의 영농현황(붙임2)
 - 각서 및 참여 동의서(붙임3)
 - ※ 주민회의록 사본 첨부
 - 친환경농업단체 검토의견
 - 부지사용 승인서(붙임4)

마. 지원 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서 검토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1조 내지 제19조 참조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각 기관별로 아래 소관사항 위주로 사업계획서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서(붙임5)를 발급 받아 필요시 사업계획서를 보완
 - 유기축산 시범농가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 사전검토 의뢰

- 읍면동 : 농가, 경지면적, 지구현황 등 일반여건
- 농업기술센터 : 품목별 재배기술 등 영농여건 및 사업성 검토
- 농산물품질관리원 : 품질인증 현황 등 농산물 품질실태
- 농협 : 재무구조, 유통·판매실태 및 장기운영 계획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기준(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1.사 업 계획서 (200점)	가.농약·화학 비료, 축산분 뇨 등 오염 정감(50점)	○ 상 : 50점(신청자중 1명이내) ○ 중 : 40점(신청자중 2명이내) ○ 하 : 30점(상,중 이외의 신청자)	○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의 단계별 절감계획, 축산분뇨의 자원화계획 등 환경오염정감 대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평가
	나.농업 환경 유지·개량 (50점)	○ 상 : 50점(신청자중 1명이내) ○ 중 : 40점(신청자중 2명이내) ○ 하 : 30점(상,중 이외의 신청자)	○ 농축산부산물을 활용한 유기질 비료(퇴비)사용, 객토 및 토양 개량제공급, 깊이갈이 등 종합 농토배양확대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개량대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평가
	다.친환경농업 육 성 (50점)	○ 상 : 50점(신청자중 1명이내) ○ 중 : 40점(신청자중 2명이내) ○ 하 : 30점(상,중 이외의 신청자)	○ 유가자연농업 등 환경농업육성 대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평가
	라.유통·판매 대 책 (50점)	○ 상 : 50점(신청자중 1명이내) ○ 중 : 40점(신청자중 2명이내) ○ 하 : 30점(상,중 이외의 신청자)	○ 현재의 유통·판매 실태 및 앞으로의 유통·판매 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대책 등 장기운영 계획에 대한 평가
2지도자 (100점)	가.지도력 (30점)	○ 상 : 30점(신청자중 1명이내) ○ 중 : 25점(신청자중 2명이내) ○ 하 : 20점(상,중이외의 신청자)	○ 과거 이장, 영농회장, 4H회장 등 지도자 경력 반영

구 분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나. 학력 (20점)	○ 농업계 대학졸업자:20점 ○ 농업계 전문대학 졸업자:15점 ○ 기타 학교졸업자:10점	○ 다음 교육훈련 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 농촌진흥청, 각도, 농축협의 훈련기관 - 농촌진흥청, 농촌지도기관이 인정된 독농가농장 및 연수기관 - 대학 또는 전문대 등 농업계 학교부설 영농훈련기관 - 민간단체(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원단체) ※ 교육기간은 통산일수를 적용하며 단위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만 통산일수에 반영됨
	다. 영농교육 훈련 (25점)	○ 6개월이상 : 25점 ○ 3개월이상 : 20점 ○ 1개월이상 : 15점	
	라. 영농경력 (25점)	○ 영농경력 15-25년 : 25점 ○ “ 10-14년 : 20점 ○ “ 10년이하: 15점	
3. 일반여건 (100점)	가. 영농규모 (25점)	○ 65ha 이상 : 25점 ○ 30 ~ 64ha : 20점 ○ 30ha 미만 : 15점	○ 대상지역의 지목상 논·밭 면적 기준
	나. 농가의 연령 (25점)	○ 50% 이상 : 25점 ○ 40~49% : 20점 ○ 40% 미만 : 15점	○ 20~50세의 순수농가(학생, 취업자 제외)로서 주민등록표상의 연령을 적용(여자 포함) ※ 20~50세 농가인구/대상지역 농가의 20세 이상 인구(남녀포함)
	다. 벼재배 농가 (25점)	○ 90% 이상 : 25점 ○ 60~89% : 20점 ○ 60% 미만 : 15점	○ 전년도 벼 재배기준 ※ 벼재배농가/대상지역농가
	라. 관광 및 홍보 (25점)	○ 상 : 25점(1개소 이내) ○ 중 : 20점(2개소 이내) ○ 하 : 15점(상·중외 신청자)	○ 객관적인 관광·홍보여건을 종합판단

구 분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4. 친환경농 업여건 (100점)	가. 친환경농 업실천 농가 (30점)	○20% 이상 : 30점 ○10~19% : 20점 ○10% 미만 : 10점	○ 전년도 말까지 친환경 농산물생산 (품질인증, 표시신고) 실적기준 ※ 품질인증농가/대상지역 농가수
	나. 사업 참여도 (30점)	○80% 이상 : 30점 ○60~79% : 20점 ○60% 미만 : 10점	○ 사업참여 농가의 동의서에 의함 ※ 사업참여농가/대상지역농가수
	다. 기존시설 (20점)	○5억이상 : 20점 ○2~4억원 : 15점 ○2억원 미만: 10점	○ 최근 5년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시설 투자사업한 투자총액 기준 ※ 지원조건에 따라 자부담한 금액도 포함되며 최종정산 금액 기준임
	라. 판매방법 (20점)	○ 참여농가의 80% 이상 : 20점 ○50~79% : 15점 ○50% 미만 : 10점	○ 자체유통판매망(직거래 포함)을 통하여 판매 ※ 연간 생산량의 1/2 이상을 자체유통망(직거래포함)을 통하여 판매한 농가(객관적인 자료 제시)

※ 1~3항의 평가시 상은 신청자 중 1명 이내로, 중은 2명 이내로 평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다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가보고서(붙임6)와 지방비 확보의지 등을 감안한 검토의견서(붙임5)를 작성하여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사본일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2001. 2. 28)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
- 시·도지사는 평가 순위별로 사업대상지구 평가집계표(붙임7) 및 사업비 집계표(붙임8)를 작성
- 시·도지사는 사업목적과 투자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 타당성 등 종합 검토 의견서(붙임5)를 작성하여 시·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신청한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사본일체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2001.9.30까지)

○ 우선순위

- 시장·군수, 시·도지사의 평가결과 점수를 적용한 순위

※ 평가결과, 사업계획서상 ①농약·화학비료, 축산분뇨 등 오염원 경감
②농업환경 유지·개량 ③친환경농업육성 ④유통·판매대책 항목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하'로 평가되면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 선정절차

- 시장·군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지방비 확보의지 등을 감안한
종합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
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중 시·도평가 항목인 '1.사업계획서'항을
평가하여 시·군의 평가 점수와 합산, 평균치를 적용하고 여타 '2.지도자,
3.일반여건, 4.친환경농업여건' 항 점수는 시·군 평가 점수를 적용, 순위를
정하여 시·도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단가 10억원 또는 20억원 규모로 선택)
- ※ 아래 사업계획에서 5)장기운영 계획이 어느 한항목이라도 '하'로 평가되면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됨

가. 현 황

기본현황

- 위 치 : 사업대상지역 등
- 인 구 : 세대수, 농가수, 인구수(남, 여)
- 농가현황 : 노동력, 경지면적, 영농규모, 농법 등
 - 노 동 력 : 20~50세, 51~60세, 61~70세, 71세 이상
 - 경지면적 : ha(논, 밭)
 - 영농규모 : 경종, 축산, 비닐하우스
 - 농 법 : 일반농법 농가수, ha, 친환경농업농가수, ha

조직현황

- 대표자(지도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 학력, 경력 등 상세히 기록
 - ※ 필요시 객관적인 근거자료 첨부
- 조직 : 조직명, 설립년월일, 설립목적, 회원수, 사업내용 등 상세히 기록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 현황

- 총 투자금액 : 백만원
 - ※ 세부사업내역 (별지제2호서식)
- 본 사업과 연계가능여부 및 활용계획

나. 지구의 특징

지리적·기후적 특징

다. 친환경농업 실천방법 및 생산물의 특징

- 농법, 농산물의 특징 등
- 관광·교육·홍보적 특징
- 유통·판매의 특징
- 후손이 물려받을 여건 등
- 기 타

라. 사업내용

1) 사업내용 집계표

항 목	시설·장비·자재명	사업비	소유·수혜·이용자
1. 농업환경오염 경감시설 및 장비	○ ○ 소 계		
2.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 ○ 소 계		
3.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 ○ 소 계		
4. 친환경농업기술 지도·교육관련 시설 및 장비	○ ○ 소 계		
5. 기타사업	○ ○ 소 계		
계			

※ 개별시설·장비는 개별 농가명을, 공동시설·장비는 수혜(이용)자 ○○○의 명으로 기재

2)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3) 자부담금, 운영자금 확보계획

4) 세부사업 추진일정 : 분기별 사업추진계획 및 자금소요액

5) 장기운영계획

- 현재의 실태와 연차적 절감·개량·육성계획 -

- ① 농약·화학비료, 축산분뇨 등 오염경감 계획 및 이행방법
- ② 농업환경 유지·개량 계획 및 이행방법
- ③ 유기·자연농업 등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및 이행방법
- ④ 유통·판매대책 및 이행방법

- 6) 기술지도 및 교육장 활용계획 : 친환경농업확산대책
- 7) 사업비 산출근거 :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
- 8) 투자 예상효과 : 세부사업별 예상 효과
- 9) 사업계획 도면

바. 붙임자료

1.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사업신청자 작성)
2. 현재의 영농현황(사업신청자 작성)
3. 각서 및 참여동의서(사업신청자 작성)
4. 부지사용승인서(사업신청자 작성)
5.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6. 사업대상지구 평가보고서
7. 사업대상지구 평가집계표
8. 사업비 집계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사업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참여 동의를 받은 후, 지역의 농업·교통·인적조건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및 시설·장비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 사업대상지구의 위치, 지리·기후적 특징, 인구, 노동력, 경지면적, 영농 규모, 농법 등 기본현황
 - 대표자의 학력, 경력 등 지도자의 인적사항 및 조직의 명칭, 목적, 회원 수, 사업내용 등 조직 현황
 - 유기·자연농업 등 친환경농업실천농가 및 농법,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산물 표시 현황, 판매방법 등 농산물의 품질실태 및 교육·홍보·관광·유통·판매의 특징 등
 - 최근 5년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원받은 시설·장비현황(붙임 1)과 그 활용계획

- 친환경농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사업비 산출근거, 투자예상효과, 자부담금 및 운영자금 확보계획, 분기별 사업추진계획 및 자금소요액, 현재의 농업환경 실태와 연차별 오염원 경감, 농업환경유지·개량,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유통·판매 대책 등 장기운영계획 작성
 - ① 농약·화학비료, 축산분뇨 등 오염원 경감계획 및 이행방법
 - ② 농업환경 유지·개량계획 및 이행방법
 - ③ 유기·자연농업 등 친환경농업육성계획 및 이행방법
 - ④ 유통·판매대책 및 이행방법

※ 사업계획서 평가(시장·군수, 시·도지사)시 상기 ①~④항의 장기운영계획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하”로 평가되면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됨

※ 농업진흥지역내의 논에는 본 사업시설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논에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은 사업자선정 후순위를 부여함

-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한 기술교육장으로서의 활용계획 등 작성

(붙임1)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소 유· 수혜자
			계	국 고	용 자	지방비	자부담	

(붙임2)

현재의 영농현황

농가성명	주민등록번호	경작규모 ha	참여동의		품질인증여부		재배현황				판매방법여부		
			가	부	가	부	벼	축산	채소	기타	가	부	
세 대 주 (동거가족)													
계													

주) ※ 전체농가 중 20세이상의 남·여를 전부 기재하고 세대주 외는 이름만을()내 표시할 것

※ 재배현황은 주소득 기준으로 분류

※ 판매방법은 연간 생산량의 ½이상을 자체유통망(직거래포함)을 통하여 판매한 농가

(붙임4)

부지사용 승인서

지 번 :

지 적 :

상기 토지 m(평)중 m(평)를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의 ○○ 시설·장비 부지사용을 승인합니다.

주 소 :

주 민 등 록 번 호 :

승낙자 (토지소유자) : (인)

년 월 일

○○ 시장·군 수 귀하

※ 지목상 논에는 본사업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붙임5)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신청자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외 명

2) 검토의견

- 각 기관별 소관사항 위주로 사업계획서 검토·조정 의견
 - 읍·면 : 농가, 경지면적, 지구현황 등 일반여건
 - 지 도 : 품목별 재배기술 등 영농여건 및 사업성 검토
 - 농 검 : 품질인증 현황 등 농산물 품질실태
 - 농 협 : 재무구조, 유통·판매실태 및 장기운영 계획
 - 시·군·지방비 확보 의지 등 종합 검토의견
- ※ 시장·군수는 읍·면·동, 지도소, 농검, 농협 등 각기관별 소관사항 위주로 사업계획서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서를 발급받아 필요시 사업계획서를 보완
- 시·도 : 사업목적과 투자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타당성 등 종합 검토의견

년 월 일

기관명 ○ ○ ○ ○

관인

※ 기관별 각각 작성

(붙임6)

사업대상지구 평가보고서

<시·군 → 도 제출>

항 목	배점기준	평가점수	비 고
1. 사업계획서	가. 오염경감대책	50점	
	나. 농업환경유지·개량	50	
	다. 친환경농업육성	50	
	라. 유통·판매대책	50	
	소 계	200	
2. 지도자	가. 지도력	30	
	나. 학 력	20	
	다. 교육훈련	25	
	라. 영농경력	25	
	소 계	100	
3. 일반여건	가. 영농규모	25	
	나. 농가의 연령	25	
	다. 벼재배농가	25	
	라. 관광및홍보여건	25	
	소 계	100	
4. 친환경농업여건	가. 친환경농업실천	30	
	나. 사업참여도	30	
	다. 기존시설활용	20	
	라. 판매방법	20	
	소 계	100	
계	16개 항목	500점	

※ 시·군은 1-4항까지의 전항을 평가하여 시·도에 제출

(붙임7)

사업대상지구 평가 집계표

< 도 → 농림부 제출용 >

시도	사업지구	순위	평가점수				비고
			계 (500점)	1.사업 계획서 (200)	2.지도자 (100)	3.일반여건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항은 시군 평가점수와 시도평가점수의 평균치를, ○ 2~4항은 시군평가점수를 기록

※ 시도는 1항을 평가하여 시군의 1항 평가점수와 합산하여 평균함

(붙임8)

사업비 집계표

< 시·도 → 농림부 제출용 >

시·도	사업지구	순 위	사업내용	사 업 비	비 고
소 계					
소 계					
총 계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 주소(사업지구 명칭) :
2. 주민 등록 번호 :
3. 성 명 :
4. 사업 변경 내용 :

사업계획(당초)		변 경		사 유
시설별(량)	금 액	시설별(량)	금 액	
				※ 주민회의록 등 주민동의서 첨부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 ○(인)

시 · 도지사 귀하

※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시설)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주요기본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

심 사 제 의

(/ 분기)사업 추진상황 보고

1. 주 소(사업지구 명칭) :

2. 주민등록번호 :

3. 성 명 :

사업내용	계획물량	추진실적	증 감	비고(내용별로 구체적으로)

※ 다음분기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시장·군수 → 시·도지사 → 농림부)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

항 목 별		사업시행전(A)	사업후(1년차)(B)	대비(B/A)	비고
① 농 약	사 용 량	kg	kg		%	
	잔 류 량	ppm	ppm			
② 화학비료 사용량		kg	kg			
③ 축산분뇨(처리량/발생량)		()/()톤	()/()톤			
④ 친환경농업 유지·개량 (토양)	산 도					
	유 기 물	%	%			
	규 산	ppm	ppm			
	중 금 속	ppm	ppm			
⑤ 친환경농업 육 성	유 기 농 업	농가	농가			
	자 연 농 업					
	토 종 농 업					
	오 리 농 업					
	우 령 이 농 법					
	·					
⑥ 품질인증	유 기 재 배					
	무 농 약 재 배					
	저 농 약 재 배					

년 월 일

○○ 군 수 귀하

보고서 제출자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인)

※ 대표자는 매년 친환경농업이행 보고서를 사업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익년 1.31.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 ①항 중 생산물(쌀)에 대한 농약잔류분석은 농검에, ④의 전항은 사·군 농업기술센터가 시험·분석한 성적표를 첨부할 것

(별지 제5호서식)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준공검사신청서

지 구 명		위 치		TEL	
대 표 자	한글	사업내용			
	한문				
사업기간	부터 까지	완료일자			
신 고 인	주 소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p>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중 ○ ○ ○시설의 준공검사를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 귀하</p>					

※ 사업내용중 시설·장비별로 설치가 완료되는대로 준공검사 신청이 가능함

(별지 제6호서식)

친환경농업실천 기록대장

(농가명 :)

일자별	농 약 사 용				화학비료사용				축 산 분 뇨			대표자 확 인 (인)
	대상 작물	면적 (ha)	농 약 품목명	사용량 (kg)	대상 작물	면적 (ha)	비료명	사용량 (kg)	축종 (두수)	발생량 (톤)	처리 이용량 (톤)	

※ 축산분뇨 월 발생량 : 한우(마리수) × 600kg
 젖소(“) × 975kg
 돼지(“) × 183kg
 닭 (“) × 4kg

※ 참여농가는 매월 농약·화학비료 사용량과 축산분뇨 발생·처리이용량을 기록하여 대표자의 확인(분기 1회)을 받아 농가별로 비치할 것

Ⅲ. 친환경농업시범마을조성

1. 목 적

- 벼농사의 친환경벼재배핵심기술인 병해충종합관리기술(IPM)과 작물양분종합관리기술(INM)을 종합적으로 실천하는 시범마을 조성하여 농약·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쌀을 생산토록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마을·들녘단위로 집단화된 벼 재배지역을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친환경벼재배기술을 3년간 집중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 마을별로 전담지도팀을 구성하여 친환경농업 기술을 집중지원
- 시범마을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친환경농업의 확산 도모

3. 근거법령

- 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8	'99	2000	2001 (예산안)	2002-2007
사업량(개소)	300	-	16	16	16	252
사업비(백만원)	13,620	-	726	726	726	11,442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IPM·INM 실천기술 보급을 통한 농업환경을 보전과 안전한 쌀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99년부터 시행

(2) 지원대상

- 마을·들녘단위로 50ha이상 집단화된 벼 재배지역에서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대상면적을 가급적 100ha수준으로 확대하여 조성)

(3) 지원단가 및 지원조건

- 개소당 45,400천원(국고보조 80%, 지방비20%)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역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친환경시범마을조성	개소 16	백만원 726	581	581	-	145	-

* 2001년 사업대상은 2000년 사업대상지와 동일('99이후 3년간 계속 지원)

<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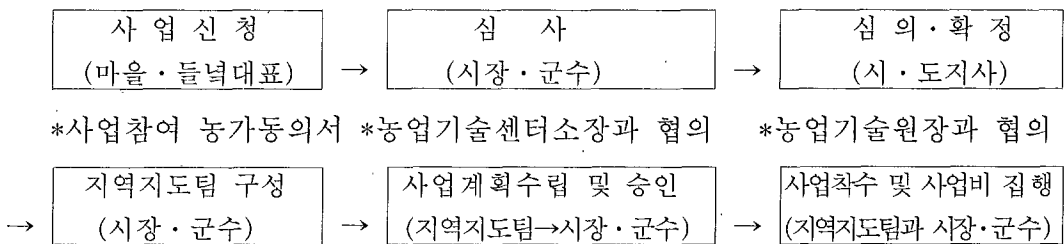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환경농업과(전화 : 02-503-7284~5)
- 농촌진흥청 식량작물과(전화 : 0331-299-2715)
- 도 농산담당과(농업기술원)
- 시·군 산업·농정과(농업기술센터)

다. 사업시행

(1) 사업시행체계



- 시·도지사가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지로 확정되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함.
- 시장·군수는 사업확정 내역을 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지역지도팀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2) 전담지도팀 구성 및 임무

- 지역지도팀 : 10명 이내
 - 팀장 : 농업기술센터소장(시·군담당과장 협조)
 - 반원 : 농업기술원 분석요원을 포함하여 2명, 시·군, 농업기술센터, 읍.면, 농협, 대학, 민간 전문가 등 각1명

<주요임무>

- 사업계획 수립(붙임 1. 참조) 및 승인요청
- 사업비(지도운영비, 조사재료비, 친환경농업실천비)의 교부신청 및 사업비 관리의 총괄
- 시범마을 영농실태조사 및 토양, 용수, 생물상 등 농업환경 변동 실태조사
 - 조사·분석이 어려운 항목은 농업기술원 또는 중앙지원팀에 의뢰
- 협약서 작성, 재배력작성, 영농단계별 기술지도계획 수립

- ※ 참여농가의 협약·지도 불이행시 실천비 지급중지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범마을 농업인 교육·평가회, 시범마을 운영협의회 구성지도
 - 중앙기술지원팀과의 기술·조사·분석 지원요청 및 협조
 - 사업(지도)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등
- 중앙기술지원팀 구성 및 임무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작물시험장, 호남농업시험장, 영남농업시험장 등의 소속 관계전문가로 구성

<주요임무>

- 지역지도팀에 대한 기술 및 농업인 교육 지원
 - 재배기술, IPM·INM기술, 경영분석기술 등

(3)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운영협의회 구성 및 임무

- 마을회의 등을 통하여 5-6명으로 구성

<주요임무>

- 마을의 의사결정 및 지역지도팀과의 연락유지
- 사업참여농가의 영농계획 파악 및 친환경농업실천기록 유지
- 친환경농업실천 협약서 작성 및 홍보(표찰설치 등) 등

(4) 참여농가의 임무

- 친환경농업실천협약서 이행 및 기록유지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역지도팀의 지도를 받아야함
 - * 참여농가에서 농약·화학비료 사용대장 기록 유지, 시비처방에 따른 토양 개량, 교육참여, IPM·INM 실천기술 등 친환경농업 이행 추진
- 지력증진을 위한 농토배양사업추진
 - 사료·녹비작물재배
 - 볏짚사용, 규산질비료사용, 기타유기질사용(액비, 퇴비 또는 유기질비료)

(5) 사업비 집행방법

- 지역지도팀의 팀장(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업비를 교부신청하고, 각각의 사업비를 집행
 - 현지출장지도비, 교육·홍보비 등 지도팀(중앙지원팀 포함)의 운영비
 - 토양(비옥도, 농약잔류, 중금속), 용수, 생물상 등 조사에 필요한 시약·실험자재 구입 등 조사재료비
 - 교육이수, 사료·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규산질비료공급, 오리농법에 필요한 목책 등 친환경농업에 필요하여 농가에 직접지원하는 비용

※ 항목별로 1/3수준으로 집행하고, 사업규모(대상면적)에 따라 사업내용간 상호 조정이 가능함

○ 각 팀은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증빙서류를 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사업비검정 및 집행·정산

○ 사업비지원방법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관련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짐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교부 목적대로 지역지도팀에게 보조금 검정후 지급하여야 하며, 지역지도팀장은 거래할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정산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급적 시·군농업 기술센터 소장에게 위임

마. 기타사항

○ 동사업의 사업자는 참여농가 및 지역지도팀이 되며, 자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지역지도팀의 팀장(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업자 대표역할을 수행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범마을로 지정되면 3년간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지도팀장은 친환경농업실천기록대장, 농업환경 변동실태조사 결과, 사업(지도)결과 보고서 등 관계자료를 보존하여 다음해 사업추진에 활용하여야 함

나. 보고·기타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결과보고

- 전담지도팀→시장·군수→시·도지사→농림부장관

- 전담지도팀→농업기술원→농촌진흥청→농림부장관

※ 농촌진흥청장은 전국단위의 종합보고서 작성제출(배포)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나. 신청자격 : 2000년 사업시행요령중 (2) 지원대상요건에 적합한 자

다. 신청절차

- 마을·들녘 대표자는 참여 농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참여 농가의 동의서

- 선정기준 및 절차

- 시장·군수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협의하여 사업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신청한 사업대상지 중에서 농업기술원장과 협의하여 도별 4-5개소를 신규로 선정함.

※ 동일 사업대상지를 3년간 계속사업을 하게되므로 2001년 사업대상지 (16개소)는 2002년도 사업대상지에 포함됨

- 우선순위

- 시범마을 선정시 상수원보호구역이 우선하고, 동일 조건시는 사업대상면적, 참여 농가가 많은 지역이 우선함

바. 기타사항

- 2002년도에 지원조건, 사업지침이 달라 질 수 있음

[붙임]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내용

1. 사업대상 지역 일반현황

- 사업대상지 : 대표자 :
- 농경지면적 ha(논 ,밭)
- 농가수 호(인구 명)
- 벼 재배면적 ha(품종별 ; , ,)
- 기타 여건

2. 사업계획

- 시범마을 영농전 실태조사 실시
 - 토성, 토심, 지하수위, 지형 등 지역적 여건 및 병해충발생,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재배기술수준 등 영농실태
 - 필지별 토양정밀검정 실시(시비처방서 발부)
- 생육단계별 영농지도 계획
 - 양질다수성 품종선택, 토양개량, 못자리설치 및 관리, 적기 모내기 및 포기수 확보, 물관리, IPM·INM기술 등
- 농업인 훈련계획 : 연 4회이상
- 시범마을 농업환경 변동 실태조사 계획
 - 조사시기 : 연중 2회(영농전3~4월, 수확후10~11월)
 - * 조사방법 및 분석은 농촌진흥청 시험분석요령에 의함
 - 조사항목 : 토양(비옥도, 농약잔류, 중금속 등), 용수(pH, COD, 무기염류 등)
시범마을의 생물상 등
 - * 조사분석 결과는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중앙지원팀에 제공
- 시범마을 운영협의회 구성과 협약서 작성
- 회의록, 농약·화학비료 사용대장 등 기록유지 지도계획
- 사업(지도)결과 보고서 작성계획 등

3. 세부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추진 일정

항 목	세 부 사 업 계 획	사업비	추진일정	실시기관

* 붙임 : 사업비 산출내역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품산업과(과장 양태선, 행정사무관 박세민(농산물가공산업육성, 가공산업경영지도), 농업사무관 김판중(특산단지육성)입니다.

I. 농산물가공산업육성

1. 목 적

- 우리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증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
- 원료농산물의 대량구입처확보 및 가공처리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를 산지가공산업의 주체로 육성
- 전통 식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 전통가공식품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 가공제품의 포장개선 및 홍보를 통한 상품성 제고로 수출 및 판로 확대
- 신규지원의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한하여 지원
- 기 지원업체의 경영정상화 및 규모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저장·자동화 시설 등에 우선 지원
- 저장·자동화·개보수시설 등 지원시 농산물가공공장 기술·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경영정상화와 컨설팅 사업의 연계성 강화 도모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3조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92~'98	'99	2000	2001 (예산안)	2002~2004	
사 업 량	761개소	11	12	23	90	
사 업 비	계	백만원 294,893	6,403	8,290	8,960	30,720
	보 조	105,978	-	-	-	-
	용 자	130,357	4,450	5,800	6,272	21,504
	자부담	58,558	1,973	2,490	2,688	9,216

※ '92~2000까지의 사업량은 지원실적임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배경 : 농산물가공사업을 육성하여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및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

(2) 지원대상자

- 시설비(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사업) : 농가공동, 생산자단체, 일반업체, 주류제조 면허업체, 명인지정업체
 - 농가공동이란 농가 5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운영에 참여한 공동조직
 - 생산자 단체란 농가 5호 이상이 출자하고 운영기간이 1년이상인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 일반업체란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일반식품 가공업체(민법 및 상법상 법인)
 - 주류제조면허업체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세법에 의거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 명인지정업체란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운영하는 업체
- 운영비(포장개선 및 홍보지원사업):
농림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전통식품명인지정업체,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통해 면허를 받은 업체

(3) 지원대상 품목

- 농림부 고시 제1999-69호('99.10.8)에 의거 전통식품으로 지정된 품목
 - 기타 국내산 농산물로써 원료조달이 용이하고, 경쟁력이 있는 품목
 - 대규모 판매처 등 판로확보가 용이한 품목
 - 주세법에 의거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품목
- ※ 동일지역내 동일품목·유사품목은 원료의 수급현황, 판매전망 등을 감안하여 균형지원

(4) 대상지역

-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촌지역(법제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군의 지역,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농림부장관이 농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

(5) 지원기준 및 조건

공통 조건

- 지원비율 : 융자 70%, 자담 30%
 - 융자조건
 - 시설비 : (일반업체)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8.0%
(기타) 3년거치 7년상환, 연리5.0%
 - 운영비 : (일반업체)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8.0%,
(기타) 2년거치 3년상환, 연리5.0%
- ※ 융자조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신규지원

○ 시설비(기준사업비)

- 농가공동 : 7억원 이내, 생산자단체 및 일반업체 : 20억원 이내
 - 개인이 운영하는 주류제조면허업체와 명인지정업체는 농가공동에 준하며,
단체가 운영하는 주류제조면허업체와 명인지정업체는 생산자 단체에 준함
- ※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계획은 시·도지사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농림부장관이 최종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능

<예> 기준사업비와 융자금 및 자담금 계산 예(가공공장의 기준사업비가 300백만원인 경우)

- 융자금 : 사업비 300백만원의 70% 융자(210백만원)
- 자담금 : 사업비 300백만원의 30% 자부담(90백만원)

○ 운영비(기준사업비)

- 포장디자인개발비 : 업체당 최고 20백만원
- 용기금형개발비 : 업체당 최고 80백만원(기획조사, 디자인개발, 목형,
금형, 생산용금형단계까지)
- 홍보물 유인비 : 업체당 최고 10백만원 (팜플렛, 전단인쇄비)

※ 수출용은 횡수에 관계없이 지원하여 수출을 적극 장려

(수출용 추가지원시는 수출실적 또는 수출계약 내용확인하고 타당성 인정후 지원)

추가지원

- 대상업체 : 시설비를 이미 지원 받은 업체 중 수출 또는 매출실적이 양호한
성장유망업체, 컨설팅결과 시설·장비의 보완이 요구되는 업체
및 시설자동화·현대화로 경영활성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와 시설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통해 면허를 받아 운영중인 업체 및 전통식품 명인이
운영하는 업체
- 사업품목 : 공장증설, 시설현대화·자동화, 저장 및 오·폐수처리 등 가공공장
운영(전통식품명인의 기능전수 포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장비
(전산장비 포함) 및 부대시설의 설치·구입지원

※ 농림부장관은 사업포기 등으로 인해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 기 지원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여 업체당 500백만원(자담포함)범
위내에서 시설현대화·자동화, 개보수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존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지원 도모

- 수요조사 대상 및 방법 등은 예산잔액을 감안, 별도지침 시달

(6) 지원시설의 종류 등

- 시설비 : 가공공장, 일반창고, 저온창고, 기타 부속건물, 오폐수처리시설, 가공기계류 등 (부지구입비는 제외)
- ※ 저장시설(일반창고, 저온창고)은 가공공장 본래기능에 부합하는 적정규모에 한해서 지원하며, 가공공장의 운영과 직접관련이 없는 시설은 지원 불가
- 운영비
 - 포장개선사업 : 포장디자인개발, 용기금형개발
 - 홍보지원사업 : 홍보물 유인비(팜플렛, 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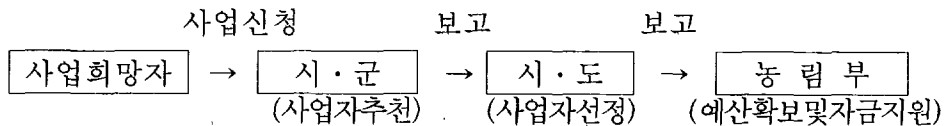
(7) 대상자 자격조건

- 가공공장 시설부지 확보
 - 신청당일까지 당해 부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사용권(지상권) 또는 10년 이상 장기임차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대구·경북 재정지정리지역은 사업지역에서 제외
 - 농업진흥지역의 논은 사업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은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우선순위에서 밭·산지 등 보다 후위 순위로 인정
 - 공장설립에 따른 각종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부지 (입지기준확인서 첨부)
 - ※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법, 산림법, 상수원관리법 또는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거 가공공장 설치에 문제가 되는 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담보물 확보 :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액 검토의견서 첨부(별지 제4-3호)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고 최저 1억원 이상 출자된 법인으로 다음서류 첨부
 -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조합원 명부
 - 사업계획에 대한 총회 의결을 거친 의사록 (참석자 명단포함)
 - 출자금 증빙서류 (시장·군수가 확인한 조합원별 출자내역)
 - ※ 농업·농촌기본법령상의 각종 규정 준수여부, 특히 출자비율 확인 (1인당 출자비율 25%이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의 총출자비율 준수 등)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2001. 사 업 비				자부담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어촌구조개선)			
			계	보조	융자	
합 계	개소 23	백만원 8,960	6,272	-	6,272	2,688
○농산물가공산업육성	23	8,960	6,272	-	6,272	2,688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 농산물가공사업 세부시행체계도 : (참고1) 참조

가. 사업신청 : 사업신청자 → 관할 시장·군수

-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제4호, 제4-1~4-5호 서식) 및 대상자자격조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나. 사업희망자 추천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를 종합 검토한 후 시·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후보자 선정조서(별지제2호 서식)에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시장·군수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신청자 추천

다. 사업신청 및 예산확보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시·도지사는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추천조서(별지제3호 서식)에 의견서(시장·군수의견서 포함) 및 지원순위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신청현황을 감안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예산을 확보

라.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판단기준

- 기술·경영컨설팅 결과 추가시설 설치를 권유받은 업체
- 신제품 개발, 판로확보, 가격경쟁력 확보 등으로 시장성이 높은 업체
- 부지확보, 자부담금 확보 등 사업의지가 양호한 업체

마. 사업타당성 조사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시·도지사는 사업신청서가 접수될 경우에 양식1의 「평가항목 및 운영주체 별 배점기준」에 따라 현지사업성 검토(양식 2 업체별 사업성 종합평가표)를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단, 2001년도 사업자 중 2000년도에 기신청한 업체는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이 예년과 같이 사업성 검토 후 그 결과를 관련 시·도지사에 통지

바.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 농림부장관은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예산 범위내에서 시·도별 예산배분계획을 확정시달 ('00.12월중)
- 시·도지사는 시·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또는 가공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예비후보자포함)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 시·도지사는 현지사업성 조사결과 종합점수가 60점이하인 업체와 기존 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가공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업체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자선정의 신속한 대체 등을 위하여 동 심의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확정일(시장·군수 공문발송의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포기서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농림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

사.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각 시장·군수에게 시달
- 시장·군수는 선정된 대상사업자에게 지체없이 통보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

- 시설비 : 시·도지사(추가지원 포함)
- 운영비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식품산업과 : (02) 504-9417~8, (02) 500-2677~8
- 시·도 : 농정국(농림수산국) 농산물유통과(농정유통과, 유통특작과, 감귤과)
- 시군·자치구 : 농정과, 유통과 또는 산업과

다. 사업시행

시설물 설치

- 농가공동(전통식품)의 사업대표자는 공동참여자와 함께 주요자산의 출자내역, 공장건설, 경영 및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는 자체정관을 작성
- 시설공사는 부실방지를 위하여 건설 관련법에서 규정한 전문건설업체 등을 선정 시공하되 시공에서 준공까지 전문기관의 감리 및 공사감독하에 시행
- ※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 담당
- ※ 가공공장시설의 계약체결시 관계공무원 입회

-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과 동시에 보존등기 완료하고 지원목적대로 사용.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기간내 가공공장 건설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철저
-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농림사업실시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실시

□ 포장개선 및 홍보지원사업

- 포장개선사업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업체별, 용도별(포장디자인개발, 용기금형개발)로 자금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포장디자인 및 용기금형개발 의뢰기관과 협의하여 디자인 개발계약·용기금형개발 계약체결 등 사업실시
 -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실시하되,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 공인디자인 전문회사 이외의 무자격 디자인회사와 계약불가
- 포장디자인 및 용기금형 개발 의뢰기관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 수출을 위하여 현지에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현지 디자인 전문업체도 가능
 - 유리병 제조업체로서 법인신고를 필한 업체
 - * 유리병 중개업체(딜러)와 계약은 불허
- 홍보지원사업
 - 홍보물 제작회사(인쇄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홍보용 팜프렛·전단을 유인 활용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하고, 특히 본 지침에서 정하는 포장디자인개발회사 또는 업체와 디자인개발 계약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
- 본 지침에서 정하는 업체 이외의 다른업체와 계약시 재계약토록 지도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승인후 불가피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할 경우 다음에 의거 처리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농림부장관 승인사항 :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계획변경(5)지원기준 및 조건 참조
- 시·도지사 승인사항 : 시·군간 사업장 변경

- 시장·군수 승인 및 신고사항
 - 시·군내 사업장 변경(승인)
 -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계획변경(승인)
 - 사업대표자 변경(신고)
 - 품목변경(신고)
 - 상호변경 및 품목추가 등 기타 경미한 사항(신고)
- ※ 위의 사항은 사업완료후 사후관리 기간중에도 동일하게 적용

라.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산

- 배정 : 농림부장관 → 농협중앙회장(농특회계사무국) → 농협시도지회(지역본부) → 농협시군지부
- 신청 및 지급
 - 신청 : 사업자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결정 : 시·도지사 → 시장·군수 → 사업자 (시·군지부에서 지급)
- 사업비 집행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1002호) 제4조 (사업자금의 집행의 원칙)에 의거 자부담금을 미리 집행한 후 기성고에 따라 지원사업비를 지원
-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재산, 설치한 시설물 등 이미 추진된 부분은 지원할 수 없음.
- 사업비의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리스도입 시설비는 농림사업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된 사업비를 당해 사업시행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 또는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 불가.
 - 만약, 상기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지원자금 회수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강력한 조치 강구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책임을 짐
 - 기성고에 따라 지원된 융자금은 즉시 사업시행자의 대표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시행 대표는 관련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 및 기계·장비업체에 지급하여야 함.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감면 또는 환급받게 되는 금액은 사업비에서 제외
-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부당사용한 금액의 회수는 물론, 그 규모에 따라 1~5년간 정부지원사업자금 지원 중지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사후관리의 책임을 지며, 점검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
- 시장·군수는 정부지원사업 홍보를 위하여 준공전 안내판 및 준공후 부착물을 설치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수시로 관내 가공업체에 대한 지도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가공공장 가동상황을 파악하여 경영부실업체에 대하여는 경영활성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의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 부동산과 그 중물	준공 검사일	10년 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부동산에는 당초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한 대지를 포함
○ 가공기계류	설치일	5년간	다만 사후관리기간중 천재지변, 기타 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여건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 처분함이 효율적이라고 당해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공기계류의 신규교체시에는 예외 ○ 기타 필요한사항은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관한 법률의 관련조항 준용
○ 포장디자인개발용 필름 및 용기	구입일	3년간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 준용	○ 목 적 - 이면 허위계약방지 - 지원자금 정산자료 활용

나. 보고·기타

(1) 사업추진 관련 보고사항(공통)

보고서명	보고기한	보고기관	수보기관	서식
1. 사업추진 및 자금 집행실적(가공공장건설)	○ 매분기 익월 10일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별지 6호
2. 운영실태보고	○ 익년 2월 말일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 8호
3. 포장개선 및 홍보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 당년 3월 말일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 9호
4. 포장개선 및 홍보사업 추진실적	○ 매반기 익월 10일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 10호
5. 사업정산 실적 (가공공장건설·포장개선·홍보사업)	○ 익년 1월 말일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 7,11호

- (2) 본 지침에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농업·농촌기본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산물가공공장 관리준칙』 등 기타 관계규정에 의함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농정과·유통과 또는 산업과 (제주도는 감귤과)

○ 농산물 가공사업 : 시군 → 시도 → 농림부

* 수산물 가공사업은 제외

나. 신청서 제출기한

○ 사업신청자 → 시·군 (2001. 1. 20일까지)

○ 시장·군수 → 시·도 (2001. 2. 28일까지)

○ 시·도지사 → 농림부 (2001. 3. 31일까지)

다.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조건, 지원시설의 종류등은 2001년도 지침과 동일

마. 기 타

○ 2001이후에 용자금 금리는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정부지원 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

신청서식 및 보고서식

1. 신청서식

- 농산물 가공사업 시설비 지원
 -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대상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 후보자 선정조서 [별지 제2호 서식]
 -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 대상자 추천조서 [별지 제3호 서식]
 - 전통식품가공사업, 산지일반가공사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 의견서 (시도지사, 시장·군수) [별지 제4-1호]
 - 의견서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별지 제4-2호]
 - 의견서 (농협군지부장) [별지 제4-3호]
 - 의견서 (연구기관 또는 식품가공학 전공교수) : 신제품 또는 시제품 미생산 업체에 한함 [별지 제4-4호]
 -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출자내역 확인서 (시장·군수)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4-5호]
- 포장개선사업비 및 홍보비 지원
 - 포장개선 및 홍보사업 지원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포장개선 및 홍보사업 신청현황 [별지 제5-1호 서식]

2. 보고서식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실적 보고(분기보) [별지 제6호 서식]
- 사업정산실적 보고(연보) [별지 제7호 서식]
- 운영실태보고(연보) [별지 제8호 서식]
- 포장개선 및 홍보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연보) [별지 제9호 서식]
- 포장개선 및 홍보사업 추진실적 보고(반연보) [별지 제10호 서식]
- 포장개선 및 홍보사업 정산실적 보고(연보) [별지 제11호 서식]
- 평가항목 및 운영주체별 배점기준 [양식 1]
- 업체별 사업성 종합평가표 [양식 2]

[별지 제1호 서식]

농산물가공사업 지원신청서		처리기간				
		45일				
신청자	사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전화		
사업계획	사업체명		가공품목		주원료	
	공장예정지					
	시설규모	부지	m ²	건물	m ² 설비	종
	재원조달 (백만원)	구분 1	계	정부융자	자부담	
		기준사업비				
		초과사업비				
		총사업비				
사업형태			구성원내역			
<p>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가공품생산공장을 설치하고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p>						
<p>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예정지의 위치도 1부. 3. 공장부지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및 5. 삭제('95.6.2)</p>					수수료	
					없음	

27273-03711 민
'93. 8.3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가. 사업의 필요성

- 1) 입지조건
- 2) 타 당 성
- 3) 기 타

나. 기대효과

- 1) 농가소득증대 측면
- 2) 국산농산물 수요창출 측면
- 3) 고용효과
- 4) 향후전망
- 5) 기 타

2. 사업주체

가. 사업개요

사업명		주요품목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규모	부지 건물	평, 기계류 평	사업구분 창설·증설
시설자금 총소요액	백만원		시설자금 지원요청액 백만원
시설자금 기지원내역			

※ 시설자금 기지원내역(추가업체)은 지원년도와 지원금액(보조, 융자구분) 기재

나. 대표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주소					
주요경력	기간	내용			
지역내현직책					
재산현황 (백만원)	동산	부동산	기타	계	

※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붙임

※ 주요경력은 최종학력, 기업체명 및 근무부서 기재

다. 조직현황

- 영농법인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법 인 명		등기연월일	
설립목적			
출자현황	- 출자자수 : 명 (농업인 명, 비농업인 명) - 출 자 액 : 억원 (비농업인 억원, 비농업인 억원)		
사업실적			

※ 사업실적자료 붙임

- 농업인 및 농가공동 (공동참여농가 현황)

성명	주 소	소요경지 면적(평)	제품원료생산량		참여형태	날인
			원료(톤)	금액 (백만원)		

- ※ 참여형태는 출자(금액명기), 원료제공, 취업으로 구분하여 기재
- ※ 공동참여자의 총회의사록 및 자체정관 붙임

- 일반업체

연 월 일	회사연혁 및 사업실적

3. 제품개발 내역 (계획)

* 해당될 경우에만 작성

품 목		원 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개발내역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조달방법 : - 제조가공방법 : - 제품특징 및 내용 ○ 연구용역상황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 약 일 - 계약완료일 - 계약기간 : - 계약내용 : - 비 용 : 			

4. 건설계획

가. 입지계획

소재지				
규 모	대 지	평	기계류 : 종, 점	
	건 물			
입지조건	제품과 원료의 수송, 노동력 확보, 주변지역 피해가능성, 부지 조성, 용수확보, 진입로확보, 공장설립관련법령상 제약요인 등 기재			
용 수	월 사용량 기재			
전 력	월 사용량 기재			
도 로				
통 신				
기 타				
공 사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나. 주요투자시설 명세

(단위 : 천원)

항 목	규격	수량	단가 3」	금액	비고
1. 대지(자부담)					
2. 건 물 1」 가. 작업장 나. 일반창고 다. 저온창고 라. 사무실 등 마. 기 타					
3. 구축물 가. 용수시설 나. 수배전시설 다. 오폐수시설 라. 기 타					
4. 가공기계 2」					
5. 공기구비품					
6. 전기공사					
7. 설 계 비					
8. 기 타					
계					

※ 주1」 건물의 경우 비고란에는 건축구조계획 기재 (예 : 철골조판넬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구조 등)

2」 가공기계의 경우 규격 및 단가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총수량 및 총금액만 기재 (세부명세는 뒷면 “다”항 “주요가공기계명세”에 구체적으로 기재)

3」 단가는 실거래 가격으로 기재

다. 주요 가공기계 명세

(단위 : 천원)

기계명 1」	규 격	생산능력2」 (톤/시간)	수량	단가	금액	구 입 (계획)처	비 고 (TEL)
		W×L×H					

※ 주1」 기계명은 공정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2」 생산능력은 각가공기계의 시간당 생산능력을 기재하며 저장탱크일 경우에는 저장능력 및 1회전 처리기간 명기 (필요시 견적서 붙임)

라. 사업부지 현황

지 번	지 목	면적(평)	소유주	소 재 지	전용가능여부	비 고

※ 가공공장 시설부지 조건 『2001년도 사업지침 (4) 대상자 자격조건』에 맞아야 함.

5. 소요자금 및 자금 조달계획

가. 세부투자계획

항 목	규 모 (평)	단 가 (천원)	재원조달 (백만원)			
			계	용 자	금융기관 차 입	자부담
부지매입(자담)(A)						
시 설 자 금	건 물 - 작업장 - 일반창고 - 저온창고 - 사무실 등 부대시설 - 기 타					
	구 축 물 - 용수시설 - 수배전시설 - 오·폐수시설 - 기 타					
	가 공 기 계					
	기 타					
	시설자금합계(B)					
총 계 (A + B)						

※ 저온창고는 100평 기준으로 평당 250만원 기준

※ 시설자금 합계란은 농산물가공사업 지원신청서(별지1호서식)의 재원조달 금액중 총사업비와 일치하여야 함.

나. 자금조달계획

○ 업체부담금 조달방법

(단위 : 백만원)

재 원	금 액	조달시기	조달방법	비 고
자 기 자 금				
외 부 차 입				
계				

※ 외부차입 : 정부지원요청액은 제외

○ 금융기관 차입내역

(단위 : 백만원)

거래은행	금 액	차입일	상환기간	상환일	상환잔액	용 도
계						

○ 담보물 현황

소유자	종 류	면적(m ²)	추 정 가 격		지 번	비 고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계						

6. 원료조달계획

연도별	원료명	조달처	조달방법	조달시기	소요물량 (톤)	자금소요액 (백만원)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원료명은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조달처 : 구입원료의 생산지

※ 조달방법 : 계약재배, 자가생산, 농민직구입, 도소매상 등 구입으로 기재하되 계약재배의 경우 관련 확인자료 첨부

7. 생산 및 판매계획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제품명	단가 (원/kg)	생산능력		생산계획		판매계획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내수	수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추가지원업체인 경우는 기존생산능력을 비교란에 별도 기재하고 신규업체도 기존 생산능력이 있으면 기재

※ 제품명은 생산품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단가는 생산제품의 계획판매단가를 기재

※ 생산능력은 1일8시간 기준하여 년300일로환산하여 기재(기계의 생산능력기준)

8. 판매방법

(단위 : 톤, 백만원)

제품명	수량	금액	판매(예정)처	비고

※ 제품별, 판매회사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 (OEM은 비고란에 명시)하고 판매 (예정)계약서, 상담내역서 등을 첨부해야 지원대상자로 우선 선정가능

9. 생산·판매실적 (해당될 경우에만 기재)

구분	년도	물량	금액	주수출국	비고
생산	전전년도	톤	백만원		
	직전년도				
판매 (수출)	전전년도	톤 (톤)	백만원 (천\$)		
	직전년도				

※ 추가지원업체인 경우는 반드시 기재하고 신규업체도 실적 있으면 기재

※ 재무제표 또는 세무서 신고자료(부가세신고내역등), 경영장부상 매출액, 생산일보 등 판매 및 생산실적 확인 자료붙임 (수출업체는 수출실적자료)

10. 기술개발실적 (해당될 경우에만 기재)

구 분	적 요
전통식품 품질인증 실적	
가공식품 KS표시허가실적	
디자인 개발실적	
신제품 개발실적	
가공산업관련 수상실적	

※ 적요란에 관련기관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특허출원 사항 등)

11. 기술인력 확보계획

성 명	주 소	학력 및 경력	자격증	담당업무

※ 기술관련자격증이 없을 경우 사본 붙임

[별지 제4-1호]

의견서

사업명 :

대표자 :

소재지 :

(의견)

- 대표자의 경력 및 사업의지 등
 - 부지확보 및 전용가능 여부, 타규정 저촉여부 등
 - 사업의 필요성, 판매전망, 지역내 경합여부, 기대효과 등
- ※ 시장·군수 의견서를 업체별로 각각 별도로 구체적으로 작성

2001

시장 · 군수 직인

[별지 제4-2호]

의 건 서

사 업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의견)

- 해당품목 원료의 관내 재배면적 및 생산량 (전년실적, 금년계획)
- 해당품목 원료의 관내 계약재배 및 조달 가능성 등이 사업성과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2001

○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인

[별지 제4-3호]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액 검토의견서

(200 년 월 일 기준)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사업신청내용

주 소					전화번호				
업 체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음자			자담		

2. 재산상태

자산종류	수량	예상평가액	부채종류	차입처	금액
주택,대지, 건물,공장		천원			천원
계					

3. 조합거래상황 및 신용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 여, 부 ○ 조합이용도 : 적극, 보통, 거래없음 ○ 과거 1년간 연체사실 : 유, 무 - 조사기준일 연체금액 : 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도, 대위변제시설 : 유, 무 ○ 신용상태 : 양호, 보통, 불량 (개인정보신용조회표 활용)
--	---

4. 대출가능액 (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건소재지	소유자(관계)
담보대출	공장(대지,건물) 잡종지, 전·답		천원		
신용대출					
계			천원		

※ 담보대출의 담보종류는 대지,건물,전·답,과수원,임야,공장,선박으로 구분

5. 종합의견.

200 년 월 일
 ○○○농협협동조합장 직인
 농협 군 지부장 직인

[별지 제4-4호]

의견서

(해당될 경우에만 기재)

회사명 :

대표자 :

소재지 :

(의견)

- 제품 생산공정 및 상품화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검토
- ※ 신제품 생산업체 또는 시제품이 개발되지 않는 업체

200 . . .

대학교 학과 교수 인
(연구기관일 경우 기관명 직위 성명 기록)

[별지 제4-5호]

출 자 내 역 확 인 서

1. 사업체명 :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2. 대 표 자 :

3. 법인소재지 :

○ 조합원 출자내역

(단위 : 백만원)

성명	법인내 직 책	주민등록상 주소	직업	출자내역			출자비율
				현금	현물	계	

○ 준조합원(영농법인), 비영농법인(농업회사법인) 출자내역

(단위 : 백만원)

성명	법인내 직 책	주민등록상 주소	직업	출자내역			출자비율
				현금	현물	계	

※ 출자자가 기업인 경우 성명란에 기업체명(대표자)기재

200

위 내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함.

○○ 시장·군수 관인

[별지 제2호 서식]

농산물가공사업 후보자 선정조서					
사업체명				대표자	
사업명		가공품목		주원료	
공장예정지					
구분	항목	양호	보통	미흡	부적합
자격요건	1. 대표자의 지도력				
	2. 구성원				
공장입지	3. 인·허가 요건				
	4. 기존사업자와의 경합성				
	5. 원료권 형성				
	6. 주변환경				
사업계획	7. 사업계획				
	8. 생산계획				
	9. 원료조달계획				
	10. 자금조달계획				
	11. 판매계획				
신용상태	12. 부채				
	13. 자기자본 확보				
	14. 담보물 보유				
사업전망	15. 국내시장 경쟁력				
	16. 해외시장 경쟁력				
종합평가				우선순위	
구비서류	1. 시장·군수 의견서 1부. 2. 전문가 의견서 1부.				

농산물가공사업 지원대상자 추천조서

(단위 : 백만원)

순위	사업명	공장 예정지	대표자	사업명	가공 품목	주원 료	사업 형태	구성 원	시설규모			자금조달계획				
									부지 (㎡)	건물 (㎡)	설비 (종)	구분	계	정부 융자	금 기 차	융 관 입
1												기준				
												초과				
												계				
2												기준				
												초과				
												계				
3												기준				
												초과				
												계				
계												기준				
												초과				
												계				

※ 순위란은 운영주체 구분없이 전 추천업체에 대한 순위기재

[별지 제5호 서식]

(포장개선, 홍보)사업 지원신청서

업 체 현 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지원형태	전통()산지()기타()		지 정 년 도	
	주생산품			공장가동일	
	공장품목	대지: 평, 건물: 평(공장: 평, 창고: 평, 기타 : 평)		전년매출액	백만원
사 업 계 획	사 업 명			총 소요액	백만원
	재원조달 (백만원)	정부융자신청	금융기관차입	자 부 담	
		담보제공방법	신용보증서() 지급보증서() 부동산() 기타 ()		
<p>상기와 같이 (포장개선, 홍보)사업 지원대상자로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인)</p>					
<p>시도지사 귀하</p> <p>시장·군수</p>					
<p>첨부서류 : 1. 사업현황 (소정양식) 1부.</p> <p> 2. 수출실적 입증서류 1부 (수출용개발의 경우)</p>					

< 붙임서류 >

사 업 현 황

1. 가공능력

제 품 명	연생산능력(톤)	주 원 료	비 고
1.			
2.			
3.			
계			

2. 생산 및 판매실적(전년도)

(단위 : 톤, 백만원)

제 품 명	생 산		관 매				재 고	
	물량	금액	국내		수출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								
2.								
3.								
계								

3. 담보제공계획

(단위 : 천원)

보 증 서			부 동 산				
발행처	보증금액	기 간	물건명	소유자	소재지	추정가액	선순위액

[별지 제5-1호 서식]

(포장개선, 홍보)사업 신청현황

시군별 (우선 순위)	소재지 (업체명)	생 산 품 목	사업비(천원)			사업내용		지원형태		
			계	융자	자담	디자인 개발	용기금형 개발	전통	산지	인증

심사제외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실적 보고 (가공공장건설)

(단위 : 천원)

업체명 (대표자)	사업지역 (시군읍면)	생산품목	사업계획						사업추진실적							정상추진여부 (부진사유)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집행			공사추진(월일)					
			대지	건물	기계류	계	용자	자담	계	용자	자담	부지확보	승인일자	착공일	준공예정		공정 %
			평 (m ²)	평 (m ²)	점												

주) 전통식품가공사업, 산지일반가공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

총공통-9

[별지 제7호 서식]

() 사업정산 실적보고 (가공공장건설)

(단위 : 천원)

사업자명 (조합 및 대표자명)	사업지역 (시군읍면)	생산품목	사업량(규모)						사업비							비고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집행실적(정산)						
			대지	건물(A)	기계류(B)	대지	건물(C)	기계류(D)	C/A	D/B	계	용자(E)	자담	계	용자(F)	자담	비율(E/F)	차년도이월액(E-F)	불용액(E-F)	착공일
			평 (m ²)	평 (m ²)	점															

- 주1) 전통식품가공사업, 산지일반가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별지작성
- 주2) 차년도 이월 및 불용액이 있을 경우 발생내역 및 사유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별도붙임

[별지 제8호 서식]

'00년도 농산물가공공장 운영실태보고

일 반 현 황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휴대폰:() -							
	생 산 품 목									
	업 체 구 분		경 영 형 태							
* 변 경 사 항	당 초:		⇒ 변 경:							
시 설 규 모	부 지	건 물	기 계	오 폐 수	시 설 투 자 비	계	보 조	용 자	자 담 (실 투 자 비)	
	평	평	점	평	(백만원)					
가 동 실 적	연간생산 능력(톤)		가동일수	생산량(톤)	총매출액 (백만원)	국내매출액 (백만원)	수출액 (백만원)	수출국		
원 료 조 달	자가생산 (구성원)		계약재배	산지생산자	산지조합	산지수집상	도매시장	기 타		
	%		%	%	%	%	%	%		
판 매 방 법	백화점	대형슈퍼 (할인점등)	도소매상	농수축협	우편주문 전자상거래	대량소비처 (외식업체등)	현지직판	기 타		
	%	%	%	%	%	%	%	%		
영 비 용	계	원료구입비	인건비	대출이자	전력수도료	판매비	홍보비	기타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고 용 현 황	상용직		인 원 : 명,		연간인건비 : 백만원					
	일용직		연인원 : 명,		연간인건비 : 백만원					
태	품 질 관 리 상 황		①명인지정, ②전통식품품질인증, ③위탁검사, ④자체검사, ⑤미실시							
	회 계 처 리 방 법		①복식부기 자체처리, ②세무사위탁, ③간이장부기록, ④기타							
	PC 활 용 여 부		①없음 ②단순문서작성수준 ③ 인터넷 활용 ④홈페이지운영							
	사 업 전 망		①크게신장, ②약간신장, ③전년과 비슷, ④약간저조, ⑤크게악화							
	주 요 애 로 사 항		①자금부족, ②판매부진, ③원재료조달, ④설비노후, ⑤금융비용상승, ⑥임금상승, ⑦기 타 ()							
	건 의 사 항									
	조 사 자 의 견									

작성요령 : ① 모든 자료는 '00. 1. 1. ~ '00. 12. 31.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② * 변경사항은 대표자, 업체명, 생산품목, 주소, 전화번호 등 업체현황 변경사항 기재

자체심사 가26-58

[별지 제9호 서식]

포장개선 및 홍보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단위 : 천원)

사업체명 (소재지)	생산 품목	계			디자인개발			용기금형개발			홍보물 유인			비고(전통, 산지,인증 업체별표기법)
		계	용자	자담	계	용자	자담	계	용자	자담	계	용자	자담	

심사제외

[별지 제10호 서식]

포장개선 및 홍보사업 추진실적 보고

(단위 : 천원)

사업체명 (소재지)	생산 품목	사 업 계 획											추진실적												
		사 업 비			디자인개발			용기금형개발			홍보물 유인		사업비			디자인개발		용기금형개발		홍보물유인					
		계	용자	자담	용기 형태	수 량	소요 금액	포장 방법	건 수	소요 금액	지 질	수 량	소요 금액	계	용자	자담	계약 일	완료 예정일	공 정	계약 일	완료 예정일	공 정	계약 일	완료 예정일	공 정
																			%						%

총공통-9

[별지 제11서식]

포장개선 및 홍보사업 정산실적 보고

(단위 : 천원)

사업제명 (소재지)	생 산 품 목	사 업 계 획									사 업 비 집 행			비 율 (B/A) %	용 자 금 내 역				
		디 자 인 개 발			용 기 금 형 개 발			홍 보 물 유 인			사 업 비 계	용 자 (B) 담	자 담		디 자 인 개 발	용 기 금 형 개 발	홍 보 물 유 인		
		개 발 내 용	건 수	소 요 금 액	개 발 내 용	건 수	소 요 금 액	홍 보 내 용	건 수	소 요 금 액								용 자 (A) 담	

[양식 1]

평가항목 및 운영주체별 배점기준

신 규 업 체						기 존 업 체					
평 가 항 목	농업인	농가공동	협동조합	영농조합	일반업체	평 가 항 목	농업인	농가공동	협동조합	영농조합	일반업체
1. 사업수행능력						1. 사업수행능력	15	15	15	15	15
	○대표자의경영능력	20	10	20	15	20	15	15	15	15	15
	및 사업의지										
	○공동구성원의 참여형태	-	10	-	-	-					
○조직결속력	-	-	-	5	-						
2.사업계획의 적정성						2. 재무,사업현황	20	20	20	20	20
	○제품의 경쟁력	25	25	25	25	25					
	○제품의 판매전망	25	25	25	25	25					
	○공장부지이용 및	5	5	5	5	5					
	입지여건의 적정성										
	○가공공정설치 및	5	5	5	5	5					
	품질관리의 적정성										
	○시설투자규모 적정성	5	5	5	5	5					
	○자금조달계획 적정성	5	5	5	5	5					
	○공장운영의 계절성	5	5	5	5	5					
3.지역경제기여도						3. 사업전망 및	60	60	60	60	60
	○원료조달용이도	3	3	3	3	3					
	○시도지사 의견	2	2	2	2	2					
4.지역경제기여도						증설 계획타당성					
	○원료조달용이도	3	3	3	3	3					
	○시도지사 의견	2	2	2	2	2					
합 계	100	100	100	100	100	합 계	100	100	100	100	100

[양식 2]

업체별 사업성 종합평가표 (신규업체)

1. 사업계획 신청현황

사업체명				대표자			
사업형태	가공품목			주원료			
시설규모	부지			건물			기계
재원조달 (백만원)	계		정부용자		금융기관차입		자부담
공장 예정지							

2. 사업성 검토결과

검토내용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특점
			A	B	C	D	
사업수행능력(20) (농업인,협동조합,일반업체)	○ 대표자의 경영능력 및 사업의지	20	20	16	10	4	소계:
사업수행능력(20) (농가공동)	○ 대표자의 경영능력 및 사업의지	10	10	8	5	2	소계:
	○ 공동구성원이 참여형태	10	10	8	5	2	
사업수행능력(20) (영농조합)	○ 대표자의 경영능력 및 사업의지	15	15	12	8	3	소계:
	○ 조직결속력	5	5	4	3	1	
사업계획의 적정성(75) (공통)	○ 제품의 경쟁력	25	25	20	12	5	소계:
	○ 제품의 판매전망	25	25	20	12	5	
	○ 공장부지이용 및 입지여건의 적정성	5	5	4	3	1	
	○ 가공공정설치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	5	5	4	3	1	
	○ 시설투자규모의 적정성	5	5	4	3	1	
	○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5	5	4	3	1	
	○ 공장운영의 계절성	5	5	4	3	1	
지역경제 기여도(5) (공통)	○ 원료조달의 용이도 및 부존 자원의 활용도	3	3	2	1	0.5	소계:
	○ 시도지사 의견	2	2	1.5	1	0.5	
합 계		100					

※ 별첨 : 평가항목별 평가조서

3. 사업성 검토결과 종합의견

--

4. 투자비 조정 및 지원한도

가. 조정내역

(단위 : 백만원)

시 설 규 모			투 자 비 조 정 내 역						A-B
			신 청			조 정			
부 지	건 물	기 계	건 물	기 계	계(A)	건 물	기 계	계(B)	

나. 지원한도

(단위 : 백만원)

총투자비 조정액	지 원 내 역			비 고
	계	정부융자	자부담	

< 평가항목별 평가조서 >

1.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등급	평 가 사 유
가. 대표자의 경영 능력 및 사업 의지(공통)		
나. 공동구성원의 참여형태 (농가공동)		
다. 조직결속력 (영농조합)		

2.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 가 항 목	등급	평 가 사 유
가. 제품의 경쟁력 (공통)		
나. 제품의 판매 전망(공통)		
다. 공장부지 이용 및 입지여건의 적정성(공통)		

평가항목	등급	평가사유
라. 가공공정설치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공통) 마. 시설투자규모의 적정성(공통) 바.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공통) 사. 공장운영의 계절성(공통)		

3.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항목	등급	평가사유
가. 원료조달용이도 및 부존자원의 활용도(공통) 나. 시도지사 의견 (공통)		

업체별 사업성 종합평가표 (기존업체)

1. 사업계획 신청현황

사업체명					대표자				
사업형태			가공품목	두부		주원료	콩		
시설규모	부지			건물			기계		
재원조달 (백만원)	계		정부용자		금융기관차입		자부담		
공장예정지									

2. 사업성 검토결과

검토내용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특점
			A	B	C	D	
사업수행능력(15) (공통)	○ 대표자의 경영능력 및 사업의지	15	15	12	8	3	소계:
재무상태및 사업현황(20) (농업인, 농가공동 , 일반업체)	○ 매출액 증가율	5	5	4	3	1	소계:
	○ 공장 가동율	3	3	2	1	0.5	
	○ 품질관리의 적정성	2	2	1.5	1	0.5	
	○ 기술인력확보 및 기술개발실적	5	5	4	3	1	
	○ 위생청결상태	3	3	2	1	0.5	
	○ 경영장부운용	2	2	1.5	1	0.5	
재무상태및 사업현황(20) (협동조합, 영농조합)	○ 매출액 경상이익율	2	2	1.5	1	0.5	소계:
	○ 매출액 증가율	3	3	2	1		
	○ 공장 가동율	3	3	2	1	0.5	
	○ 품질관리의 적정성	2	2	1.5	1	0.5	
	○ 기술인력확보 및 기술개발실적	5	5	4	3	1	
	○ 위생청결상태	3	3	2	1	0.5	
사업전망 및 증설 계획의 타당성(60) (공통)	○ 제품의 경쟁력	25	25	20	12	5	소계:
	○ 제품의 판매전망	25	25	20	12	5	
	○ 시설투자규모의 적정성	5	5	4	3	1	
	○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5	5	4	3	1	
지역경제기여도(5) (공통)	○ 원료조달의 용이도 및 부존 자원의 활용도	3	3	2	1	0.5	소계:
	○ 시도지사 의견	2	2	1.5	1	0.5	
합 계		100					

※ 별첨 : 평가항목별 평가조서

3. 사업성 검토결과 종합의견

--

4. 투자비 조정 및 지원한도

가. 조정내역

(단위 : 백만원)

시 설 규 모			투 자 비 조 정 내 역						A-B
			신 청			조 정			
부 지	건 물	기 계	건 물	기 계	계(A)	건 물	기 계	계(B)	

나. 지원한도

(단위 : 백만원)

총투자비 조정액	지 원 내 역			비 고
	계	정부융자	자부담	

< 평가항목별 평가조서 >

1.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등급	평 가 사 유
가. 대표자의 경영 능력 및 사업 의지(공통)		

2. 재무상태 및 사업현황

평 가 항 목	등급	평 가 사 유
가. 매출액경상이익율 (협동조합, 영농 조합)		
나. 매출액 증가율 (공통)		
다. 공장가동율 (공통)		
라. 품질관리의 적정성(공통)		
마. 기술인력 확보 및 기술개발 실적 (공통)		
바. 위생청결상태 (공통)		
사. 경영장부 운용 (농업인, 농가공동, 일반업체)		

3. 사업전망 및 증설계획의 타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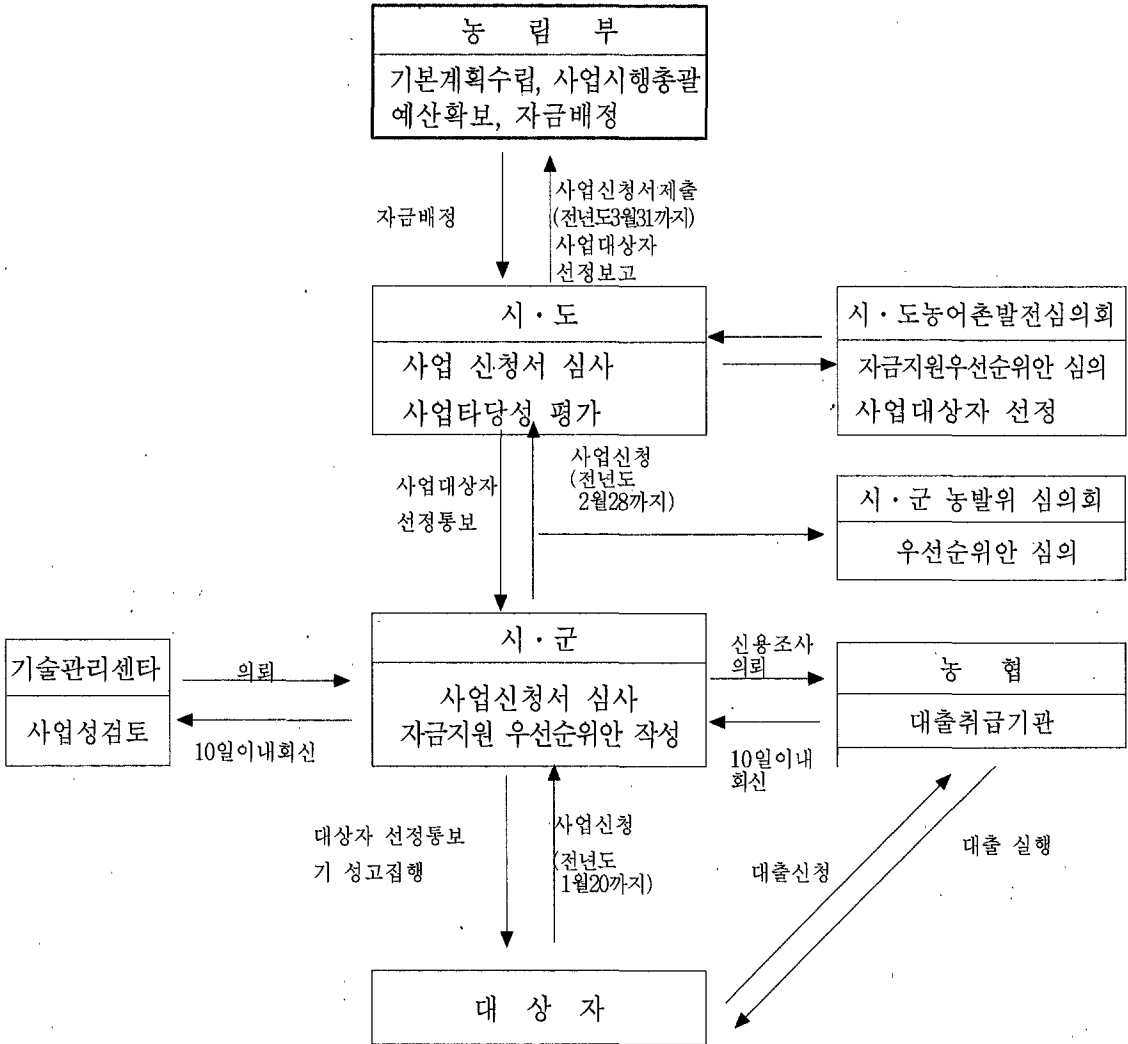
평가항목	등급	평가사유
가. 제품의 경쟁력 (공통) 나. 제품의 판매 전망 (공통) 다. 시설투자규모의 적정성 (공통). 라.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공통)		

4.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항목	등급	평가사유
가. 원료조달용이도 및 부존자원의 활용도 (공통) 나. 시도지사 의견 (공통)		

< 참고1 >

농산물가공공장 사업시행 체계



II. 농산물가공산업 경영지도

1. 목 적

- 농산물 산지가공업체의 관리수준을 정밀 진단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경영능력 배양 및 운영내실화 도모
- 창업 및 공장경영에 필요한 기술·경영·관리·행정에 대한 자문으로 시행착오에 따른 경영손실을 사전에 방지.
- 수급조절, 농외소득원 개발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가공업체를 조기 경영정상화시켜 농업·농촌발전의 기반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 전문기관, 대학, 민간 컨설팅회사가 참여하는 기술·경영컨설팅 전문가 풀(pool) 구성 운영
- 각 분야 전문가가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밀 진단 후 경영혁신 방안을 구체화한 경영혁신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가공공장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종합컨설팅 체제 확립
 - 업체의 경영부진 요인들을 동시에 해결하여 경영혁신 효과 극대화
- 업체별 전담 컨설팅팀을 지정·운영하는 책임 컨설팅 체제 구축
- 경영혁신사업계획서 결과 자동화, 현대화시설 등 추가시설 권고시 정부자금 우선지원
-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가공업체지도 및 정책방향 모색
- 유통 및 가공전문기관인 농유평 및 한식연의 주관하에 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사업효과 거양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0조3 및 제15조,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1조, 제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8	'99	2000	2001 (예산안)	2002~2004	
사 업 량	개소	77	260	170	510	
사 업 비	계	- 백만원	530	1,560	1,020	
	보 조	-	371	1,092	714	2,856
	용 자	-	-	-	-	-
	자부담	-	159	468	306	1,224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내 용

- 경영활성화대책이 필요한 가공업체에 대하여 경영·기술 마케팅 분야의 컨설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2) 배 경

- 지금까지 공장건설 자금 지원 등 주로 물량위주의 사업이 이루어졌으나 향후 가공업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한 경영노하우 제공필요
- 농산물가공공장 다수업체가 경영부실 또는 경영이 미흡함에 따라 경영·기술 컨설팅사업 지원 필요

(3) 사업시행 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식품개발연구원

(4) 사업기간 : 2001.1 ~ 12월

(5) 지원대상 및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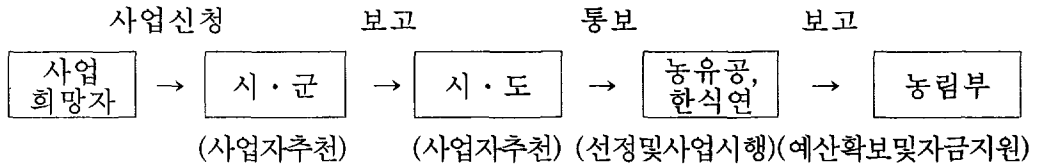
- 지원대상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산물가공업체
- 사업비 단가 : 업체당 6백만원 (평균단가)
- 지원기준 : 보조 70%, 자담30%

나. '00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자부담
		사업비합계	예산액 (농어촌구조개선)			
			계	보조	융자	
농산물가공업체 경영·기술지도	개소 260	백만원 1,560	백만원 1,092	1,092	-	468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가. 사업신청 : 사업신청자(신청서 : 별첨) → 관할 시장·군수



나. 사업희망자 추천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한식연원장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추천
- 시·도지사는 사업신청서 검토, 우선순위를 정하여 한식연원장에게 추천

다. 지원대상 업체 선정

- 선정대상 :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 선정순위 : 컨설팅지원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업체 선정
 - ① 경영상태가 부진하여 경영개선이 시급한 경영체
 - ② 컨설팅지원을 통해 경영혁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경영체
 - ③ 사업규모가 큰 경영체
 - ④ 기타 정책적으로 컨설팅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영체

선정절차

- 한식연원장은 시·도지사의 사업신청 내용을 취합,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라. 사업비 신청 및 예산확보 : 농림부장관

- 농유훥사장은 한식연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비 신청
- 농림부장관은 농유훥의 사업비 신청현황을 감안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예산을 확보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식품산업과 (02-504-9417~8)
-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식품개발연구원(031-780-9266)

다. 컨설팅팀 구성

- 한국식품개발연구원장이 연구기관, 대학, 민간 컨설팅회사, 기타 전문
관련기관의 컨설팅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종합컨설팅팀 구성
- 컨설팅팀은 분야별 신청업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라. 컨설턴트의 자격요건(경영, 기술분야 공통)

- 대학 부교수 이상, 국공립연구기관 4급 상당 이상
- 학사취득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석사취득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박사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기타,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한식연원장이 인정하는자

마. 담당부서별 기능

농 립 부	기본계획수립, 예산지원, 컨설팅사업 총괄
농 유 공	사업비 신청, 보조금 지급검정 및 집행정산, 정산결과 보고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컨설팅대상업체 선정, 컨설팅팀의 구성·및 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수립, 컨설팅사업제안서 심의, 자금집행, 경영혁신사업계획서 심의, 중간점검 및 사후 관리지도, 종합평가 및 정산보고
컨 설 팅 팀	컨설팅사업제안서 작성, 기술·경영평가 진단, 경영혁신 사업계획 수립, 정기지도·자문 실시, 컨설팅수행결과 보고
가 공 업 체	경영혁신사업계획서 이행, 지도내용이행

바. 세부추진 방법

(1) 컨설팅 세부추진계획 수립

- 한식연원장은 우리부 농림사업실시규정(농산물가공공장 경영·지도 : 농림부훈령 제1003호)에 따라 컨설팅 세부추진계획수립 추진

(2) 컨설턴트 선정

- 한식연원장이 컨설턴트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중에서 적격자(업체) 선정

(3) 컨설팅 계약 체결

- 한식연원장이 가공업체와 직접 계약 체결
 - 컨설팅팀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업체와 계약 체결
- 한식연원장은 지원대상업체의 특성에 따라 컨설팅팀을 구성
 - 컨설팅팀은 컨설팅내용 및 추진계획이 명시된 컨설팅 사업제안서를 작성 한식연원장에게 제출

(4) 경영혁신사업계획서 작성

- 컨설팅팀은 지원대상업체의 기술, 경영, 마케팅 현황등을 정밀 진단한후 경영혁신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한식연원장에게 제출
- 한식연원장은 경영혁신사업계획서를 심사, 수정, 보완 후 최종 경영혁신 사업계획서 확정

(5) 컨설팅 실시 및 결과 보고

- 담당 컨설팅팀은 계획된 사업이 완결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자문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정보 등을 제공
- 한식연원장은 경영혁신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 완료후 컨설팅팀은 컨설팅 수행실적 및 결과를 한식연원장에게 보고

(6) 성과분석 및 종합보고

- 한식연원장은 컨설팅팀이 제출한 결과보고를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한 후 그 효과 및 문제점을 조사·분석
- 한식연원장은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
- 농유공사장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7)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산

- 배정 : 농림부장관 →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 한국식품개발연구원장
- 신청 및 지급
 - 신청 : 한국식품개발연구원장 →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 농림부장관
 - 결정 : 신청의 역순
- 사업비 집행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948호)에 의거 집행
- 동 사업비로 컴퓨터 등 기계 장비 구입 또는 컨설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불가

< 행정사항 >

- 경영·기술컨설팅 세부추진계획 수립 보고 (농유공, 한식연) : 2000.12.31
- 사업신청 및 컨설팅 실시상황 보고 (농유공, 한식연) : 2001년 매분기 익월 10일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결과보고 (농유공, 한식연) : 2002. 3. 31

< 별첨 >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신청서				
업체명			대표자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	휴대폰	- -	FAX() -
종 업 원 수	총__명 [생산직: 명, 관리직: 명, 영업직: 명, 기타: 명]			
생산 제품명				
사업구분 (하당하는 것에O표)	전통식품개발사업(), 산지일반일반가공사업(), 특산단지() 1군1특품사업(), 도비지원사업(), 기타()			
시설투자비 (천원)	건 물	기계장비	기타	(합계)
컨설팅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 (구체적으로)	<p>○</p> <p>○</p> <p>○</p>			
<p>귀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농산물가공공장 기술·경영컨설팅 지원을 받고자 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신청일 : 2001년 월 일</p> <p>신청업체명 :</p> <p>대표자 : (인)</p> <p>한국식품개발연구원장 귀하</p>				

< 참고 1 >

기술 및 경영컨설팅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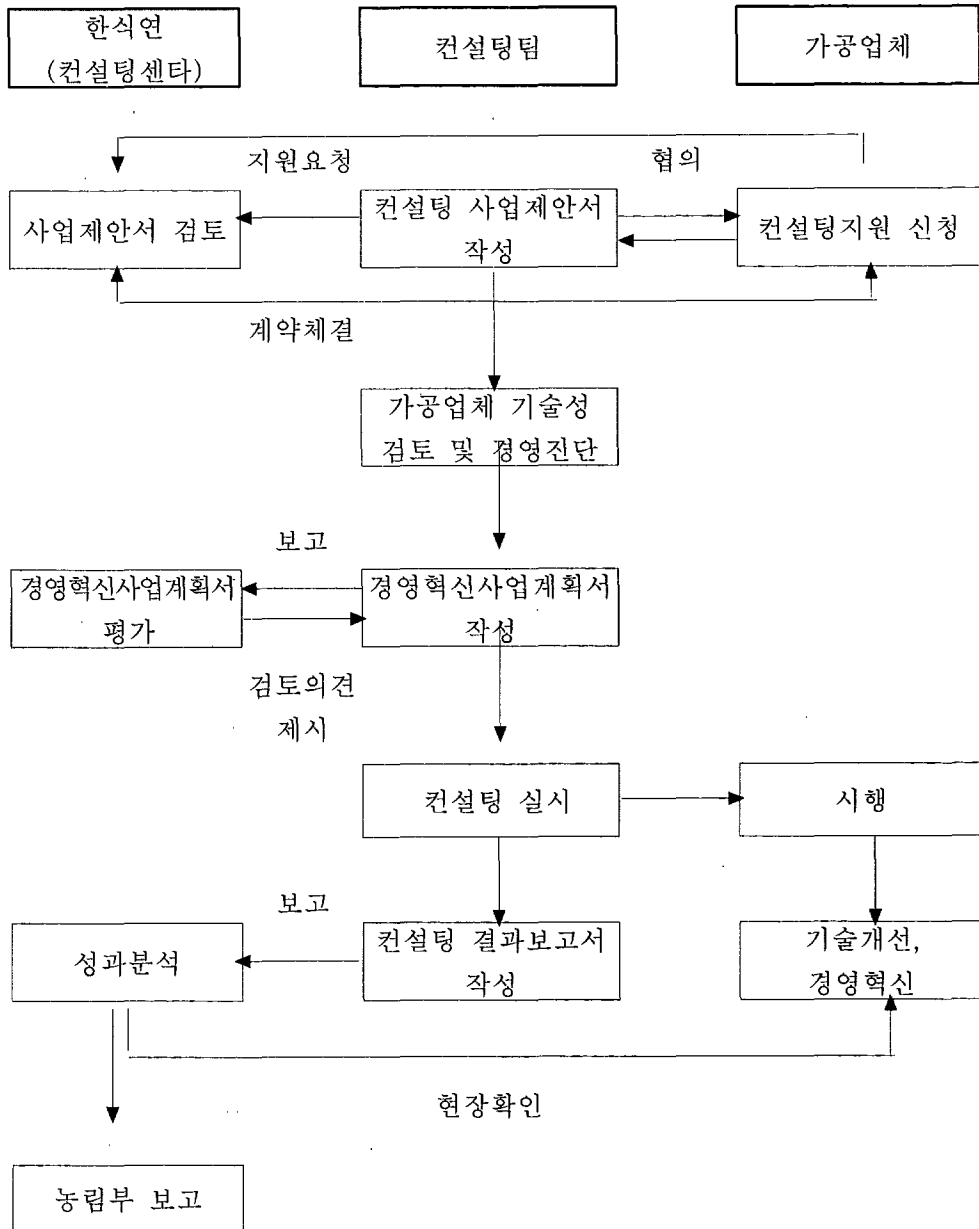
< 기술컨설팅 >

구 분	세 부 지원 내 용
가 공 기 술	전처리기술, 건조기술, 추출·농축기술, 여과기술, 분쇄기술, 살균기술, 제품품질 평가기술, 저장기술, 유통기한 연장기술, 식품첨가물 활용기술 등
공정설계 검토	공정자동화 방안, 생산설비의 효율적 배치, 기계장비의 효율성 평가, 공정흐름도의 분석, 생산능력 제약요소 진단 등
저장/유통기술	원부재료의 보관, 제품의 보관 및 유통방법, 저장시설 및 운영방법의 개선 등
제품의 다각화	신상품 제조기술, 가동율 제고기술, 부산물활용기술 등
위생관리기술	공장위생, 개인위생 등
포장 / 디자인	포장재질, 포장용기, 포장방법, 디자인, 포장의 표시사항 개선 등

< 경영컨설팅 >

구 분	세 부 지원 내 용
생 산 관 리	생산일정계획, 적정재고관리, 원부재료 조달방법, 품질관리, 제품 다각화, 품목 조정, 비용절감 방안, 생산성 제고 방안 등
재 무 관 리	재무제표 분석, 투자사업의 수익성 분석, 현금흐름분석, 합리적인 자금조달 및 운영방법, 보유자본의 포트폴리오, 전산기장, 재무제표 작성 등
판 매 관 리	시장분석, 판매전략 수립, 판매방법 개선, 판매촉진 전략, 신판로 개척의 접근방법 등
인 력 관 리	근로자의 숙련도, 고용형태의 적절성, 적정인력배치, 자동화 방안, 작업능률 제고 방안, 경영자 및 종업원의 의식교육 등
정 보 관 리	정보유형별 정보원 및 접근방법, 수집정보의 전산관리, 정보통신망 이용방법 등
사업타당성분석	생산계획, 판매계획, 기계장비계획, 제품별 가공기술, 추정시설투자비 산정, 소요자금 조달계획 등

컨설팅사업 세부추진체계



Ⅲ. 특산단지육성

1. 목 적

- 농촌의 부존자원과 유희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농촌특산품 생산단지(이하 “특산단지”라 한다)를 조성·운영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지역의 발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하여 향토성과 지명도가 높고 지역의 열이 담긴 농촌 특산품을 생산
-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특산단지를 육성하여 농촌일자리 제공 및 농외소득 증대
- 특산단지간 공조활동을 도모하여 생산제품의 시장정보 제공 및 품질 향상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

4. 연도별 지원계획

《특산단지육성》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2~'98	'99	2000	2001 (예산안)	2002~ 2004년	
사 업 량	469	16	10	7	33	
사 업 비	계	119,754	6,814	5,714	2,520	8,640
	국 고	12,420	-	-	-	-
	지방비	12,420	-	-	-	-
	용 자	66,023	4,770	4,000	1,764	6,048
비	자부담	28,891	2,044	1,714	756	2,592

《특산품 전시판매장》

- '99년부터 지역특화사업 세부사업에 포함하여 지원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특산품을 생산·판매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의 발전 도모

(2) 지원대상자

- 특산단지 육성 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 비농업인
(단, 비농업인만의 출자일 경우는 3호이상의 농업인 참여)

(3) 지원규모 및 조건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농협(군지회 또는 지역농협) 및 특산단지 도연합회·군연합회의 사업성검토를 기초로 사업성 검토 종합평점표(별표1)를 작성하고 사업지구를 3등급으로 분류한 후 농정 심의회 심의후 지원한도 결정

- 단지당 등급별 지원한도

지원등급	평점결과	지원한도	비고
1등급	75점 이상	3억원	단, 지원한도가 초과되었다 하더라도 융자금 대출잔액이 지원한도 이하일 경우는 추가지원 가능
2등급	75점미만~ 50점 이상	2.5억원	
3등급	40점이상~ 50점 미만	2억원	

※ 40점 미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

- 지원기준 : 시장·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단지당 등급별 지원 한도내에서 기존단지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가능한 신규단지 지원은 지양

- 신규단지 : 시설비, 운영비

- 기존단지 : 시설비, 운영비(다만, 운영비는 지원기준초과시 시·도지사 승인후 지원가능)

- 단지당 지원기준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기준액	
		국고용자(70%) 이내	자부담(30%) 이상
시 설 비	140백만원	98	42
운 영 비	80	56	24

- 지원조건

구 분	용자조건	비 고
시설비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연리 5%	시설자동화 및 사업장 신축 등
운영비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연리 5% (단, 비농업인 : 8%)	원료구입, 금형제작,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단 신규시설 투자 및 토지구입비는 제외)

(4) 참여형태 및 지원대상품목

- 참여형태 : 공동출자, 공동생산, 임가공, 취업형태로 운영
- 지원대상품목

업 종 별	품 목
민속공예품	죽제품, 목공예, 도자기공예, 한지, 패각가공, 완초가공 등
농산자재	싸리제품, 지물제품, 인삼발 등
섬유직물	모시, 삼베, 마포, 자수 등
석재분야	돌벼루, 솥돌, 돌가공제품 등

- 농촌부존자원을 활용한 품목으로 지역대표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품목을 선정
- 단, 일반공산품 및 식료품은 신규지원 대상품목에서 제외
- ※ 일반공산품의 개념은 공업화에 의해 다른 일반공장등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제품을 말함(농촌의 부존자원을 직접 활용하지 않는 제품)

나. 2001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개소,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업비계	예 산 액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24	2,520	1,764	-	1,764	756
시설비	7	1,500	1,050	-	1,050	450
운영비	17	1,020	714	-	714	306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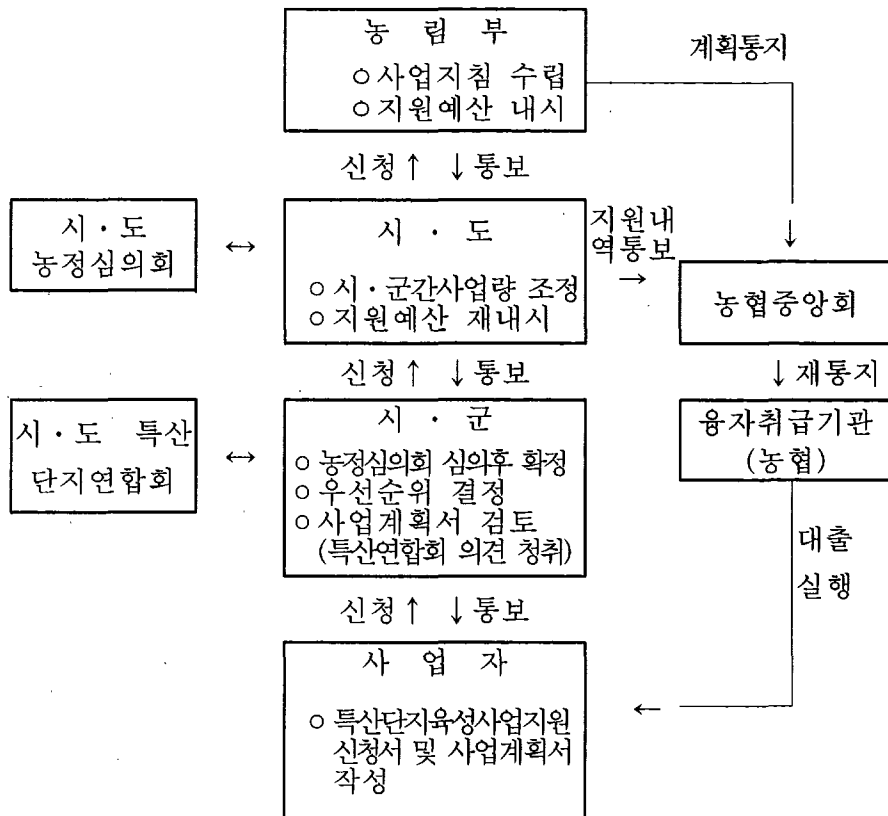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식품산업과 (☎(02)504-9417, 9418)
- 시·도 : 농정국 농업정책과
- 시·군·자치구 : 산업과

다. 추진절차

- 농림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시달
- 사업자 : 농촌특산단지육성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자치구 (이하 시·군이러 한다)에 제출
- 시·군 : 시·군단위 농어촌발전장기계획의 사업량을 고려하여 농협 및 특산단지연합회의 사업성 검토 자료를 토대로 농정심의회 심의후 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확정

○ 사업시행 체계도



라. 사업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신규단지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성 검토결과 등급이 높은 단지를 우선선정하되, 농촌부존자원 활용, 농업인 참여비율이 높은 단지, 고부가가치제품·전통민속공예제품 생산이 가능할 경우에 선정
- 생산제품의 지역대표성과 지명도가 높고, 상품화가치가 있는 지역 특산품생산단지를 선정 지원
 - 조성실적(조성단지수) 위주의 무분별한 신규단지선정 지양으로 사업부실화 방지
- 지방자치단체의 「1군1명품육성사업」과 「1농협1특산품개발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는 품목 우선선정
- 일반공산품, 식료품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기존단지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성검토결과 등급이 높은 단지를 선정하되, 품목 또는 업종별로 통·폐합하는 단지를 우선 지원하고 농외소득증대효과가 큰 제품을 생산하는 단지의 내실화에 집중 지원
- 농촌부존자원 활용, 전통민속공예품·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 등에 우선지원하되 단순부업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성검토는 신규 및 기존단지 구별없이 특산단지 도연합회 또는 군연합회의 의견과 농협(군지회 또는 지역농협)의 신용상태·대출가능액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여 시장·군수가 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무분별한 계획이라고 판단될 경우는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음

(2) 선정절차

- 신규 및 기존단지에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1.20까지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는 시·군단위 농촌발전장기계획의 사업량을 고려하여 대출 취급기관 및 특산단지연합회의 사업성 검토(별표1)와 농정심의회 심의후 지원계획 확정(별지 제2호 서식). 단, 시장·군수는 대상자 선정시 공예협동조합, 기타 품목별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 참고할 수 있음

(3) 사업시행

(가) 사업추진

- 사업자는 시·군의 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나) 사업계획변경

- 사업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사업계획수립당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사정으로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당초 지원액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변경승인후 그 결과를 대출 취급기관에도 통보
 - 시·군간 예산증감이 발생시는 시·도 지원액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예산변경 조치
 - 시·도간은 농림부장관이 변경조치

마.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 시·도별로 예산내시(추후 별도)

(2) 자금의 운용관리

- 사업지원신청시 첨부한 사업계획서상의 분기별 용자금소요액에 따라 정부자금 형편을 감안하여 지원
 - 용자금 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관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함.
- 기존단지 취소시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처리

(3) 용자요령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특회계용자업무지침 및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가급적 신용대출 또는 신용보증 대출을 원칙으로 하며, 특산단지의 담보능력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은 대출시 담보물의 시가기준을 현실화하고, 시설자금 용자시 최대한 후취담보 실시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 시행대표자로부터 융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이 통보한 사업진도(기성고)에 따라 진도 확인후 자금을 지원
 - 단, 대출취급기관 등이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비와 운영비는 제외할 수 있음

(4)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가 연내에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비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미집행액이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 시·도지사는 당해 연도말 검정을 붙임서식(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실시하여야 함

바. 사업효과

-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특산품 개발과 농촌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와 농의소득증대에 기여
- 기술 및 경영지도와 정보교환 등을 통한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제고에 기여

<행정사항>

《특산단지육성》

가. 사업자 준수사항

- 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건물,기계)은 사후관리기간내 처분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사후관리기간중 사정변경(처분제한기준 참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특산단지 사업자는 사업장 입구의 적당한 위치에 특산단지의 명칭(단지명), 선정년도, 선정권자, 단지규모 등을 표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함
- 특산단지 사업자는 연도별 수입 및 지출상황(보조금은 별도 계리), 결산상황(자산, 자본, 부채, 손익 등), 제조원가, 매출현황, 참여가구현황, 임금지급상황 등에 관한 농촌특산단지 관리대장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함(별지 제3호 서식)

나.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 시장·군수는 지역특산품에 대하여 대학,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등 연구기관, 특산단지연합회 등을 통하여 디자인 및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는 특산단지사업에 필요한 상품기술 및 디자인개발을 현장애로 기술개발과제로 채택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
- 특산단지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품질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유사제품과 차별화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

다. 사후관리

(1) 관리주체 : 시장·군수

(2) 점검시기 및 내용

- 시장·군수는 대출취급기관 등과 합동으로 정기적(매반기 1회이상)으로 현장실태를 조사하여 사업성을 검토하고, 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

(3) 점검결과 반영

- 사업성 검토결과 부실화 단지는 과감히 정리(퇴출)하고 사업전망이 있는 단지는 추가지원 요구시 기존단지 지원대상으로 선정
- 시장·군수는 보조금과 용자금(원리금 상환기간 만료 이전)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당초 사업목적에 크게 위배하여 부당사용 사유에 해당되면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에 따라 처리

(4)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기타 필요사항
	부 터	까 지		
건물(공장,공동 작업장,창고, 사무실 등)	준 공 검사일	10 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다만, 사후관리기간중 사업자의 질병, 사망,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관리가 어렵 다고 판단되거나 시설기자재의 화재, 손·망실, 기타 정당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거쳐 사후관리를 해제할 수 있음.	관리대장을 사업장에 비치하고 현재액 및 사후관리사항 등을 기록
기 계	설치일	5 년		

라. 보 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 현재 농촌특산단지 사업비 정산결과를 취합하여 다음해 1.31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7호 서식)
- 시·도지사는 관내 특산단지에 대해 12월말 현재 사업추진실적, 운영단지현황, 단지정리(퇴출)현황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1.31까지 보고(별지 제5호 서식)
- 신규 및 기존단지 지원계획 보고 : 각 시·도지사는 신규 및 기존단지 지원계획(사업량, 재원별 지원액등)을 매년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4호서식)

《특산품 전시판매장》

가. 사후관리

- 기 지원한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지원받은 시설물을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함.
- 사후관리책임자 : 시·도지사(시장·군수)

나. 보 고

- 시·도지사는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실적을 다음해 1.31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6호 서식)

○ 사업추진관련 보고사항

구 분	기 관 별	보고기한	양 식
1. 특산단지 사업 추진 실적 - 연도말 추진실적 - 연도말 운영단지 현황 - 연도말 단지별 정리(퇴출)현황	시·군→시·도 시·도→농림부	1. 15 1. 31	별지 제5호 서식
2. 특산단지 사업비 정산보고	시·도→농림부	1. 31	별지 제7호 서식
3. 특산단지별 지원계획 보고 (총괄, 신규, 기존) - 특산단지 사업비 조달계획 세부 명세표	시·도→농림부	2월말	별지 제4호 서식
4. 특산단지 정리(퇴출) 결과보고	시·도→농림부	취소즉시	1.31보고시 누계 하여 제출

※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실적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도에서 농림부에 다음해 1.31까지 보고

6. 2002년도 사업신청안내

《특산단지육성》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서 제출기한

○ 사업신청자 → 시·군(2001.1.20까지)

○ 시장·군수 → 시·도(2001.2.28까지)

다. 신청자격

○ 농업인, 비농업인(단, 비농업인만의 출자일 경우는 3호이상의 농업인 참여)

라. 신청절차

○ 신청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하는 사업지원신청서를 읍·면장을 거쳐 시·군의 총괄부서에 제출

○ 단, 시·군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군의 총괄부서에 제출

마. 구비서류

○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별표 1]

사업성 검토

< 종합평점표 : 신규단지용 >

신규단지용		배점 (점)	평점 기준					평점
대항목	소항목		A	B	C	D	E	
특산단지 목적 합성	고용효과(유휴노동력 활용)	31	10	8	6	4	2	
	소득효과		10	8	6	4	2	
	지역자원 활용도		11	8.8	6.6	4.4	2.2	
시 장 성	판로확보	30	10	8	6	4	2	
	홍보전략		7	5.6	4.2	2.8	1.4	
	제품차별화 정도		5	4	3	2	1	
	동업계전망		5	4	3	2	1	
	경쟁상태		3	2.4	1.8	1.2	0.6	
사업추진 기 반	노동력 및 원료조달 용이도	10	5	4	3	2	1	
	판매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재무상태	자기자본 비율	10	5	4	3	2	1	
	채무상환 능력		5	4	3	2	1	
기 술 성	기술수준	10	5	4	3	2	1	
	상품성제고 노력도		5	4	3	2	1	
대 표 자 력 능	은행거래 신용도	5	5	4	3	2	1	
수 익 성 (전망)	매출액경상 이익율	4	2	1.6	1.2	0.8	0.4	
	투자수익율		2	1.6	1.2	0.8	0.4	
합 계		100	100	80	60	40	20	

< 항목별 등급기준 : 신규단지용 >

평가항목		등급	평가기준
대항목	소항목		
특산단지목적합성	고용효과 (유휴노동력 활용)	A B C D E	15가구 초과 참여 15가구 이하 참여 10가구 이하 참여 7가구 이하 참여 5가구 이하 참여
	소득효과	A B C D E	가구당 연간 소득금액 10백만원 이상 ~ 10백만원 미만 " 8백만원 이상 ~ 8백만원 미만 " 6백만원 이상 ~ 6백만원 미만 " 4백만원 이상 ~ 4백만원 미만 " 4백만원 미만
	지역자원 활용도	A B C D E	지역생산 원료 이용율 80% 이상 ~ 80% 미만 " 60% 이상 ~ 60% 미만 " 40% 이상 ~ 40% 미만 " 20% 이상 ~ 20% 미만 " 20% 미만
시장성	판로 확보	A B C D E	이미 확보된 고정거래처에 의한 판매 특산단지 도연합회·군지회사무소 상설전시판매장 등을 통한 직판 대리점 등을 통한 위탁판매 주문판매(고정거래처에 대한 주문판매분 제외) 기타 일반판매
	홍보전략	A B C D E	대중언론매체(신문, 방송 등)를 통한 전국적인 홍보 대규모 수요처, 특산품 전시판매장 등 전국적인 홍보 도단위 이내의 지역적인 홍보 군단위 이내의 지역적인 홍보 홍보전략 없음
	제품차별화 정도	A B C D E	지역고유 특산물로 타지역 생산불가 독창적 품질로 3년내 유사경쟁제품 출현 가능성 없음 독창적 품질로 2년내 유사경쟁제품 출현 가능성 없음 독창적 품질로 유사경쟁제품 출현이 비교적 어려움 제품 차별성 없음
	동업계전망	A B C D E	매우 유망 비교적 유망 현상유지 장기적으로 사양화 예상 단기적으로 사양화 확신
	경쟁상태	A B C D E	독점 과점 보통 비교적 치열 매우 치열

평가항목		등급	평가기준
대항목	소항목		
사업 추진 기반	노동력 및 원료조달 용이도	A B C D E	노동력 및 원료조달에 전혀 문제 없음 노동력 및 원료조달이 용이함 노동력 및 원료조달에 대한 전망을 예측할 수 없음 노동력 및 원료조달에 다소 애로가 있음 노동력 및 원료조달에 애로가 많음
	판매계획의 적정성	A B C D E	매우 합리적이며 목표달성이 확실함 비교적 합리적이며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적정수준이라고 판단되나 달성가능성은 예측 불가 다소 무리한 계획으로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매우 비합리적인 계획으로 목표달성이 전혀 불가능함
재무 상태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frac{\quad}{\quad}$) 총자본	A B C D E	50% 이상 ~ 50% 미만 30% 이상 ~ 30% 미만 20% 이상 ~ 20% 미만 10% 이상 ~ 10% 미만
	채무상환능력 차입금 ($\frac{\quad}{\quad}$) 대출액 (예상)	A B C D E	20% 미만 ~ 40% 미만 20% 이상 ~ 60% 미만 40% 이상 ~ 8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80% 이상
기술성	기술수준	A B C D E	인력, 최신설비 등을 보유하여 독자적 기술개발 충분 인력, 최신설비 등을 보유하여 독자적 기술개발 가능 최신설비는 없으나 인력을 보유하여 기술개발 가능 인력은 없으나 최신설비 보유로 기술개발 가능 인력, 최신설비 등이 없음
	상품성 제고노력도	A B C D E	①상표등록②의장등록③KS등공인규격표시허가 획득④ 독창적인디자인개발을 위해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등에 외부위탁교육 실시⑤기타 품질보증 획득⑥규격포장재 사용 상기 상품성제고활동중 4개 이상 해당 " " " 3개 이상 해당 " " " 2개 이상 해당 " " " 1개 이상 해당 " "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등급	평가기준
대항목	소항목		
대표자 능력	은행거래 신용도	A	최근 3년간 불량거래자(연체포함) 규제사실 없음
		B	최근 2년간 "
		C	최근 1년간 "
		D	최근 6개월간 "
		E	그 외의 자
수익성 (전망)	매출액경상 이익율	A	4.7% 이상
		B	4.6% ~ 2.7%
		C	2.6% ~ 0.9%
		D	0.8% ~ △1.7%
		E	△1.7% 미만
(전망)	투자수익율 당기순이익 ($\frac{\quad}{\text{총자본}}$)	A	13.2% 이상
		B	13.1% ~ 7.6%
		C	7.5% ~ 2.8%
		D	2.7% ~ 0.6%
		E	0.6% 미만

사업성 검토

< 종합평점표 : 기존단지용 >

기존단지용		배점	평점 기준					평점
대항목	소항목		A	B	C	D	E	
특산단지 목적 적합성	고용효과(유휴노동력 활용)	30	10	8	6	4	2	
	소득효과		10	8	6	4	2	
	지역자원 활용도		10	8	6	4	2	
과거 영업 실적	경영성과	25	10	8	6	4	2	
	매출액 증가율		10	8	6	4	2	
	가동율		5	4	3	2	1	
사업추진 기반	판로확보	15	8	6.4	4.8	3.2	1.6	
	노동력 및 원료조달 용이도		4	3.2	2.4	1.6	0.8	
	제품차별화 정도		3	2.4	1.8	1.2	0.6	
재무상태	자기자본 비율	10	6	4.8	3.6	2.4	1.2	
	채무상환 능력		4	3.2	2.4	1.6	0.8	
사업 전망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전망	10	4	3.2	2.4	1.6	0.8	
	거래조건 및 판매전망		4	3.2	2.4	1.6	0.8	
	동업계 전망		2	1.6	1.2	0.8	0.4	
수익성	매출액 경상이익율	5	3	2.4	1.8	1.2	0.6	
	투자수익율		2	1.6	1.2	0.8	0.4	
기술성	상품성제고 노력	5	4	3.2	2.4	1.6	0.8	
	신제품개발		1	0.8	0.6	0.4	0.2	
합 계		100	100	80	60	40	20	

< 항목별 등급기준 :기준단지용 >

평가항목		등급	평가기준
대항목	소항목		
특산단지 지목적 적합성	고용효과 (유휴노동력 활용)	A B C D E	15가구 초과 참여 15가구 이하 참여 10가구 이하 참여 7가구 이하 참여 5가구 이하 참여
	소득효과	A B C D E	가구당 연간 소득금액 10백만원 이상 " 8백만원 이상 ~ 10백만원 미만 " 6백만원 이상 ~ 8백만원 미만 " 4백만원 이상 ~ 6백만원 미만 " 4백만원 미만
	지역자원 활용도	A B C D E	지역생산 원료 이용율 80% 이상 " 60% 이상 ~ 80% 미만 " 40% 이상 ~ 60% 미만 " 20% 이상 ~ 40% 미만 " 20% 미만
과거 영업 실적	경영성과	A B C D E	최근3년이상 후자경영이고 순이익규모 증가추세 최근3년이상 계속후자경영와 영업기간2년으로 후자 최근 2년간 계속 후자경영와 영업기간1년으로 후자 전년도 후자경영 그외의 경우
	매출액 증가율	A B C D E	최근 3년간 매출증가율 20% 이상 " 19 ~ 15% " 14 ~ 10%, 영업기간 3년미만 " 9 ~ 5% 5%미만
	가동율 실제가동일 (—————) 가동가능일 *연300일기준	A B C D E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평가항목		등급	평가기준
대항목	소항목		
사업 추진 기반	판로확보	A B C D E	이미 확보된 고정거래처에 의한 판매 특산단지 도연합회·군지회사무소, 상설전시판매장 등을 통한 직판 대리점 등을 통한 위탁판매 주문판매(고정거래처에 대한 주문판매분 제외) 기타 일반판매
	노동력 및 원료조달 용이도	A B C D E	노동력 및 원료조달에 전혀 문제 없음 노동력 및 원료조달이 용이함 노동력 및 원료조달에 대한 전망을 예측할 수 없음 노동력 및 원료조달에 다소 애로가 있음 노동력 및 원료조달에 애로가 많음
	제품차별화 정도	A B C D E	지역고유 특산물로 타지역 생산불가 독창적 품질로 3년내 유사 경쟁제품 출현 가능성 없음 독창적 품질로 2년내 유사 경쟁제품 출현 가능성 없음 독창적 품질로 유사 경쟁제품 출현이 비교적 어려움 제품 차별성 없음
재무 상태	자기자본 비율 $\frac{\text{자기자본}}{\text{총자본}}$	A B C D E	50% 이상 30% 이상 ~ 50% 미만 20% 이상 ~ 3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10% 미만
	채무상환 능력 $\frac{\text{차입금}}{\text{매출액}}$	A B C D E	2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80% 이상
사업 전망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전망	A B C D E	수입가능성이 전혀 없음 수입가능성이 있으나 가격및품질에서 절대적 우위 " 다 소 우위 " 대 등 " 열 위
	거래조건 및 판매전망	A B C D E	상품의 가격 및 거래조건, 상품의 시장성, 신용있는 거 래처 확보등으로 전망이 매우 양호 " " 양호 " 보통 상품의 가격 및 거래조건은 보통이하이나 상품의 시장 성, 신용있는 거래처 확보등으로 전망 보통 그외의 경우
	동업계 전망	A B C D E	매우 유망 비교적 유망 현상유지 장기적으로 사양화 예상 단기적으로 사양화 확신

평가항목		등급	평가기준
대항목	소항목		
수익성	매출액경상 이익율	A	4.7% 이상
		B	4.6% ~ 2.7%
		C	2.6% ~ 0.9%
		D	0.8% ~ △1.7%
		E	△1.7% 미만
투자수익율	당기순이익 (————) 총자본	A	13.2% 이상
		B	13.1% ~ 7.6%
		C	7.5% ~ 2.8%
		D	2.7% ~ 0.6%
		E	0.6% 미만
기술성	상품성제고 노력도		①상표등록②의장등록③KS등공인규격표시허가 획득④ 독창적인디자인개발을 위해 한국디자인포장센타 등에 외부위탁교육 실시⑤기타 품질보증 획득⑥규격포장재 사용
		A	상기 상품성제고활동중 4개이상 해당
		B	" 3개이상 해당
		C	" 2개이상 해당
		D	" 1개이상 해당
		E	" 해당사항 없음
신제품개발	신제품개발	A	신제품 월간 판매액이 전년도 월간 판매액의 50%이상
		B	신제품이 개발 완료되어 판매실적 있음
		C	신제품을 개발 완료하여 공인기관 시험 완료
		D	신제품 개발중
		E	신제품 개발없음

[별지 제1호 서식]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	
	주소					
	영농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과) 졸업·중퇴
	조직형태	농업인, 비농업인			참여 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업명			신규	사업규모	평 (㎡)
				기존		
	사업예정지 주소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사업비	계	용자		자부담		
	천원					
<p>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지원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 ○○특산단지 대표 성명 (인)</p>						
시장·군수 귀하						
<p>덧붙임 : 사업계획서 1부</p>						

(붙임)

사업계획서

1. 개황

○ 단 지 명 :

○ 사업장소재지 : 시·도 시·군 동·읍·면 리 번지

○ 업종 및 생산제품 : (업종) (생산제품)

※ 업종은 민속공예품, 농산자재, 섬유식품, 석재중 하나를 기재

○ 사업자(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인)	연령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 력 및 경 력	기간		학교 및 전공, 근무처 및 활동사항	

○ 관리직원수 : (직책별 인원수를 적음)

○ 참여형태 :

※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업, 임가공, 혼합 중 하나를 기재함. 다만, 혼합의 경우 혼합된 형태를()안에 "/"으로 구분하여 함께 적되, 사업자 1가구 단독출자의 경우는 참여형태를 구분함에 있어 사업자(단독출자가구)를 제외한 다른 참여가구의 참여형태만으로 구분함.

(예) 1. 사업자 1가구가 단독출자하고 3가구가 취업한 경우의 참여형태는 "취업"임.

2. 사업자 1가구가 단독출자하고 1가구는 공동생산, 1가구는 임가공일 경우의 참여형태는 "혼합(공동생산/임가공)"임.

○ 참여가구현황

(단위 : 가구)

합 계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 업			임 가 공		
계	농가	기타	계	농가	기타	계	농가	기타	계	농가	기타	계	농가	기타

- * (주) 1. 공동생산이라 함은 참여가구가 원료를 스스로 생산 또는 조달하여 특산단지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후 그 이익금을 공동분배하는 것을 말함.
 2. 1가구 단독출자한 사업자는 공동출자란에 적음.
 3. 2인이상 참여가구의 경우 가구원중 특산단지에서의 소득이 가장 많은 가구원의 참여형태를 적음.

○ 참여가구 및 참여자 명단

(단위 : 가구)

가구번호	가구주명	주 소	경작면적(m ²)			참 여 자				
			계	자경	임차	성명	생년월일	가구주와의 관계	참여형태	

- * (주) 1. 사업자의 가구번호는 1번을 부여함.
 2. 1가구 단독출자한 사업자의 경우 그의 참여형태란에는 “출자”라 적음.

2. 사업비 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시기별 소요금액				
	합계	농특용자	자부담	계	1/4	2/4	3/4	4/4
합 계								
시 설 자 금	소 계							
	건 물 · () · () · () · () 기계·기구 · · · 생산부대시설 · · ·							
운 영 자 금	소 계							
	원료구입비 기 타 (금형·디자인 개발 등)							

- * (주) 1. 건물은 공장, 공동작업장, 창고, 사무실 등의 사용목적에 따라 동별로 세분하고, ()안에 신축·증축·개축·매입중 하나를 적음.
 2. 건물을 토지와 일괄매입하는 경우의 건물매입비는 당해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적음.

3. 제조과정

--

* (주) 단위공정별로 상세하게 기재(필요할 경우 도면 첨부)

4. 원료조달계획

연도별	원료명	조달처	조달방법	조달시기	소요량	소요자금 (천원)			
						계	정부지원	자체차입	자기자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 (주) 1. 조달처는 농촌, 도시 등으로 구분
 2. 조달방법은 자체생산, 구입, 원도급자 제공 등으로 구분(자체생산은 참여형태가 “공동생산”으로써 참가구가 경작 등의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경우에 한함)
 3. 조달시기는 연중 또는 일시(예 : 3월~6월)로 구분
 4. 소요량에는 물량과 함께 반드시 단위를 적음.

5. 생산 및 판매계획

(단위 : 천원)

품목별	구분	전년(2000)			당년(2001)			2년차(2002)			3년차(2003)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전 년 말 재 고												
	생산계획												
	판매계획 - 내 수 - 수 출												
	다음해로 이 월												
	전 년 말 재 고												
	생산계획												
	판매계획 - 내 수 - 수 출												
	다음해로 이 월												
	전 년 말 재 고												
	생산계획												
	판매계획 - 내 수 - 수 출												
	다음해로 이 월												
	전 년 말 재 고												
	생산계획												
	판매계획 - 내 수 - 수 출												
	다음해로 이 월												

- * (주) 1. 생산 및 판매단가는 사실대로 기입하여야 함.
2. 수량에는 수량과 함께 반드시 단위를 적음.

6. 판매방법 및 판매처

판매경로 :				
제 품 명	수 량	금액(천원)	판매처	판 매 실 적
				○ 판매기간 : 년도 ~ 년도(○○년간) ○ 제 품 명 : ○ 총판매금액 : ○ 판 매 처 :
향후판매전망 :				

- * (주) 1. 현재 판매(거래)하고 있거나 앞으로 판매계획을 작성함.
 2. 판매경로는 생산에서 판매처까지의 경로를 도표로 작성
 3. 향후 판매전망은 어떠한 사유로 전망이 있다 또는 없음을 명기
 4. 판매실적은 과거 판매실적이 있을 때 제품별로 간략히 기재.
 예) 판매기간 : '98~2000(최소한 3년간 이상)
 제 품 명 : 도자기
 판 매 처(상세히) : 서울 미도과백화점, 서울공예품판매점 등

7. 소득효과

(단위 : 가구,천원)

		전년(2000)	당년(2001)	2년차(2002)	3년차(2003)
매출액 (A)					
제조원가및비용계	원료구입비 노무비 (취업) 노무비 (임가공) 경비 (제조원가계) 판매비 일반관리비 지급이자(원금제외) 제조공과금 기타비용				
	원가 및 비용 계 (B)				
손익(A-B)					
소득분석	참여형태별 가구수	공동출자 공공생산 취업 임가공 계			
	가구당소득액	공동출자 공공생산 취업 임가공 계			

- * (주) 1. 원료구입비는 공동생산형태의 참여가구이외(외부)의 자에게 지급한 비용만 적음.
 2. 노무비는 취업 또는 임가공 형태의 참여가구에 지급한 금액만 적음.
 3. 참여형태별 가구수는 "1. 개황"의 "참여가구현황" 기재요령 참조
 4. 가구당 소득액은 다음과 같이 적음.
 - 참여형태가 공동출자 또는 공동생산이거나 2가지 혼합인 경우는 손익을 당해 가구수로 나눈 금액
 - 참여형태가 취업 또는 임가공이거나 2가지 혼합인 경우는 당해 노무비를 당해 가구수로 나눈 금액
 - 참여형태가 공동출자(또는 공동생산)와 취업(또는 임가공) 혼합인 경우는 공동출자(또는 공동생산)는 손익을 당해가구수로, 취업(또는 임가공)은 당해 노무비를 당해 가구수로 각각 나눈 금액
 - 1가구 단독출자한 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참여가구의 소득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공동출자란에 적음.

[별지 제2호 서식]

종합심사서

1. 단 지 명 :

2. 사업장소재지 주소 :

3. 업종 및 생산제품 : (업종) (생산제품)

4. 사 업 자 : (성명) (생년월일) 19

5. 참여형태 :

* 사업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의 “참여형태” 작성방법에 준할것

6. 심사내용 : (붙임참조)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종합심사내용(심사의견)

(1) 사업성검토서에 대한 심사의견

항 목	심 사 의 견

* (주) 제시된 항목별로 구분하여 논리적·구체적으로 적음.

(2) 연합회 의견서에 대한 심사의견

항 목	심 사 의 견

* (주) 제시된 항목별로 구분하여 논리적·구체적으로 적음.

(3) 종합의견

※ 전체사항을 포괄적으로 적되, 객관성이 있어야 하며, 요건 및 법령 적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을 반드시 적음

[별지 제3호 서식]

특산단지관리대장

1. 개 황

○ 단 지 명 :

○ 사업장소재지 : 시·도 시·군 동·읍·면 리 번지

○ 선정 년월일 : 년 월 일

○ 업종 및 생산제품 : (업종) (생산제품)

○ 사 업 자 : (성명) (생년월일)

○ 참여 형태 :

* 사업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의 “참여형태” 작성방법에 준할것

○ 사업장 구분 :

○ 관리직원수 : (직책별 인원수를 적음)

2. 참여가구수 변동상황

(단위 : 가구)

점 검 기준일	참 여 가 구 수					점 검 년월일	점 검 자 직·성명·날인
	합 계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 업	임가공		

3. 참여가구 및 참여자 변동상황

점 검 기준일	가구 번호	가구주 성 명	주 소	경작면적(m ²)			참 여 자				점 검 년월일	점 검 자 직·성명·날인
				계	자경	임차	성명	생년 월일	가구주 외관계	참여 형태		

4. 사업비 조달상황

(단위 : 천원)

점검 기준일	재원별	용도	조달 년월일	조달금액	사용명세	점검 년월일	점검 직·성명·날인

- * (주) 1. 재원은 농특용자를 적음.
 2. 용도는 시설자금, 운영자금중 하나를 적음.
 3. 사용명세는 상세하게 적음.

5. 기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사항

재원	재산명	조달 년월일	조달금액	사용명세	처 분 년월일	처분사유	처분사항	점검 직·성명·날인

6. 생산 및 판매상황

(단위 : 천원)

점검 기준일	전기말재고		생산실적		판매실적		당기말재고		점검 년월일	점검 직·성명·날인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7. 소득효과

점검 기준일	매출 액	제조사 원가 및 비용	손익	소 득								점검 년월일	점검 직·성명·날인	
				총 소득	가 구 별 소 득						취 업			임가공
					계		공동출자		공동생산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별지 제4호 서식]

자체 가26-47

○○년도 농촌특산단지별 지원계획 보고

(단위 : 천개,천점,톤,백만원)

업종별	우선순위번호	품목	사업명	참여형태	소재지	대표자		참여가구			제품생산	
						성명	전화	계	농가	기타	생산계획	
											수량	생산액
	합계											

및 판매계획			추정생산비			추정소득		사업비 조달계획		
판매계획			계	원료구입비	기타비용	총소득	가구당소득	계	농특용자	자부담
계	내수 (금액)	수출 (금액)								

※ 작성요령

1. 업종별 : 작성순위(①민속공예품, ②농산자재, ③섬유직물, ④석재)대로 작성 기재
2. 우선순위번호 : 업종별 구분없이 지원대상자 순위번호 기재
3. 품 목 : 목공예, 석공예등 주된 생산품목을 기재
4. 사업명 : 세부적인 사업명(시설비 : ○○공장, ○○기계, ○○개발비(금형,디자인 등), ○○포장비등, 원료비 : ○○원료구입비등)으로 기재
5. 참여형태 :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업, 임가공중 하나를 기입하되 혼합형 형태는 추가되는 것을 기입하고 말미에 (혼)을 기입함.
6. 소재지 : 사업장소의 주소
7. 참여가구 : 농가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농가
8.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 연간 총생산계획과 판매계획을 기입하되, 판매계획은 내수·수출 구분 작성
9. 추정생산비중 기타비용 : 제잡비, 세금 등을 포함하되, 참여농가의 임금은 제외
10. 추정소득(정수로산출) : 제품판매계획 - 추정생산비(가구당소득 = 총소득/참여호수)
11. 추정소득 총 소득 : 제품판매계획 - 추정생산비(소수점이하 생략)
가구당 추정소득 : 총소득/참여호수

[별지 제5호 서식]

총 26-1

농촌특산단지사업 추진실적 보고

(○○시·도, ○○시·군)

○연도말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업종 별	품 목	단지소재지	선정 년도	단지명 (대표자)	참여 형태	참 호		총 종 사 자 수	생 산 실 적	관 실		비 용	소 효 총 소 득	특 과 가 동 율	사 업 비					
						계	농 가			내 수	수 출				농 용	특 자		자 부 담		
																계	실 적	비 율 %	계	실 적
합 계																				

* (주) 작성요령 : 단지별 지원계획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작성방법에 준할 것
사업비는 사업추진 당해년도 분만 기재

○ 연도말 운영단지현황

(단위 : 백만원)

업종 별	품 목	단지 소재지	단 지 명	대 표 자	참 여 형 태	참 여 호 수	선 정 년 도	연 도 별 지 원 자 금												
								'98까지			'99			2000			합 계			
								계	보 조	융 자	계	보 조	융 자	계	보 조	융 자	계	보 조	융 자	

○연도말 단지별 정리(퇴출)현황

업종 별	품 목	단지 소재지	대 표 자	선 정 년 도	정 리(퇴 출) 년 월 일	퇴 출 사 유 (구 체 적 으 로 기 입)

[별지 제6호 서식]

심사제외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실적 보고

1. 판매장 시설현황

매장별 (매장명)	판매장 소재지			시설규모		사업비				공사 착공일	준공일	매장 개장일
	시·도	시·군	읍·면	부지	건물	계	국고	지방비	자담			
				평		백만원				년월일		

2. 판매실적

○ ○ ○ 판매장

업종별	판매량	판매액	사업비용(관리비)	순손익
계		백만원		
민속공예품				
농산자재				
일반공산품				
섬유직물				
석재				
기타				

* 전시판매장별로 실적을 기입

3. 홍보실적

시·도 (매장)별	홍보매체별 홍보실적					제품판매업체 현황			
	계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계	특산단지	지역 특산물	기타
	회					개소			

[별지 제7호 서식]

심사제외

○○년도 특산단지 사업비 정산보고

(단위 : 천원)

업종별	품목	단지소재지	대표자성명	사업비지원대정산									비고 (준공일자, 검정일자, 수량 등 요점을 기입)		
				합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계	농특용자	자부담	계	농특용자	자부담	계	농특용자	자부담			
합계															

* (주) 상단/하단 구분(상단 : 정산액, 하단 : 예산지원액)하여 기입

※ 아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업정책과(과장 , 사무관 김영준)입니다

1. 목 적

-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지원되는 농업분야의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지원하고 시설·개보수자금과 운영자금을 통합 지원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대출후 사후관리까지 일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경영체가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체의 자율성을 존중
- 대출취급기관이 경영분석을 통하여 대출여부와 대출금액·대출방법을 결정하고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병행
 - 농·축·삼협이 사업수익성·재무구조평가 등 경영분석을 통하여 자금을 대출하고 자금대출후에는 경영실태 점검등 사후관리도 일관 담당
 - 전문적인 경영분석 또는 기술지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의 자체 컨설팅부서 혹은 외부 전문컨설팅기관 활용
-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금지원
 - 시설·개보수자금 및 운영자금을 일괄 지원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필요한 시기에 지원
 - 사업발전단계별로 경영평가를 거쳐 추가지원을 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경영발전 지원
- 2001년에는 농·축산경영자금 중 전업경영체 지원자금인 농기업경영자금, 축산전업경영자금을 농업경영종합자금과 연계 운용
 - 재원조달의 방법은 현행대로 하되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원토록 함으로써 자금지원의 효율성 극대화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 제11조(가족농의 경영안정), 제13조(전업농업인 육성),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제16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4. 2000년도 지원계획

	2000 사업비			2001 사업비		
	계	공공 고차	대출기관 차	계	공공 고차	대출기관 차
합 계	백만원 160,500	128,500	32,000	백만원 210,500	168,500	42,000

※ 원예특작과 축산 등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

※ 참고 : 농기업경영자금 7,000억원(잠정), 축산전업경영자금 2,650억원(잠정)

5.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원예특작·축산분야 재배·생산에 종사중이거나 신규로 종사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소정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해당분야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영체

- 시설·개보수·운영자금 지원

- 농기업경영자금, 축산전업경영자금 연계운용에 따른 지원대상(시설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쌀분야 : 쌀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원예특작·축산분야 유통·가공·저장사업 : 정책자금(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포함)을 지원받은 시설로 사업중인 농업인, 농업법인

- 경주마 사육 축산농가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업사업자

※ 영농규모, 연령, 영농종사기간과 관련한 제한은 없으며 대출취급기관이 자율적으로 평가기준에 반영

※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1년이상) 제출 대상

- 농업법인, 신청시점 현재 종합자금 신청금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대출 잔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농업인

2) 지원조건

○ 지원자금의 종류

- 원예특작·축산분야 : 시설·개보수자금과 운영자금을 종합 지원
- 기타 분야 : 개보수·운영자금만을 지원

※ 2001년부터는 운영자금만 단독 지원도 가능

○ 지원조건

- 금 리 : 연리 5.0%

- 상환조건 :

- 시설자금 3~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인삼 식재·시설자금은 연근별로 3~5년 거치 일시상환

(*) 원예특작은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축산 및 철골(유리 혹은 경질)온실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개보수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2년 이내 상환

○ 자금용도 : 상세한 것은 「6. 세부사업내용」 참조

- 시설자금 : 생산·재배시설, 저장·유통·가공시설 및 증축자금, 토지매입자금, 사업비 20백만원 이상의 에너지절감시설 등

※ 저장·유통·가공시설은 생산시설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예시] 농가가 생산시설에 부수하여 소형 저온저장고만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지원 가능

※ 토지매입자금은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지원
(세부사항은 부록 : 토지매입자금 지원관련 세부지침 참고)

- ※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 지목상 '답'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택지·도로·댐·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참고2)
 - 농림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재구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 농지이외의 토지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토지에 시설설치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 사료생산기반은 사료포의 경우만 지원
- 개보수자금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및 기계·장비구입에 필요한 자금(축산 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 경과시 추가 시설지원 가능)
 - ※ 번식용 한우암소 및 착유우(한우, 착유우 모두 암송아지, 육성우만 해당)는 고정자산으로 간주하여 개보수자금에 준하여 지원
- 운영자금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 토지임차자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중·장기, 단기자금으로 지원가능
 - ※ 가축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제주도 교잡우 한우대체시에는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0백만원 이상(상한액 없음)
 - ※ 20백만원에 미달하는 소액 시설설치자금(에너지절감시설 포함)은 개보수자금으로 지원가능
 - ※ 토지매입자금은 토지가격에 관계없이 평당 35,000원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관인계약서상 실제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관인계약서상 시가가 인접토지와 가격차이가 클 경우에는 대출기관에서 평가하여 하향 조정 가능
 - 규모한도 : 농지는 300평 이상(시설용 농지는 100평이상)

나. 사업추진체계

- 1) 대출취급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2) 농업경영종합자금취급사무소(이하 “취급사무소”)
 - 농협 시·군 지부등 중앙회 소속 각급 사무소
 - 농협중앙회장이 지정한 지역농·축협, 품목별·업종별 조합(이하 회원조합)
 - ※ 각 취급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원예특작·축산을 구분하지 않고 대출업무를 취급함
 - ※ 대출취급승인을 얻은 회원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 및 해당 조합에서 수시로 별도 공고하며 각사무소에는 「농업경영종합자금취급사무소」라는 표지를 부착
- 3) 취급자금
 - 농업경영종합자금, 농기업경영자금은 원칙적으로 전분야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축산전업경영자금은 축산분야에만 지원
- 4) 자금운용부서 : 농림부 농업정책과(02-503-7261)
- 5)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02) 500-2683~4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02) 500-2685~6
축산국 축산정책과 (02) 500-2688
- 6) 대출기관 연락처
 - 농협중앙회 : 농업금융부 농업경영종합자금추진단 (02) 397-6533~39
 - 시·도지역본부 : 정책자금 담당과
 - 시·군지부 : 농업금융 담당과
 - 회원조합(별도 공시) : 정책자금 담당자

다. 자금지원결정

1) 사업신청

- 사업희망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취급사무소에 신청
 - 취급사무소가 아닌 농·축·삼협은 신청서류를 해당 취급사무소로 이첩
 -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등은 취급사무소에서 안내하되 행정·지도기관에도 비치·안내하여 농업인 편의 도모
 - ※ 사후관리 및 점검·평가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신청이나 대출약정체결시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2) 자금지원결정

- 종합자금취급사무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수익성 등 경영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하여 자금지원 결정
 - 농·축·삼협은 사전에 지역농업발전계획이나 지역특화시책, 권장품목 등 종합자금제 실시에 대해 시·군과 사전 협의
 - 사업계획서에 대한 대출적격여부, 대출금액 및 대출방법을 결정한 후 인허가 등 행정사항, 기술검토사항 기타 해당 경영체의 평판·신망 등에 관하여 및 해당 시·군의 의견을 요청
 - ※ 운영자금이나 20백만원미만의 개보수자금 신청의 경우는 시·군 의견조회를 하지 않음
- 취급사무소는 종합자금 지원상황을 수시로 해당 시·군청에 통지(서식1)
 - 시·군청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존 정책자금지원상황과 사업취소, 추가지원 등 변경사항을 농·축·삼협에 통지

3)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심사시에는 이 지침과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내용과 사업타당성을 검토 분석(재무·경영평가 포함)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
- 토지매입자금의 경우는 전체 사업계획에 비추어 토지매입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시장·군수의 의견을 청취

< 중점평가 항목 >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 신용평점 평가시 우대 혹은 가점 부여 고려사항 >

-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가입농가
 - 친환경농산물 표시농가(품질인증 등)
 - 신지식농업인, 새농민상 수상자
 - 가축질병예방활동 참여 우수농가
 - 품질개선노력 : 규격돈생산, 거세축생산, 종축등록생산, 우수축출하, 1등급 원유생산 등
 - 기타 : 집유일원화 참여, 축산분뇨자원화 처리 등
- 사업신청자가 희망하거나, 대상품목(축종) 또는 경영기술등이 농·축·삼협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신청자와 협의하여 농촌지도기관이나 기타 전문기관의 경영컨설팅을 받도록 함
 -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탈락사유를 설명하고 보완사항이나 추가준비사항 등을 안내 및 지도
- 농업기술센터, 도 농업기술원, 기타 농업기술관련 정부연구소는 농·축·삼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경영능력 및 사업계획서상의 기술사항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를 제공

〈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추진상황 〉

- 농가경영컨설팅운영지원사업(지도계통 컨설팅, 농촌진흥청 주관)
 - 157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초컨설팅팀과 9개 도농업기술원의 광역컨설팅팀 운영중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민간컨설팅, 농림부·9개도 주관)
 - 2001년 예산 : 국고·지방비 20억원, 자부담 50%
- 농림부, 농촌진흥청 및 각 시·도는 소관 컨설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농업인과 일선취급사무소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 각개인·기관·회사별로 전문분야, 컨설팅실적, 주요 경력 등

※ 2001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기업경영자금, 축산전업경영자금과 관련하여 기존에 대출받은 경영체가 재대출이나 대환을 통해 자금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 대출에 한하여 「농업경영종합자금세부시행지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존의 「2000년도 농기업경영자금대출업무방법」, 「2000년 축산전업경영자금세부집행계획」에 따라 심사함

라. 자금대출

- 농업경영종합자금운용규정,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등 정책여신관련규정과 각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규정에 따라 자금대출
- 사업대상자가 소요하는 시기 및 금액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출
- 이자는 1년 후취원칙

마. 자금운용방법

- 농업경영종합자금 및 농기업경영자금, 축산전업경영자금의 자금운용은 지역별, 취급사무소별, 품목·축종별 사전 배정을 배제하고 대출심사과정을 통해 사업성있는 자금수요가 확인될 경우 수시로 한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참고1 「농업경영종합자금의 자금운용방식」)

- 자금용도(시설·개보수·운영자금)와 관련하여 각 자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해야 함
 - 농업경영종합자금 : 시설자금 우선으로 지원
 - 농기업경영자금, 축산전업경영자금 : 개보수·운영자금 우선으로 지원
- ※ 다만 연도중 자금이 소진되어 신규 대출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농림부 승인하에 각자금의 우선 사용 용도를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
- ※ 농협중앙회는 각자금이 자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의 불편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심사체제와 자금별 코드, 통합 코드 등 전산관리시스템을 마련

바. 사업검정과 사업비 정산

- 시설·개보수자금 중 용자지원금의 검정·정산은 농업경영종합자금운용규정에 따름(개보수자금으로 지원하는 가축입식비의 검정·정산시에는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축공제사업에 참여하거나 종축등록을 하는 등 개체 관리에 입각한 증빙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토지매입자금의 정산은 관인계약서와 토지취득관련 납세자료에 의함
- ※ 제주도의 경우 교잡우 한우대체입식시에 축협에서 한우암소에 대해 발급한 매매증명서도 검정·정산의 증빙으로 인정

사.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사유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토지·시설·설비·장비등을 농업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농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부도, 폐업, 사업 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농지가 농지법 제10조에 의한 처분통지를 받은 때
- ※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지원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 시·도지사)의 조사·확인 및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당초 상환조건대로 상환하게 할 수 있음
- ※ 대출금의 회수와 대여금의 반납 및 지원의 제한에 대해서는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름
- ※ 취급사무소는 대출약정체결시에 상기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사유」를 지원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약정서에 첨부해야 함

아.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 종합자금 취급사무소는 세부시행지침이 수립·통보되는 즉시 이를 해당 시·군청 농정담당부서에 통지·송부
- 각 취급사무소는 개별경영체에 관한 채권-채무기록등 금융정보와 거래기록 등 보유정보를 활용한 일상적 사후관리를 기반으로 **연 1회 이상 「경영실태조사」 실시**
- 농협중앙회는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업무추진실태와 관련하여 **매반기별로 역신검사(loan review)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와 신용대표이사에 보고
-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도 농업기술원은 농·축·삼협 지도업무담당부서 및 민간컨설팅전문가들과 협조, 경영체의 경영·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경영지도 추진
 - 특히 농업인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조언과 상담을 강화하고 경영·기술 진단과 처방을 제공
- 농·축·삼협과 행정·지도기관이 각각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분야나 적정투자 규모에 대한 조언, 관련정보 제공, 교육이나 컨설팅 알선 등을 통해 농업인의 사업준비에 조력
 - 행정·지도기관은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등에 전담상담인력을 지정
 - 농·축·삼협과 행정·지도기관의 상담창구에는 서식 7호와 서식 7-1호에 의한 상담기록부를 비치하고 상담결과를 기록

- 시·군은 농·축·삼협의 자금집행실태 등 사업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문제점, 제도개선사항, 민원사항 등을 시·도를 통해 농림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추진실적을 서식 2호 내지 서식 6호에 따라 주기별로 기간 종료후 10일 이내에 농림부와 시·도, 시·군에 보고 또는 통보
 - 2001년 사업정산 결과보고는 2002. 3. 20까지

자. 기 타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축법·농지법·축산법 등 관련법규에 따름
- 정부시책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6. 세부사업내용

- (*) 이 지침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① '99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원예특작 생산유통지원사업, 전업농 육성사업(원예특작)과 ② '98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5개 축종별경쟁력제고사업(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경주마육성 제외)에서 지원하던 사업내용과 유기축산업육성에 필요한 사업은 모두 지원 가능
- (*) 농기계구입이 필요할 시에는 농기계구입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도록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전체 사업의 일부로서 지원(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등 관련 사업이 종합자금제와는 별도로 존치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함)

원에 · 특작분야

가. 지원대상사업(예시)

- 채소 · 화훼
 - 철골온실(유리, 경질판), 파이프비닐온실, 양액재배시설, 예냉시설, 조직배양시설, 선별처리장, 저온처리시설등 시설장비
 - 발정지, 관수시설, 반출로개설 및 보수, 비가림재배시설, 망사육묘장, 건조시설 등
 - 관리기, 방제기, 선별기, 절화선별결속기, 저온수송차량등 기계장비
- 과 수
 - 과원조성(키낮은밀식사과원조성), 부직포, 비가림시설, 방조망설치 등
 - ※ 과수신규 식재지원은 키낮은밀식사과원에 한함
- 특 작
 - 버섯 : 첨단재배시설, 균상재배시설, 저온저장고, 종균 · 배지생산 시설, 냉동운반차량 등
 - 생약 : 생약조제시설, 육묘포설치,재배시설,집하장(또는 판매장, 저온저장고) 등 등
 - 차 : 제다시설, 다원조성, 생산기반조성 등
 - 잠업 : 병발조성(묘목대, 관정), 생력재배기자재(병수확기등), 양잠 산물가공기자재(건조기 등)
 - 인삼 : 인삼생산에 소요되는 식재자금 지원, 우량묘삼 생산, 토양 개량사업 등 시설기자재·영농기반 현대화사업지원
 - 기타 : 지역특산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 등

나.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저온저장시설은 50평 미만 규모만 지원
 - ※ 대형 저온저장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을 활용
- 이 사업과 관련하여 논에 벼이외의 타작물재배 및 시설설치 지양
 - 대구획경지재정리지역은 사업지역에서 제외
 - 농업진흥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지원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허용
- 농기계가격은 생산업체가 농림부에 신고한 형식별 가격기준을 적용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가격” 참조
- 생산시설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생산시설(기존 시설 포함)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예) 집하장, 수송차량 등을 별개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음
- 하우스병 예방등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을 위하여 온실부근에 일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관리실 또는 작업장 설치 권장
- ※ 시설원예분야의 시설 설계, 시공업체 선정, 시공 및 공사감리에 관해서는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에 따름

축산분야

가. 지원대상사업

- 한육우·낙농·양돈·양계·기타 축산법 제2조와 축산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짐승·가금, 유기축산업 등의 기반조성, 사육시설 및 장비 등. 다만, 「개」의 경우는 「진도견」을 말함(말의 경우는 개보수·운영자금만 지원)
 - 기반시설 : 진입로, 목로, 용수, 전기시설 등
 - 사육시설 : 축사, 창고, 관리사, 자동급이급수, 착유시설, 사일로, 운동장 비가림시설 등
 - 기계장비 : 우형기, 선별기, 조사료 생산장비, 사료분쇄기, 원유분석장비, 축산분뇨처리장비(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기계·장비는 제외) 등

나.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생산시설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생산시설(기존 시설 포함)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예) 집하장, 수송차량 등을 별개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음
- 팔당특별대책지역등 상수원 수질보전구역에는 축사등 사육시설의 신규지원 불가

7. 사업비단가 참고자료

- 농림부 승인을 받아 농협중앙회 세부시행지침에서 정함

<서식1호>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현황

(2001. . 현재, 취급사무소명)

(단위 : 백만원)

법인명 (농장명)	대표자 (연령)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총사업비		
			품목 (축종)	사업 규모	중점추진 사업내용	착수 일자	종료 일자		계	용자	자부담
()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계			
()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계			
()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계			
합 계	개 소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계			
								지원누계			

우리 사무소의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현황을 위와 같이 통보드리니, 종합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으로 지원대상자들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군수) 귀하

- (주) 1. 사업추진개요 : 종합자금지원을 통한 대상자의 향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기재
 2. 중점추진내용 : 종합자금 사업내용중 대상자의 중점추진 사항을 기재
 3. 지원누계 : 종합자금 대출잔액을 기재. 신규 지원인 경우는 기재하지 않음
 4. 통보시기 : 취급사무소에서 지원대상자 확정(변경·포함)시 수시 통보

<서식2호>

지역별 종합자금 용자지원현황

(기간, 농협중앙회)

(단위 : 백만원)

지 역			용자금지원		용 도 별			채권보전형태별		
시·도	시·군	취급사무소	건수	금액	시설	개보수	운영	신용대출	자산담보	보증서
		소계(1)								
		비율	100.0	100.0						
		소계(n)								
		비율	100.0	100.0						
		⋮	⋮	⋮	⋮	⋮	⋮	⋮	⋮	⋮
		소 계 (1+⋯+n)								
		비 율	100.0	100.0						
		⋮	⋮	⋮	⋮	⋮	⋮	⋮	⋮	⋮
		전국 합계								
		비 율	100.0	100.0						

(주) 1. 농협중앙회는 농림부 자금운용부서에 보고하고 계통사무소를 통해 각 시·도, 시·군에 통보하며, 각 계통사무소는 이를 해당 시·도 및 시·군으로 통보

2. 보고주기 : 분기별

<서식3호>

품목(축종)별 종합자금 용자지원현황

(기간, 농협중앙회)

(단위 : 백만원)

지역	품목(축종)	용자금지원		경영형태별				자금용도별		
		건수	금액	개인		법인		시설	개보수	운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계(1)									
	비율	100.0	100.0							
	소계(n)									
	비율	100.0	100.0							
	⋮	⋮	⋮	⋮	⋮	⋮	⋮	⋮	⋮	⋮
소계	(1+⋯+n)									
비율		100.0	100.0							
⋮	⋮	⋮	⋮	⋮	⋮	⋮	⋮	⋮	⋮	⋮
⋮	⋮	⋮	⋮	⋮	⋮	⋮	⋮	⋮	⋮	⋮
전국 합계										
비율		100.0	100.0							

- (주) 1. 농협중앙회는 농림부 자금운용부서에 보고하고 계통사무소를 통해 각 시·도에 통보
 2. 품목 : 과실, 채소, 화훼, 특작으로 구분하고 시설과 노지를 추가 구분
 - 특작은 「인삼」, 「버섯」, 「약용작물」, 「차」, 「잠업」, 「기타특작」으로 구분
 - 과실·화훼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부속명세서로 제시(서식은 위 서식을 준용)
 3. 축종 : 한우, 젓소, 돼지, 닭, 기타 가축으로 구분
 - 한우, 돼지는 「비육」, 「번식」으로, 닭은 「육계」, 「산란계」로 구분
 - 기타 가축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부속명세서로 제시(서식은 위 서식을 준용)
 4. 보고주기 : 월별

<서식4호>

지역별 사업비투입내역

(농협중앙회)

(단위 : 백만원)

지역			사업비합계				자부담				용자지원			
시·도	시·군	취급사무소	계	시설	개보수	운영	계	시설	개보수	운영	계	시설	개보수	운영
		소계(1)												
		비율	A	A1	A2	A3	B	B1	B2	B3	C	C1	C2	C3
		소계(n)												
		비율												
		⋮	⋮				⋮				⋮			
		⋮	⋮				⋮				⋮			
		⋮	⋮				⋮				⋮			
시·도소계	(1+⋯+n)													
		비율												
		⋮	⋮				⋮				⋮			
		⋮	⋮				⋮				⋮			
전국합계														
		비율												

- (주) 1. 농협중앙회는 농림부 자금운용부서에 보고하고 계통사무소를 통해 각시·도에도 통보
 2. 비율계산 : $A=B+C=100(\%)$, $A= A1+A2+A3=100\%$, $B=B1+B2+B3$, $C=C1+C2+C3$
 3. 보고주기 : 분기별. 매보고시마다 누계기준으로 부속보고서 첨부

<서식5호>

품목별 사업비 투입내역

(농협중앙회)

품목 (축종)	사업비합계				자부담(백만원)				용자지원(백만원)			
	계 (비율)	시설	개보수	운영	계 (비율)	시설	개보수	운영	계 (비율)	시설	개보수	운영
	A	A1	A2	A3	B	B1	B2	B3	C	C1	C2	C3
합 계												

(주) 1. 품목 : 과실, 채소, 화훼, 특작으로 구분

- 특작은 「인삼」, 「버섯」, 「약용작물」, 「차」, 「잡업」, 「기타특작」으로 구분

2. 축종 : 한우, 젓소, 돼지, 닭, 기타 가축으로 구분

3. 농협중앙회는 농림부 자금운용부서에 보고하고 계통사무소를 통해 각시·도에도 통보

4. 비율계산 : $A=B+C=100(\%)$, $A= A1+A2+A3=100\%$, $B=B1+B2+B3$, $C=C1+C2+C3$

5. 보고주기 : 월별. 매보고시마다 누계기준으로 부속보고서 첨부

<서식6호>

종합자금제사업 정산실적 보고

(농협중앙회)

(단위 : 천원)

품 목 중 축	성 명 (법인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세 부 사업명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지 원 계 획	집 행 실 적 (정산)	차 년 도 이 월 액	불 용 또 는 미 집 행	착 공 일	준 공 일
합계					%						

- (주) 1.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 대비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ha, 종, 평 등으로 기재
2. “세부사업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유리온실, 파이프비닐온실, 예냉시설 등을 기재
3.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4.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주체별(개별농가, 농업법인)로 위 양식에 맞추어 세부정산실적을 별지로 작성, 첨부
5. 농림부 자금운용부서에 보고
6. 제출기한 : 사업연도 익년 3.20일까지

<서식7호>

종합자금지원 상담기록부(건별)

연 번	2000 -
일 자	년 월 일
상 담 자	
상담장소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상 담 방 법	내방, 방문 전화, 서면	
주 소				전 화		
종 사 분 야	농업소득 규 모	백만원	영 농 경 력	년	경 영 규 모	
경 영 특 별 방 법	부 채 규 모	백만원	총자산의 추정가액	백만원	유동자산 (현금·예금)	백만원
문 의 내 용			상 담 내 용			
회 망 사업분야		투 자 계 획 (백만원)	종합자금	종합자금 신청계획 (백만원)	시 자 개 보 자 운 자	설 금 수 영 금
			기타융자			
			자부담			
			합 계			
사업준비 자문내용						
상 담 자 의 견						
상 담 후 조치사항						

- (주) 1. 각 상담창구에 상시 비치
 2. 상담자의견 : 사업의 타당성, 투자규모의 적정성, 사업준비정도, 향후 지원 혹은 추가상담, 투자유도방향, 타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지원방향 등을 간략히 서술

<서식7-1호>

종합자금지원 상담기록부(총괄)

연번	일 자	성 명	전 화	투자계획(백만원)						상담내용
				합 계	자부담	기 타 용 자	중 합 자 금			
							시설	개보수	운영	
2000										
소계		명								

(주) 각 상담창구에 상시 비치

참고 1 : 농업경영종합자금의 자금운용방식

1. 농업경영종합자금의 운용원칙

- 종합자금은 기존 농림사업자금의 일반적 운용방식과 달리 지역별·품목별·용도별·취급사무소별로 자금을 사전에 배분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하나의 자금풀(pool)로 운용함
 - 지역별 배분과 관련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 단위로 자금을 배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시·군이나 점포단위로 자금을 배분하지 않음
 - 시·도단위로 자금(용자한도액)을 배분한 경우에도 시·도간 자금과부족이 있을 경우 현실적인 자금수요에 따라 중앙회가 직권으로 즉시 자금을 전배하여 자금과부족을 해소하게 됨
- 각 취급사무소의 대출창구에서 농업인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면 해당 취급사무소의 한도배정 신청에 따라 자금을 신속적으로 공급함

2. 실무추진상 유의사항

- 이상의 대원칙 하에서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현장 농업인과 행정·금융기관 관계자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함
 - 특정 시·군의 농업인들이 활용가능한 자금이 한정되거나 일정한 몫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 각 지역의 사업성있는 자금수요와 행정·금융기관의 홍보·교육을 포함한 업무추진체계의 內實度에 따라 지역별 차등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99년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전체 34개 점포별 대출액은 최고 14억원에서 최저 1억원까지 다양하였고 2000년에도 마찬가지임

○ 이러한 자금운용방식 하에서,

- 농업인은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갖춘 사업계획(연차별 계획도 가능)을 수립하는 외에 대출신청 이전에 인허가사항이나 기술·판로 등 필요한 사업준비를 하는 데 역점을 두고,
- 금융기관은 주어진 대출심사모델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심사하여 자기 책임하에 대출하되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향후 사업준비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며,
- 행정기관은 농업인의 사업추진능력을 배양하고 인프라 정비 등 지역고유사업을 통해 유리한 사업여건을 조성하며 인허가사항, 기술검토, 컨설팅지원 등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 결론적으로 종합자금의 자금운용방식은 경직적인 나눠먹기식 자금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지역간·취급사무소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 지역별 자금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음 세가지임

- 자기 책임하에 수익성있는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제시할 수 있는 유능한 농업인
- 업무관련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능숙하고 자신감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유능한 대출심사전문가
- 행정·지도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3. 몇가지 오해에 대한 설명

□ 농협중앙회의 경우 자금운용의 효율 측면에서 시·도별로 용자한도를 배정하고 있으나

○ 이는 모든 취급사무소를 중앙회가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금출납업무의 일부를 지역본부에 위임한 것으로 확정된 자금공급액이 아니며 자금과부족시 즉각 전배가 가능함

- 농협중앙회의 경우 각지부의 업적평가를 위한 기준으로서 일정 금액의 “업무추진목표”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 “목표”가 지역별 자금공급 한도액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음
 - 이는 농협중앙회 내부의 인사 내지 조직·업무관리상의 지표에 불과하며 각 지역 농업인이 활용가능한 자금의 한도가 아님
 - 자금지원은 어디까지나 대출창구에서 결정되는 사업성있는 자금수요를 기준으로 하여 신축적으로 이루어지게 됨
- 종합자금은 “선착순” 방식의 자금지원이라는 인식이 있으나
 - 대출순서와 자금신청순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종합자금은 선착순 방식과는 다름
 - 대규모 대출과 소액 대출은 심사기간·절차에 차이가 있고 동일 금액이라도 사업내용이나 농가 여건에 따라 대출대기시간에 차이가 나게 되며 먼저 신청하더라도 사업성이 없다면 자금지원은 불가능함

4. 향후 추진계획

- 2001년부터는 종합자금 뿐만 아니라 농기업경영자금, 축산전업경영자금 등 종합자금으로 통합될 여타 자금도 자금풀(pool) 방식에 따라 지역별·사무소별 구분없이 자금을 운용하게 됨

참고 2 : 지원대상제외토지 및 관련 법령

〈 지원대상제외토지(예시) 〉

- 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내 토지(다만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농촌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농림부고시제1995-86호에 의한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토지
-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내의 토지
- ④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내의 토지
- 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내의 토지
- ⑥ 농지 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허가승인·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간주)되는 지역내의 토지 (다만, 축사, 간이양축시설, 건조/보관시설, 잠실, 애누에사육장, 잎담배건조실, 농기자재보관시설 등 종합자금지원대상인 농업용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는 지원가능)
- ⑦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

〈 관련 법령(예시) 〉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27조(공공시설 입지승인)
- 同法 제21조의2(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고시)
2. 건축법 제8조 내지 제9조(건축허가·신고)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산업단지실시계획 승인)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3항 및 제5항(공장설립승인)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사업계획 승인)
6.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7.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8. 관광진흥법 제15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55조(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계획 승인, 관광숙박업 등 사업계획 승인)
9. 자연공원법 제10조제2항, 제47조(공원계획결정 또는 변경결정)
- 10.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4항,제6조(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
- 11.골재채취법 제23조(골재채취 허가)
- 12.도로법 제25조의2의제1항 및 제2항(도로구역의 결정·변경)
- 1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 및 2항(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 14.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제7조(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15.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 16.청소년기본법 제38조의제1항 및 제3항, 제45조의제1항 및 제2항(청소년수련 시설허가 및 조성계획 승인)
- 17.과학관육성법 제7조, 제8조(과학관설립계획 승인)
- 18.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 제11조, 제13조(과학관설립계획승인)
- 19.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 20.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7조제1항 및 제3항(정주생활권개발계획의 승인)
- 21.중소기업진흥법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 및 제2항(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 22.광업법 제47조의2의제1항 및 제2항(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 23.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 제3항 및 제4조(송유관시설 등 공사계획 인가)
- 24.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집단에너지공급시설 설치 공사계획 승인)
- 25.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의제2항 및 3(가스사업실시계획 승인)
- 26.하수도법 제13조의2제1항 및 2항(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마을하수도 사업계획서 또는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 2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개발촉진지구에서의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 28.수도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일반수도사업인가)
- 29.한국토지공사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토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30.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제3항, 제18조제1항(실시계획의 승인)
- 31.도시철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획 승인)
- 32.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
- 33.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화물터미널공사 시행인가)
- 34.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2항, 제37조제1항(화물터미널공사 시행인가)
- 35.항공법 제96조제1항 및 제3항(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 36.항만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항만공사 시행 및 시행허가)
- 37.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도로정비공사의 시행 및 시행허가)
- 38.농수산물가공산업육선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제4항 및 제6항(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설치 사업계획 승인)
- 39.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결정·승인)
- 40.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민간투자
사업실시계획 승인)
- 41.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1항 및 제3항(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생활환경정비구역, 농어촌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
지구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 42.소하천정비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소하천정비시행계획 승인 및 소하천
공사 허가)
- 43.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자전거도로공사시행
및 공사시행의 승인)
- 44.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5조, 제6조(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의 확정)
- 45.제주도개발특별법 제9조, 제10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 46.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개발사업의 시행승인)
- 47.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 제18조 및 제33조, 제34조(시범도매센터 및 공
동집배송단지 지정) 등

Ⅱ. 기 술 개 발

여 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친환경농업과(과장 박종서, 농업사무관 박백화)입니다.

1. 목 적

- 농업인들이 영농현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장애로기술의 개발과 생물, 물리, 화학, 기계, 전자, 생명공학, 환경공학 등을 응용하여 농림업에 적용되는 첨단기술을 개발
- 이미 다른 분야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을 농림업 분야에 접목시켜 농림축산물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여 시장개방화에 대응한 대외경쟁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인들이 영농·영림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현장애로기술의 개발과 타 산업의 첨단기술을 농림업 분야에 접목시켜 품종개량, 시설자동화, 친환경농업, 가공·유통분야에서 기술도약의 계기를 마련
- 지식농업기반을 확충할 창조적 기술개발과제 발굴 및 개발 지원
-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산업화 촉진
- 과제별로 연구기관, 대학, 농업인(또는 농업인단체), 기업체 등으로 구성된 산·학·관·연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추진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농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총투자 계 획	투 자 계 획				
		'94~'98	'99	'00	'01	'02~'04
계	4,150	2,050	330	315	382	1,073
첨 단 기 술 개 발	2,438	1,027	225	205	256	725
현 장 애 로 기 술 개 발	1,552	1,003	85	90	101	273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	160	20	20	20	25	75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배 경

- WTO체제 출범과 더불어 농림업도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됨
- 각국의 기술개발에 대한 역량집중과 국가간 기술이전 규제강화로 우리 농림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독자적 기술개발이 요구됨
- 21세기 선진농업 실현을 위하여 '94~2004 기간 중 농특세를 재원으로 4,150 억원을 투자

나. 사업의 종류

- 첨단기술개발사업
 - 첨단기술개발과제 : 생명공학, 신소재, 전자정보 등 주변 첨단기술을 응용하여 농림업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 제고와 산업화 촉진 기술 개발
 - 기획연구과제 : 국가차원의 정책목표 달성 및 당면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절실하게 필요한 기술을 대상과제로 선정하여 과제별 일관 기술개발
-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 영농·영림현장중심의 기술개발로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
 - 농업인개발과제 : 지역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로 농업용 기계·자재개발,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특수농법 등
- 벤처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 벤처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통한 농림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다. 지원대상

- 첨단기술개발과제, 기획연구과제,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 대학, 연구·지도기관, 산업체, 농민(단체)등 산·학·관·연 협동연구팀
-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술개발 능력(연구인력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창업자
- 농업인개발과제
 - 농업인(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동연구팀 구성)

라.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 : 국고출연
- 기업참여시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부담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
- ※ 벤처형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를 주관하는 중소기업은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

마. 사업별 지원규모

사업별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첨단기술개발사업		
- 첨단기술개발과제	3년 이내 (필요시 1~2년 추가지원)	5억 이내
- 기획연구과제	5년 이내 (필요시 1~3년 추가지원)	10억 이내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3년 이내	2억 이내
- 농업인개발과제	2년 이내	3천만원 이내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3년 이내	3억 이내

※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 기준임

바. 과제신청방법

- 첨단기술개발과제, 기획연구과제,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벤처형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
 - 소정의 양식에 의거 과제신청서를 작성, 공모기간 내에 농림기술관리센터에 제출
- 농업인개발과제
 - 소정의 양식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작성, 공모기간 내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사. 2001년도 사업비 : 382억원

- 첨단기술개발사업 : 256억원
-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 101억원
-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 25억원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농림기술관리센터)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친환경농업과(02-503-7284~5)

- 농림기술관리센터(관리전문기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18 동화빌딩 5층 (우편번호 134-010)
 - 전화 : 02-482-1500 (FAX : 02-478-1173)

다. 과제공모

- 첨단기술개발과제
 - 생명공학, 자동제어기술 등 첨단기술이 포함된 기술개발
 - 기술개발방식이 타 분야의 첨단기술 등을 응용한 선진화 기술
 - 산업화 및 실용화가 가능한 신기술
 - 특히 산업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구체적인 산업화·실용화 방안과 특허 획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획연구과제
 - 국가차원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일관 기술
 - 과제지정방식(Top-down)에 의하여 정책과제를 공모하고 기술개발 능력이 가장 우수한 연구팀 선정)
-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 농림기술개발사업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산업체 기술로서 신규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실용성이 높은 기술 등
 - 특히 하이텍기술, 수출산업화가 기대되는 기술, 수입대체 효과가 큰 기술은 우선적으로 지원
-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 영농·영림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 농림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 지역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한 기술
- 농업인개발과제
 -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를 기할 수 있는 농업인 실용기술
 - 농업용 기계·자재 개발
 -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특수농법 등
 - 농업인(단체)이 직접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는 실용기술
 -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기술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기술개발연구추진 : 주관연구기관(총괄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선정·지원되는 당해과제의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당해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수행 능력이 있고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 기관이어야 하며, **총괄책임연구자**는 당해과제의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로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어야 함.

- 진도관리(매반기별), 연차평가(매년 협약 종료시점) 및 최종평가(개발완료 시점) 등 실시 : 농림기술관리센터, 농업과학기술정책심의회
- 연구수행미진, 연구결과 불량정도에 따라 '협약해약', '연구비 회수' 등 제재 조치
- 기술개발성과 보급 및 활용 : 농림부, 농진청 및 산림청, 농림기술관리센터
-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

나. 기타사항

- 농림기술개발사업실시요령('00.3.2. 농림부훈령 제1,021호)에 의거 추진
- ※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기술관리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arpc.re.kr>)에서 볼 수 있음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첨단기술개발과제, 기획연구과제,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현장애로 기술개발과제 : 농림기술관리센터
- 농업인개발과제 :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첨단기술개발과제, 기획연구과제,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 대학, 연구·지도기관, 산업체, 농업인(단체) 등으로 산·학·관·연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신청
-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술개발 능력(연구인력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창업자
- 농업인개발과제
 - 기술개발에 참여코자 하는 농업인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동연구팀을 구성,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협동연구팀에 참여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해당과제의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주관연구기관이 됨

<주관연구기관의 자격요건>

- 1)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에 의한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연구전담 요원 5인 이상을 늘 확보하면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
- 2) 국·공립 연구기관 및 지도기관
- 3) 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
-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6)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7)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8)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으로서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전담요원을 5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
- 9)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자연계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영리법인은 10인)을 늘 확보하면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다. 신청절차

- 과제공모시 『농림기술개발연구과제신청서』를 접수기간 내에 농림기술관리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rpc.re.kr>)에 제출·접수
다만, 농업인개발과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라. 과제공모기간

- 공고 시기
 - 첨단기술·현장애로기술·벤처형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 2001년 11월 중
 - 기획연구과제 : 2001년 9월 중
 - 농업인개발과제 : 2001년 9월 중

※ 과제공모 : 관보, 농림부·농림기술관리센터 홈페이지, 신문 등에 공고 또는 게시
농업인개발과제는 농진청 홈페이지, 농림축산업 관련전문지에 게재

○ 접수 기간

- 첨단기술·현장애로기술·벤처형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 2002년 2월 중
- 기획연구과제 : 2001년 11월 중
- 농업인개발과제 : 2001년 10월 중

마. 구비서류

- 『농림기술개발연구과제신청서』 1부(농업인개발과제는 4부)
- 기업참여시 『농림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및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농업인(단체)의 참여시 『농림기술개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바.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연구개발수행의 필요성 및 시의성
- 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연구개발목표의 실현 가능성
- 개발대상기술의 신규성, 첨단성, 복합성 및 기반성
- 연구책임자연구팀의 우수성, 연구개발비 규모, 연구기관 및 연구수행방법의 적정성
- 기대되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 등이 우수한 과제

(2) 우선순위

- 고부가가치, 수출촉진,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
- 실용화, 산업화가 가능하여 영농현장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
- ※ 산업체, 농업인(단체), 지도기관 참여과제는 과제 선정·평가지 우대배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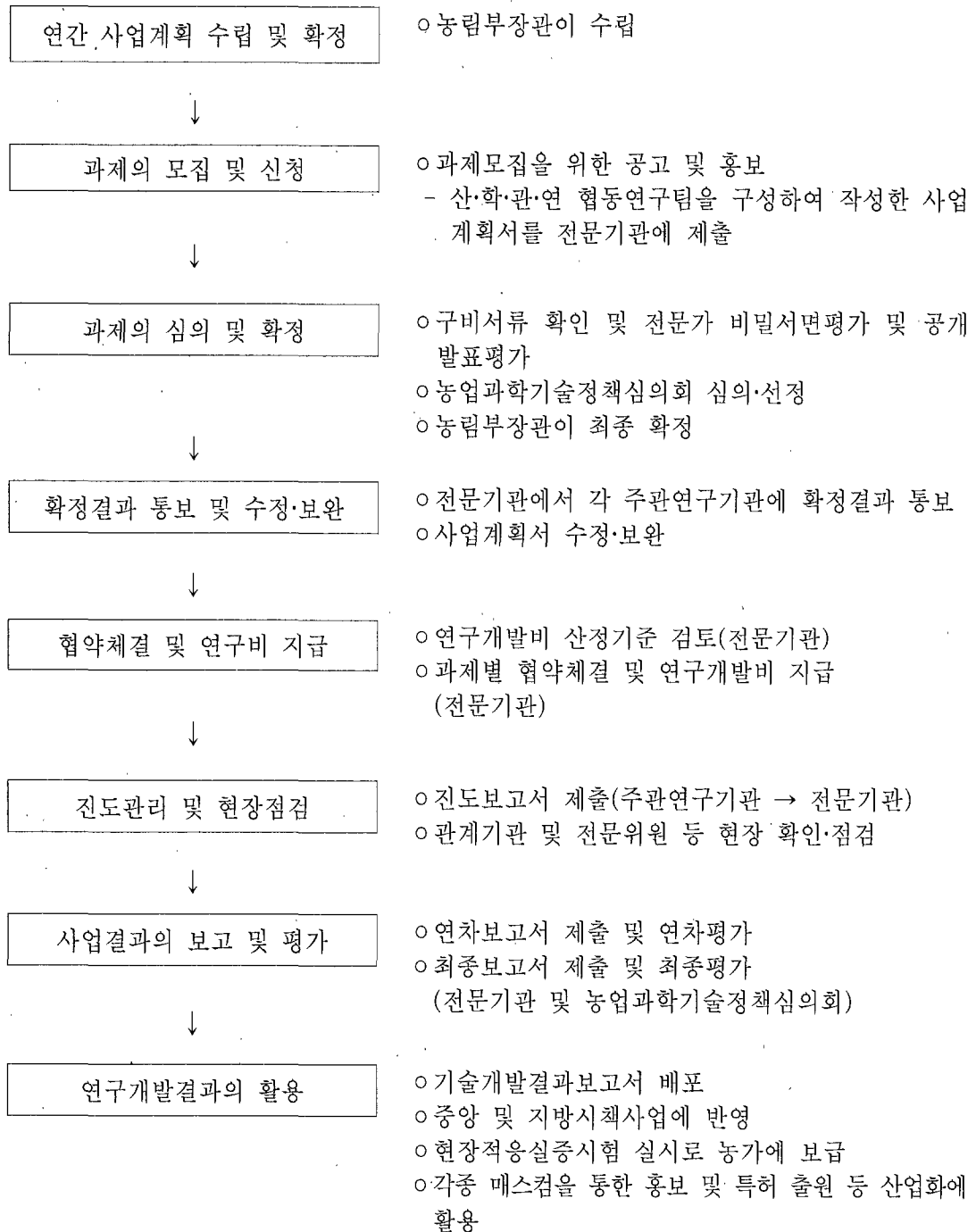
(3) 과제 평가방법 : 3단계 평가

- 1단계 : 실무위원회 사전검토
- 2단계 : 비밀서면평가
- 3단계 : 공개발표평가

(4) 과제의 심의 및 확정

- 농업과학기술정책심의회 심의·선정
- 농림부장관 최종확정

(5) 사업추진체계



I.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과장 김화남, 생활지도관 박영자, 생활지도사 심미옥)입니다.

1. 목 적

-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농업인의 농작업 피로의 조기회복과 건강 증진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를 쉽게 회복할 수 있는 마을단위 시설 설치
- 농작업 피로회복시설 설치 및 건강관리기구 비치 등 건강생활환경 조성
- 시설 및 기구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활용 및 관리 추진
- 농업인들의 피로회복, 정보교환, 교육 등 종합적인 문화 복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농촌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 농업인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6-'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 2003년
사업량		개소 264	60	80	80	154
사업비	계	백만원 10,770	3,000	4,000	4,000	7,700
	보조	5,385	1,500	2,000	2,000	3,850
	지방비	5,385	1,500	2,000	2,000	3,850

5. 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배경

- 과중한 농작업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비닐하우스증 및 농부증 심화
- 농작업 피로를 풀 수 있는 마을단위 피로회복 시설이 필요함
- 농업인의 피로회복과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및 관리능력 부족

(2) 사업기간 : 2001년 1월 ~ 12월

(3) 지원대상 및 조건 : 농촌마을 중

- 농작업 환경이 열악하며, 활용 가능한 주민이 많은 마을
- 시설을 설치·활용하기 좋은 위치에 적정규모의 대지나 건물이 있는 마을
- 마을 지도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주민의 시설 활용 참여 의지가 높은 마을
- 마을내 조직활동이 활발하여 시설 활용시 조직적 뒷받침이 가능한 마을
- 운영비 자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마을기금, 회비, 공동활동수익금 등)
- 설치 후 활용·관리 계획이 타당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마을
- 주변에 쉽게 활용 가능한 피로회복시설(목욕탕, 찜질방, 체력단련센터 등)이 없는 마을

(4) 지원단가 : 개소당 5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5) 지원시설

- 피로회복시설 : 기본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 구비
 - 기본시설 : 건강기구실, 찜질방, 목욕실 등
 - * 찜질방, 목욕실 등의 규모는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치
 - * 가능한한 운영비 절감을 위한 설비 설치(심야전기, 태양열온수기 등)
 - 권장시설 : 식품가공실, 조리실, 노인실, 생활체육시설 또는 쉼터 등
- 피로회복 및 건강관리 기구
 - 농작업 후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기구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의 연령층 요구 등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개소 80	백만원 4,000	2,000	2,000		2,00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기술지원국 생활개선과(031 - 299 - 2680)
- 도 : 농업기술원 생활개선(기술)과·팀
- 시군 자치구 :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기술)팀·담당

다.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 작성

- 본 지침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 및 시군단위 사업추진계획 수립
- 마을단위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교육 및 마을 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

○ 사업대상지역의 변경

- 사업대상지역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지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변경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보고

○ 사업비 집행방법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조금 지급 규정에 의해 마을대표에게 지원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산집행상황 등 사업추진상황을 지도 점검

○ 추진일정

세부내용	추진시기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 추진위원회 구성												
○ 사전 교육 및 계획수립												
○ 사업 추진 및 활용지원												
○ 사업 평가 및 완료보고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사업착수 연도부터 5년간 활용지도 실시
- 설치마을에서는 설치완료 후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 및 기구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시설이 본래의 설치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피로회복 시설 50만원이상 기구	준공일 구입일	7년간 5년간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

나. 보고·기타

-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계획 보고 : 3. 20한(별지 3호 서식)
-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결과 보고 : 6. 20, 9. 20, 12. 20(별지 4호 서식)
- 농업인 건강관리실 현황 카드 제출 : 12. 20(별지 5호 서식)

6. 2002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아래의 여건을 갖춘 농촌마을

- 농작업 환경이 열악하며, 활용 가능한 주민이 많은 마을
- 시설을 설치·활용하기 좋은 위치에 적정규모의 대지나 건물이 있는 마을
- 마을 지도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주민의 시설 활용 참여 의지가 높은 마을
- 마을내 조직활동이 활발하여 시설 활용시 조직적 뒷받침이 가능한 마을
- 운영비 자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마을기금, 회비, 공동활동수익금 등)
- 설치 후 활용·관리 계획이 타당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마을
- 주변에 쉽게 활용 가능한 피로회복시설(목욕탕, 찜질방, 체력단련센터 등)이 없는 마을

다. 신청절차

- 사업 희망마을에서는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신청함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신청자격 항목과 동일함

○ 선정절차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신청마을의 설치여건 및 사업계획서를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 여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설치가 가능한 사업량(예산)을 도 농업기술원 및 특별·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요구하고, 도 농업기술원 및 특별·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청에 예산을 요구함.
- 정부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 시도별로 예산 배분계획이 확정 통지되면, 시도에서는 시군별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통지하고 시군에서는 이에 따라 신청마을의 1년간의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마을을 확정함.

바. 기타사항

- 기본사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 신청서

1. 마을명 :

2. 가구 및 인구수

가구수(호)		성별 인구(명)		연령별 인구(명)			활용가능 인원(명)
농가	비농가	남	여	40세이하	41~60세	61세이상	

3. 조직(학습단체)활동 현황

조직(학습단체)명	참여인원	활동현황	기금(천원)

4. 경지규모 및 주작목

논 면적	밭 면적	비닐하우스 면적	축산규모	주 작 목
ha	ha	ha	두	

5.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복지 및 편의시설까지의 거리(단위:km)

목욕탕	찜질방	헬스센터	보건소	노래방	()

6. 농업노동 환경 및 농작업 부담 정도

위와 같이 2002년도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주소 : (전화:)

성명 : (서명 또는 인)

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계획서

1. 마을명 :
2. 설치장소(주소) :
3. 설치방법(신축, 개축 등) :
4. 설치 시설 및 규모 : 총 평

기본 시설			권장 시설					
건강 기구실	찜질방	목욕실	식품 가공실 (조리실)	노인실	휴식실 (문화 교양실)	옥외 쉼터	옥외 체육 시설	기타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 기타 :

5. 사업비 : 총 백만원(지원 자부담 기타)

- 자부담금 및 기타사업비 확보 계획 :

6. 운영관리계획

- 시설 운영 및 관리비 확보 계획 :
- 전담관리인 확보 계획 :
- 교육 및 운동프로그램 실시 계획 :
- 마을내 건강지도자 양성 계획 :
- 보건소 등의 협력 유치 계획 :

첨부 : 관련서류 각 1부(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계획

마을명	설치장소 및 방법	설치시설 및 규모	사업추진계획(시기를 월(月)로 표시)						운영관리계획					
			추진위원회 구성	사전교육	계획수립	시설설치 및 기구구입		교육 및 활용 지원	평가	운영비 확보 (방법, 천원)	관리인 확보 (명)	교육 및 운동 프로그램 (회)	건강 지도자 양성 (명)	유관기관 협력 유치 (회)
						착공	준공							

* A4 횡으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실적 (0/4분기)

마을명	주요시설	사업 추진 실적(○, ×)							사업비 집행 실적(백만원)				
		추진위원회 구성	사전교육	계획수립	시설설치 및 기구구입		교육 및 활용 지원	평가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기타 (행정 지원 등)
					착공	준공							

* A4횡으로 작성, 사업비 집행 실적은 누계 실적 기록, 설치대상 전 마을 보고

<별지 제5호 서식>

연번	도별	번호

2001년 농업인 건강관리실 현황

1. 마을명

--

2. 마을위치도(읍면소재지를 기점으로) 3. 일반사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100%;"></div>	가구수 :	호	인구 :	명	
	- 농가 :	호	- 남자 :	명	
	- 비농가 :	호	- 여자 :	명	
				※ 활용인원 :	
	경지면적 :	ha	축산규모 :		
- 논 :	ha	- 소 :	두		
- 밭 :	ha	- 돼지 :	두		
- 하우스 :	ha	- () :			
○ 시군 소재지에서의 거리		km	주작목 :		

4.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복지 및 편의시설까지의 거리(단위:km)

목욕탕	찜질방	헬스센터	보건소	노래방		

5. 조직(학습단체) 현황

조직(학습단체)명	참여인원	주요활동현황	기금(천원)

6. 설치 현황

크기 (평)	시설설치방법		완공일	사업비(백만원)				
	신축	개축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기타 (행정지원)

7. 시설 및 기구내역

시설		기구	
구분	규모(평)	품명	수량

8. 평면도

--

9. 운영관리위원회 구성 및 활동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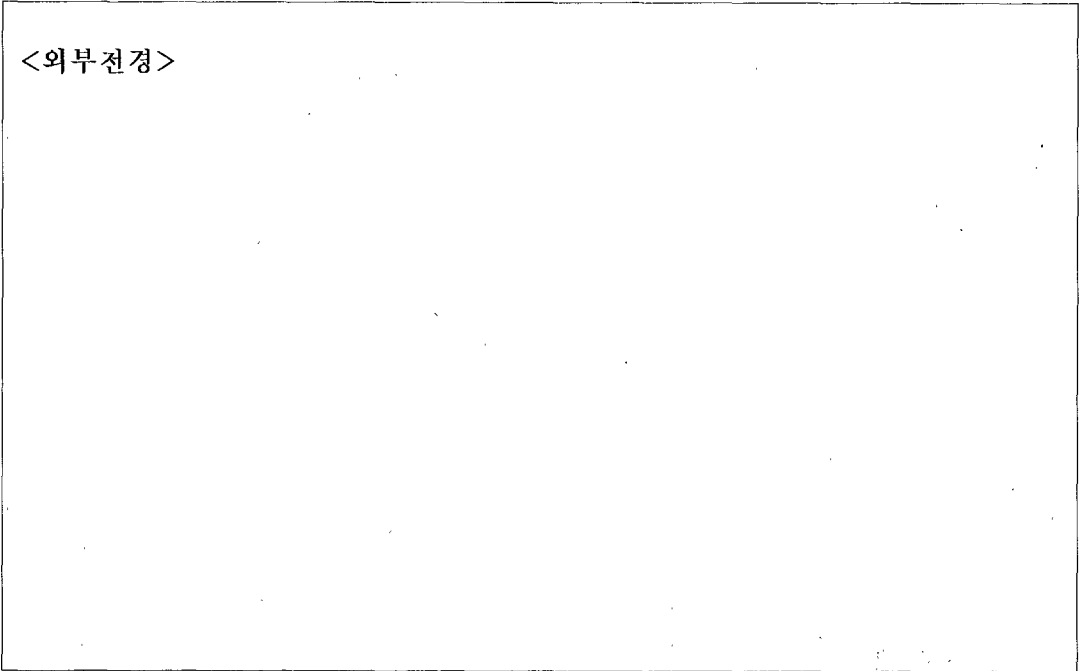
운영관리 위원회 구성				활동계획
소속 및 직책	성명	연령	전화번호	

10. 운영·관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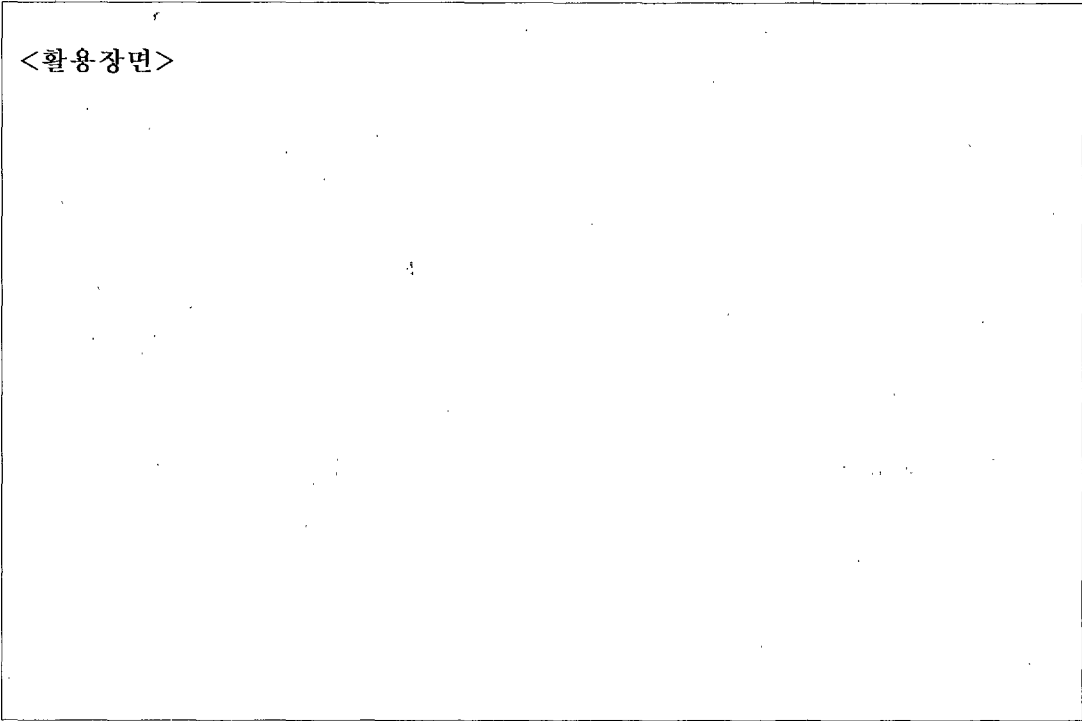
시설 개방방법	운영비 확보	전담관리인 확보	교육 및 운동 프로그램 실시	건강지도자 양성	유관기관 협력유치	마을 행사 등 기타 활용

11. 사진

<외부전경>



<활용장면>



II. 지역특화시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원예축산과(과장 정규근, 지도관 정길영)입니다

1. 목 적

- 시험연구결과 정립된 새기술의 실용화 촉진으로 농가 소득 향상
- 생력고품질 생산기술과 협업경영 능력 향상으로 기술집약형 선진농업기술 조기 정착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새로 개발된 기술의 종합적인 투입으로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
- 작목입식 후 생산, 가공, 판매 등을 충분히 반영한 계획 수립 추진
- 에너지절약 및 부존자원 활용 사업 추진과 기존시설을 보완하는 시범사업 추진 확대
- 협업경영,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 특산물 생산규모 확대 및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농업 육성
- 시범사업장을 농업인 산교육장으로 활용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 제13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0조 2항, 동시행규칙 제13조

4. 연도별 지원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2~'98	'99	2000	2001 (예산안)	2002~ 2004	
사 업 량	2,217	431	551	391	1,173	
사 업 비	계	173,526	34,515	39,490	36,190	108,570
	보 조	32,806	6,903	8,398	7,988	23,964
	용 자	73,209	13,806	15,396	13,876	41,628
	지방비	32,806	6,903	7,998	7,388	22,164
	자부담	34,705	6,903	7,698	6,938	20,814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1) 배 경 : '89년부터 UR대응책으로 사업 시작
- (2) 지원대상자 : 해당 사업별로 재배(사육) 경험이 있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시범사업명	개 소 당		지 원 내 용
	규 모	사업비	
○ 기존시설양액재배	20a	60	양액재배시설(베드시스템), 냉·난방시설, 하우스경보시설, 폐액살균장치 등
○ 시설원예에너지절약	20a	50	
○ 사과저수고밀식과원	1ha	50	자근대묘, 지주, 자동관수 등
○ 과수조류피해방지	2ha	50	골조시설
○ 화훼벤처농업 육성	10천속/일	100	전용콘베어결속기, 저온차량, 부대장비
○ 우리꽃 상품화 시범	10a	50	이동벤치, 관수시설, 치광시설, 자동하우스 등
○ 누에동충하초실증	누에 5~10상자	100	재배실, 냉, 난방시설, 철재잡박, 가슴기 등
○ 환경자동조절버섯생산	균상495m ²	128	환경자동화, 재배사, 균상 등
○ 신품종버섯안전생산	재배사165m ²	40	자동관수, 재배사, 송풍장치, 종균 등
○ 수출규격돈품질향상	규격돈10 천두이상	80	콘테이너돈사, 수송전용차량 등
○ 유희농경지 사료 자원화	소200~300두 사료포20ha	100	트렌치사일로, 조사료공동생산장비 등
○ 한우고급육생산시범	5~10농가 소 200두	300	축사, 조사료생산장비, 인공수정시설 등
○ 육용 재래닭 사육	연간20천수	100	종계, 계사, 급이기 등 사육시설
○ 경비절감형축산분뇨처리	돼지15천두 이상	80	축분교반기, 발효시설 등
○ 산지초지액비시용	초지3ha이상	60	스프링쿨러시설, 전기목책시설 등
○ 가공용감자생산	10ha	50	전용파종기, 수확기, 승용관리기, 저온저장고 등
○ 지역특성화기술개발	-	-	사업내용에 따라 재배 및 사육시설 지원
○ 기술보급활력화지원	-	-	우수기관 사업비 지원

(4) 지원조건

- 지원비율 : 보조 40%(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4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5.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사 업 명	사업 량	개소당 사업비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개소 391	-	백만원 36,191	21,864.6	7,988.2	13,876.4	7,388.2	6,938.2
○ 기존시설 양액재배	40	60	2,400	1,440	480	960	480	480
○ 시설원예에너지절약	60	50	3,000	1,800	600	1,200	600	600
○ 사과저수고밀식과원	30	50	1,500	900	300	600	300	300
○ 과수조류피해방지	24	50	1,200	720	240	480	240	240
○ 화훼벤처농업 육성	10	100	1,000	600	200	400	200	200
○ 우리꽃 상품화 실증	20	50	1,000	600	200	400	200	200
○ 누에동충하초버섯생산	5	100	500	300	100	200	100	100
○ 환경자동조절버섯생산	30	128	3,840	2,304	768	1,536	768	768
○ 신품중버섯류안전생산	30	40	1,200	720	240	480	240	240
○ 한우고급육 생산	5	300	1,500	900	300	600	300	300
○ 유희농경지이용자급사료	15	100	1,500	900	300	600	300	300
○ 육용 재래닭 사육	10	100	1,000	600	200	400	200	200
○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18	80	1,440	864	288	576	288	288
○ 경비절감형 축산분뇨 퇴비화	10	80	800	480	160	320	160	160
○ 산지초지 액비사용법 개선	4	60	240	144	48	96	48	48
○ 고품질가공용감자생산	18	50	900	540	180	360	180	180
○ 지역특성화기술개발시범	49	-	11,671	7,002.6	2,334.2	4,668.4	2,334.2	2,334.2
○ 기술보급활력화지원	13	-	1,500	1,050	1,050	-	450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나.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기술지원국 원예축산과(031-299-2741)
- 도 : 농업기술원
- 시군자치구 : 농업기술센터

다.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신 기술에 대하여 수용능력이 높은 지역 또는 농업인
- 수출농산물 주산지역과 연계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
- 지역농업개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시범사업 참여 의지가 강한 농업인 선정
- 자부담 능력과 융자금 담보능력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유사 보조사업과 중복되는 농업인은 제외

○ 선정절차

-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영농규모, 제반여건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현지조사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정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정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명단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고, 농업기술원장은 타당성 검토 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내용에 따라 지역농업종합개발 차원에서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지구 참여농업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
- 사업추진을 위하여 입식작목의 품목, 시설물 건축, 생산자재 구입, 생산 가공, 판매, 이익금 분배, 운영 등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 3인이상 참여하는 시범사업은 협의회 구성 운영
- 사업포기 등 대상농업인 변경시에는 농업기술원장(특·광역시 농업기술

센터소장)의 승인 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 대상사업에 대한 경제성, 기술의 타당성 등 검토
 - 품목별 생산자 조직과 수시 협의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을 평가
 - 중앙 및 지방단위 기술지원단 운영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비는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지급
 - 자부담금 우선 집행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규정 제4조)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산집행상황 등 사업추진 상황을 지도 점검
 - ※ 기타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교부조건, 융자금 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관계 제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착수 연도부터 3년간 기술지도하여 연차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 하고, 이후 부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책임하에 사후 기술지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 사업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시설을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도 농업기술원장은 시·군별, 단위사업별로 사업추진 결과를 평가 분석 활용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단계별로 사진첩을 비치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 확산
-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부 터	까 지	
0 기존시설양액재배	0 양액재배베드시설 - 냉방시설 0 하우스경보시설	사업추진 연도 "	사업시작 후 3년 3년	사후관리 기간내 처분 금지
0 시설원예에너지절약	0 상,하 이동식 수평커튼 0 지중난방시설	" "	3년 3년	
0 사과저수고밀식과원	0 자동관수시설 0 지주시설	" "	2년 5년	
0 과수조류피해방지	0 골조시설	"	5년	
0 화훼벤처농업 육성	0 결속기 0 저온차량	" "	5년 5년	
0 우리꽃 상품화 실증	0 자동화하우스 0 이동식 베드 0 관수시설	" " "	5년 3년 3년	
0 누에동충하초 버섯생산	0 버섯재배사 0 냉·난방기자재 0 참박 등 기자재	" " "	5년 3년 3년	
0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0 버섯재배사 0 생력균상시설 0 환경자동기자재	" " "	5년 3년 3년	
0 신제품 버섯류 안전 생산	0 버섯재배사 0 균상시설 0 각종기자재	" " "	5년 3년 3년	

사업명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0 한우고급육생산	0 우 사	사업추진 연도	사업시작 후 10년	사 후 관 리 기간내 처분 금지
	0 트랙터	"	5년	
	0 수확기	"	5년	
	0 곤포기	"	5년	
0 유희농경지사료자원화	0 트렌치 사일로	"	5년	
	0 비료 살포기	"	5년	
	0 파종기	"	5년	
	0 곤포기	"	5년	
	0 수확기	"	5년	
0 육용 재래닭 사육	0 계 사	"	7년	
	0 급이기	"	3년	
	0 급수기	"	3년	
	0 환기시설	"	3년	
0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0 콘테이너돈사	"	5년	
	0 수송용차량	"	5년	
0 경비절감형축산분뇨 퇴비화	0 축분 교반기	"	5년	
	0 발효시설	"	5년	
0 산지초지액비 시용법 개선	0 스프링클러 관수시설	"	3년	
	0 전기목록	"	3년	
0 고품질가공용 감자생산	0 전용파종기	"	5년	
	0 땅속작물수확기	"	5년	
	0 승용관리기	"	5년	
	0 저온저장고	"	10년	

- ※ 시설 및 중요 장비중 상기에 명시된 재산은 사후관리 기간내에 처분을 금지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할 경우 지방자치 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처분
- ※ 단 사업비로 취득한 재산중 명시되지 않은 시설 및 장비 등의 재산은 3년
이후 지방자치 단체장이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기준을 정하여 관리

나. 보 고

- 대상농가 선정결과 보고 : 3월말
- 사업추진 결과 보고 : 11월말

I.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지도기획과(과장 김진균, 지도관 유기문), 생활개선과(과장 김화남, 지도관 신영숙), 식량작물과(과장 박대균, 지도관 최동현), 원예축산과(과장 정규곤, 지도관 정길영)입니다.

1. 목 적

- 새로운 기술·품종·기계 등을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보급
-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소득작목의 주년생산으로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
- 농약, 화학비료 등 시용량 절감 기술보급을 통한 환경농업 실천과 가축 분뇨 정화 개선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 농촌여성 보유기술의 산업화 연계 지원으로 농가의 농외소득원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새로 개발된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재배로 농업인의 자율선택 유도
- 벼 신육성 품종의 시범증식으로 농가에 신속한 확대 보급
- 국민식량의 지속적 자급을 위한 초다수성 품종 종자를 일정량 확보
- 농작물 병해충의 신속한 예찰을 통한 효율적인 방제대책 추진
- 토양검정의 지속적 추진과 전산망을 이용한 토양관리 정보 제공
- 벼 직파, 무경운 등 생력재배기술 종합투입으로 생산비 절감
- 보리, 콩, 참깨 등 발작물 재배 기계화 추진을 통한 단지화 유도
- 해외유입 병해충 등 신속 정확한 진단에 의한 방제대책 수립 추진
-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기술보급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
- 농작물 병해충의 천적을 활용한 방제기술의 농가보급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백만원)

		계	'93~'98	99	2000	2001	2002~ 2006
사업량		개소 24,036	6,975	1,854	1,761	3,446	10,000
사업비	계	백만원 143,558	29,666	11,294	14,040	18,558	70,000
	보 조	71,779	14,833	5,647	7,020	9,279	35,000
	지방비	71,779	14,833	5,647	7,020	9,279	35,000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1) 배 경 : 1962년부터 새기술의 신속한 농가보급을 위하여 추진
- (2) 지원대상자 :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시범농가에 지원
-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식량작물 시범

○ 시범내용

- 벼농사 :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신육성 벼품종 시범, 초다수성 벼 종자 증식, 벼 생력재배 선도실천, 발벼 다수확 재배시범, 재해상습지 논개선 시범,
- 밭작물 : 식용보리 기계화 일관시범, 콩 최소경운 재배, 우량참깨 기계화, 소립 밭작물 과립종자 이용 시범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 2001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서 별도로 정함
- 주요지원내용 : 시범사업 재료비, 교육 및 평가비 등

□ 소득작목 시범

○ 시범내용

- 채소 : 마늘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 채소 기계화 생력재배
노지채소 연작장해 대책, 딸기 무병묘 증식, 채소 생물학적 방제,
하우스 경보 일사감응 시스템
- 과수 : 과수 토양감응형 관수시범, 포도 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에너지 절약 과수재배 시범, 고품질 배 Y자수형 시범, 성페로몬이용 해충 방제,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자동화, 사과 초생재배,
- 화훼 : 국화 비가림재배, 소형 분화 저면관수 재배, 시설원에 친환경농업 시범, 양란 축성재배
- 특작 :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재배, 마이크로파 특용작물 건조 시범, 고부가 가치 양잠산물 생산
- 축산 : 한우 산우능력 향상, 한우 번식능력 향상, 재래산양 시범, 내한성 사료작물 재배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 2001년 농촌지도사업 기본 지침에서 별도로 정함
- 주요지원내용 : 시범사업 시설 및 장비, 재료비, 교육 및 평가비 등

□ 환경보존 농업기술지도

○ 시범내용

- 병해충 방제 : 벼 병해충 예찰포, 소득작물 병해충 예찰포, 농작물병해충 종합진단실,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천적증식 시설설치,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 친환경 농업 : 토양 정밀검정, 토양환경 종합개선,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단지, 종합검정실 장비보강, 농업기상 장비지원
- 축산 환경개선 :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가축방역 무인소독, 가축 질병 진단실 장비 지원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 2001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서 별도로 정함
- 지원내용 : 예찰소 운영비, 시범사업 시설 및 재료비

□ 농촌여성 농의소득사업

- 시범내용 : 농촌여성 일감깎기, 농산물 가공교육, 농촌여성 향토음식 맥 잇기,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 전통직물 천연염료 염색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2001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의거 별도로 정함
- 지원내용 : 생산설비 설치비, 시범사업 재료비, 교육 평가비 등

□ 기술선도 벤처농업 시범

- 지원규모 : 10개소, 개소당 50백만원
- 지원내용 :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비, 재료비, 수용비 등 지원

(4) 지원조건 : 보조 100% (국비 50%, 지방비 50%)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액) 내용

사 업 명	사업량	개소당 사업비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 담
				계	보 조	융자		
계 (54종)	개소 3,446	백만원	백만원 18,558	9,279	9,279	-	9,279	-
○ 식량작물시범(10종)	418	6.1	2,558	1,279	1,279	-	1,279	-
○ 소득작목시범(24종)	660	8.2	5,996	2,998	2,998	-	2,998	-
○ 환경보전농업기술(14종)	2,258	20.5	7,940	3,970	3,970	-	3,970	-
○ 농촌여성 농외소득(5종)	100	68.2	1,564	782	782	-	782	-
○ 기술선도 벤처농업(1종)	10	50.0	500	250	250	-	250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사업 담당부서

구 분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국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 시범	식량작물과 (031-299-2706)	기술보급과 등	기술보급과 등
소득작목 시범	원예축산과 (031-299-2741)	기술보급과 등	기술보급과 등
환경보전 농업기술 지도	식량작물과 (031-299-2715)	기술보급과 등	기술보급과 등
농촌여성 농외소득 사업	생활개선과 (031-299-2671)	농촌지원과 등	농촌지원과 등
기술선도 벤처농업 육성	지도기획과 (031-299-2662)	농촌지원과 등	농촌지원과 등

다.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을 위한 작목대체가 필요한 지역 우선 선정
- 기술 낙후지역으로 새기술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 참여 의지가 강한 선도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

○ 선정절차

- 대상농가중에서 영농규모, 제반여건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현지 조사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발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정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명단을 각도 농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고, 각도농업기술원장은 타당성 검토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각도 농업기술원장(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군별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계획을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통보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군별 사업물량 및 예산배정계획에 의거 대상자 선정, 기계장비, 예산집행 등을 포함한 자체 사업계획 수립 추진
 - 새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를 개최하여 기술 파급 효과 거양
 -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내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업을 변경 승인하고
 - 시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장이 변경 승인
- ※ 조정 변경내용은 상급기관에 보고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비는 가급적 시범농가의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지급
- 지원단가 및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확인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단위사업별로 지정된 기간동안 특별관리
- 시군 및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금의 타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전·유용 등 타용도로 이용된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금후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사업중간 및 연말에 평가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기기는 기기의 성질에 따라 사업완료 후 2~3년까지 처분제한(구체적인 내용은 2001년 농촌지도사업 지침 참조)

나. 보 고

-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대상농가 선정 상황 보고 : 3월말까지
-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결과 보고 : 11월말까지
- 농촌여성 농의소득 사업계획보고 : 3. 20까지(별지1호서식)
- 농촌여성 농의소득 사업추진실적 보고 : 12. 20까지(별지2호서식)
- ※ 세부사업별 보고서 양식(농촌진흥청 정기보고 서식에 의함)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새기술보급시범사업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신청자격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 신청기준
 - 가급적 해당 시범작목의 주산단지 지역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 할 수 있는 지역
 -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농가 또는 단체

○ 선정절차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시범사업 신청농가의 사업수행능력, 시범사업 추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농업기술센터 내 산학협동심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계획서) : 농업기술센터에 비치

나. 농촌생활과학기술 보급 시범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신청자격 : 농촌여성이 경영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장이 농촌에 입지해야하며, 지역농특산물을 직접 가공·생산하거나 임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

○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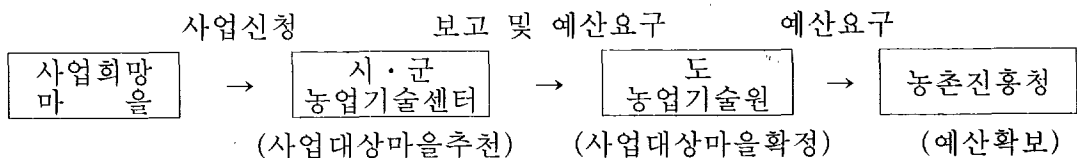
-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지역에서는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신청(사업희망 전년도 1월 31일까지)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별지3호서식), 사업계획서(별지4호서식)

○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농촌여성이 경영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지역농특산물을 가공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지역
 - 당해 사업년도 말까지 사업이 완료가능한 사업지역을 우선 선정

- 선정절차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희망마을이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 계획서 검토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현지조사 후 사업계획서(별지4호서식)와 심사의견서(별지5호 서식)를 첨부하여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대상마을 보고 및 예산요구
- 도농업기술원장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3월말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예산 요구

○ 기타사항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신청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2001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계획서

1. 사업명 및 생산제품

2. 사업지역

3. 사업배경

4. 사업추진개요

- 참여 인원 :
- 대표자 성명 : (나이)
- 사업 규모 :

사업장 규 모	소 요 예 산				제품생산 가능시기	예상소득 (1인당)
	사용내역	지원	자부담	계		
계						

- 자 부 담 분 조달방법 :
- 공동작업장 확보 방법 :
- 참여농가의 평균 소득 : 농업소득 천원, 농외소득 천원

5. 사업추진방법 및 추진일정

6. 장래전망 및 기대효과

<별지 제2호서식>

2001 농촌여성 농의소득사업 추진결과

1. 사업추진결과

- 사업명 및 생산제품
- 사업지역
- 사업개요 (대표자 성명 및 나이)

사업비 집행내역					참여인원 (명)	작업장 규 모	자부담분 조달방법
사용내역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내역별로 상 세 히 기재							
계							

2. 소득분석

참여인원	조수입	경영비	순소득	1인당순소득	제품생산시기

* 조수입, 경영비, 순소득은 사업장의 전체의 것을 기록하고, 1인당 순소득은 앞의 전체순소득을 참여인원으로 나눈 것

<별지 제3호서식>

농촌여성 농의소득사업 신청서

사업지역	마을 현황					대표자		사업내용	
	가구수		인구		주제배 작 목	성명	전화번호	사업명	사업규모
	농가	비농가	남	여					

위와 같이 2002년도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농촌여성 농의소득사업 계획서

1.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사업의 필요성
- 기대효과

2. 마을여건 및 참여자들의 관심도

3. 자부담분 조달능력 및 조달방법

4. 참여농가의 평균 농가소득 : 농업소득, 농외소득

5. 사업개요

- 가. 사업명 및 생산제품
- 나. 사업지역
- 다. 공동참여농가수
- 라. 대표자 성명

6. 세부사업계획

- 가. 공동작업장 규모 및 확보방법
- 나. 소요예산 및 사용내역

소요예산				제품생산 가능시기
사용내역	계	지원	자부담	

- 다. 사업추진방법 및 추진일정
- 라. 예상소득

<별지 제5호서식>

심 사 의 견 서

1. 사 업 명 :

2. 대 표 자 :

3. 사업지역 :

(의 견)

-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
- 지역특성상 적합여부 및 사업의지
- 사업장 입지 : 인·허가요건, 기존사업장과의 경합성, 주변환경
- 사업계획 : 시설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여부
- 사업전망 : 제품의 상품성, 판매전망, 농어가 소득 기여도 등

년 월 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인

II. 품목별 전문교육 및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국 지도기획과
(과장 김진군, 농촌지도관 가형로, 농촌지도사 김이기)입니다.

1. 목 적

- 전문경영인으로서 투철한 직업관 확립과 기술 능력배양
- 영농 후계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영농정착 의욕 배양
- 농촌생활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 실천자로서 능력배양
- 농기계 현장이용자에 대한 안전이용 및 정비점검 능력배양

2. 추진방향

- 품목별 농업인 조직 중심의 소집단 대상 연중교육 실시
- 단일품목에 대한 전문재배기술 및 경영교육을 위한 참여식 교육 강화
- 건전하고 생산적인 후계 농업인력 양성교육
-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지도력의 함양과 생활개선 실천의지 함양
- 최신 농업기계 중심으로 안전이용 및 정비점검교육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 1항(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2항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98	'99	2000	2001년 (예산액)	2002~2004	
사업량(천명)	8,941	979	932	589	2,364	
사업비	계	62,900	5,261	5,269	5,446	17,149
	국비(중앙)	7,778	336	263	244	769
	보 조	6,152	2,462	2,503	2,601	8,190
	지 방 비	48,970	2,463	2,503	2,601	8,190

5.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2) 추진계획

○ 중앙 : 정예 농업전문인력 양성 교육(6천명)

- 실수요품목별교육(1.0천명) :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 유관기관, 단체위탁 및 협력교육(5.0천명) : 영농공개강좌

○ 도 : 농업기계 교육(1.3천명)

- 시책관련교육(1.3천명) : 기계화영농사, 농기계 신규농업인교육

○ 시군 : 현장애로기술 및 취약기술 실천과제 교육(781.1천명)

- 실수요품목별교육(381.4천명) :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새해영농설계 교육, 농기계현장이용교육

- 학습단체회원교육(201.8천명) : 청소년 전문교육, 생활개선회교육, 여성 농업인 능력개발교육

(3) 분야별 농업인교육 계획[별표 1]

나. 2001 사업비(예산)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명)	사 업 비				지방비
		사업비 계	예 산 액(재원명)			
			계	국 비	보 조	
계	명 589,170	백만원 5,446	2,845	244	2,601	2,601
< 기술지도 >	6,000	236	236	236	-	-
○ 품목별전문교육(중앙)	6,000	236	236	236	-	-
< 기술지도사업보조 >	561,820	4,440	2,224	8	2,216	2,216
○ 새해영농설계교육	300,000	3,000	1,500	-	1,500	1,500
○ 품목별 상설교육	60,000	600	300	-	300	300
○ 청소년교육	11,000	330	165	-	165	165
○ 생활기술 과제교육	181,700	328	168	8	160	160
○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9,120	182	91	-	91	91
< 농촌활력화시범사업 >	21,350	770	385	-	385	385
○ 농업기계교육훈련	21,350	770	385	-	385	385

6.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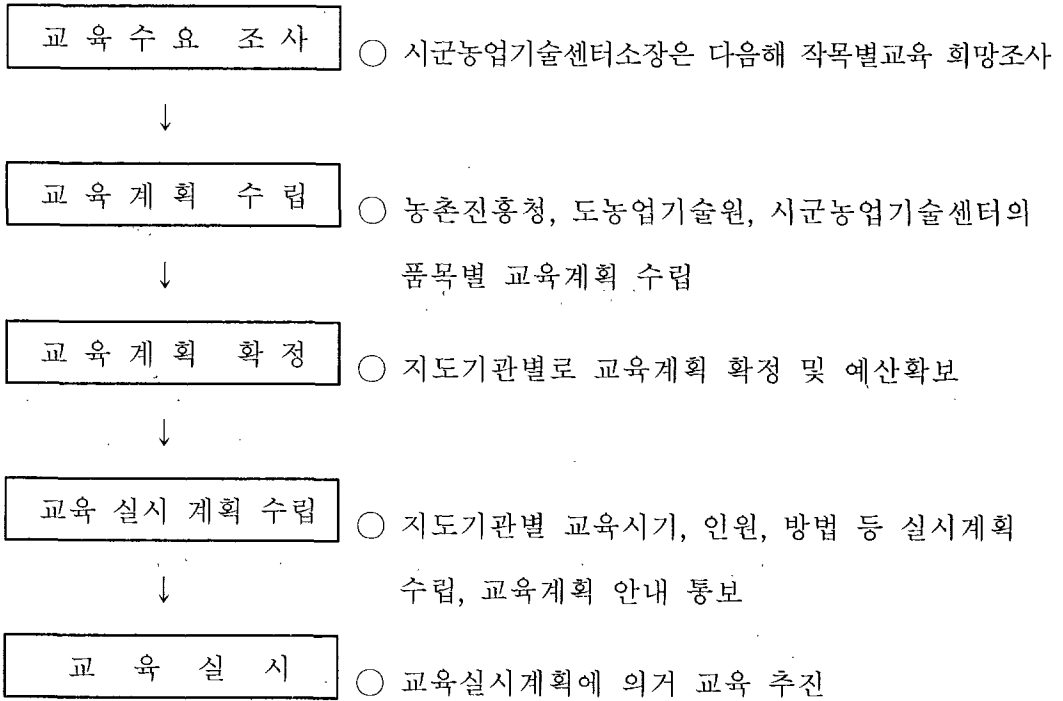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기술지원국 지도기획과 (전화 : 031-299-26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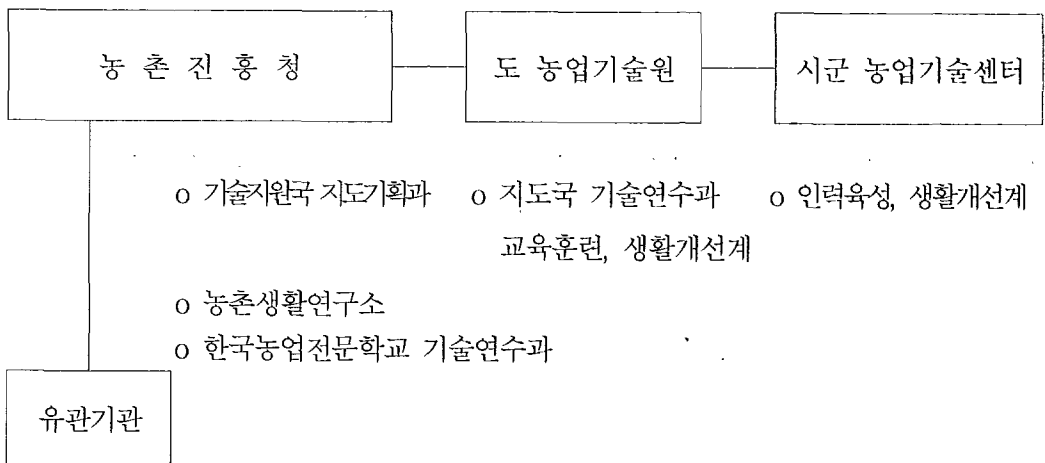
○ 시 도 : 도농업기술원 기술연수과

○ 시 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교육훈련담당자

다.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농업인 교육훈련기관 >



7.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 점검 및 평가
 - 농촌지도기관장은 사업추진내용을 파악 사업별 시행여부 확인
 - 시군단위 자체 사업평가회 실시로 익년도 사업에 반영

나. 교육수요조사

- 교육실시 전년도에 경영형태, 규모, 표본조사 등을 통한 품목별·분야별 교육수요 분석
- 평소 교육 및 현장지도 등 농업인 접촉시 교육희망사항 반영

다. 보고·기타 :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의함

8. 2002년도 농업인 교육사업 추진

가. 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나. 교육대상 : 2001년도 교육대상 참조

다. 추진계획 및 기타사항 : 2001년도 지침에 준용하여 지속적인 추진

[별표 1]

2001년 분야별 농업인 교육계획

교육기관	과정별	시기 (기간)	인원	교육대상	세부교육과정 (내용)	방법
농촌진흥청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	2-3월 (3~4일)	1,000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작목에 대한 영농경험이 있고 보다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수요조사시 희망한자 	○ 매년 희망작목 수요조사결과에 따라 과정 설정(배,포도,양돈,느타리버섯 등)	전일합숙교육 -주간:강의,실습,견학 -야간:영농정보교환,시청각,기타
"	농촌여성 대표지도 자 교육	2~3월 (2일)	200	○ 생활개선회 임원 및 회장	○ 농촌여성의 정보화 대응 및 리더쉽	"
농촌진흥청 (희망 주산지역)	영농공개 강좌	3-11월 (1일)	5,000	○ 전문기술교육 참여 희망 농업인	○ 개방화대응 지역주산 성장작목	이론강의 병행 질의응답식 교육
도 농업 기술원	기계화 영농사 교육	연 중 (2주)	1,000	○ 기계화영농사 요원	○ 종합반 편성 운영	이론 및 실기 실습
"	신규농업인 농기계 교육	연 중 (1주)	350	○ 신규농업인으로 기계화영농 희망자	○ 정비수리 핵심기술	이론 및 실기 실습
"	농촌여성 지도자 교육	3-11월 (1일)	1,500	○ 생활개선회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인 농가경영 ○ 농산물가공 ○ 생활개선회 활동 	강의, 실습
"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3-11월 (1~2일)	540	○ 여성전문경영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 및 정보화교육 ○ 영농기술교육 	이론 및 실습

교육기관	과정별	시기 (기간)	인원	교육대상	세부교육과정 (내용)	방법
시군농업 기술센터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3-12월 (연4회 이상)	60,000	○ 품목별 조직 농업인 대상 중심	○ 품목별생산 및 유통단계 별 핵심기술 지도	강의,토의, 사례발표,실기 실습,견학 등
시군농업 기술센터 (지역별 주산지의 공공시설)	새해영농 설계교육	1-2월 (1일)	500,000	○ 품목별조직농업인 ○ 주산단지 등 참여희망농업인	○ 공통교과: 농어촌발전 대책지역농정 시책 ○ 전문교과: 과정별 전문 기술 및 '99 개선과제 핵 심기술	새품종,새기술 등 핵심기술 중점교육(강의, 토의,사례발표 등)
시군농업 기술센터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농한기 (1~2일)	20,000	○ 농업기계 공동 이용조직 기간 요원및실수요자 ○ 교육희망 부녀자 등	○ 신규농업기계 기종 중심 정비점검요령 ○ 운전조작 및 교통안전	실기실습
"	청소년 전문교육	연 중 (1일)	10,250	○ 핵심 4-H회원 및 영농후계세대 회원	○ 과제분야별 교육 ○ 진로지도교육	강의, 토의, 사례발표, 실습
"	농촌여성 과제교육	연 중 (1일)	180,000	○ 시군생활개선 회원	○ 의식주,생활 개선,가정경 영등 ○ 여성 지도력 배양 ○ 지역사회활동 참여	강의, 실습
"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연 중 (1~2일)	8,580	○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 및 정보화교육 ○ 영농기술교육	이론 및 실습

Ⅲ. 4-H회원 과제활동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지도기획과(과장 김진균, 농촌지도관 구현희)입니다.

1. 목 적

- 미래농촌을 이끌어 갈 농업 후계인력의 확보
- 영농4-H회원의 과학영농 체험학습으로 영농 정착유도
- 학교4-H회원의 다양한 과제활동 능력 함양

2. 시책 및 추진방향

- 영농4-H회원의 영농 학습활동으로 전문기술능력 배양
- 영농4-H회원의 영농기반 조성으로 경쟁력있는 농업인 육성
- 학교4-H회원의 사기 진작으로 학교4-H 활성화 도모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2~'98	'99년	2000	2001	2002~2004
사업량 (명)		4,720	400	400	400	880	2,640
사 업 비	계	14,000	2,000	2,000	2,000	2,000	6,000
	국고보조	7,000	1,000	1,000	1,000	1,000	3,000
	지방비보조	7,000	1,000	1,000	1,000	1,000	3,000
	국고용자	-	-	-	-	-	-
	자부담	-	-	-	-	-	-

5. 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배경

영농4-H회원 및 학교4-H회원에게 4-H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농업전문 인력 양성과 농심함양 필요

(2) 지원대상

- 영농4-H회원(영농활동과 관련된 우수 학교4-H 포함가능)으로 과제이수 능력을 갖추어 전문농업인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시·군농업 산학협동심의회(또는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
- 학교4-H회로서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또는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원대상학교로 확정된 학교4-H회

(3) 개소당 지원규모 및 지원 조건

○ 지원규모

- 영농4-H회원 과제자금 지원 : 5백만원(1인 또는 개소당)
- 학교4-H회 지원 : 1백만원(개소당)

○ 재 원 : 국비 50%, 지방비 50%

(4) 지원내역

○ 영농4-H회원 지원

- 영농4-H회원의 영농활동 촉진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지원
- 분야별 지원대상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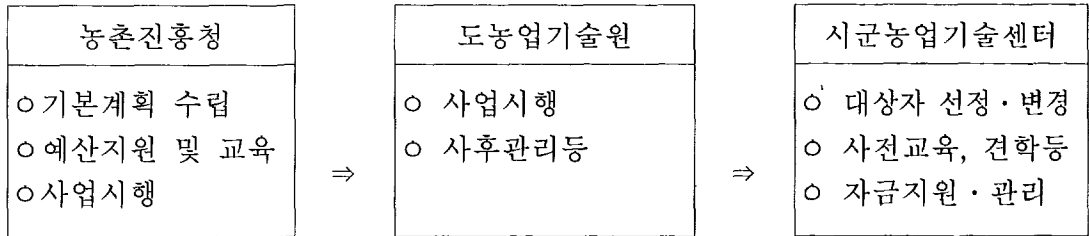
분야	사업작목	지원대상 사업내역
농업 분야	수도작, 원예(채소, 화훼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농지구입, 고정식 온실, 하우스 시설, 수정재배 시설, 과원조성, 묘목구입, 버섯재배·저장시설, 관수시설, 농기계구입, 컴퓨터 구입, 기타 농업 기반 시설 등
축산 분야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 시설, 초지조성, 사료포 조성, 농기계 구입, 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 기반시설 등

※ 지원자금은 종자, 비료, 농약, 유류 구입 등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음

○ 학교4-H회 지원 대상 사업

- 학교4-H회원의 과제 및 기타활동에 필요한 실습시설 및 기구, 활동 재료 등
- 일회성 사업 지출 제한

(5) 사업시행 체계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880	2,000	1,000	1,000	-	1,000	
영농4-H회원 지원	280	1,400	700	700	-	700	
학교4-H회 지원	600	600	300	300	-	30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특별·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나. 사업담당 부서

- 농촌진흥청 : 기술지원국 지도기획과 (전화번호 : 031-299-2666)
- 도 : 농업기술원 4-H업무 담당과
- 시군 : 농업기술센터 4-H업무 담당과

다. 자금지원 예정자

(1) 선정기준

○ 영농4-H회원 과제자금 지원 : 다음 평가기준에 의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구 분	배 점	평 가 방 법
영농기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규모 평가 기준에 의한 환산면적 - 1.5ha 이상 : 10점 - 1.5ha ~ 1.0ha 미만 : 8점 - 0.7ha ~ 1.0ha 미만 : 6점 - 0.7ha 미만 : 4점
학 력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학력 기준 - 농업계 전문(대학) 및 농업계고등학교 : 10점 - 일반계 전문대학 및 일반계 고등학교 : 8점 - 중학교 : 5점
교육훈련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아래의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이수한 실적을 3일 단위로 1점씩 가산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농촌진흥청, 각도 농·축·협외 훈련기관 -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및 동 연수기관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재학중의 장기현장 실습기간 포함) - 대학 또는 전문대등 농업계학교부설 영농훈련기관
영농관련단체활동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H연합회장 : 시군3, 도4, 중앙5점(1년당) ○ 4-H연합회임원 : 시군2, 도3, 중앙 4점(1년당) ○ 4-H회원 활동 : 1점(1년당) ※ 2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단체 활동도 이에 준하여 배점
영농경력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종사 경력 1년단위로 1점씩 가산(총10점)
자 격 증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 5% 범위내에서 가산
영농정착의욕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평가기준 작성활용
사업계획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타당성, 치밀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분석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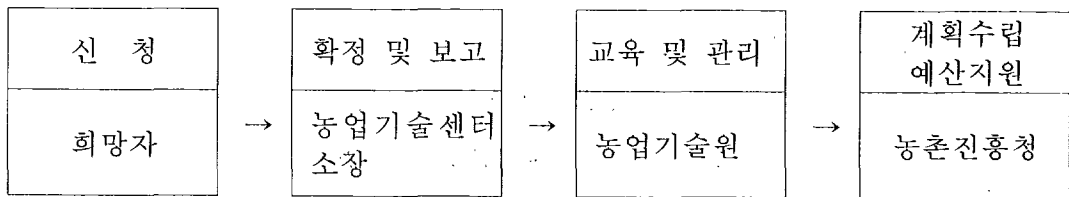
※ 영농기반은 본인·배우자 소유 및 상속가능한 직계존속 소유분은 100%, 서면계약한 임차농지는 50%를 영농기반으로 인정

- 학교4-H회 지원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평가기준 작성 활용
 - 학교4-H활동 연수 및 회원 참여, 단체봉사활동,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

(2) 우선 순위

- 평가점수가 높은 회원 및 학교 4-H회
-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4-H활동 점수가 높은 자, 자격증소지자, 농업계학교 출신 자 순

(3) 선정절차



- 대상자 심의 추천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사업신청 서류(별지 서식 참조)를 확인후 평가하여 산학협동심의회(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하여 대상자를 최종 확정
 -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확정된 대상자 현황을 붙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도 농업기술원장에 보고
 - 도 농업기술원장은 선정결과를 별지 서식에 의거 사업 시행연도 3월 31일 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 농업기술원장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시군 통보

라. 사업시행

- 사업자금배정
 - 보조금 : 농촌진흥청 → 도지사 → 시군 → 농업기술센터 → 신청자
- 집행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시군보조금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집행 및 정산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관리책임 : 특별·광역시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장
- 현지도도
 - 지도점검자 : 특별·광역시, 시군농업기술센터 전문지도공무원
 - 지도내용 : 영농 과제이수 상황, 전문기술 경영지도, 학교4-H회 활동 지도

-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국고보조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집행기준의 취소사유 해당시
- 사업대상자 및 장소 변경
 -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사업대상자 변경시 15일 이내에 해당 도 농업기술원장에 보고
 - 사업대상자가 사업장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관리
 - 시군보조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관리
- 관리기간 : 시군보조금관리조례에 규정된 기간

나. 보고사항

- 사업추진결과 (별지 제4호서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반기 익월 10일 까지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
 - 농업기술원장, 특별·광역시농업기술센터 소장 : 반기 익월 15일 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대상지의 관할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영농4-H회원으로 활동한 개인 및 단체, 학교4-H회

다. 신청절차 : 사업시행 전년도 1:20일까지 신청서 제출기관에 신청

라.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사업 또는 학교4-H회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기타서류 : 교육훈련이수 확인, 영농단체활동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마. 기타사항

사업신청자에 대한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은 2001년도 지침을 준용하여 결정

<별지 제1-1호>

영농4-H회원 시범영농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최종학력	학교 과 (졸업)			졸업년월일
지원사업	분 야	농업, 축산	작목명		지원금액 (지원시기)	백만원 ()년도
영 농 기 반	경지면적	전: 답: 과수원: 초지: 기타: 평				
	시설규모	우사.돈사.계사: 평, 두.수,비닐하우스: 기타:				
	장 비	트랙터: 이앙기: 트럭, 승용차: 컴퓨터: 기타: 대				
가족사항 (본인제외)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포상경력 영농기술 자격증 및 주요경력	년월일	내 용			수 여 자	
영 농 교육훈련	기간(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영농경력	년 월 - 년 월 까지					
단체활동 경 력	구 분	기 간		지 책		활동지역
	4-H활동	년 월				
	기타단체활동	년 월				

년 월 일 신청인 : (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학력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4-H활동확인서, 교육훈련확인서,
영농기반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별지 제1-2호>

학교 4-H 지원사업 신청서

학교4-H 현황	학교명		총학생수	명
	주소		전화번호	
	4-H회원수		4-H조직년도	년
	학교4-H 지도교사명			
사업신청 현황	사업명		신청금액	만원
	사업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학교장 (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2. 사업계획

○ 사업명 : 영농4-H회원 시범영농 지원

○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용자	자담
계								
수도작								
화훼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자재구입			←	→
채배관리		←	→	
·				
·				
·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기타 (향후 연차별 영농계획 등을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사업 선정결과 보고

I. 영농4-H회원 과제자금 지원

1. 일반현황

구분	계	결혼여부		연령별(세)			학력별					
		기혼	미혼	21-23	24-26	27-29	국졸	중졸	고졸	전문	대졸	
계												
남												
여												

2. 사업작목별 지원 실적

(단위 : 명)

시군별	계	경종농업분야						축산분야					
		소계	수도	채소	과수	화훼	기타	소계	한우	육우	양계	기타	
계													

II. 학교4-H회 지원

시군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개소수	회원수	개소수	회원수	개소수	회원수	개소수	회원수
계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결과 보고

시도명 :

(단위 : 명, 천원)

분야별	계	채 소	시설채소	화 휘	과 수	축 산	기 타	학 교
인 원								
지원액								

※ 지원실적은 금회/누계로 작성

IV. 농업계 특성화대학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연구기획과(과장 이성희, 농업연구원 고관달)입니다.

1. 목 적

- 지역 농림업 발전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14개 농업계 대학을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농업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첨단 및 현장애로 기술 개발, 대 농민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육성 지원
- 특성화대학, 도 단위 농업관련 기관,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 등이 공동으로 산·학·관·연 협동체제를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 특성화대학 특성화분야의 연구, 개발, 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지원

3. 근거법령

-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 제3조
 - 전문대학의 학력인정을 받는 농림수산기술전문교육을 하는 각종학교
 - 기타 예산이 정하는 사업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0조(농림수산과학기술진흥)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교, 백만원)

구분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2004	
사업량	14	14	14	14	14	
사업비	계	26,604	7,975	7,365	7,375	18,001
	보조 용자	26,604	7,975	7,365	7,375	18,001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5. 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14개 농림계 특성화대학

서울대 농생대, 한경대, 강원대 농생대, 충북대 농대, 충남대 농대, 전북대 농대, 전남대 농대, 순천대 농대, 경북대 농대, 안동대 자연과학대, 경상대 농대, 진주산업대, 제주대 농대, 강원대 산림대

(2) 지원조건

- 농업계 특성화대학지원, 시설·장비지원 : 국고보조 100%

(3) 지원시설의 종류

- 특성화 분야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및 장비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사업량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세)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 농업계특성화 대학지원	14	7,375	7,375	7,375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도지사(도 농업기술원장)

○ 농림계 특성화대학 지원

- 농촌진흥청 : 기본계획 수립

- 특성화대학 : 사업계획 수립·시행

- 도지사(도 농업기술원장) : 사업계획 승인, 집행 감독 및 사후 관리

나.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연구기획과(☎031-299-2587, fax :031-299-2568)

○ 도(각도 농업기술원)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승인

○ 도지사(농업기술원장)는 농촌진흥청(농림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해당 학교로부터 2000. 12월 말 까지 2001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2001년 사업계획을 승인(승인 후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1월 말 까지 농촌진흥청에 보고)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승인(변경가액 5,000만원 이하, 변경 기종 및 수량 10종 이하는 도지사 승인)

(2) 사업추진

○ 도지사(농업기술원장)는 다음사항을 지도·감독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여야 함

- 사후봉사 및 운영조작에 따른 문제예방을 위해 가능한 한 시설물의 공사계약을 일괄 발주

- 사업의 기성고(공사 감독자의 확인 등)에 따라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유리온실 등 첨단시설물의 공사계약시에는 자동화시설의 조작기술지도, 사후봉사기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계약서에 명문화
- 시설,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는 사전에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구매하여 고가의 시설·장비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및 승인
- 시설의 설치, 장비 구입은 특성화분야의 연구개발과 실험실습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을 우선 구입
- 각종 장비 및 기자재는 학과 또는 연구과제별로 중복 구입치 말고 공통 장비·기자재 중심 구입
- 특성화센터(과학기술센터) 시설은 대 농민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위주로 하고 회의실, 교육연구실, 행정실 등은 최소화 할 것
- 모든 자금은 연초에 배정하여 당해 년도에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도지사
 - 도지사는 매년 시설 및 장비·기자재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여 지원된 시설·장비가 정상 운용되도록 지도·감독
 - 첨단유리온실 등 계절적으로 운영비 부담이 큰 시설과 장비는 운영비, 수리 보수비 등 사전확보 조치
- 총 사업비가 5,000만원 이상 투입된 주요 사업의 건축물, 시설, 장비는 입구 또는 몸체 등 잘 보이는 곳에 안내표지판 설치(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 제4항, 별표 2 참고)
- 도지사는 매년도 말에 당해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자체 점검
 - 사업 추진실적 자체 점검시에는 당해 사업의 계속성 여부, 투자 우선 순위, 대응투자실적(Matching Fund), 농업인 교육 및 컨설팅실적, 특성화분야 연구 및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
- 도지사(농업기술원장)는 농업기술원, 지역 연구소 및 특화시험장 등과 지역 특화품목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산·학·관·연 협동확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 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조치

나. 보고사항

내 용	보 고 기 일	비 고
○ 사업계획 승인결과보고	승인 후 10일 이내 (2001지원사업 : 2000. 1월말)	붙임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 변경승인(결과) 요청(보고)	승인 후 10일 이내 (요청 : 즉시)	붙임 별지 제2호 서식
○ 분기별 사업추진실적보고	매분기 익월 10일	붙임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정산결과 보고	당해연도 말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붙임 별지 제4호 서식

※ 도지사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준공검사(사용승인검사), 건축물등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비 정산 등 사업의 마무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2002년도 사업신청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도지사 → 농촌진흥청장

나. 신청자격 : 14개 특성화 지원대학

다. 사업계획 제출절차

- 농림부에 기 제출한 특성화대학 5개년 투자계획상에 계획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2001. 2월 말까지)

< 별지 제1호서식 >

차체 가 26-12

사업계획 승인결과 보고			
(○○ 대학)			
시설명 (기자재명)	시설규모 (기자재 수량)	사업비	비고

210mm × 297mm

< 별지 제2호서식 >

차체 가 26-13

사업계획 변경승인(결과) 요청(보고)						
(○○ 대학)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시설명 (기자재명)	시설규모 (기자재 수량)	사업비	시설명 (기자재명)	시설규모 (기자재 수량)	사업비	
* 변경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고, 변경승인 요청의 경우 도지사의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210mm × 297mm

< 별지 제3호서식 >

심사제외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 보고(/4분기)						
(○○ 대학)						
시설명 (기자재명)	시설규모 (기자재 수량)	사업비	집행액	사업추진 상황	사업진도	완료 예정일
	평, 개	천원	천원			

210mm×297mm

< 별지 제4호서식 >

총 공통 9

사업 정산 결과 보고					
(○○ 대학)					
시설명 (기자재명)	시설규모 (기자재 수량)	사업비	집행액	잔액	비고
	평, 개	천원	천원		잔액발생 사유 등
주) '비고' 란에 잔액발생 사유 등을 기록					

Ⅲ. 인 력 육 성

여 백

45 후계농업인 육성(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인력과(과장 박형규, 농업서기관 오병석)입니다.

※ 이 사업은 '00년까지의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을 승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 목 적

-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경영개선 및 신규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재촌 농업인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과 농업계학교 졸업자 등의 창업자금 지원을 통하여 미래 농업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 타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졸업자 중 농촌정착을 원하는 자에 대한 농촌정착 유도
- 여성의 농촌정착 유도
- 북한 이탈주민중 보호대상자에 대한 영농정착 지원
- 후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후계농업인의 육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92~'99년	2000년	2001년(예산안)			2002~2004	
			소 계	신규후계자	취농창업 후 계 자		
사 업 량	109,850	4,674	3,500	3,000	500	18,000	
사 업 비	계	1,021,347	150,000	110,000	90,000	20,000	810,000
	용 자	1,021,347	150,000	110,000	90,000	20,000	810,000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노령화·부녀화로 농업인력이 점차 감소하여 젊고 유능한 전문 후계농업인력 육성 필요

2) 지원대상자

<신규후계농업인>

- 사업시행년도 1.1일 현재 40세미만인 자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와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후계농업인 육성대상자로 선발·확정한 자(단, 농정심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 농정심의회에 준하는 별도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

<취농창업후계농업인>

- 사업시행년도 1.1일 현재 35세미만인 자 중 농업계학교 졸업(졸업예정자 포함)직후 영농승계를 원하는 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중인 자 중에서 영농승계를 원하는 자와 타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졸업자 중 농촌정착을 원하거나 농촌에 정착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후계농업인 육성대상자로 선발·확정한 자(단, 농정심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 농정심의회에 준하는 별도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
- 영농승계라 함은 신청자가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부모 또는 형제의 영농기반을 상속·증여 또는 입차 등의 형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농기반을 확보(계획 포함)하는 경우(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확인)를 말함(단, 후계농업인으로 기 선정된 자로부터의 영농승계 제외)

3) 지원단가

<신규후계농업인>

- 1인당 지원규모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5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 수도작 : 30~50백만원, 축산분야 : 20~30백만원, 기타 : 20~50백만원

<취농창업후계농업인>

- 1인당 지원규모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30~6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 수도작 : 40~60백만원, 축산분야 : 30~40백만원, 기타 : 30~60백만원

4) 지원조건

가) 용자조건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용자기간 : 국고용자 100%, 5년거치 10년균분상환(15년)
- 금리 : 신규후계농업인자금 연리 5.0%,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연리 4.0%

나) 용자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 경종 농업분야 : 농협, 축산분야 : 축협
- ※ 용자취급기관은 용자금 지급 및 회수와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선조합으로 하여금 용자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5) 지원시설의 종류

- 분야별 지원대상사업

분야별	사업작목	지원대상 사업내역
경종농업 분야	수도작, 원예(채소, 화훼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등	농지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 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벚꽃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 컴퓨터구입·기타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축산분야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 처리시설 설치, 초지조성, 사료포 조성, 대형 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 사료저장시설, 컴퓨터구입, 기타 축산기반시설

※ 농지구입의 경우 영농규모화사업 지침 준용

- 논에 비외 타 작물재배 및 시설설치시 지원제한

- 대구획 경지정리지역은 사업지역에서 제외
- 농업진흥지역은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농업진흥지역 밖은 지원 차등은 없으나 선정시 후순위 부여

나. 2001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명 3,500	백만원 110,000	110,000	-	110,000	-	-
신규후계 농업인	3,000	90,000	90,000	-	90,000	-	-
취농창업후계 농업인	500	20,000	20,000	-	20,000	-	-

* 융자조건 : 신규후계농업인 자금 연리 5.0%,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자금 연리 4.0%,
5년거치 10년상환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농업기술센터(특별시·광역시, 기타시), 읍·면 : 대상자 심의·추천
-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결정, 대상자 교육, 사업실적확인, 사후관리
- 농·축협 : 사업비 지원, 지원융자금 관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업정책국 농촌인력과(TEL 02-503-7216)
- 시·도 : 농어촌개발부서(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정과 등)
- 시·군·자치구 :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다. 대상자선정

1) 선정절차

- 대상자 심의·추천
 - 농업기술센터, 읍·면의 장은 평가 다음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합계점수가 신규후계농업인의 경우 360점,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의 경우 300점 이상된 자에 한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추천

○ 대상자 순위결정

- 시장·군수 등은 읍·면의 장 등이 추천자한 자중에서 우선순위 기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순위 부여후 평가점수가 높은자 순으로 순위 부여

○ 대상자 확정

- 시장·군수 등은 우선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선정
 - 점수가 높은자 순으로 대상자 확정
- ※ 다만,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의 장은 지역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품목간 균형있게 후계농업인이 선발될 수 있도록 조정 가능

<신규후계농업인 평가기준 >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영농정착의욕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 정착의욕(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 100점(신청자의 20%) - 중 : 70점(" 60%) - 하 : 40점(" 20%)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1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 력(8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계대학,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 80점 -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료자, 농업계 전문대학 및 자영농과(자영농고, 농고중 자영농과) 졸업자 : 70점 - 일반대학(4년제)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6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40점 * 사업시행년도 졸업 예정자는 졸업자로 인정 <여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대, 농진, 자영농과졸업자 : 80점 - 일반대학, 농고졸업자 : 7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60점 * 사업시행년도 졸업 예정자는 졸업자로 인정 ○ 교육훈련실적(통산일수) :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의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이상 : 50점 - 2개월이상 : 40점 - 1개월이상 : 30점 - 15일이상 : 20점 - 7일이상 : 10점 < 여자의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월이상 : 50점 - 1개월 이상 : 40점 - 15일이상 : 30점 - 10일이상 : 20점 - 5일이상 :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기관은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가 인정한 교육기관 - 농촌진흥청, 각 시·도, 농·축협외 훈련기관 - 농진청장이 인정한 연수기관, 농업기술센터 및 동 연수기관 - 대학 또는 전문대 등 농업계 학교부설 영농훈련기관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재학중의 장기 현장실습기간 포함)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영농경력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 경력(영농 4-H 경력포함) < 남자의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년미만은 50점으로하되, 6년이상 1년단위로 10점씩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미만 0점 . 1년이상 6년미만 50점 . 6년이상 7년미만 60점 . 7년이상 8년미만 70점 . 8년이상 9년미만 80점 . 9년이상 10년미만 90점 . 10년이상 100점 < 여자의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이만 0점 . 1이상 4년미만 50점 . 4이상 5년미만 60점 . 5이상 6년미만 70점 . 6이상 7미만 80점 . 7이상 8미만 90점 . 8이상 100점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졸업자 경력평가에 재학기간을 1년단위로 10점씩가산, 4-H경력은 1년단위로 5점씩 가산하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계학교(농업계학과포함) 졸업자 및 재학증인자는 재학기간을 영농 경력으로 인정 ○ 여성에 대하여는 혼인전 영농 종사경력도 인정 ○ 농업 관련분야의 교사, 지도사, 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은 영농 경력으로 인정 *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훈련기간 포함 * 영농4-H경력은 농업에 종사하기 전의 경력임 ○ 군근무경력(보충역 포함)은 영농경력으로 간주하되 1년단위로 5점씩 가산(1년미만은 5점)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영농기반 (17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기반(170점) <남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ha이상 : 170점 - 1.5ha~2.0ha미만 : 150점 - 1.0ha~1.5ha미만 : 130점 - 0.5ha~1.0ha미만 : 90점 - 0.2ha~0.5ha미만 : 50점 <여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ha이상 : 170점 - 1.0ha~1.5ha미만 : 150점 - 0.5ha~1.0ha미만 : 120점 - 0.2ha~0.5ha미만 : 80점 <공통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소유 및 상속 가능한 직계 존속 보유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 * 서면계약한 0.5ha이상의 임차농지는 50%를 영농기반으로 인정(단, 5년이상 장기계약한 임차농지의 경우 70%까지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업작목별 평가기준은 별첨 세부평가기준표를 참고하여 평가(별표 1) * 농경지는 축산분야의 영농기반으로도 인정 * 직계존속이 임차한 임차농지도 본인이 임차한 것으로 인정
영농사업계획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사업계획(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 40점 -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 30점 - 생산 및 판매계획 : 20점 - 사업분야에 대한 타농가재배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가능성 : 10점 ※ 평가서에 평가한 점수가 영농사업계획 점수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사업계획을 받아 평가(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평가) * 사업계획의 평가시 4개항목에 대한 타당성, 치밀성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각 항목별 점수는 만점시 점수임) * 사업계획서 작성시 해당분야 지도공무원 등의 조언 또는 민간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을 받은후 서명을 받은 경우 인정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여성(영농세대주)에 대하여는 총점(6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각각 20점 가산 ○환경친화적 농업을 2년이상 계속 하거나 토착기술을 현대화하여 자원절약형 농업을 2년이상 계속 하는자에 대하여는 총점(6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총점(6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20점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 전문교육원 추천은 영농기반조성이 가능한 자에 한함 ○일반 농업계학교장 추천은 학업성적이 전체의 2/3이내로 영농기반조성이 가능한 학생에 한함

<취농창업후계농업인 평가기준>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영농정착의욕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 정착의욕(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 100점(신청자의 20%) - 중 : 85점(" 60%) - 하 : 70점(" 20%)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2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 력(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계대학,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 100점 - 일반대학(4년제),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수료자, 농업계 전문대학 및 지역농과(지역농고, 농고중 지역농과) 졸업자 : 90점 - 일반전문대학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8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70점 * 사업시행년도 졸업 예정자는 졸업자로 인정 ○ 교육훈련실적(통산일수) :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이상 : 100점 - 3개월이상 : 85점 - 2개월이상 : 70점 - 1개월이상 : 60점 - 15일이상 : 40점 - 7일이상 : 20점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기관은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가 인정한 교육기관 - 농촌진흥청, 각 시·도, 농· 축협의 훈련기관 - 농진청장이 인정한 연수기관, 농업기술센터 및 동 연수기관 - 대학 또는 전문대 등 농업계 학교부설 영농훈련기관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 전문교육원(재학중의 장기 현장실습기간 포함)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p>영농사업계획 (200점)</p>	<p>○ 영농사업계획(200점) -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 80점 -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 60점 - 생산 및 판매계획 : 40점 - 사업분야에 대한 타농가재배 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 가능성 : 20점 ※ 평가서에 평가한 점수가 영농사업계획 점수임</p>	<p>○ 별도의 사업계획을 받아 평가 (별지제13호서식에 의한 평가) * 사업계획의 평가시 4개항목에 대한 타당성, 치밀성 및 발전 가능성을 평가(각 항목별 점수는 만점시 점수임) * 사업계획서 작성시 해당분야 지도공무원 등의 조언 또는 민간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을 받은 후 서명을 받은 경우 인정</p>
<p>○가점사항</p>	<p>○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총점(500점)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종사(1년이상)한 사실을 입증한 자는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각각 20점 가산</p>	

2) 선정시 우선순위

<신규후계농업인>

-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여성,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농업계학교 출신자, 관련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순

<취농창업후계농업인>

- 동점일 경우에 한하여 전 세대 이주가 확인된 자를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우선 선정

3) 선정절차

가) 대상자 심의·추천

- 읍·면, 농업기술센터(이하 “읍·면 등”이라 한다) 심사위원회 심의·추천
 - 읍·면 등의 장은 읍·면 등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영농정착의욕,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등을 평가기준에 의하여 신규후계자와 취농창업후계자로 구분하여 검토·평가하고 개인별 신용상태 및 사업자금 융자 적격여부에 대해서 심사
 - 적격자에 대해서만 관련서류(신청서류등)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추천(별지 제2호서식)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적격자만을 시장·군수 등에게 추천(별지 제2호서식)
- ※ 적격자 : 신규후계농업인 360점이상, 취농창업후계농업인 300점이상

<읍·면 등의 심사위원회 >

- 읍·면·동 산업계장 또는 부읍면장, 사무장
- 시장·군수 등이 지정하는 읍·면·동 담당 농촌지도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 농·축협 등 관련 융자취급기관 임직원
- 우수농가 3인 등 총 6인내외(후계농업인 대표 1인이상 포함)

나) 대상자 순위 결정

<공통사항>

- 시장·군수 등은 읍·면 등의 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전년도 2월말까지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와 지원금액을 결정하되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 결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 시장·군수 등은 후계농업인 선발에 있어 지역 농업여건과 품목별 전업농가 육성대상자수·농가호수 등을 감안하여 품목간 균형있게 후계농업인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함(이 경우 품목간 순위부여 등 객관적 근거 마련)
-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하여 가진 자에 대하여는 후계농업인 추천 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다만, 농업회사법인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농업종사자로 봄)

<신규후계농업인>

- 시장·군수 등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하여는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지원금액만 결정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성농업전문학교 졸업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후계농업인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함
- 시장·군수 등은 시·군·구별 선정예정인원의 20%수준내외를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농·공(중)고 자영농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순수 농업전문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각 대학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수료자에 배정하여 동학교 출신자를 신규후계농업인으로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함. 단, 상기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가 20%에 미달할 경우 일반 농대 및 농업전문대, 농고 출신으로 충원(농업계학교 출신 우선선발 원칙)
 - ※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9) : 여주자영농고, 흥천농고, 보은농공고, 공주농고, 김제자영고, 강진농고, 안동농고, 경남자영고, 서귀포산업고
- 사업시행년도 이전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농·축산경영자금, 귀농자 창업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중인자와 사업시행년도에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후계농업인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 등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 지원여부를 융자취급기관을 통하여 농정심의회 이전에 확인 실시

다) 대상자 확정

<공통사항>

- 시장·군수 등은 시·군·구별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
 - 부부가 모두 후계농업인 지원자금을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부중 한사람에게만 지원 가능(다만, 부부의 주사업품목이 각각 다를 경우 부부 모두에게 사업자금 지원은 가능하나 신청자수 등을 고려하여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지원여부 결정)
 - ※ 시장·군수 등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를 예비대상자로 확보하여 신청자중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자 발생시 예비대상자 중 평가점수가 높은자 순으로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즉시 대체

<신규후계농업인>

- 시장·군수 등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자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
- 시장·군수 등은 특수전문대 출신 우선선발 원칙에 따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신규후계농업인으로 우선 확정
 - 시장·군수 등은 시·군·구별 선정 및 지원인원(산업기능요원 지원대상 포함)의 20% 이상을 농업계학교 출신 우선선발 원칙에 따라 신규후계농업인으로 우선 확정

라.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신청(신고)서의 사업추진계획을 확인·관리하여야 함
 - 사업시행년도에 선정된자가 사업시행년도에 타 사업분야 또는 동일사업분야내에서 품목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농업여건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변경을 승인
 - 사업시행년도 이전에 선정된 자가 동일사업 분야내에서 품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사업계획 변경신청(신고)서를 제출하면 가능하고, 타 사업분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은 타당성을 검토(기 지원된 자금을 타 사업분야에 투자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하여 사업변경을 승인

2)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자금 배정

-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와 농협중앙회에 시달
- 자금배정을 받은 농협중앙회장은 즉시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배정
-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용자취급기관(농협, 또는 축협) 변경요청을 할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용자취급 기관변경 요청

○ 용자실시등

- 용자취급기관의 용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과 『농특회계용자업무지침』에 의함
- 사업자금의 용자는 후계농업인의 편의에 따라 1인의 연대보증에 의한 신용대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대출, (후취)담보대출로 분할 용자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신규후계농업인의 경우 영농기술교육 이수자와 영농기술교육 면제자,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의 경우 현장실습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가 작성한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을 검토한 후 자금소요 성격으로 보아 사업추진전 일시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농지구입등)에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별지 제4호서식)하여 지원대상 농업인이 사업추진전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함
- ※ 다만,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분할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함(기반시설 등 사업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금 일시 전액 인출 가능)
- 용자취급기관장은 시장·군수 등이 발급한 사업추진 계획(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년도 지원자금을 일시에 전액 용자 지원하여야 함
- ※ 후계농업인이 사업자금(용자금)을 당해년도내에 용자받지 아니하면 자격이 상실됨
-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중 사업자금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자와 사업자금 지원은 신청하였으나, 당해년도에 사업자금을 용자받지 못한 자는 의무 종사기간(36개월, 28개월)이 끝난 후 후계농업인 자격이 자동 상실됨
-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계농업인이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 이자 납부시기 조정 가능

마. 교육훈련 및 행정사항

1) 교육훈련

<신규후계농업인>

- 시장·군수 등은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신규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후계농업인으로 성장발전함에 필요한 각종지원 및 행정절차 등에 관한 공통교육과 영농정착에 필요한 분야별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구 분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대상
공 통 교 육	5일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사업시행년도에 선발된 후계농업인
영농기술교육	1주이상	농업계학교, 농업기술센터	"

<취농창업후계농업인>

- 시장·군수는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1개월이상의 현장실습 교육을 이수토록 함

<공통사항>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은 후계농업인의 교육훈련, 경영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확보·지원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신규후계농업인의 경우 공통교육 및 영농기술교육 이수자,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의 경우 현장실습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 발급사실을 용자 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지원자금을 용자받을 수 있도록 함

바. 행정사항

1) 2001년도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선정계획 공고

- 시장·군수 등은 2001년도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선정에 대하여 2000. 12월중 공고(평가기준 포함)하여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2001년도 후계농업인으로 기 신청한 자중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자격을 갖춘자에게는 개별 통지하여 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2) 선정결과 보고

-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년도 1월 15일까지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 및 익년도 사업신청자 현황을 계통보고(신규후계농업인, 취농창업후계농업인 구분)
- 시·도지사는 후계농업인 선정결과(신규후계농업인, 취농창업후계농업인 구분)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사업시행년도 2.10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 구별 신청 및 선발인원과 지원금액만 집계 보고(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자도 선발 및 지원인원에 포함 집계)

3)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년도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년도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 등은 사업자금을 지원 받은자에 대하여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이 사업계획외의 타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 사후관리 실시
 - 시장, 군수 등은 현지 확인결과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 등은 후계농업인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비치하고 후계농업인에 대하여는 농·축협 등 융자취급기관과 매년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영농상담 및 영농 기술교육 실시
 -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경영장부를 작성하여 매년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익년 1월말)해야 하며, 시장·군수 등은 경영일지를 분석하여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영농상담 및 영농기술교육 실시
 - 시장·군수 등은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자금지원후 3년이 도래되는 연도에 취농창업후계농업인에 대한 경영평가실시
- 시장·군수 등은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의 영농기반 확보(영농승계)여부를 확인

4) 후계농업인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가) 사업취소사유

- 시장·군수 등은 후계농업인이 지원자금을 용자받은 후 다음사항의 용자금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6호서식)
 - 지원자금을 용자받은 후 상환기일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자(단, 영농에 지장이 없는 영농현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생계보전 부업형 취업자,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취업자, 격일·격주 2~3회 교대 근무자,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무자는 제외)
 -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자금지원 당시보다 사업분야 경영규모가 축소된 자에 한함)중 후계농업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형집행중인 자로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시장·군수 등이 후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단, 농업계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후계농업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동안 매년 1회이상 재학증명서 징구)
 - 영농승계를 위하여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가 영농승계 계획에 의한 영농기반을 확보하지 못하여 2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나) 지원자금회수

- 시장·군수 등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동 사업대상자에게 15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사업 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지함과 동시에 용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영농승계 계획에 의한 영농기반 확보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5일 이내에 선정당시 영농승계 계획에 의한 영농기반을 확보할 것을 통보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15일 이내에 영농기반을 확보할 것을 다시 통보 하였으나 사업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 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지함과 동시에 용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지원자금 회수를 통보받은 용자취급기관은 지원자금을 회수
- 지원자금의 상환조치를 통보받은 자는 용자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내에 원리금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다만, 사망·신병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중 용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등이 판단할 때에는 용자시 용자조건에 따라 용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용자취급기관에 정상 상환 조치 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용자조건에 따라 용자금을 회수토록 통보
- 시장·군수 등이 사업취소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취소자의 명단과 사유를 매월말 기준으로 관련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고, 반기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반기익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4) 사업장소의 이전

- 후계농업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등이 담당
- 시장·군수 등은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시·도, 용자취급기관등)에 통보 및 보고
 - 이 경우 사업장소를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통보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등으로 용자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전 관할 용자취급기관과 이전후 관할 용자취급기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대출금을 이관·인수
 - 이관조치 :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5) 후계농업인의 교체 및 승계

가) 후계농업인의 교체

-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년도 11월말까지 지원자금을 용자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사유를 제출토록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예비대상자중 우선순위가 높은자 순으로 즉시 교체하고 교체 결과를 용자취급기관에 통보

나) 후계농업인의 승계

- 사업자금 용자후 후계농업인의 사망·신병등으로 인하여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키고자 할 때에 시장·군수 등은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 결정
 - 시장·군수 등은 승계자에게 반드시 후계농업인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함
 - 용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용자금 및 용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
 -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킨 경우 그 결과를 관계 기관(용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 여성후계인이 결혼으로 인해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형제 또는 자매에게 승계 가능(이 경우 위의 후계농업인 승계절차에 준함)

6)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강화 등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은 사업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업인에 대하여 농촌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지원하고
- 농협중앙회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은 후계농업인의 영농활동에 필요한 생산기자재 공동구입, 생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농·축산물 수매비축시 후계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우선 수매하고 생산물 판매 알선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는 동 사업지침 이외의 후계농업인력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촌인력육성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계획 수립후 추진

7) 보고 (보고기관 → 농림부)

보고기관	보 고 내 용	보고시기	비 고
시·도지사	후계농업인 선정결과 및 익년도 대상자 신청결과	사업시행년도 2.10까지	별지 제3호서식
시·도지사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	반기익월 2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
농협중앙회장	용자실적	반기익월 3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
농협중앙회장	지원자금회수 불가능한 사업 취소자 현황	반기익월 3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영농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후계농업인 심의·추천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품목별 생산자단체
 - 단, 시지역(읍·면지역 제외)과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등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신규후계농업인>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영농정착중이거나, 영농정착하고자 하는 자 중 사업시행년도 1.1현재 40세 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으로서,
 - 30세미만인 미혼 여성으로서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생산자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중 품목별 생산자 단체장이 추천한 자
 -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군인중 전역희망자
 -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으로 편입된 자중 사업시행년도에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자
 -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사)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의 시·군 또는 읍·면 단위 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북한 이탈주민중 보호대상자로서 영농교육 훈련등을 마친 자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등 농업계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단,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농·축산경영자금, 귀농자창업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중인자와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포기 및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음

<취농창업후계농업인>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영농정착중이거나, 영농정착하고자 하는 자 중 사업시행년도 1.1현재 35세 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으로서,
 - 농업계학교를 졸업한(사업시행년도 졸업예정자 포함)직후 영농승계를 원하는 자
 - 산업기능요원 농업인후계자로 편입된 자중 사업시행년도에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자로서 영농승계를 원하는 자
 - 타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졸업자 중 영농정착을 원하거나 농촌에 정착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신청절차

- 사업시행 전년도 1. 20일까지 신청서 제출기관에 신청

라. 구비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실시규정 제3호서식) 1부
-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 영농승계 확인에 필요한 호적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단,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농업계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영농교육훈련 증명서, 농산물 유통관련 사업종사 확인서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마. 기타사항

- 시장·군수 등은 사업신청자에 대한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은 2001년도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지침을 준용하여 잠정 결정

[별표 1]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구분 품목	0.5ha미만에 준하는 농가	0.5~1.0ha 미만에 준하는 농가	1.0~1.5ha 미만에 준하는 농가	1.5~2.0ha 미만에 준하는 농가	2.0ha이상 준하는 농가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이상
식량작물	0.70	0.70~1.40	1.40~2.10	2.10~2.80	2.80
노지채소	0.33	0.33~0.65	0.65~0.98	0.98~1.31	1.31
시설엽근채	0.12	0.12~0.24	0.24~0.36	0.36~0.48	0.48
시설과채	0.08	0.08~0.16	0.16~0.24	0.24~0.32	0.32
노지과수	0.23	0.23~0.45	0.45~0.68	0.68~0.91	0.91
시설과수	0.08	0.08~0.16	0.16~0.25	0.25~0.33	0.33
화 훼	0.05	0.05~0.09	0.09~0.14	0.14~0.19	0.19
약용작물	0.14	0.14~0.27	0.27~0.41	0.41~0.54	0.54
특용작물	0.72	0.72~1.43	1.43~2.15	2.15~2.87	2.87
느타리버섯	0.03	0.03~0.06	0.06~0.09	0.09~0.12	0.12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한우(번식)	18	18 ~ 36	36 ~ 54	54 ~ 72	72
한 육 우	10	10~20	20~31	31 ~ 41	41
낙 농	2	2~5	5~7	7 ~ 10	10
양돈(비육)	36	36~73	73~109	109 ~ 145	145
양돈(번식)	8	8~15	15~23	23 ~ 31	31
양계(산란)	756	756~1,512	1,512~2,268	1,512~2,268	2,268
양계(육계)	2,459	2,459~4,918	4,918~7,378	7,378~9,837	9,837

※ '99농축산물 표준소득(농진청)자료 참고(축산분야는 '98자료 참고)

※ 이 표에 없는 품목은 상기 표준소득(농업소득)을 감안하여 배점

※ 2개이상의 농업기반이 있을 경우 사업 신청분야 기반은 100%, 그외의
기반은 50%인정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 :

영농 규모 (평)	소 유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임 차								
	계								
시설 현황 (평)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벼섯 재배사				기 타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설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재 배 현 황 (평)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계
가 축 보 유 현 황 (두,수)	한 우	젓 소	돼 지	닭					기 타
기 타 특 기 사 항									

2. 사업계획

사업명 :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사업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한우 입식								
·								
·								

※ 자부담금 조달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농지 구입				←→
한우 입식		←→		
·				
·				
·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 목 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 도 작						
화 획						
한 우						
돼 지						
•						
•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 생산된 농산물 판매방법

○

※ 판매방법은 구체적으로 작성(예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2001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후계농업인 추천명단

추천 순위	성명	주소	주민 등록 번호	최종 학력	평 가 기 준 (점 수)								지원 자금
					영농 정착 의욕	학력	교육 훈련	영농 경력	영농 기반	사업 계획	가점	총 점수	

[별지 제3호서식]

자체가 26-2

2001년도 선정결과 및 2002년도 신청현황 보고

<2001년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신규후계농업인,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각각 구분하여 아래 서식에 의하여 집계보고

1. 성별·연령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산업기능요원	결혼여부		연령별					
		기혼	미혼	합계	19세이하	20-24	25-29	30-34	35-40세
합계									
남									
여									

* 신청인원은 ()로 표시하고, 산업기능요원은 결혼여부, 연령별에도 포함

2. 학력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특수전문대			대졸이상		
				소계	농업계	농업계외	소계	농업계	농업계외	소계	한국농전	여주농전	소계	농업계	농업계외
합계															
남															
여															

* 신청인원은 ()로 표시

3. 사업작목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시·군·구별		합계	경 중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시·군	구분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 신청인원은 시·군·구별로 합계란에만 ()로 표시하되 분야별로 신청인원 기재는 생략

4. 사업작목별 지원대상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구별		합계	경 중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시·군	구분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2002년도 사업대상자 신청현황>

신규후계농업인,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각각 구분하여 아래 서식에 의하여 집계보고

1. 성별·연령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산업기능요원	결혼여부		연령					
		기혼	미혼	합계	19세이하	20-24	25-29	30-34	35-40세
합계									
남									
여									

※ 산업기능요원은 결혼여부, 연령별에도 포함

2. 학력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특수전문대			대졸이상		
				소계	농업계	농업계외	소계	농업계	농업계외	소계	한국농전	여주농전	소계	농업계	농업계외
합계															
남															
여															

3. 사업작목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시·군·구별		합계	경종농업분야						축산분야					
시·군	구분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합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사업추진 계획(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계획(확인) 내용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계	후계자 자금	기타자금	
축사시설개선	200평	15,000	15,000		'00. 3월중순
한 우 입 식	10두	15,000	15,000		'00. 4월중순
농 지 구 입	1,000평	30,000	30,000		'00. 4월초순
축 사 신 축	200평	30,000	30,000		'00. 4월중순~7월중순

위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후계농업인 지원자금을 사용코자하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 시장·군수,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직인)

용 자 취 급 기 관 장 귀 하

후계농업인 관리카드

사 진 (반명 합판)	① 성명 (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고유 번호	
	④ 현주소 우편번호 :	⑤ 정착사업장소 우편번호 :	③ 연락처 전화번호 :	
			⑥ 주사업(희망)작목 : ⑦ 자금지원(희망)내역	
	⑧ 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재학)		⑨ 결혼여부: ㉑미혼 ㉒기혼	

⑪ 병역 등 주요경력

⑫ 영농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구 분	기 간(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 간(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병 역		
		
		
		

⑬ 포상경력·영농국가기술자격증 등

⑭ 가족사항(본인제외)

년 월 일	내 용	수 여 자	성 명	관 계	생 년 월 일	직 업

⑮ 영농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요 사업작목(벼,사과,배,오이, 배추,한우,인삼,느타리버섯 등)별 규모(평, m ² , 두, 수 등)								
영농기반 (본인소유·승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논, 밭, 과수원, 초지 등)종류별 규모(평) ○ 시설(우사, 돈사,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저온냉장고, 스프링쿨러 등)종류별 규모(대) ○ 장비(트랙터, 컴퓨터, 트럭, 승용차, 이앙기 등)종류별 규모(대) 							
경영실적 (천원)	농업 조 수익 농 외 소 득 경 영 비(생산비) 농가소득 (순수익)							
지원자금상환잔액(천원)								
경 영 기 술 수 준								
조 사 자 직 · 성 명								

① 매년도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사업작목 담당지도사가 현지확인후 작성하되 구분년에는 후계농업인 1년차, 2년차, . . . 등을 구분기입

②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

[별지 제6호서식]

후계농업인 사업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 내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결정액
계		
농지구입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전업, 이주, 무단이탈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자체가 26-4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

1. 연도별 사업취소자 현황

(단위 : 명)

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 '81년도부터 사업취소 연도별로 작성

2. 사유별 사고인원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사망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총사업 취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완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중인자	인 원 회수액 미회수액							

[별지 제8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경사유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자체가 26-5

용자 실적 보고

(단위 : 명, 백만원)

시도별	자금배정액	용 자 액		미용자액		비 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서 울						
.						
.						
.						
.						
.						
.						
.						
.						
.						
.						
.						
.						
.						
.						
.						
.						
.						

※ 매분기 실적을 누계로 집계하여 작성

[별지 제10호서식]

자체가 26-6

지원자금 회수불가능한 부실후계자(사업취소자) 현황

시·도 별	사업 취소 연도 별	지원자금 회수불가능 사업취소자 인적사항						지원자금회수현황(단위 : 천원)						
		성명	주 소	선정 연도	사업 작목	취소 일자	취소 사유	지원 년도	지원액 (용자액)	기상 환액	회수불능액			회수 불가능 사유
											계	원금	이자	
합 계														
서울시 · · · 제주도														

※ '81년부터 매년도 반기까지 누계로 집계 작성

◇ 회수 불가능 사유(아래 “양식”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바람)

- 채무 관련인 전원 무재산 상태로 강제 집행 불가능자 : 명
- 본인 행방불명, 보증인 무재산으로 회수 불능자 : 명
- 강제 집행에 따른 경비가 채무관련자의 재산보다 많아 회수 불가능한 자 : 명

◇ 회수 불가능자에 대한 대처방안(구체적으로 작성)

추천순위	<div data-bbox="543 378 1021 441" data-label="Section-Header"><p style="text-align: center;"><u>후계농업인 심의 · 추천서</u></p></div> <div data-bbox="193 556 943 987" data-label="List-Group"><ol style="list-style-type: none">1. 성 명 :2. 주 소 :3. 주민등록번호 :4. 신청분야(품목) :5. 영농종사기간 : 월 개월 (. . ~ . . 현재까지)6. 추천의견(추천권자) :</div> <div data-bbox="239 1076 1083 1181" data-label="Text"><p>상기자를 ○○연도 농림사업지침에 의한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심의 대상자로 추천합니다.</p></div> <div data-bbox="933 1274 1115 1311" data-label="Text"><p style="text-align: right;">2000. . .</p></div> <div data-bbox="445 1336 925 1375" data-label="Text"><p style="text-align: center;">추천자 : (사)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p></div> <div data-bbox="561 1401 1118 1440" data-label="Text"><p style="text-align: center;">○○시·군(읍·면)연합회장 ○○○ (인)</p></div> <div data-bbox="452 1466 940 1509" data-label="Text"><p style="text-align: center;">○○읍·면 등의 기관장 귀하</p></div>

※ 읍·면외의 지역은 시·군 연합회장이 추천

영농승계 확인서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적	확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논	1,234평	김○○(부)	2001. 3.31	상속
○○리 234번지	밭	2,345평	김○○(형)	기확보(1999.1월)	임차
○○리 345번지	돈사	123평	김○○(제)	2001. 2. 1	임차
·					
·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적	확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버섯사	100평	김○○(부)	2001. 3.31	상속
○○리 234번지	하우스	2,345평	김○○(형)	기확보(1999.1월)	임차
○○리 345번지	돈사	300평	김○○(제)	2001. 2. 1	임차
·					
·					

영농승계 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김○○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2001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별지 제13호서식]

영농사업계획 평가서

사업신청자 : ○○면 ○○리 123 김○○

심사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인)

○ 총 점

구 분	합 계	타 당 성	치 밀 성	발 전 가 능 성
총 점				
적합성 및 문제점				
투자 및 자금조달				
생산 및 판매				
작목 집단화				

○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구 분	합 계	타 당 성	치 밀 성	발 전 가 능 성
점 수				
평가의견				

○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구 분	합 계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생산 및 판매계획

구 분	합 계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사업분야에 대한 타농가 재배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 가능성

구 분	합 계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각 항목에 대한 평가는 만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의 점수를 임의로 부여 평가(예 : 신규후계농업인의 경우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총점은 40점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과장 박성자, 사무관 신영현)입니다.

1. 목 적

-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부담경감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원대상은 아래의 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경지소유규모 10,000㎡ 미만의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이하 '농업인' 이라 함) 중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및 농림부 고시 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시·군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지역중 도시계획법 제21조(개발제한구역의 결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지원금액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당해 학교의 급지별 구분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이하 '학자금' 이라 함) 전액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받는 농업인은 제외

3. 근 거 :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89.4.28)

4. 년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구 분	'90~'92	'93~'97	'98	'99	2000	2001(P)
사업량 (명)	625,506	494,811	92,526	79,834	84,000	78,000
사업비 (백만원)	148,142	227,796	49,391	47,544	50,232	50,760
- 국 비	142,142	73,719	14,817	14,263	15,070	15,228
- 지방비	-	154,077	34,574	33,281	35,162	35,532

주) '90~'92 전액 국비, '93~'96 국비 1/3, 지방비 2/3, '97이후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결산기준)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1) 지원대상자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경지소유규모 10,000㎡미만의 농업인중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직접부양자의 내용
 - ①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 ② 동 생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③ 본 인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학생본인이 세대주(호주)가 되어 농업(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2)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급지별 구분에 따른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3) 실업계고등학교의 종류와 범위

실업계고등학교라 함은 농업·임업·공업·상업·수산·해양·실업·종합
고등학교를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함

- 농업고등학교 : 농업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임업고등학교 : 임업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공업고등학교 : 공업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상업고등학교 : 상업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수산고등학교 : 수산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해양고등학교 : 해양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실업고등학교 : 농업, 임업, 공업, 상업, 수산, 해양, 가정계중 2개이상 학과가
혼합 설치된 학교 또는 가정계 학과만 설치된 학교
 - 종합고등학교 : 실업계와 보통과(인문과정)가 혼합된 학교
- 종합고교의 경우 실업계학생만 지원
- ※ 실업계고등학교구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4)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표 : < 별표 > 참조

5) 제외대상

-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자녀학비」 같은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이나 「이통장자녀장학금」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이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경지소유규모는 10,000㎡미만이나 대지, 건물 등 재산공시지가 기준 170백만원 이상인 경우

나. 2001년 사업내용

사업량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비고
명	백만원			
78,000	50,760	15,228	35,532	1인당 평균지원단가 651천원

다. 사업비 부담기준 : 국비 30%, 지방비 70%(시·도비 35%, 시·군·구비 35%)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도지사가 도(시)·군(시,구)간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기획관리실 여성정책담당관실 【 (02) 500-2654~5 】
- 시·도 : 농업정책과(농정과)
- 시·군·구 : 농업정책과(산업과)

다.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 별표 >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표」 참조
- 선정절차(행정사항 참조)

① 농업인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12월말까지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하같음)
 에게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이·통장이 비치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은 미리 서식배부 조치

② 이·통장 : 지원신청서 내용확인(신청농업인의 거주여부, 영농규모 등의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확인) 후 서명(날인)

- ③ 읍·면·동장 : 학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 확인,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지급대상학생의 재학여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조회 [별지 제2호 서식]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거주여부는 특별히 확인요망)

* 읍·면·동장은 재학조회 회신 후 지원대상여부를 신청인과 학교장에게 통지

- ④ 학교장 : 읍·면·동장이 조회한 학자금 지급학생 재학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받은 것으로 정리(학생에게 납입고지 불필요, 다만, 신입생의 1/4분기 학자금은 예외)

* 농업인학자금자녀 재학확인 통보 : 년초에는 1. 20까지, 기타는 학교분기 익월 5일까지 별도의 조회요구가 없어도 읍·면·동장에게 통보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요구

- ① 읍·면·동장 : 학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일내에 소요액 신청
· 1·2분기(2월10일), 3분기(6월10일), 4분기(9월10일)
- ② 시장·군수·구청장 : 학자금지원대상 학생수 및 소요액을 파악하여 당해년도 2월20일(1·2분기), 6월15일(3분기), 9월15일(4분기)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③ 시·도지사 : 시·군·구 자료 취합후 2월28일(1·2분기), 6월20일(3분기), 9월20일(4분기)까지 농림부에 학생수 및 소요예산 신청 [별지 제3호 서식]
- ④ 시·도교육감 : 각 학교의 학자금 지원업무를 감독하고, 시·도지사에게 관내 학교현황, 급지별 수업료 등 학자금지원에 필요한 자료통지 등 협조

○ 사업비 지원방법

① 농림부에서 학자금에 대한 총사업비중 국비부담금을 시·도에 배정 → 시·도에서는 시·도부담금을 합하여 시·군·구에 배정 → 시·군·구는 시·군·구의 부담금을 합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배정된 후 신청자에 실적에 따라 집행

②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농업인의 거주확인,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 및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확인과 학교의 재학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계좌에 수업료·입학금 입금

* 2001년도 중 추가 신청자는 거주확인, 지원대상 여부, 재학사실 등을 확인한 후 지원 조건이 맞는 경우 소급지원 (단, 당해 회계년도 예산범위 내)

○ 학자금지원 홍보

① 읍·면·동장,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 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② 각 학교장, 시·도교육감 : 지원대상 학생이 학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홍보 및 관련자 교육(신입생 모집 요강, 입학안내서 등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항의 상세한 설명 등)

○ 학자금 정산결과보고 [별지 제4호 서식]

① 시장·군수·구청장 : 익년도 3월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② 시·도지사 :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국고잔액 반납 : 정산보고후 연말까지 아래구좌로 납입 및 영수증 첨부하여 결과보고

· 회계 및 소관 : 농림부 일반회계 세입징수관

· 과목 : 경상이전수입(12-59-591 : 농업인 자녀학자금 반납금)

<행정사항>

○ 업무별 · 일정별 추진절차

업 무 명	최 초 작성기관	학교장	읍·면· 동장	시장·군수 · 구청장	시·도지사	농림부
○ 학자금지원신청서 작성·제출	보호자	(이장경유)	→12.31			
○ 학적확인 조회	읍·면·동장	→1.25				
○ 학적확인 회신	학교장		→1.31			
- 1/4, 2/4분기 국비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2.20	→2.28
○ 학자금 지원대상 여부 통보	읍·면·동장 → 보호자			→2.10		
○ 1/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6.5			
- 3/4분기 국비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6.10	→6.15	→6.20
○ 2/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9.5			
- 4/4분기 국비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9.10	→9.15	→9.20
○ 3/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12.5			
○ 4/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2.28			
- 집행실적 보고	읍·면·동장		-----	→2.28		
○ 학자금 정산 보고	시장·군수 · 구청장				→3.15	→3.31
○ 보조금예산 통지	장 관				10.15←	←
○ 학자금 지원지침 통지	장 관		11.30←	11.25←	11.20←	←

※ 정부 분기 : 1/4(1~3월), 2/4(4~6), 3/4(7~9), 4/4(10~12)
 학교 분기 : 1/4(3~5월), 2/4(6~8), 3/4(9~11), 4/4(12~2)
 학자금 납입고지 : 1/4(2월), 2/4(5월), 3/4(8월), 4/4(11월)

< 별표 >

<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표 >

농업인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소유규모 10,000㎡미만 ○ 기타 위에 준하는 농업인 및 연간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말,젖소,사슴 : 30마리미만 ○ 돼지,개 : 200마리미만 ○ 산양,면양 : 300마리미만 ○ 토끼,친칠라,밍크 : 5,000마리미만 ○ 가금 : 10,000마리미만 ○ 양봉 : 150군미만 ○ 기타위에 준하는 양축인 및 연간 9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야소유규모 260,000㎡미만 ○ 기타 위에 준하는 임업인 및 연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이 없는 자 ○ 무동력선 사용자 ○ 15M/T이하 동력선 사용자 ○ 소규모 양식사업을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하(垂下), 연승(延繩) 4.0ha미만 - 살포(撒布), 투석(投石) 14.0ha미만 ○ 기타 위에 준하는 어업인 및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

※ 임차하여 경작하는 면적은 소유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 양축인의 경우 신청일 현재 성축(成畜)기준(새끼, 육성우는 2두를 1두로 환산)

※ 각각의 기준을 환산하여 중복적용 금지(예 : 경지 7,000㎡ 소유, 소 25마리 및 돼지 150마리를 사육할 경우 지원대상임)

< 제외대상 >

-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자녀학비」 같은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이나 「이통장자녀장학금」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학자금을 당해 학생에 대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보호자 및 다른 가족(학생본인 포함)이 직장 등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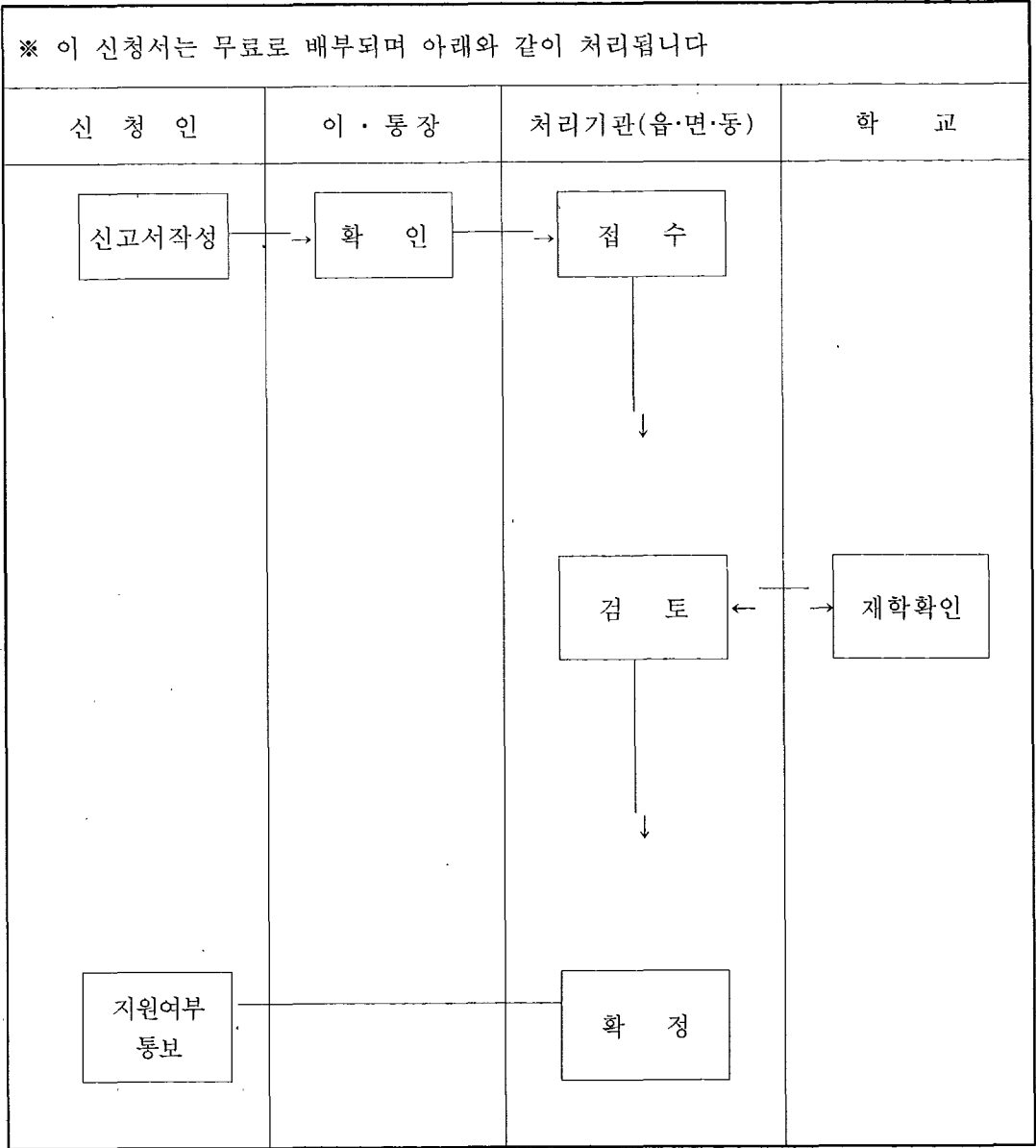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주소					전화	
신청 자 기 재 내 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생과의 관계		
	영농(어)규모				영농(어) 일수	
	재산사항	공시지가 170백만원 미만() 또는 이상()				
	학생성명	학생 생년월일				
	학 교 명	학 과 명			학년반	
	학교주소				학교우편 번호	
<p>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학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1 년 월 일</p> <p>신청인 : 보호자 성명 (인)</p> <p>확 인 : 이 · 통장 성명 (인)</p> <p style="text-align: right;">읍 · 면 · 동장 귀하</p>						
<행정기관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비 고		
주민등록주소 :						
공부(公簿) 소유 : 경지 m ² , 임야 m ² , 가축 두, 어선(15M/T이하) 척						
공시지가 : 기준미만(), 기준이상() ※ 해당()에 ○ 표시, 기준 이상자는 비고란에 금액표시						

(민원서)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뒤면)



(민원서)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3호 서식]

□ 작성기관명 : (전화번호)

분기별 농업인 자녀학자금 국비보조 신청										
[단위 : 학생수(명), 사업비·국비 (천원)]										
구 분		전분기까지 배정			/4분기 요구			/4분기까지 누계		
		학생수	사업비	국 비	학생수	사업비	국 비	학생수	사업비	국 비
면지역	입학금									
	수업료									
읍지역	입학금									
	수업료									
시지역	입학금									
	수업료									
계	입학금									
	수업료									
	계	-			-			-		

주) 1. 수업료지급 학생수에는 입학금지급 학생수를 포함
 예) 입학금 15명(1학년), 수업료 45명(1학년 15명, 2·3학년 30명)
 2.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금액임

(일 반)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4호 서식]
(총 공통 - 9)

농업인 자녀학자금 정산결과 보고									
구 분		예산액(A)		교부결정액(B)		집행(정산)액(C)		정산잔액(B-C)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명	천원	명	원	명	원	명	원
면지역	국 비	-		-		-		-	
	지방비	-		-		-		-	
	소 계							-	-
읍지역	국 비	-		-		-		-	
	지방비	-		-		-		-	
	소 계							-	-
시지역	국 비	-		-		-		-	
	지방비	-		-		-		-	
	소 계							-	-
합 계	국 비	-		-		-		-	
	지방비	-		-		-		-	
	소 계							-	-

주) 1. 학생수는 “소계”란에만 표시
 2. 예산액은 당초(년초) 편성된 예산임
 3. 교부결정액은 연말에 교부결정이 확정된 금액이며, 국비는 농림부에서 시·도에 교부된 총액이고 지방비는 읍·면·동에 배정된 도(시)비 + 군(구)비 총액임
 4. 집행(정산)액은 읍·면·동에서 학교에 실제 지출(송금)된 금액임
 * 3명에게 각각 1분기씩만 지급하였어도 학생수는 3명으로 집계요망
 5. 정산잔액은 농림부에 반납할 국비만 기재
 6. 잔액 과다발생 또는 국고부담비율을 3%이상 초과 또는 미달하여 지원하였을 경우 별지 또는 하단에 사유를 작성·제출

(보고서)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인력과(과장 박형규, 행정 사무관 남태현)입니다.

1. 목 적

-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지원,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존을 탈피, 자기혁신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주체 육성
- 컨설팅서비스 민간공급기반을 정비·강화하고 농가의 컨설팅수요를 촉발하여 중장기적으로 자율적 시장기구에 의한 컨설팅 추진(소프트웨어적 공공투자)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경영체의 경영컨설팅수요 및 민간컨설팅기관의 공급능력이 취약함을 감안, 2001년도의 경우에도 시범사업차원에서 추진하고 사업추진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컨설팅필요경영체와 컨설팅기관·업체·전문가팀(이하 컨설팅기관·업체)간의 자발적인 계약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행정기관(농림부, 시·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등)은 계약의 알선과 적정화, 계약이행여부 감독, 정보 제공 및 제도정비에 주력
- 지원대상경영체와 컨설팅기관·업체 및 행정기관 사이에 정보유통체계와 사업관리체계를 정비,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도모
 - 지원사업 관련정보를 집중시켜 사업 참가자의 정보활용도 제고
- 컨설팅트 교육프로그램 실시
 - 컨설팅트 역량제고 및 컨설팅 질 향상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실시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제25조(농업과학기술의 진흥)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9	2000	2001	2002~2004
사업량(개소)	400	400	400	-
·법인경영체	200	200	200	-
·개별농가	200	200	200	-
사업비(백만원)	2,800	4,000	4,000	-
·국고보조	840	1,200	1,200	-
·지방비보조	560	800	800	-
·자부담	1,400	2,000	2,000	-

(*) 사업량은 수요·공급자간의 실제계약단가에 따라 변동가능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경

- 농업구조개선투자로 경영규모화와 시설·장비 현대화는 진전되었으나 경영능력향상이 병행되지 못해 사업이 조기 정착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않아 농업인의 경영혁신노력을 측면 지원할 필요
- 민간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희망 농업경영체(농업법인 및 개별농가)에 대해 컨설팅료 일부를 지원, 경영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강구·실행토록 함

(2) 지원대상 : 축산분야, 원예·특작분야 법인 및 개별농가로서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경영체

(3)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 컨설팅비용 지원 : 1경영체당 평균 10백만원
(국고보조 30%, 지방비보조 20%, 자부담 50%)
 - 사업비한도 : 법인 - 3백 ~ 14백만원
 - 개별농가 - 2백~7백만원
- ※ 계약금액이 사업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자부담
- ※ 계약기간 :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발효일이 2001.12.31이내인 경우 2002년까지 지원도 가능

(4) 지원내역

- 지원대상경영체에 대해 사업비한도내에서 컨설팅료의 50% 지원(1~7백만원까지 정부지원)
- 지원자금은 농업경영컨설팅료의 지급 이외에 시설·장비구입자금,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 지원대상컨설팅은 [별표2]에 예시된 바에 따르며 [별표2] 이외의 컨설팅에 대한 지원 여부는 시·도지사가 결정함. 이 경우 시·도지사는 결정의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통보

나. 2001 사업비(예산) 내용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합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부담
농업경영컨설팅 지 원 사 업	개소 400	백만원 4,000	1,200	800	2,00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컨설팅사업 추진 관련 자문, 사업추진상황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과장급 이상 시·도 농정담당공무원, 지도계통 전문가, 농업계대학 교수·연구자, 선도농가, 농업·비농업분야의 컨설팅 전문가를 위촉,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시·군과의 협조
 - 시·도지사는 시·군담당직원에게 대해 컨설팅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고, 시·군과의 업무협조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시장·군수는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전담직원을 지정 및 농가홍보를 실시하고, 농가(농업법인)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시·도지사는 지역농정시책이나 농업여건, 컨설팅가능 기관·업체의 존재 여부 등을 감안, 원예·특작, 축산 분야중 세부사업분야를 지정하며, 이 사항을 포함하여 컨설팅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지침 제정 가능(자체지침 제정시 농림부에 통보)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업정책국 농촌인력과
(전화 : 02-503-7216, FAX : 02-503-7217)
- 시·도 : 농정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정유통과 등)
- 시·군 : 농정담당부서 혹은 농업기술센터

다. 컨설팅대상경영체 선정 및 컨설팅기관·업체 지정

(1) 컨설팅대상경영체 선정

1)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원예·특작분야 혹은 축산 분야 법인경영체 또는 개별농가
- 시·도 및 시·군단위 정보화교육기관(사설기관포함), 농림수산정보센터(AFFIS) 등의 농업정보화교육을 3일 이상 이수하였거나 계약이후 일정 시기 이내에 이수할 예정인 경영체로서 신청시점 현재 농림수산정보망 또는 인터넷을 활용중이거나 활용 의사가 있는 경영체
 - ※ AFFIS, 인터넷, 기타 상용서비스 가입·사용자로서 정보통신활용능력이 갖추어진 농업인은 정보/통신서비스회사가 발행하는 가입 및 최근 3개월 이상의 사용실적을 증빙하는 문서(가입일시, 접속회수, 사용시간 등을 포함)를 제출함으로써 정보화교육 이수에 갈음할 수 있음

2) 선정우선순위(순서대로 적용)

- 경영장부나 영농일지를 최근 1년 이상 기록한 경영체
-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 지원대상경영체
-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로서 지도계통컨설팅을 받은 경영체
- 종합컨설팅(별표2 참조)을 받고자 하는 경영체
- 지원 신청 시점 현재 인터넷계정이 있거나 농림수산정보망 회원인 경영체
 - 농림수산정보망회원의 경우 최근 6개월 동안 월평균 1시간 이상 사용실적이 있어야 함
-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부실화 우려나 운영상 애로가 있다고 시·도 지사가 인정하는 경영체
- 경영규모가 큰 경영체

3) 선정절차

- 시·도별 지원대상경영체수 확정 : 농림부
 - 신청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시·도별 경영체수를 감안,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되 각시·도의 계약체결 절차 1차 완료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가능
- 시·군·구별 지원대상경영체수 확정 : 시·도지사

- 지원대상경영체 추천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관내소재 경영체 중 컨설팅희망경영체의 신청을 받아 도지사에게 추천
 - 시장·군수는 시·군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추천 가능
 - 컨설팅 희망경영체의 신청이 많을 경우 선정요건 및 선정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시·군에 배정된 지원대상경영체수의 2배수를 우선순위를 표시하여 추천(추천우선순위를 가릴 수 없을 경우 동순위로 표시,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상 관할지역의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적극 활용
- 지원대상경영체 확정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추천한 경영체에 대해 본 지침 및 시·도 지침이 정하는 선정요건 및 선정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경영체 확정후 농림부에 보고하고, 분기별로 자문위원회(또는 농정심)에 사후 집계 보고
 - 시·도지사는 추천받은 경영체 전체에 대해 순위를 매기며 계약체결 이전에 선순위자의 선정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자를 대체선정
 - 일단 지원대상경영체로 선정된 이후에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컨설팅기관·업체가 없을 경우 시·도지사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2) 컨설팅공급기관·업체 지정

- 1) 지정신청자격 : 아래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함
 - 농업분야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고용계약이나 법인설립에 의해 전문인력을 4인 이상 보유한 민간기관(대학 포함 - 이하 '기관'이란 대학을 포함함)·업체 또는 4인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문가팀
 - 기관·업체에는 그 부속기관도 포함. 다만, 계약의 이행책임은 당해 기관·업체에 귀속되며 이를 계약에 명시
 - 인터넷 및 농림수산정보망(AFFIS)을 활용한 농업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예정인 컨설팅기관·업체
 - 컨설팅기관·업체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외부 전문가그룹을 확보해야 함
 - 1) 내부 전문인력을 즉시 대체할 수 있는 전문인력 포함
 - 2) 「별표2」에서 분류한 컨설팅 서비스분야 중 내부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분야는 각 2인 이상의 외부 인력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컨설팅기관·업체 (전문가팀은 대표컨설턴트의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필해야 함)

※ '전문인력' : 법령상 공인된 자격증이 있는 분야의 경우에는 그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상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포함) 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
-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학위가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 기관·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 경험자
- 해당 분야 기관·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 경험자 (시설원예온실의 경우 3년 이상의 생산온실 현장경험 포함)
- 선도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컨설팅기관·업체·전문가팀의 내부 전문인력과 외부전문가그룹에 참여하는 컨설턴트 1인은 1개 기관·업체를 포함, 3개 그룹까지만 참여 가능

2) 지정우선순위(순서대로 적용)

- 최근 2년이내에 유료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농업경영체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컨설팅기관·업체(전문가팀의 경우 컨설턴트 개인의 최근 2년이내 컨설팅계약실적을 전문가팀의 계약실적으로 할 수 있음)
 - 컨설팅계약건수와 컨설팅계약액 총액 및 컨설팅 성과를 상호 비교 평가
 - 연구용역, 경영교육, 정보화교육은 유료컨설팅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 중소기업청에 지정된 벤처기업으로서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 컨설팅 가능분야 시설·장비 보유현황이 우수한 컨설팅기관·업체
- 컨설팅 가능분야 보유인력 및 외부전문가그룹이 충실한 컨설팅기관·업체
- 인터넷 및 농림수산물정보망의 전자우편, 게시판, DB 등을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중인 컨설팅기관·업체·전문가팀
- 농업교육·훈련기관이 주관하는 교육 또는 workshop을 이수한 컨설팅기관·업체

※ 시·도지사는 지역농정시책이나 지원대상경영체가 요구하는 컨설팅 내용 등을 고려, 지정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을 추가 가능

※ 컨설팅기관·업체 지정에 있어 지역제한은 두지 않음

3) 지정절차

- 2000년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서 계약 1건 이상 수주업체는 변경사항만 신고하고 재지정절차 생략가능
 - 단, 컨설팅공급자지정신청서 [별지서식1] 는 제출

○ 컨설팅기관·업체 지정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컨설팅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컨설팅기관·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요건과 지정우선순위에 따라 컨설팅기관·업체를 지정
-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동위원회의 공개심의를 거쳐 컨설팅기관·업체를 지정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로 시·도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 시·도지사는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10개 미만이거나, 가용 예산에 의한 농가추가선정시 컨설팅 가능한 기관·업체가 1개소 이하인 경우 지역농정시책이나 지원대상경영체의 컨설팅 수요를 감안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업체 등을 직권으로 추가 지정
- 지원대상경영체에 컨설팅기관·업체에 대한 상세한 참고자료·소개문을 서신으로 발송하고 인터넷 도정홈페이지와 농림수산정보망에 게시하는 한편 지정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도지사는 지정심사시 지역농업시책이나 농가수요를 감안, [회계·재무], [원예], [특작] 분야 등을 구분하여 기관·업체를 심사할 수 있음

4) 컨설턴트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 상세내용 별도 시달 예정

라. 사업시행

(1) 계약체결

1) 설명회 개최 : 시·도지사

- 참가대상 : 선정·지정된 지원대상경영체 및 컨설팅기관·업체 대표
- 지원대상경영체 선정 및 컨설팅기관·업체 지정을 완료한 후 시·도지사가 일시·장소를 정하여 1회 이상 설명회 개최
- 시·도지사는 컨설팅기관·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소개자료, 계약서 실패등과 지원대상경영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경영관련기록을 계약 쌍방에게 교부,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 및 계약 적정화 유도

2) 계약체결 및 계약승인요청

○ 계약체결

- 지원대상경영체 및 컨설팅기관·업체는 계약체결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서 작성
- 시·도지사는 계약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할 사항 : [별표3]

- 계약승인요청 : 컨설팅공급기관·업체는 (가)계약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승인 요청
 - 컨설팅서비스 수행계획서 1부
 - 수행계획서의 필수 항목 : 컨설팅대상농가의 기술 및 경영현황, 개선 필요사항, 컨설팅의 주요내용 및 개선 목표, 컨설팅의 기대효과
 - 3년차 컨설팅사업 지원대상농가(농업법인)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경영체의 직전년도 또는 직전반기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1부

(2) 지원금액 결정 및 계약의 효력

- 지원금액 결정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컨설팅기관·업체로부터 가계약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받아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한 후 경영체의 성격, 약정된 컨설팅의 내용, 계약금액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결정, 계약쌍방에 통보하고 농림부에 보고
 - ※ 시·도지사는 지원결정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지침상의 사업취소 사유를 컨설팅기관·업체와 컨설팅대상농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시·도지사는 지원금액결정시 당해 컨설팅공급기관·업체와 [별표 4]의 “농업경영컨설팅서비스대금 지원약정”을 체결
 - ※ 시·도지사는 해당 컨설팅공급자의 보유인력을 감안하여 공급능력을 초과한 무리한 사업물량 수주로 컨설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의 효력은 시·도지사의 지원금액 결정·통보후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발생함
 - 단, 효력발생의 초일(시·도지사의 계약승인으로 지원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기간의 초일)은 (가)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초일로 하되, 계약기간의 초일은 (가)계약서 및 첨부문서가 시·도에 접수된 날로부터 1주일 이후여야 함.
 - (예시) 시·도(시·군)에 계약서를 접수한 날이 2001. 2.1인 경우 계약서상 계약기간 초일은 2001. 2.8 이후 여야 함

- 사업비 지급방법
 - 시·도지사(시·군)가 지원대상경영체의 동의하에 컨설팅기관·업체에 직접 지급(컨설팅계약체결시 계약서상에 명기하도록 함)

(2) 지원대상경영체 추가선정

- 시·도지사는 컨설팅계약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완료후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 기작성된 우선순위안에 따르거나 새로이 신청을 받아 연중 수시로 컨설팅계약체결을 알선
 - 이 경우 추진절차는 본지침을 준용하되 사업시행절차 중 게시·공고 및 신청·추천절차를 생략하고 설명회 대신 당해 경영체가 희망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컨설팅기관·업체에 대한 안내자료를 발송하는 등 시·도 사업여건에 맞게 수정 시행 가능

(3)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1) 계약의 무효

- 계약이 무효인 경우 기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2) 계약의 해지

- 컨설팅기관·업체가 컨설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지원대상경영체와 타컨설팅업체를 알선
 - 대체계약의 체결은 연중 가능(다만, 지원금액결정일 및 계약발효일이 2001.12.31 이내여야 함)
 - 자금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는 계약에서 정하는 실비의 범위에 따르며 그 부담은 계약금액, 지원금액결정시 책정된 사업비한도 및 지원조건을 감안, 비례적으로 자부담과 보조금(국비, 지방비)으로 안내함(이하 실비를 제외한 자금회수를 규정한 경우 동일 내용 적용)
- 지원대상경영체가 컨설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3) 계약의 변경

- 계약서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계약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라야 함
 - 중요계약사항변경 : 계약금액, 컨설팅서비스 내용 및 컨설팅의 기대 효과에 관한 약정의 변경, 계약에 정해진 컨설팅팀의 구성 변경(계약 금액의 변경없이 컨설팅팀 참가인원을 늘이는 계약변경은 제외), 기타 컨설팅 계약의 본질적 요소라고 인정되는 사항
 - 컨설팅기관·업체는 계약서변경안 및 첨부문서 사본, 계약변경이유서(서식자유, 계약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부에 즉시 보고

(4) 사업비 집행방법

-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한 후 보조금을 지급
 - 단, 보조금 및 자부담을 동률 병행집행 가능
 - (예시) 사업비중 계약금 30% 지급시 자부담 15%, 보조금 15%로 구성
- 사업비는 계약금 30%, 중도금 40%, 잔금 30%로 나누어 지급
 - 계약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비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50%씩 균분하여 집행가능

<예시> 계약액이 사업비한도액을 초과하고 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각각 30%, 30%, 40%이며, 계약금액 36백만원, 인정사업비가 10백만원인 경우

계약금액 지급	기간1(30%)	기간2(30%)	기간3(40%)
초과액 26백만원	자부담 7.8백만원	자부담 6.8백만원	자부담 11.4백만원
사업비 10백만원	자부담 3백만원	자부담 2백만원 보조금 2백만원	보조금 3백만원
사업비 집행	기간1(30%)	기간2(40%)	기간3(30%)

※ 계약기간 만료후 컨설팅업체의 잔금지급요청으로 시·도(시·군)의 현장확인시 [별표 4]의 '지원대상경영체 실태조사표' 작성

- 지급시기는 다음에 따름
 - 계약금 : 경영현황기술서 제출후 현장확인한 후 허위사실, 계약불이행등 보고서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3일 이내 지급
 - 중도금 :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 제출후 1주 이내 현장확인한 후 허위사실, 계약불이행등 보고서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3일 이내 지급
 - 잔금 : 컨설팅결과보고서(혹은 컨설팅결과요약보고) 제출 후 1주 이내 현장확인한 후 허위사실, 계약불이행등 보고서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3일 이내 지급

(보조금 동률 병행지원의 경우)

- 계약금 : 경영현황기술서 제출후 현장확인한 후 허위사실, 계약불이행등 보고서내용과 상위점이 없고, 자부담금이 입금되면 보조금 포함하여 지급

- 중도금 :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 제출후 1주 이내 현장확인한 후 허위사실, 계약불이행등 보고서내용과 상위점이 없고, 자부담금이 입금되면 보조금 포함하여 지급

- 잔 금 : 컨설팅결과보고서(혹은 컨설팅결과요약보고) 제출 후 1주 이내 현장확인한 후 허위사실, 계약불이행등 보고서내용과 상위점이 없고, 자부담금이 입금되면 보조금 포함하여 지급

※ 컨설팅결과요약보고(별지서식 7-3)와 컨설팅결과보고서는 계약기간 종료후 15일 이내 제출

※ 현장확인후 경영현황기술서, 컨설팅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상위점이 발견될 경우

-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재작성 혹은 계약의 이행 촉구
-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반 혹은 컨설팅지원사업의 목적 이탈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1차 시정 촉구 후에도 시정이 안될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상세한 것은 '사후관리'항목 참조)

○ 보조금 교부신청

- 컨설팅기관·업체는 경영현황기술서,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 및 컨설팅결과보고서(또는 컨설팅결과요약보고) 제출시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교부를 신청하여야 함

※ 계약기간 만료후 컨설팅업체의 잔금 지급 요청시 결과보고서와 함께 [별표 5] '농업경영컨설팅 이행확인서' 첨부

(5) 추진일정(별표6 참조)

○ 본지침 및 시·도지침의 게시·공고 및 사업참가신청 : 2001.2.15까지

- 농림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 달 이상 게시·공고하되 인터넷 도정홈페이지와 농림수산정보망에도 게시·공고

- 컨설팅기관·업체에 대한 지침 및 안내문 발송은 농림부가 담당

- 신청서 제출기관

- 컨설팅희망경영체 : 시·군
- 컨설팅기관·업체 : 시·도청

- 제출서류

- 컨설팅기관·업체와 컨설팅대상경영체는 다음 서류를 선정 또는 지정 신청시 각각 시·도청, 시·군에 제출하며 시장·군수는 추천시 관련 신청서류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이송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 컨설팅기관·업체	• 농업경영컨설팅서비스 공급자지정신청서 1부 등 • 농업경영컨설팅사업계획서 1부 • 기타 소개자료	별지서식1,1-1,1-2,1-3 및 첨부서류 신청자 희망에 따라 제출
• 컨설팅희망경영체	• 농업경영컨설팅신청서 1부	별지서식2 및 첨부서류

※ 농업경영컨설팅사업계획서는 자유로이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
해야 하며 설명회시 지원대상경영체에 공개

- 1) 당해 기관·업체 등의 일반현황(전문인력, 협조가능한 외부전문가
현황, 시설·장비보유현황, 이용가능한 외부기관의 시설·장비현황 포함)
- 2) 제공가능한 컨설팅서비스 내역과 기대효과(가급적 상세히)
- 3) 기존 컨설팅실적 및 효과(계약서 사본 포함)
- 4) 컨설팅서비스 공급비용 관련 세부내역
- 5) 인터넷 및 농림수산정보망을 통한 컨설팅서비스제공계획

○ 컨설팅대상경영체 선정 : 연중수시신청

- 시장·군수는 신청접수후 2주 이내 자체심사(심사결과는 별지서식3-1을
활용)를 거쳐 컨설팅대상 경영체 추천대상자 확정 및 시·도 보고
- 시·도는 시·군의 추천후 2주 이내 자체심사(심사결과는 별지서식
3-2를 활용) 또는 자문위원회(또는 시·도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컨설팅대상경영체 선정

○ 컨설팅기관·업체 지정 : 2001.2월중순까지

- 시·도지사는 신청접수 후 4주 이내 자체 심사(심사결과는 별지서식3-3을
활용) 또는 자문위원회(또는 시·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컨설팅기관·
업체 지정

○ 계약체결절차 : 연중수시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경영체 선정 및 컨설팅기관·업체 지정후 2주 이내
(각도 자체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에 컨설팅지원사업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경영체와 컨설팅기관·업체간의 계약서 및 첨부
문서 검토 후 4주이내에 지원금액결정
- (* 계약의 효력 발생후 사업개시
- (* 시·도지사는 지원금액결정후 계약체결상황을 즉시 농림부에 보고

※ 이상의 추진일정은 각시·도의 사업추진준비 및 여건에 따라 수정 시행 가능

(6) 농업경영종합자금 신청 혹은 지원농가에 대해서는 컨설팅신청시 우선지원함.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1) 사업검정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 회계연도 종료 혹은 계약기간 종료시 시·도지사는 계약서(변경계약서)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5항, 제6항이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실시후 농림부 보고

(2) 사업비정산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회계연도 종료 혹은 계약기간 종료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 보고

바. 기타사항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설팅대상 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컨설팅 내용과 기대효과를 컨설팅기관·업체와의 합의에 의해 자유로이 계약으로 정할 수 있음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1) 사후관리기관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협조를 얻어 컨설팅계약기간중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성과를 점검하며, 계약기간 종료후 1년 동안 지원대상경영체의 경영실태를 연도말을 기준으로 점검, 농림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도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컨설팅팀을 중심으로 각 분야 컨설팅전문가를 위촉, 컨설팅모니터링팀을 구성하여 컨설팅계약의 정상적인 추진여부를 감독
 - 컨설팅대상농가별 전담관리 병행

(2) 정보통신네트워크 구축

- 컨설팅기관·업체는 인터넷 및 농림수산정보망을 통한 컨설팅서비스체제 구축(농림수산정보센터와 협의)
- 농림수산정보센터는 농림부와 각도, 컨설팅기관·업체와 지원대상경영체 간에 인터넷 및 농림수산정보망을 통한 정보통신네트워크 구축지원 및 컨설팅지원반 편성(농림수산정보센터 전화 : 031-299-8822)

- 농림수산물정보센터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농업정보교육원 경영정보화교육이수확인서 및 이용실적확인서 발급
 - 지원대상경영체의 농림수산물정보망 이용 실적을 농림부와 각시·도지사에게 계약발효후 매월 10일까지 보고
- 농림부는 경영정보화교육을 희망하는 지원대상경영체가 경영정보화교육을 이수하기를 원할 경우 농림수산물정보센터의 협조를 얻어 정규 또는 특별 교육과정 마련(자부담 20~25%)

(3) 컨설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 보고

- 컨설팅기관·업체와 지원대상경영체는 계약 발효 즉시 쌍방 협조하에 해당 경영체의 경영현황을 조사, 계약쌍방이 서명날인한 경영현황기술서(별지서식 7-1)를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
 - 농업용자산보유현황, 최근 3년간 자산현황 등 주요 경영지표, 생산성·수익성 등 경쟁력관련 지표, 경영개선목표, 농업경영상 애로사항 등에 대해 계량화된 자료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컨설팅기관·업체와 지원대상경영체는 방문·전화·서신·전자우편 기타 방법에 의해 컨설팅을 행할 때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컨설팅일지(별지서식 6-1, 6-2)를 기록
 - 시·도지사등 관련공무원의 열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컨설팅기관·업체는 계약기간의 1/3 경과시점까지의 추진상황을 10일 이내에 [별지서식7-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
 - 컨설팅기관·업체는 계약기간종료후 15일 이내에 컨설팅결과 요약보고(별지서식 7-3)와 컨설팅결과보고서를 작성, 시·도지사에게 제출
 - 농업용자산보유 변동, 자산/부채현황 변화 등 주요 경영지표, 생산성·수익성 등 경쟁력관련 지표의 변화, 경영현황기술서에 기재된 경영개선목표의 달성 정도,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의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 컨설팅기관·업체는 매보고시 해당 작목 농진청 진단표 및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진단서식에 따른 진단결과를 작성·제출

(4) 사업취소

1) 개별 계약의 지원결정취소

- 시·도지사는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 및 자체 조사를 통해 계약기간 1/3 경과시점까지의 컨설팅내용이 부실한 경우 컨설팅의 내실화 또는 지원대상 경영체의 적극 협조를 1차 촉구하고, 그후로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컨설팅기관·업체에 있을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지원대상경영체와 타 컨설팅기관·업체를 알선

- 귀책사유가 지원대상경영체에 있을 경우 경영체 선정을 취소하고
컨설팅기관·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 사업신청시 또는 컨설팅관련 보고서 농가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지원결정 취소 후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 컨설팅료보조지원액을 컨설팅사업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
자금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컨설팅대상경영체 선정자격 제한
 - 계약의 무효·해지의 경우에는 본지침 '계약의 무효·해지·변경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자금 회수
- 2) 컨설팅기관·업체의 지정 취소
- 컨설팅기관·업체 지정 후 계약기간진행중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
 - 컨설팅기관·업체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원대상경영체와 타컨설팅 업체를 알선
 - 다만, 흠결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1차 보완을 촉구한 후 후속조치를 취함
 - 사업신청시 또는 컨설팅관련 보고서 컨설팅기관·업체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지정취소후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동일업체
지정불가 및 참여인력 타공급업체 참여 제한

나. 보고사항

- 시·도지사는 컨설팅계약체결, 컨설팅사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농림부에 보고
 - 컨설팅지원대상경영체 선정결과 보고 : 매월말 보고(별지서식 3-2)
 - 컨설팅기관·업체지정결과 보고 : 2001. 3월말까지(별지서식3-3)
 - 컨설팅계약체결상황보고 : 매월말 보고(별지서식8-1)
 - 컨설팅추진상황중간보고 : 2001. 9월말까지(별지서식8-2)
 - 컨설팅추진실적최종보고 : 2002. 7월말까지(별지서식8-2)
 - (*)2002.7월말 이후에도 종료되지 않은 계약이 있을 경우 7월말 잠정
보고후 최종계약종료후 최종보고
 - 사업검정보고 : 익년도 12.31까지
- 시·도지사는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얻어 사업
시행 차기년도에 경영체별로 경영, 기술 개선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여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컨설팅기관·업체는 컨설팅사업 추진과정에서 각 계약선별로 컨설팅수행
계획서, 경영현황기술서,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 컨설팅결과보고서를 시·도
(시·군)에 제출하는 해당시점에 농림부(농촌인력과)에도 동자료를
E-mail(hwp파일 또는 엑셀파일 작성)로 즉시 송부
 - E-mail 주소 : agricon@maf.go.kr
 - 모든 컨설팅공급기관업체는 자체 E-mail 주소를 갖고 있어야 함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1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추진결과 및 사업추진방향 재검토후 별도 시행

[별표1] 도별 컨설팅지원예산 배정내역

시·도	도 별 경영체배정 개소(농가)	지 원 액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부담
		천원			
서울	-	-	-	-	-
부산	-	-	-	-	-
대구	-	-	-	-	-
인천	-	-	-	-	-
광주	-	-	-	-	-
대전	-	-	-	-	-
울산	-	-	-	-	-
경기	65	650,000	195,000	130,000	325,000
강원	30	300,000	90,000	60,000	150,000
충북	16	160,000	48,000	32,000	80,000
충남	42	420,000	126,000	84,000	210,000
전북	78	780,000	234,000	156,000	390,000
전남	52	520,000	156,000	104,000	260,000
경북	53	530,000	159,000	106,000	265,000
경남	37	370,000	111,000	74,000	185,000
제주	18	180,000	54,000	36,000	90,000
유보	9	90,000	27,000	18,000	45,000
계	400	4,000,000	1,200,000	800,000	2,000,000

※ 유보분은 특·광역시 신청시 배정 예정

(*) 위 내역은 추후 변경가능하며 시·도지사는 원예·축산분야간 사업량 배정을 고르게 하되 컨설팅수요를 감안하여 사업량 조정 가능

[별표2] 컨설팅서비스의 분류(예시)

	분 류
컨설팅내용에 따른 분류	1) 경영진단 및 사업계획수립컨설팅
	2) 기장·회계·재무관리컨설팅
	3) 기술·생산관리컨설팅 ※ 시설원예분야의 시설설치자문, 축산분야의 시설·환경·위생 방역분야는 별도의 컨설팅분야로 볼 수 있음
	4) 농자재조달·가공·마케팅컨설팅·농기계이용
	5) 정보화컨설팅
	6) 기타 농업경영혁신에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컨설팅
컨설팅의 구성 ·결합 방식에 따른 분류	종합컨설팅 : 위 분류상 1), 2)를 반드시 포함하고 3) 또는 4) 중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는 컨설팅
	부분컨설팅 : 종합컨설팅이 아닌 컨설팅으로 1), 2), 4)를 반드시 포함하는 컨설팅. 다만 정보화컨설팅만을 시행하는 컨설팅은 본사업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별표3] 컨설팅용역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

구 분	내 용
○ 계약금액 및 기간	- 컨설팅료 총액 및 계약기간
○ 컨설팅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효과에 대한 약정 - 기대효과 달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계약쌍방간 상호검증의 방법 <p>※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되, 경영현황기술서에 따른 경영개선목표를 계약의 일부로 포함하는 약정도 가능</p>
○ 컨설팅내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지침 [별표2]를 참고하되, 시·도지사 승인하에 지침에 없는 내용도 컨설팅내용으로 채택가능 - 월별 정기방문회수, 부정기 방문회수 및 비방문 컨설팅(전화, 통신망 활용 등)에 대한 규정
○ 컨설팅료지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부담분 우선 지급 명시 - 계약금, 중도금, 잔금별로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자(경영체인지, 행정기관인지)를 명시 - 보조금의 경우 지침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컨설팅기관·업체 등에 지급함을 명시
○ 분쟁해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중단시 변상·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 - 문제 발생시 책임의 소재에 대한 규정(기관·업체의 부속기관의 경우는 소속기관·업체에 계약이행책임이 있음을 명시) - 분쟁 또는 이견 발생시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 - 경영체와 컨설팅업체간의 (가)계약서가 사업주관에 의해 승인받지 못할 경우 동계약의 당사자간 효력 등에 대한 내용

[별표4]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대상경영체 실태조사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대상경영체 실태조사표

1. 지원대상경영체 개요

법인명(농가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일 (영농개시일)		'00판매금액 (순소득)	
경영규모		영농경력	
주채배작목		부채배작목	

2. 컨설팅서비스 내용

3. 검토의견

[별표5] 농업경영컨설팅서비스 이행확인서

농업경영컨설팅서비스 이행확인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대상농가(법인) _____와(과) 농업경영
컨설팅 공급기관·업체 _____와(과)간에 체결된 200 년 0월 0일
부터 200 년 0월 0일 까지 _____개월간의 농업경영컨설팅서비스
계약이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바대로 정상적으로 수행되었고, 계약
쌍방간에 이의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200 . .

농 장 (법 인) 명 : _____

농장주(법인대표자) : _____ (인)

[별표6] 추진일정 도시

건설팅사업지침 확정			
시·도 지침 확정			
게시·공고 ※ 1월중	<경영체> 선정신청, 심사·추천 (시·군) ※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나, 가급적 2월까지	<기관·업체> 지정신청접수 (시·도)	직전 연도 12월부터 신청접수 개시
	2배수 심사·추천		
건설팅기관·업체 지정 (시·도)			2월중순까지
설명회 개최 (시·도)			
계약 체결			연중수시
지원금액 결정			

[별지서식1]

농업경영컨설팅서비스공급자지정신청서

(컨설팅기관·업체 작성용)

업체(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일				'98컨설팅계약액		
전화				F A X		
AFFIS ID				인터넷 MAIL주소		
컨설팅가능분야 (해당항목 모두 표시)	<input type="checkbox"/> 경영진단 및 사업계획수립컨설팅 <input type="checkbox"/> 기장·회계·재무관리컨설팅 <input type="checkbox"/> 기술·생산관리컨설팅 ※ 컨설팅가능작목 () <input type="checkbox"/> 농자재구입·가공·마케팅컨설팅 <input type="checkbox"/> 경영정보화컨설팅 <input type="checkbox"/> 기타 ----- 구체적으로 ()					
컨설팅전문인력	박사	석사	학사	유자격자	유관기관· 업체 5년 이상근무자	총계
인원						
외부전문가풀	박사	석사	학사	유자격자	유관기관· 업체 5년 이상근무자	총계
인원						
주요시설·장비	명칭 및 수량			용도		

이상과 같이 귀도에서 시행하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니 컨설팅서비스공급자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업체(기관)명 :
 대표자 : (인)

별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설립 및 변경등기부등본 1부
 컨설팅전문인력보유현황 1부
 외부전문가그룹확보현황 1부
 주요 컨설팅실적 1부.

[별지서식1-1]

컨설팅전문인력 보유현황

(컨설팅기관·업체등 작성용)

년 월 일 기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소속	자격 및 학위 (구체적으로)	컨설팅가능분야 (구체적으로)	컨설팅 경력
		(주소) (전화)				년
		(주소) (전화)				년
		(주소) (전화)				년
		(주소) (전화)				년
		(주소) (전화)				년
		(주소) (전화)				년

※ '자격 및 학위'에는 해당 분야 기관·업체 근무경력 포함
 ※ 전문인력개입에 대한 컨설팅실적기술서첨부가능
 ※ 기관·업체의 경우 소속세칭주해접대표능항명첨부

[별지서식1-2]

외부전문가그룹 확보현황

(컨설팅기관·업체등 작성용)

년 월 일 기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소속	자격 및 학위 (구체적으로)	컨설팅가능분야 (구체적으로)	컨설팅 경력
		(주소) (전화)				년
		(주소) (전화)				년
		(주소) (전화)				년
		(주소) (전화)				년
		(주소) (전화)				년
		(주소) (전화)				년

※ '자격 및 학위'에는 해당 분야 기관·업체 근무경력 포함

※ 별첨 : 전문가그룹참가동의서(개인별)

[별지서식1-3]

주요 컨설팅실적 기술서

(컨설팅기관·업체등 작성용)

컨설팅 기간	컨설팅대상 경영체	주소 및 연락처	컨설팅 계약액 (백만원)	컨설팅내용	성 과 (구체적으로)	컨설팅팀	협력기관 및 협력 컨설팅트
년 월 ~ 년 월		(주소)				전담 ()명	
		(전화)				보조 ()명	

※ 별첨 : 컨설팅계약서 사본 각 1부

※ 진행중인 컨설팅계약도 포함

[별지서식2]

농업경영컨설팅서비스신청서

(농업경영체 작성용)

농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소재지			
설립일		2000년 판매금액	
전화		F A X	
AFFIS ID		인터넷 MAIL주소	
주재배작목		부재배작목	
경영규모		영농경력	
종합자금지원여부	<input type="checkbox"/> 받음 <input type="checkbox"/> 안받음	종합컨설팅필요여부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지도계통컨설팅	<input type="checkbox"/> 받음 <input type="checkbox"/> 안받음	컨설팅기관	
정책자금 지원현황	지원연도	자금종류	지원내역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컨설팅경험	연도	컨설팅업체	성과
			확인란
개인용컴퓨터보유·사용여부	<input type="checkbox"/> 미보유 <input type="checkbox"/> 보유·미사용 <input type="checkbox"/> 보유·사용		
정보통신활용능력 보유여부	<input type="checkbox"/> 보유 <input type="checkbox"/> 미보유 (*)가입통신망 (,)		
농업정보화교육이수여부	<input type="checkbox"/> 이수(이수연월 :) <input type="checkbox"/> 미이수		
농업정보화교육이수의향	<input type="checkbox"/> 이수 예정 <input type="checkbox"/> 이수할 생각 없음		

(*) 확인란은 행정기관이 농림수산정보센터에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함

컨설팅필요분야 (해당항목 모두 표시)	<input type="checkbox"/> 경영진단 및 사업계획수립컨설팅 <input type="checkbox"/> 기장·회계·재무관리컨설팅 <input type="checkbox"/> 기술·생산관리컨설팅 <input type="checkbox"/> 농자재구입·가공·마케팅컨설팅 <input type="checkbox"/> 경영정보화컨설팅 <input type="checkbox"/> 기타 ----- 구체적으로 ()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이유(구체적으로)	
경영상태 평가의견 (농업기술센터 또는 시·군기체사항)	

이상과 같이 '99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참가하여 컨설팅을 받고자 하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법인명(성명) : (인)
 대표자 : (인)

- 별첨 : 1. 최근 1년간 경영장부·영농일지 기록사본 1부
 2. 지도계통컨설팅을 받은 경우 농촌진흥청 표준진단표와 진단결과 의견서(서식자유) 첨부
 3. 정보통신서비스 활용능력이 있는 경우 가입 및 최근 3개월 이상 이용실적증빙

[별지서식 3-1]

농업경영권설팅지원대상경영체 심사결과(추천)

(○○시·군)

(법인경영체)

추천 순위	코드 번호	법인명 (ID, EMAIL)	공동 계약 회막	종합 자금 지원	지도 계통 카설팅	종합 컨설팅 회막	정책자금지원		컴퓨터 보유 사용	정보화 교육 이수	인터넷 계정 보유	AFIS 회원 여부	경영 장부등 기록	부실 화우 러등	경영 규모
							기타 자금	축산 자금							
			해 당 사 항 없 음												

(개별경영체)

추천 순위	코드 번호	법인명 (ID, EMAIL)	공동 계약 회막	종합 자금 지원	지도 계통 카설팅	종합 컨설팅 회막	정책자금지원		컴퓨터 보유 사용	정보화 교육 이수	인터넷 계정 보유	AFIS 회원 여부	경영 장부등 기록	부실 화우 러등	경영 규모
							기타 자금	축산 자금							

(*) MS EXCEL 파일로 작성 권장

(*) 해당란에 ○ 표시

농업경영컨설팅지원대상경영체 심사결과(선정결과)

(○○시·도)

(법인경영체)

추천 순위	코드 번호	법인명 (ID, EMAIL)	공동 계약 희망	종합 자금 지원	지도 계통 컨설팅	종합 컨설팅 희망	정책자금지원		컴퓨터 보유 사용	정보화 교육 이수	인터넷 계정 보유	AFMS 회원 여부	경영 장부등 기록	부실 화우 러트	경영 규모
							기타 자금	축산 자금							
			해 당 사 항 없 음												

(개별경영체)

추천 순위	코드 번호	법인명 (ID, EMAIL)	공동 계약 희망	종합 자금 지원	지도 계통 컨설팅	종합 컨설팅 희망	정책자금지원		컴퓨터 보유 사용	정보화 교육 이수	인터넷 계정 보유	AFMS 회원 여부	경영 장부등 기록	부실 화우 러트	경영 규모
							기타 자금	축산 자금							

(*) MS EXCEL 파일로 작성 권장

(*) 해당란에 ○ 표시

(*) 코드번호부여방법 :

- 형식 : AABBCDD 예) 9912122(99년 지원대상 전북의 법인 22순위)

(AA : 연도, BB : 시·도수신처기호, C : 법인(1), 전업농등(2), 공동(3), DD : 순위)

컨설팅서비스공급자 심사결과(지정결과)

(○○시·도)

기관업체명	품목	조직 형태	소속기관 업체	컨설팅 분야	전문 인력 (명)	외부 인력 (명)	사업자 등록	'97~'98 유료계약 (건 백만원)	품 목 관 련 주요시설장비			정보통신서비스		
									1	2	3	시행중	시행 예정	

- (*) 품목 : 원예분야는 채소, 과수, 화훼, 특작등으로 대분류하고 ()속에 세부 품목을 기입.
축산분야는 축종을 기입
- (*) 조직형태 : 상법상 회사형태, 부속기관(연구소), 학교법인, 국공립대학, 전문가팀 등
- (*) 컨설팅분야 : [별표2]를 참고하여 종합/부분을 구분하고, () 속에 세부컨설팅가능분야 기입
- (*) 사업자등록여부 : ○, × 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 유료계약에는 정보화컨설팅, 경영교육, 연구용역 등 불포함
- (*) 정보통신서비스 : 해당란에 ○ 표시
- (*) MS EXCEL 파일로 작성 권장

[별지서식4]

농업정보화교육이수확인서

성명		소속	
주소			
AFFIS ID		인터넷 MAIL주소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책임자		전화	
특기사항			

위 사람은 (예: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정보화교육원)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행한 농업정보화교육 ()과정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
 인합니다.

발급일 : 년 월 일
 담당자 : (인)

(예:농림수산정보센터) 사장

[별지서식5]

농림수산정보망이용실적(인터넷계정보유)확인서

성 명						소 속			
주 소									
AFFIS ID						인터넷 MAIL주소			
농림수산정보망 이용실적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접속회수									
이용시간									
인터넷계정유무	인터넷계정 보유여부			(있음, 없음)					
	확인방법(또는 확인기관)								
특기사항									

위 사람의 농림수산정보망이용실적은(인터넷계정보유여부는) 상기 내용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발급일 : 년 월 일
 담당자 : (인)

농림수산정보센터사장

[별지서식6-1]

농업경영컨설팅일지

(농가보관용)

연월일	컨설팅방법	컨설팅턴트명	컨설팅내용	특기사항	서명	
					농가	컨설팅턴트
		(총 인)				
		(총 인)				
		(총 인)				

[별지서식6-2]

농업경영컨설팅일지

(컨설팅기관·업체용)

연월일	컨설팅방법	대상경영체	컨설팅내용	특기사항

※ 컨설팅공급업체가 2건이상 컨설팅공급계약체결시 대상경영체별로 컨설팅일지 작성

[별지서식7-1]

경 영 현 황 기 술 서

(건설팅기관·업체 작성용)

건설팅기관·업체명		건설팅대상경영체명	
책임건설팅트		소재지	
전화		전화	
주제배작목		부제배작목	
경영규모		영농경력	
농업용자산 현황	자산종류	계약체결시장부가액	활용 및 관리
정책자금 지원현황	지원자금	계약체결시지원내역	용도
	합계		
건설팅계약기간	. . . ~ . . . 총 개월		계약금액
주요건설팅 계약내용			

[별자서식7-2]

컨설팅추진상황보고

(컨설팅기관·업체 작성용)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컨설팅기관·업체명				컨설팅대상경영체명		
책임컨설턴트				소재지		
전화				전화		
계약기간	. . . ~ . . .			총개월	계약금액	
주요컨설팅 계약내용						
주요컨설팅 내용	내 용			중간성과	문 제 점	
경영개선실적	경영·기술지표 (컨설팅초기)	경영개선목표	경영개선실적	에로사항 및 향 후 과 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농업경영컨설팅 추진
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컨설팅대상경영체 (인)

별첨 : 보고시점 현재 농촌진흥청 표준진단표 1부 작성 첨부.

[별지서식7-3]

컨설팅 결과 요약 보고

(컨설팅기관·업체 작성용)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컨설팅기관·업체명			컨설팅대상경영체명		
책임컨설턴트			소재지		
전화			전화		
주제배작목			부제배작목		
경영규모			영농경력		
농업용자산 보유변경 상황	자산종류	계약체결시장부가액	자산종류	계약종료시장부가액	
정책자금 추가지원	지원자금	계약체결시지원내역	지원자금	계약종료시지원내역	
	합 계		합 계		
부채변동상황	부채종류	계약체결시 부채액	부채종류	계약종료시 부채액	
	정책자금		정책자금		
	제도금융		제도금융		
	사 채		사 채		
컨설팅계약기간	. . . ~ . . . 총 개월		계약금액		
주요컨설팅 계약내용					

주요컨설팅 내용	내 용		성 과	문 제 점
경영개선실적	경영·기술지표 (컨설팅초기)	경영개선목표	경영개선실적	에로사항 및 향 후 과 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농업경영컨설팅 추진
실적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컨설팅대상경영체 (인)

별첨 : 농업경영컨설팅결과보고서 1부.
 보고시점 현재 농촌진흥청 표준진단표 1부 작성 첨부.

[별지서식8-1]

컨설팅 계약 체결 상황 보고

- 0000(시·도) -

시·군	품 목	컨설팅기관 업 체 명	컨 설 텅 대 상 경 영 체 법 인 명 (성 명)				컨설팅 분 야	계약액 (만원)	보조액 (만원)	계 약 기 간	컨 설 텅 내 용	경 영 개선목표
			주 소	전 화	주민번호	경영규모						
		(ID)	(ID)									
		(ID)	(ID)									
		(ID)	(ID)									
		(ID)	(ID)									
		(ID)	(ID)									

[별지서식8-2]

**컨설팅추진상황중간보고
(컨설팅추진실적최종보고)**

- 0000(시·도) -

시·군	품목	컨설팅기관 업체명	컨설팅대상 경영체명	컨설팅 분야	컨설팅 내용	경 영 개선목표	경 영 개선실적	문 제 점 과 향 후 과 제	시 · 도 평가의견
		(ID)	(ID)						
		(ID)	(ID)						
		(ID)	(ID)						
		(ID)	(ID)						
		(ID)	(ID)						
		(ID)	(ID)						

여 백

IV. 소 득 보 전

여 백

I. 경영이양 직접지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지과(과장 나승렬, 행정사무관 전종철)입니다

1. 목 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전업농의 영농규모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2. 시책추진방향

- 고령은퇴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전업농업인등의 영농규모확대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쌀전업농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3.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5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7	'98	'99	2000	2001	2001~2004
사 업 량		ha 10,588	9,000	6,483	4,000	1,950	5,850
사 업 비	계	백만원 27,319	24,120	17,952	11,709	5,855	17,565
	보 조 용 자	27,319	24,120	17,952	11,709	5,855	17,565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

※ 2002년 이후 사업량 및 사업비는 2001년 지급단가 기준 적용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 농업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연령 : 65세 이상인 자 (2001년도의 경우 1936년 12월 31이전 출생자)
 - 다음 각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60세 이상(2001년도의 경우 194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인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 질병 또는 사고 등의 건강상 장애로 영농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건강진단서(사고확인서) 첨부 또는 이장이나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 징구
 - 노동력부족으로 영농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 확인 및 동일 세대원내 후계농업인이 없음을 확인하는 이장이나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 징구
- 영농경력 : 3년이상(2001년도의 경우 1998년 1월1일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 3년 기간중 1년 이상은 벼농사를 경작한 농업인
 - 다음 각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최근 3년 기간중 벼농사를 1년 이상 경작한 자도 포함
 - 질병 또는 사고 등의 건강상 장애로 영농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건강진단서, 사고확인서 또는 이장이나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 징구
 - 노동력부족으로 영농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 확인 및 동일 세대원내 후계농업인이 없음을 확인하는 이장이나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 징구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의 3년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3년간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농업인으로서 벼를 1년이상 경작한 농업인
 - 벼외의 농작물을 일시 경작한 경우에는 3년 기간중 2년이내에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이장 또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

- 다음 각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3년 기간중 1년이상 벼를 경작한 자도 포함
 - 질병 또는 사고 등 건강상 장애로 영농을 하지 못한 경우(건강진단서, 사고확인서 또는 이장,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
 - 노동력 부족으로 영농을 하지 못한 경우(이장 또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확인)
- 지급약정체결시 소유하는 답을 모두 농업기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나 전업농업인등에게 매도 또는 5년이상 임대(사용대 포함. 이하 같다) 하고자 하는 자
 - 단계적으로 경영이양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공사에 제출. 단, 단계별 경영이양기간은 최초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이어야 함.
- ※ 공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쌀전업농에게 직접 매도 또는 임대한 자가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 현재 지급대상자 요건을 구비하고 계약체결일 1년 이내에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하며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단가는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년도 지급단가를 적용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요건의 예외>

- ① 자급 또는 취미경작 목적으로 1,000㎡이하의 답을 계속 경작하고자 하는 자(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답을 포함하여 1필지 규모가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까지 허용)
- ② 자기가 소유한 답이 다음의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공사 또는 전업농업인등에게 경영이양이 곤란하여 계속 경작하고자 하는 자
 -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
 - 도시계획법 제3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지구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포함된 전원개발사업구역과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승인된 지역
-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 무역지역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 지역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댐건설예정지역
-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이 시행 되지 아니한 지역

※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답을 지급약정 체결일 이후에도 계속 경작하고자 하는 자(계속경작 허용규모이내의 답은 임차 또는 사용차 가능)
- 매도, 임대·사용대하고자 하는 농지를 배우자 또는 동일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에게 경영이양을 하고자 하는 자
 - 민법 제78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분가가 아닌 임의분가를 통해 부모의 답을 경영이양을 받는 경우에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을 해지한 자
- 공사의 지원을 받아 농지를 매입한 자로서 전매제한기간(8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용자금 전부상환하지 않은 경우

(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답 : 다음의 모든 요건을 갖춘 답

- (1)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 토지대장에 등재된 지목이 답이며, 실제 벼를 경작하고 있거나 경작할 수 있는 답
 -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지 않는 답(휴경답)은 제외
- 영농규모화사업 대상자가 매입 또는 임차를 원하는 영농규모화사업의 대상 답

(3)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기준

- 지급단가 : m²당 281원(ha당 281만원)
- 지급액 산정 : 경영이양면적(m²) × 281원
 ※ 필지별 지급액 합계의 1,00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
- 지급액 상한 : 1,500만원

나. 2001년도 사업비 내용

- 예산지원규모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경영이양 직접지불	ha 1,950	백만원 5,855	5,855	5,855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및 대행기관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사업대행기관 : 농업기반공사

나. 사업담당부서

(1) 중 앙

- 농림부 농지과(전화 : 02-503-7264~5, 02-500-2635)
- 농업기반공사 영농규모화사업처(전화 : 0343-420-3357, 3355, 3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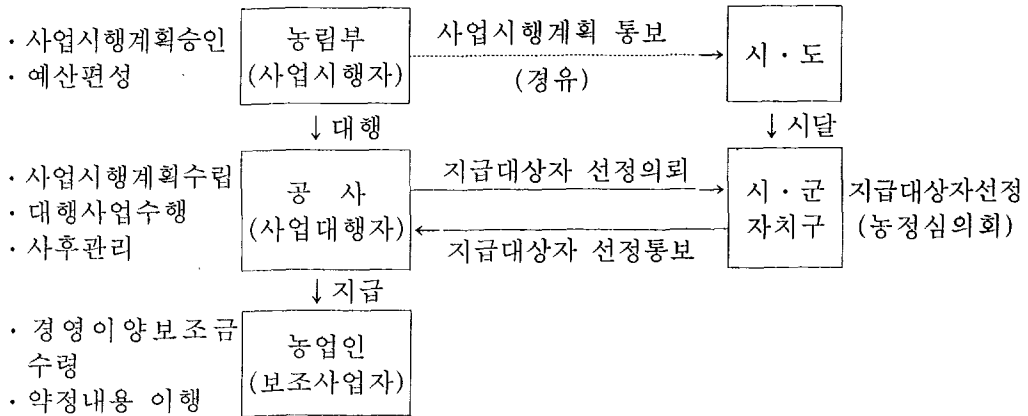
(2) 시·도

- 시·도 : 경기 농산유통과, 강원 농어업정책과, 충북 농산과, 충남 농정유통과
 전북·전남·경남 농업정책과, 경북·제주 농정과, 부산 농업행정과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농정과
- 농업기반공사 각지사 영농규모화사업부

(3) 시·군·자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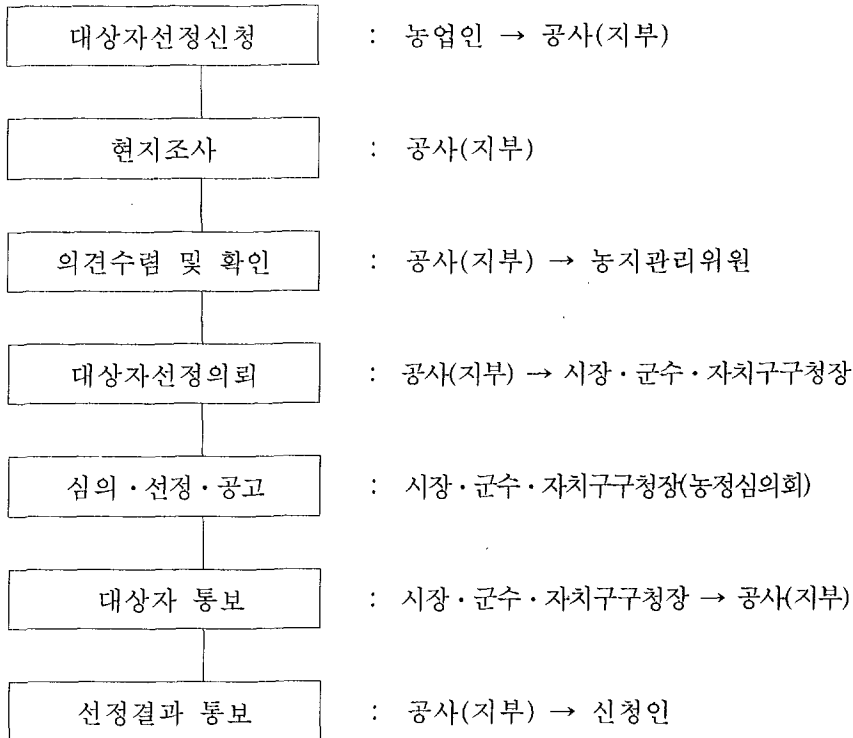
- 시·군·자치구 : 산업과 (농정과)
- 농업기반공사 각 지부

다. 사업시행체계도



라. 사업대상자 선정

(1) 선정절차



(2) 지급대상자 선정신청

- 신청시기 : 연중 신청가능하며, 영농규모화사업에 의한 경영이양 농지의 매도·임대신청서류와 함께 신청
 - 쌀전업농등에게 직접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매매·임대차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농지원부 정리 완료후에 신청
- 접수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농업기반공사 지부
- 신청서류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선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농지원부등본(공사에 매도·임대시 생략)
 -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공사에 매도·임대시 생략)
 - 전업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사본

※ 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제출하는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매매계약서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 계약당사자	○ 계약당사자
○ 목적 부동산	○ 목적 부동산
○ 계약년월일	○ 계약년월일
○ 농지대금 및 지급일자에 관한 사항	○ 임차료 및 지급일자에 관한 사항
○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임대차계약조건 및 계약기한

(3) 신청서류 검토

-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또는 첨부서류 내용과 일치여부
-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요건 적합 여부

(4) 현지조사

- 신청서류 검토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영농규모화사업의 농지매도·임대 신청농지 현지조사와 병행 실시(별지 제2호서식)

- 지급대상자 조사
 - 현지거주 여부
 - 영농규모 : 지목별 소유·임차규모
 - 영농규모 축소 사유
 - 영농경력 및 비 경작 경력
 - 농업법인 재직여부
 - 기지급 경영이양보조금 환수사실 여부
 -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여부 또는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수혜 여부
 - 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매도 또는 임대시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의 사실여부
 - 시행규정에 의한 영농중단사유와 기간의 일치 여부

- 지급대상 담의 조사
 - 실제지목, 자경여부 및 재배작목
 - 지적도와 대비 일치여부
 - 농업진흥지역 내외
 - 수리·교통등 영농조건
 - 지급대상외 잔여 소유·임차농지규모

- 농지매입·임차예정 전업농업인등 조사
 - 지급약정체결 전일까지 전업농업인등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
 - 담합·위장거래 여부

(5) 농지관리위원 의견수렴 및 확인

- 내 용
 - 지급대상자의 이·탈농 계획여부
 - 대상 담, 대상자 조사등 현지조사결과 사실여부

○ 방 법

- 현지조사후 해당 답의 소재지 리·동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리·동에 농지관리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연결한 리·동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경영이양하는 답의 소재지가 2개이상의 리·동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영이양 면적이 많은 리·동의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6)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정의뢰

- 공사지부장은 현지조사와 신청서류 검토결과 지급대상자의 요건에 부합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지급대상자선정의뢰 (별지 제3호 서식)

(7) 지급대상자 선정

○ 지급대상 확인

- 농업기반공사 관할지부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 선정의뢰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공사에서 제출된 서류의 검토와 농지원부 등에 의한 확인 등에 의하여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의 적격여부를 확인

○ 심 의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확인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를 제외하고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군 농정심의회(자치구의 경우 자체 심의기구 구성)에 부의하여 심의하되 서면심의회 가능(분과위원회 심의시도 서면심의회 가능)

○ 선정 및 공고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공사로부터 선정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농어촌발전심의회(자치구)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공고하고 농업기반공사 관할지부장에게 통보. 이 경우 선정에서 탈락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도 함께 통보

○ 선정결과 통보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농업기반공사 관할지부장은 모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별지 제 4호서식)하여 지급약정체결을 촉구하고 탈락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도 명기하여 통보

마. 지급약정 체결 및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1) 지급약정 체결

○ 지급약정 체결전 확인사항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경영이양을 신청한 답의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였는지의 여부
- 경영이양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전업농업인들이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지급약정체결일 전까지 임차 또는 사용차하고 있는 답에 대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해제하였는지의 여부(계속 경작 허용규모이내의 임차 또는 사용차하고 있는 답은 제외)
- 전업농업인들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여부,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정리 여부

○ 농업기반공사 관할지부장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약정 체결전 이행 사항 확인결과 적정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지급약정을 체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을 위한 예금계좌를 공사에 신고

○ 농업기반공사 각지부장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한 경영 이양보조금 지급예정액이 배정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영이양으로 인한 농지집단화 효과와 신청순위 등을 고려하여 배정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초과분에 해당되는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년도초에 지급약정을 우선 체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단가는 필지별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연도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단가를 적용

(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 지급시기 : 지급약정체결후
- 지급방법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신고한 예금계좌에 입금 지급

< 행정사항 >

가. 사업시행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계획의 수립

- 농업기반공사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경영이양계획과 전업농업인 등의 경영계획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3월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의 목적 및 사업내용
 - 시·도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인원 및 소요예산
 - 전업농업인등의 농업경영규모확대 지원계획

(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농업기반공사는 수립된 연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사업의 목표
 - 매도 및 임대에 의한 사업추진내용
 - 시·군·자치구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인원 및 소요예산
 - 조사·교육·홍보 계획
-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하여 승인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

- 농업기반공사 지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영농규모화사업 시행계획 공고와 함께 시·군·구·읍·면 및 농업기반공사 관할지부의 게시판 등에 10일이상 공고
 - 당해연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사업비 규모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의 요건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기준과 지급시기 및 방법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조건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농업기반공사 관할지부장은 승인된 사업시행 계획의 개요를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등에 대한 유인물 송부
 - 홍보용 책자 및 리후렛 제작 배포
 - 신문, 생활정보지, 반상회보, 시·군 홍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및 사랑방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 공사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지역별, 사업내용별(매도·임대) 사업시행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시행하고, 조정 결과는 농림부에 보고 및 시·도에 통보
 - 시·도간 조정 : 농림부와 협의
 - 시·군·자치구간 및 사업내용별 조정 : 공사 자체 조정

나. 사후관리

(1) 경영이양보조금 수혜자 관리

- 조사시기 : 영농규모화사업과 동일
- 조사대상 : 전년도 12월말까지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 받은 농업인 및 농지
- 조사내용
 -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약정 이행여부
 -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영농규모 변화내용

- 조사방법
 - 농지원부 확인
 - 현지출장을 통한 본인, 농지관리위원, 이장, 주민 등에 대한 면담조사
- 조사결과 정리
 - 관할지부장은 조사결과를 영농규모화촉진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관리 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기재하여 정리
- 사후관리 기간
 - 매매·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일로 부터 5년간

(2)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의 행위제한사항

-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영농이 허용된 답외의 답을 매입 또는 임대(이하 사용차 포함)하여 벼를 경작
- 임대한 답의 소유권 이전
- 임대한 답에 공작물 설치 및 형질 변경
- 기타 경영이양한 답을 경작하고 있는 전업농업인등의 농업경영의 규모 확대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지급약정의 해지

- 해지사유
 - 지급약정의 체결원인이 되는 당해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해지. 다만, 공사 또는 쌀전업농에게 매도하거나 농업기반공사에 임대하기 위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
- 지급약정의 해지 통보
 - 약정해지에정일 2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별지 제6·7호서식)
- 지급약정 해지통보의 취소
 -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가 약정의 해지·해제사유 해소를 공사에 통보한 때에는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를 취소

○ 지급약정 해지에 따른 보조금 환수

- 경영이양보조금 전부반환의 경우를 제외한 약정해지사유에 해당되어 약정이 해지된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일부반환시 반환금액 산정

$$\text{반환금액} = \frac{\text{지급경영이양보조금총액}}{\text{양보조금총액}} \times \frac{\text{잔여기간}}{\text{임대기간}} \times \frac{\text{지급약정해지면적}}{\text{경영이양 총면적}}$$

- 임대기간 : 5년(임대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5년으로 봄)
- 잔여기간 : 5년에서 이미 경과한 임대기간을 뺀 기간으로 하되 년단위를 초과하는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
 - 경영이양을 받은 농업인이 경작중인 농작물을 수확하기로 임대인 또는 사용대주와 합의한 경우에는 초과 잔여기간은 잔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경영이양을 받은 농업인이 경작중인 농작물을 수확하지 아니하기로 임대인 또는 사용대주와 합의한 경우에는 초과 잔여기간은 잔여기간에 산입
 - 약정해지연도에 경작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 잔여기간은 잔여기간에 산입. 다만, 임대기간 만료연도에 경영이양을 받은 농업인이 경작중인 농작물을 수확하고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 잔여기간은 잔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4) 지급약정의 해제

○ 지급약정 해제의 사유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지급약정을 체결
- 경영이양후 영농이 허용된 담외의 담을 경작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체결시의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의 내용대로 경영이양 완료예정일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지급약정 해제의 통보

- 약정해지예정일 2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별지 제6·7호서식)

○ 지급약정 해제통보의 취소

-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가 약정의 해지·해제사유 해소를 농업기반공사에 통보한 때에는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를 취소

○ 경영이양보조금 전부반환의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전부반환의 경우는 다음과 같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하여 약정이 해제된 경우
 - 경영이양 후 영농이 허용된 담외의 담을 경작하므로써 약정이 해제된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체결시의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의 내용대로 경영이양 완료예정일까지 이행치 않아 약정이 해제된 경우

○ 지급약정해제에 따른 보조금 환수

- 반환금액 계산방법 : 기지급 경영이양 보조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의 가산금 부과

$$\text{반환금액} = \text{기지급경영이양보조금총액} + \left(\text{기지급경영이양보조금총액} \times \frac{\text{반환일까지의 일수}-1}{365} \times 10\% \right)$$

(5)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통지 : 약정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별지 제8호서식)

(6)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기한 :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7)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미이행시의 조치

- 경영이양보조금의 반환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인 조치 이행
- 납기경과후 10일 이내에 반환독촉장을 발부하며, 반환독촉장은 3회에 걸쳐 매 1개월마다 발부
- 경영이양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독촉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등 법적 절차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공사의 소송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소등 법적 조치

다. 사업대행에 따른 비용보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계획 수립, 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 현지조사, 사후관리등 사업대행에 따른 제비용(수수료)은 2000년 농특회계 예산에 계상 반영 보조한다.

라. 보고

구 분	보고사항	보 고 기 한			비 고
		지 사	본 사	농림부	
○ 분기보	○ 직불사업추진실적 보고	분기 익월 5일	분기 익월 10일	분기 익월 15일	별지 제10호 서식
○ 연 보	○ 직접지불사업사후 관리 조사결과 보고	10월 5일	10월 10일	10월 31일	별지 제11호 서식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농업기반공사 관할지부

나. 신청자격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65세이상인 자(1937년 12월 31일이전 출생자)로 하되 다음 각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60세이상(1942년 12월 31일이전 출생자)인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 질병 또는 사고등의 건강상 장애로 영농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질병 또는 사고등의 건강상 장애로 영농이 힘들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또는 사고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이장 또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를 받는 경우
 - 노동력 부족으로 영농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동일세대원내 후계농업인이 없는 자로서 노동력부족으로 영농이 힘들다고 이장 또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를 받거나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의 3년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농업인으로서 벼를 1년이상 경작한 농업인.
 - 다음 각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3년기간중 1년이상 벼를 경작한 자도 포함.
 - 질병 또는 사고등 건강상 장애로 영농을 하지 못한 경우(건강진단서, 사고확인서 또는 이장,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
 - 노동력 부족으로 영농을 하지 못한 경우(이장 또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확인)
 - 벼외의 농작물을 일시 경작한 경우에는 3년 기간중 2년 이내에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이장 또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
- 지급약정체결시 소유하는 답을 모두 농업기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나 전업농업인등에게 매도 또는 5년이상 임대(사용대 포함.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농업인

다. 신청절차

- 2000. 1. 1이후 경영이양 예정시기에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당해 농지의 매도 또는 임대신청서류와 함께 농업기반공사 관할 지부에 제출 (제출서식은 농업기반공사 관할지부에 비치)

라. 구비서류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공사 시·군지부 비치)
- 농지원부등본(읍·면장 발행)
- 등기부등본(관할법원 발행) 및 토지대장등본(시·군발행) } 농업기반공사에 농지매도·임대·사용대 신청시 제출분으로 대체 가능
- 농지매매·임대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사본(공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쌀전업농에게 직접 매도·임대 또는 사용대차시)

마. 대상자 선정

- 농업기반공사가 신청자에 대한 제출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확인후 지급요건에 적합한 자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시·군농정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별지 제1호 서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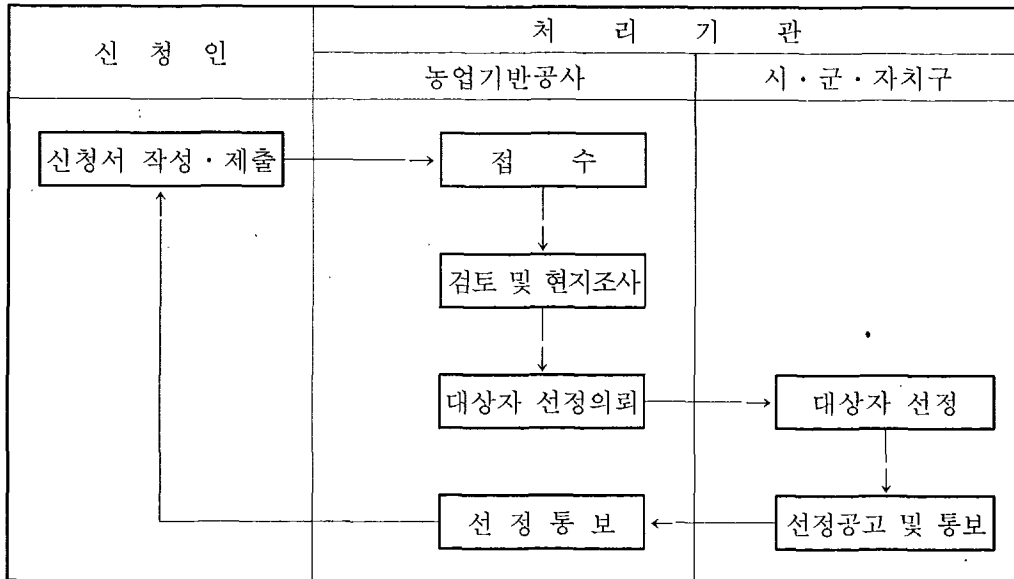
(앞 쪽)

경 영 이 양 보 조 금 대 상 자 선 정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구 분	농지소재지			지 번	공부지목	면 적 (㎡)	진흥지역	소유자	경작구분	경영이양방	지급방법
	사군	읍면	라동								
지급대상 농 지											
		계									
잔여 소유 농지	답										
	전										
	기타										
	계										
임차 경영 농지	답										
	전										
	기타										
	계										
											수수료
											없 음
<p>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농업기반공사 사장 귀하</p>											
붙임서류	<p>1. 농지원부등본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p> <p>4. 매매 또는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사본(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경영이양하는 경우에 한합니다)</p> <p>5. 경영이양계획서(단계별 경영이양하는 경우에 함함)</p>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

제출 및 처리기관	○ 거주지 관할 농업기반공사 지부
근 거 법 규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6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 - 제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 방법	○ 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은 ○, 농업진흥지역밖은 ×로 기재 ○ 소 유 자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명의 기재 ○ 경작구분 : 자경,임대,임차,위탁,사용대,사용차 및 휴경으로 구분기재 ○ 경영이양방법 - 소유농지 : 농업기반공사 임대·매도,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임대·매도·사용대, 영농조합법인 임대·매도·사용대, 농업회사법인 임대·매도·사용대, 개별 임대·매도·사용대 - 임차농지 : 경작권종료, 경작권이양, 경작권포기 ○ 지급방법 : 일시불 또는 연불로 기재 ※ 구분란(잔여소유농지·임차경영농지)의 지목은 실제지목을 말함.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현지조사서

1.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일자	...
주소				전화	
조사내용	영농경력	비재배기간	실거주여부	경영이양후 이주여부	규모화지원여부
	년	년~년			

2. 가족구성원 내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동가구분	주민등록 주소지	규모화지원여부

3. 본인 및 가족 경영농지 내역

구분	농지소재지	지번	공부지목	진흥지역	면적(m ²)	소유자
			실제지목	경작구분	경영이양방법	경영이양대상자
지급대상농지						
	계					
잔여소유농지						
	계					
임차경영농지						
	계					

농지관리위원 확인	의견:
	리·동(마을) 농지관리위원 (인)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선정신청자개인별조사서

1. 선정신청자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일자	
	주소			전화		

2. 가족구성원 내역

관계	가족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관계	가족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3. 경영농지 내역

구분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경영이양형태	소유자 / 이양받은 자	
			공부	실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 대상 농지							
	계						
잔여 소유 농지							
	계						
임차 경영 농지							
	계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 별지 제3호서식 】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의뢰서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주소지	신청일자	벼재배 경 력

경 영 이 양 내 역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예정액 (천원)		
매 도		입 대		계		일시불	년 불	계
필지	면 적	필지	면 적	필지	면 적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을 의뢰하오니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선정의뢰자 개인별 조서 각 1부. 끝.

20 년 월 일

의뢰인 농업기반공사 〇〇〇 지부장 (인)

〇 〇 시장(군수) 귀하

27271-27821 일
'97. 1. 30 승인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선정통지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한내에 지급 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2. 지급대상 농지의 표시 및 경영이양보조금지급 내역(세부내역 별첨)

- 대상 면 적 :
- 지급 총 액 :

3. 지급약정체결

- 약정체결기한 : 선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장소 : 농업기반공사 지부

4.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방법 : 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
- 시기 : 약정 체결후

5. 경영이양보조금 수령후 신고하여야 할 사항

- 영농규모의 확대 또는 축소사항
- 주소 변경사항
- 지급약정의 해지사유 발생에 관한 사항

6. 약정체결시 준비할 사항

- 주민등록증
- 인감도장
- 온라인 예금통장 (농지매도 대금 또는 임차료선급금 입금통장으로 대체 가능)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뒷 쪽)

7. 약정 해지·해제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약 정 해 지 · 해 제 사 유	경 영 이 양 보 조 금 반 환 기 준
1.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지급약정을 체결	○ 지급받은 경영이양보조금 전액과 가산금 10%를 가산하여 반환
2. 경영이양 당시 영농이 허용된 답외의 답을 매입하거나 임대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	
3.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의 내용대로 경영이양 완료예정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임대 또는 사용대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해지	○ 반환사유 발생일 이후 잔여기간 해당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2000년 월 일

농업기반공사

지부장 (인)

○ ○ ○ 귀하

【별첨】 지급대상 농지의 표시 및 경영이양보조금지급내역

지급대상 농지의 표시				지급 예정액 (원)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	경영이양방법	
	계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

【 별지 제5호 서식 】

(앞 쪽)

경 영 이 양 보 조 금 지 급 약 정 서

1. 매도(임대) 농지의 표시 및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

매도·임대 또는 사용대 농지의 표시				지 급 액 (원)
농 지 소 재 지	자 목	면 적 (㎡)	경영이양방법	
계				

위 표시농지에 대한 매매(임대차)·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농업기반공사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2. 약 정 기 한 : 년 월 일까지

3. 약 정 내 용

제1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 “갑”은 위 표시농지에 대한 경영이양보조금을 약정체결후 “을”에게 지급한다

② “갑”은 “을”이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한다.

제2조(약정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일방이 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약정해지예정일 20일전까지 통지하고 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을”이 약정기간중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당시 계속경작이 허용된 답외의 답을 경작하는 경우
3. “을”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 체결시 제출한 단계별 경영이양계약서의 내용대로 경영이양 완료예정일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4. “을”이 임대 또는 사용대한 답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

(뒷 쪽)

-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통지를 받고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예정일 이전에 그 사유를 해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을”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사유 해소를 통보한 때에는 “갑”은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조(경영이양보조금의 반환)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지급 경영이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1.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기지급 경영이양보조금 전액과 지급일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연 1할의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
- 2.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 또는 사용대기간중 약정해지일 이후의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경영이양보조금을 반환. 이 경우 잔여기간은 농산물의 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4조(통지사항) “을”은 소유농지를 “갑”에게 임대하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1. 영농규모의 확대 또는 축소
- 2. 주소 변경
- 3. 약정의 해지사유

제5조(해석) 이 약정문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체결 당시의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관할법원) 이 약정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이 약정을 체결한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농업기반공사 지부장 (인)

“을”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 별지 제6호 서식 】

경영이양보조금지급약정해지(해제)통보서

귀하에 대한 지급약정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약정 제2조제1항제 호에 해당하는 약정의 해지(해제)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지급약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정의 해지(또는 해제)를 통보하오니, 만약 이의가 있거나 약정해지(해제)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약정의 해지(해제)예정일전까지 우리공사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약정 해지(해제)사유 :

2. 약정 해지(해제) 대상농지

약정해지 또는 해제 대상농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내역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m ²)	약정해지 면적(m ²)	지급일자	지급액(원)
계					

3. 약정 해지(해제) 예정일자 : 년 월 일

4. 경영이양보조금 의 반환 방법 :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경영이양보조금의 전부(또는 일부)와 약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경영이양보조금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연 1할의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5. 반환예정액 : 총 원 (경영이양보조금) 원 + (가산금) 원
(해지예정일자기준)

년 월 일

농업기반공사

지부장 (인)

○ ○ ○ 귀하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 별지 제7호 서식 】

경영이양보조금지급약정해지통보서

본인은 농업기반공사와 체결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지하고자 통보하오니 약정의 해지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면, 약정해지예정일전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2. 약 정 일 자 : 년 월 일

3. 약정해지 대상농지 및 경영이양보조금 수령내역

약 정 해 지 대 상 농 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내역	
농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m ²)	약정해지 면적(m ²)	지급일자	지급액(원)
계					

4. 약정해지 사유 :

3. 약정해지 예정일자 : 년 월 일

 년 월 일

○ ○ ○ (인)

농업기반공사사장 귀하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

【 별지 제8호 서식 】

경 영 이 양 보 조 금 반 환 통 지 서

귀하께서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지급약정 제2조제1항제 호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경영이양보조금약정을 해지(해제)하고 귀하가 지급받은 경영이양보조금을 환수하고자 하오니 납부기한내에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1. 해지(해제)일자 : (해지통보일자 :)

2. 반환근거 :

3. 반환하여야 할 금액

기 지 급 소득보조금	반 환 금 액 (원)			비 고
	경 영 이 양 보 조 금	가 산 금	계	

※ 가산금은 납부기한전 또는 납부기한후에 납부할때에는 그 일수에 따라 가감함.

4. 납부장소 : 농업기반공사 지부

5.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농업기반공사

지부장 (인)

○ ○ ○ 귀하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경영이양보조금수령자관리대장						관 리 번호
경영이양보 조금수령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신 청 일	. . .	확 정 일	. . .	지 급 예정액	일시불 연 불	원 원
약 정 일	. . .	지 급 일	. . .			
경영이양 계약내역	이양받은자	주민등록번호	계약구분	계약번호	입 금 계 좌	
					은행	
					No.	
가 족 구 성 원 내 역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동거구분	주민등록 주소지	규모화지원여부
경영이양보조금지급 및 사후관리조사 내역						
지급구분	지 급 내 역		사 후 관 리 조 사			
	지급일자	금 액	조사일자	조 사 자	조 사 결 과	확 인 자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경 영 이 양 농 지 내 역							
구분	농지소재지	지 번	공부지목	면적(m ²)	소유자	보조금 지급액(원)	
			실제지목	진흥지역	경영이양방법	일시불	연 불
지급대상 농지							
변경 농지 내역	중전농지소재지	지 번	중전면적	변 경 사 유	환수일자	환 수 액 (원)	
	변경농지소재지	지 번	변경면적	변 경 일 자			
잔 여 경 영 농 지 내 역							
구분	농지소재지	지 번	공부지목	면적(m ²)	소 유 자	경 작 자	
			실제지목	진흥지역	경영이양형태	주민등록번호	
잔여 소유 농지							
입차 경영 농지							
사 후 관 리 조 치 내 용							
시정요구 통보일	약정해지(해제) 통보일	조 치 내 역					
		조 치 내 용			환 수 금 액 (원)		
시 정 일	해지(해제)일	환 수 일		경영이양보조금	가 산 금	계	
※ 사후관리대상 제외		년 월 일	확 인	지부장	(인)		

【 별지 제10호 서식 】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

1. 선정신청자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신청일		선정일	

2. 경영이양대상 농지내역

구분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경영이양	
					방법	시기
경영이양 대상답						
금회 경영 이양						
	계					
단계별 경영 이양						
	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경영이양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농업기반공사 사장 귀하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 별지 제11호 서식 】

심사제외

직불사업 추진실적(/ 분기)

가. 총괄

(단위:호,ha,백만원)

사업별	계획				보조금지급			비 율	
	년간		금분기		농가	면적	금액	년간 대비	분기 대비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농지매매									
임대차									
계									

나. 시·도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실적

(단위:호,ha,백만원)

시 도 별	계획				보조금 지원실적									
	년간		금분기		계			농지매매			임대차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연간 대비 (%)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계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12호 서식 】

자체가 26-2

직불사업 사후관리 조사결과 보고

가. 총괄

(단위:㎡,천원)

시 도 별	보조금지급실적			약정위반농지			보조금반환			위반농지에 대한 경영이양보조금 반환조치중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계																		

※ 작성요령

1. 경영이양보조금지급 실적 : 조사년도 6월말까지 지급한 경영이양보조금 실적 누계 기재
2. 약정위반 농지 : 조사년도 6월말까지 지급농지중 사후관리조사결과 경영이양보조금 환수대상이 되는 약정위반 농지를 모두 기재
3.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 조사년도 9월말까지 경영이양보조금 환수대상 농지중 경영이양보조금을 반환한 농지를 모두 기재
4. 경영이양보조금 반환조치중 : 전년도까지 위반농지는 전년도까지 사후관리 조사결과 경영이양보조금 반환대상이 되는 농지중 미반환농지 기재, 당해년도 위반농지는 당해년도 사후관리 조사결과 위반농지중 경영이양보조금 미반환 농지를 기재

나. 약정위반자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반사유	보조금지급			보조금환수대상			보조금환수		보조금 미환수액	환수예정일
				일자	면적	금액	보조금	가산금	계	일자	금액		

210mm×297mm

(일반용지 60g/㎡)

II.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친환경농업과(과장 박종서, 서기관 민주석)입니다.

1. 목 적

- 친환경농업실천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지역 등 환경개선정도가 크고 지원과급효과가 높은 환경규제지역내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실시
-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환경보전효과 등을 감안하여 생산자조직 위주로 지원

3. 근거법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8	'99	2000	2001	2002-2004
사업량(ha)		-	10,572	10,572	10,572	31,716
사업비 (보조금)	계	-	5,731	5,731	5,731	17,193
	농가보조	-	5,540	5,540	5,540	16,620
	재료비	-	191	191	191	573

* 국고보조 100%

5. 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환경규제지역 내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기준 이상으로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 이행에 따른 소득감소분 보전
- 대상지역
 - 환경규제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팔당·대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지역 (하천부지는 제외)
 - 상수원보호구역 :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 특별대책지역 :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 자연공원지역 :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지역
- 대상농업인
 - 대상지역내에서 경작하고(수경재배 제외), 작목반을 구성하는 농업인으로서 별표1의 친환경농업 실천기준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고자 하는 면적이 1천㎡이상인 농업인
 - 대상 농산물 : 축산물 및 임산물을 제외한 식용할 수 있는 모든 농산물 (권장시비량이 정하여지지 않은 작물과 화훼류는 제외)
 - 친환경농업의 효율적 추진과 파급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작목반원이 아닌 개별농업인은 인근의 작목반조직과 통합관리
 - 단, 작목의 특성, 지리적 여건 등으로 작목반 가입 또는 구성이 어려운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예 : 면단위 5농가 미만 경우 등)
- 대상지역내 조직
 - 5명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별표 1의 친환경농업 실천기준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을 이행할 수 있는 작목반,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작목반”이라 함)
 - 작목반의 종류 : 벼·채소·과수·기타작물 등 4종류
 - 1개 작목반은 1개 작목종류만 선택

다. 지원조건

- ha당 524천원(국고보조 100%)

라.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구 분	사업량 (ha)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국고	용자	
합 계	10,572	5,731	5,731	-	
○ 환경농업보조금	10,572	5,540	5,540	-	
○ 사업관리비		191	191	-	○ 토양검정 및 잔류농약검사 재료비

< 사업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기관별 담당업무 >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 농림부
-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 : 시·도(시·군·구)
-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 영농지도반 구성 및 기술지도
 - 농촌진흥청(시·군·구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출장소), 농협 중앙회(시·군 지부) 합동으로 구성
- 토양검정조사 : 농촌진흥청(시·군·구 농업기술센터)
- 잔류농약검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출장소)

나. 사업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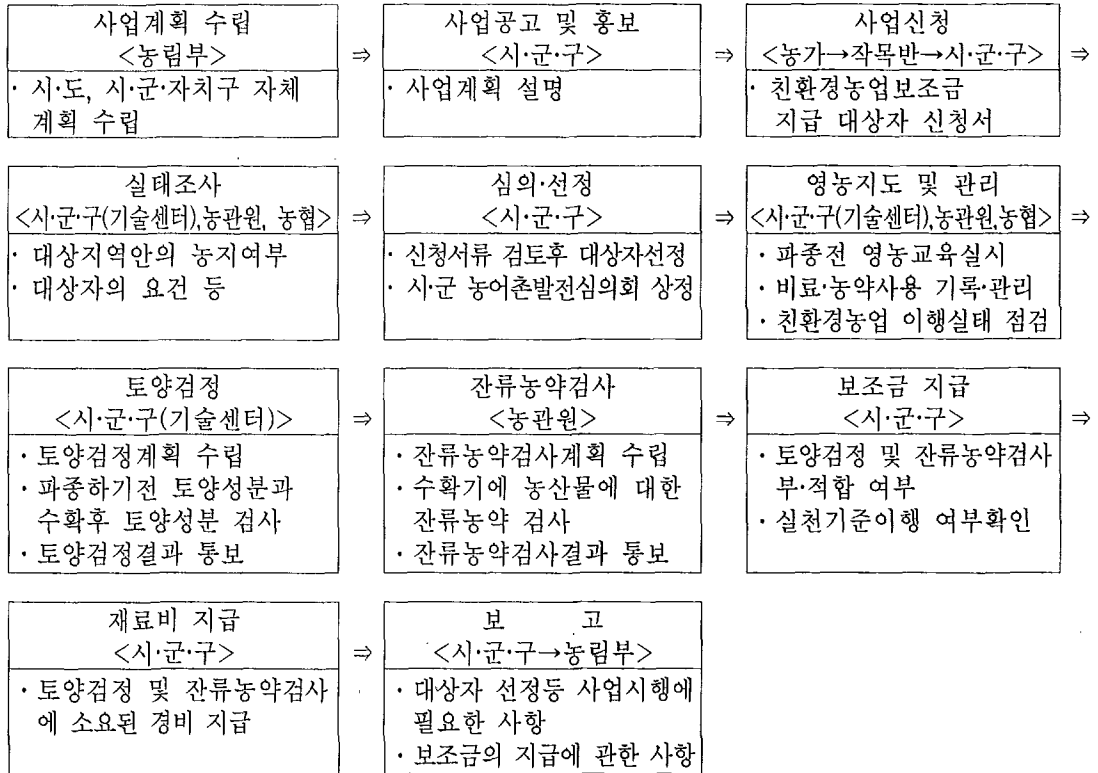
(1) 중 앙

- 농림부 친환경농업과(전화 02-503-7284~5)
- 농촌진흥청 식량작물과(전화 031-299-2715)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전화 031-446-0126)
- 농협중앙회 환경농업팀(전화 02-397-5627)

(2) 시·도, 시·군

- 시·도 농산담당과(농업기술원), 시·군·자치구 산업·농정과(농업기술센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지원, 시·군출장소
- 농협중앙회 시·도지역본부, 시·군지부

다. 사업추진체계



라. 사업추진요령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계획의 수립·통보.
 - 농림부장관은 환경농업보조금 지급예산의 범위내에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통보
 - 시·도지사는 농림부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시행지침”에 의거 “시·도별 친환경 농업직접지불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시·도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시행지침’에 따라 ‘시·군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시행지침’을 수립·시행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량 배정 및 조정
 - 농림부장관은 환경규제지역내의 경지면적과 2001년 지원상황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을 배정
 - 시·도지사는 사업량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시·군·자치구간 조정·시행
- 사업설명 및 공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 및 작목반의 대표자에게 사업시행지침을 설명 또는 시·군·구·읍·면의 게시판에 10일이상 공고
- 시행지침의 홍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의 협조를 받아 시행지침의 개요를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반상회보, 시·군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홍보

< 사업대상자 선정 관리 >

가.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2000년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토양검정 및 잔류농약검사결과 합격한 작목반(농업인)은 1순위로 지정하고, 2001년 신규신청자는 차순위로 함
- 2001년 신규신청자에 대해서는 다음 우선순위 부여
 - ① 환경규제정도를 감안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팔당·대청댐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지역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② 친환경농업 이행면적이 넓고 농경지가 집단화된 작목반을 우선

나. 사업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서류 및 실태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시·군·구 농정심의회에 부의, 심의·선정하되 서면 심의도 가능

○ 선정결과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사군 출장소장, 사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의 대표자 등에게 통보

○ 대상자의 변경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전출·농지의 매도·임대·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농업인 또는 작목반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
- 사업대상자 변경으로 경작자가 바뀔 필지는 새로 경작할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에 사업대상자의 자격 승계
 - 새로 경작할 농업인이 사업참여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작목반장 또는 지역별 영농지도반장은 당해 필지의 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사업대상 필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의 변경이 과다하여 작목반 전체의 친환경농업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작목반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사업대상자 및 대상지역관리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작목반 등이 별표 1의 친환경농업 실천기준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최초선정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계속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으나, 예산사정 등의 이유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원축소 가능
- 고의로 친환경농업의 실천기준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년간 동 사업참여를 제한
 - 참여제한 여부는 지역별 영농지도반이 주변지역의 화학비료·농약의 사용 실태, 농업용수의 오염여부 등 주변여건을 감안, 고의성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결정된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별표 1의 친환경농업 실천기준 이행여부는 토양검정 및 잔류농약 검사 결과로 판정
 - 잔류농약 검사 및 토양검정 결과 1가지 이상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이행', 두가지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불이행'으로 처리

- 지역별 영농지도반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별표 1의 친환경농업 실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위의 ‘불이행’에 해당)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농가에 대하여 당해연도의 보조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며, 향후 5년간 동 사업의 참여를 제한
 - 개별 농업인에 대한 이행여부는 작목반 전체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영농지도반은 개별 농업인의 비료·농약의 과다사용 등 별표 1의 친환경농업 실천기준의 위반사항을 발견할 시는 위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약잔류검사 또는 토양검정결과, 농업인의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작목반 등은 최초선정 연도를 포함하여 3년후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설정한 작물별 표준소비량의 40%에 해당하는 화학비료를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경영계획(별지 1호 :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포함)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 * 지원 3년차에 동 경영계획을 미이행한 작목반 등은 차년도부터 지원 중단

라. 대상자의 의무

- 사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농산물의생산자를 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0조에 규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짐
 - 친환경농업을 이행하기 위한 영농지도 및 교육의 이수
 - 비료 및 농약사용대장(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
 - * 기록의 정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공무원이 비료·농약구입 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 요청시 농업인은 제시할 수 있어야 함

마.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 농촌진흥청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의 내용, 친환경농업기술, 비료·농약 사용대장 기장방법 등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시·군·구 농업기술센터에 배포
- 시·군·구 사업 담당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교육참석 대상자 명단을 파악하여 자체교육계획 수립후 교육실시
 - 대상작목반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시기별로 분산하여 교육을 실시하되 영농시작 전에 완료
 - 사업내용은 사업 담당과에서, 친환경농업 기술부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실시

- 사업 담당과 및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업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친환경농업관련 기술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이수의무를 면제하여 중복교육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

바.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 및 영농지도반 운영

- 농촌진흥청장은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한 영농지도지침을 작성하여 시·군·자치구(농업기술센터)에 시달
 - 영농지도지침에 포함할 사항 : 작물별 비료·농약사용 기준 및 사용방법, 친환경농업기술 등
-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서 발급 및 지도 실시(영농전까지 시비처방서 발급조치)
- 친환경농업기술을 지도하기 위한 지역별 영농지도반 구성·운영
 - 시·군·자치구(농업기술센터), 농관원, 농협으로 구성·운영하되 시·군·자치구(농업기술센터)가 영농지도반을 총괄함.
 - 영농지도반의 운영 등은 시장·군수·구청장(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작목의 특성, 지리적 여건,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 * 사업대상자가 많아 관계기관 합동지도·점검이 어려울 경우, 관계기관 협의하에 기관별 영농지도반 구성·운영 가능
- 영농지도반 역할
 - 친환경농업기술 지도, 작물별 비료·농약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지도, 비료·농약사용량 점검
 - 비료·농약사용대장 지도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증빙서의 확인, 토양검정조사 및 잔류농약검사를 실시(또는 심사의뢰)하여 비료·농약의 사용량 점검
 - * 토양 및 잔류농약검사시는 그 결과가 나오는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대상농업인 및 작목반은 영농지도반의 지도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한 화학비료·농약 저감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의 “화학비료 저감방법” 난에는 퇴비(액비, 볏짚 등 유기물 포함), 겨울철 녹비작물재배, 토양개량제살포, 객토 등 친환경농업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 토양검정 및 잔류농약검사 >

가. 검사개요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지급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토양성분의 검정 및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
 - 오리농법실천농가, 녹비작물재배농가,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농가 및 표시신고농가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는 토양검정 및 잔류농약검사 생략가능(단, 작목반의 사업대상농경지 모두가 해당 되어야 함)
- 토양검정 및 잔류농약 검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모든 농산물의 생육시기를 사업년도 4월~10월까지로 간주
- 토양검정 및 잔류농약검사 기본원칙
 - 토양검정 및 잔류농약검사는 다음 기준에 의거 시료갯수를 정하고 화학비료 및 농약을 적정기준 이상으로 사용할 우려가 높은 필지 또는 작목별 면적이 가장 넓은 필지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검사하며 최소한 작목반별 1점이상 검사
 - 시설채소재배지 등 연중 다기작으로 재배되는 지역은 수시로 잔류농약검사를 할 수 있으나, 검정시기는 농관원 출장소장이 판단하여 적정한 시기로 결정한다.
 - 토양검정 및 잔류농약검사결과는 농가별 적·부적합을 판정하지 않고 작목반별로 적·부적합 판정
 - * 작목반소속 일부농가가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대상작목반 전체가 부적합으로 판정됨
 - 토양검정조사 대상필지와 잔류농약검사 대상필지는 가급적 서로 다른 필지에서 샘플을 채취·조사하여 중복을 피함
- 검정 및 검사 주관기관
 - 토양검정 : 시·군·자치구 농업기술센터
 - 잔류농약 검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나. 토양검정

○ 토양검정계획 수립

- 농촌진흥청장은 토양검정지침 등 “토양검정계획”을 수립하여 도농업 기술원장에게 시달
- 도농업기술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의 토양검정계획에 의거 “도 토양검정계획”을 수립·시달
- 시장·군수·구청장(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도 토양검정계획”에 의거 작목종류별·작목반별 토양검정일정 등을 수립·추진

○ 토양검정조사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농업기술센터소장)은 토양검정 일정을 수립하고 작물의 파종 또는 이식(양)전에 사전 토양검사 및 수확후 토양검사 실시
- 전년도에 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속 지원하는 농경지의 경우 당해연도 파종전(또는 이식전) 토양검정을 전년도 수확후 토양검정조사 성적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시료채취 기준

구 분	10ha 미만	10ha 이상
시 료 개 수	3	5

○ 시료채취 방법 및 조사절차

-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장이 정한 “토양화학성분 표준분석법”에 따름

○ 토양검정조사 판정기준

- 토양검정조사결과 시료별 적·부적합 판단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함.
- 검사결과는 작목반별로 평가하여 적·부적합 여부를 판정
 - 작목반별 적·부적합 판단기준 = $\frac{\text{적합시료 개수}}{\text{총 시료개수}}$ 가 65%이상일 경우 적합, 그 미만일 경우 부적합
 - 다만, 직불제 시행 3년차에 해당하는 작목반의 경우는 적합기준을 90%로 적용

○ 토양검정결과 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작물수확 후 토양검정이 완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작목 반별로 취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다. 잔류농약검사

○ 검사계획 수립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역별 ‘잔류농약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시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은 ‘잔류농약검사계획’에 의거 ‘시·도별 잔류농약검사계획’을 수립·시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장은 ‘시·도별 잔류농약검사계획’에 의거 작목종류별·작목반별 잔류농약 검사일정 등을 수립·추진

○ 잔류농약 분석기관

- ‘농산물안전성분석기관지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에 따름.

○ 시료채취기준

구 분	5ha 미만	5 ~ 10ha	10ha 이상
시료갯수	1	2	3

○ 시료채취 방법 및 조사절차

- ‘농산물안전성조사업무처리요령’(농림부고시)에 의함.

○ 조사대상 유해물질

- ‘농산물안전성조사실시요령’(농관원예규)에 의함.

○ 잔류농약 검사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장은 잔류농약 검사일정에 따라 작물수확기 또는 생육시기(수확기 1~2개월전)에 잔류농약 검사

○ 잔류농약 검사용 시료채취기준

- 다음 4개 작목종류별로 시료를 채취·검정
 - 잔류농약 검사 대상작목종류 : 벼·채소·과수·기타작물

○ 시료별 검사결과 판정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분의 1이하인 경우 '적합', 그 이상인 경우 '부적합' 판정

· 작목반별 적·부적합 판단기준 =

$$\frac{\text{적합시료 갯수}}{\text{총 시료갯수}} \text{가 } 65\% \text{ 이상일 경우 적합, 그 미만일 경우 부적합}$$

· 다만, 직불제 시행 3년차에 해당하는 작목반의 경우는 적합기준을 90%로 적용

○ 잔류농약 검사결과 통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장은 잔류농약검사가 완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작목반별로 취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라. 검사결과 이의제기에 대한 재검사

○ 토양검정 및 잔류농약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1차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하되 그결과에 따라 처리 (개별농업인의 경우는 재검사 신청 불가)

6.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가. 보조금 지급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은 작목반별로 보조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액을 결정하여 농가별로 지급

○ 지급기준

검 사 결 과	보조금 지급기준
○ 잔류농약검사결과 및 토양검정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00%
○ 농약잔류검사결과 및 토양검정결과중 1가지만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50%
○ 농약잔류검사결과 및 토양검정결과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지급상한면적 : 농가당 5ha

- 지급액 : 지급기준에 대상면적을 곱하여 산출

나.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관련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짐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장의 농약잔류검사 결과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토양검정조사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작목반별, 농가별 보조금액을 결정하여 작목반의 대표자 또는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지급대상자에게 지급

다. 보조금의 감액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의 의무인 영농지도, 교육의 이수 및 비료 및 농약사용대장의 기록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역별 영농지도 반장과 협의하여 지급액의 1할의 범위내에서 감하여 지급

미. 보 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농림부 보고기한 : 2001. 2월말

8. 2002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

나. 신청자격

- 대상지역내 농지에서 경작하고 작목반을 구성하는 농업인으로서 친환경 농업을 이행코자 하는 농업인

다. 신청절차

- 해당 농업인은 소정의 신청서류를 작성, 작목반 대표자에게 제출
- 작목반 대표자는 사업신청서를 취합,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라. 구비서류

-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신청서
- 농지원부 등 본인이 경작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지역 및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대상지역내 농지에서 경작하고 작목반을 구성하는 농업인으로서 친환경농업을 이행코자하는 면적이 1천㎡이상인 농업인
- 우선순위
 -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 우선
 - 친환경 이행면적이 넓고 농경지가 집단화된 작목반 우선
- 선정절차
 - 사업설명 및 공고(시장·군수) → 사업신청(농업인, 작목반대표) → 실태조사(관계기관 합동) → 대상자 선정(시장·군수)

[별표 1]

친환경농업 실천기준

- 농촌진흥청장이 작성한 작물별 표준시비량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비료의 사용량을 준수한 것
- 농산물의 재배시 유기합성농약의 살포횟수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사용기준의 2분의1 이하여야 하며, 유기합성농약은 품목별 첫 수확일부터 30일이전까지에 한하여 사용한 것
- 잔류농약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분의1 이하인 것

[별표 2]

토양화학성분의 적정범위

구 분	유기물함량 (g/kg)	유효인산함량 (mg/kg)	치환성칼리함량 (cmol ⁺ /kg)	염농도함량 (ds/m)
논	25~30	80~120	0.25~0.30	2.0이하
밭	20~30	300~500	0.50~0.70	2.0이하
시설채소지	25~35	350~500	0.70~0.80	2.0이하
과수원	25~35	200~300	0.30~0.60	2.0이하

<토양검정결과 적합여부 판단기준>

- 토양화학성분의 적정범위안에 포함될 경우 : 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적정범위를 벗어날 경우
 - 수확후 토양화학성분이 '토양화학성분의 적정범위(유기물함량, 유효인산함량, 치환성칼리함량)' 하한선 미만으로 조사되었을 경우는 적합판정
 - 수확후 토양화학성분이 '토양화학성분의 적정범위' 상한선을 초과했을 경우

구	분	판 정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파종(이식)전 토양화학성분		적 합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파종(이식)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2002년부터는 토양화학성분의 적정범위 안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적합으로 판정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신청서												
작목반명 ¹⁾			대표자 ¹⁾ 성명			전화 ¹⁾ 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작목종류	<input type="checkbox"/> 벼 <input type="checkbox"/> 채소 <input type="checkbox"/> 과수 <input type="checkbox"/> 기타											
구분	농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시·군	읍·면		리·동								
대상 농지												
	계											
생산 및 관리 계획	작목명											
	생산기간						~			~		
	비료	종류										
		시기										
	농약	사용량										
		종류										
	시기											
	사용량											
농산물의 생산자를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div>												
시(도)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농지원부등본, 대상농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본인이 경작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지역 및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기재방법] 1. 작목반명, 대표자성명 등을 기입
 2.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기준인 일반재배·저농약·무농약·전환유기·유기재배로 구분
 3. 사업시작년도 대비 저감계획임

(뒷쪽)

년 도 별		1년차(년)	2년차(년)	3년차(년)	4년차(년)	5년차(년)	
친 환 경 농 업 경 영 계 획	재배형태 ²⁾						
	농 약 저 감 계 획	³⁾ 저 감 계 획	%	%	%	%	%
		저 감 방 법					
	화 학 비 료 저 감 계 획	³⁾ 저 감 계 획	%	%	%	%	%
		저 감 방 법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실태조사서							
작목반명				대표자 성명	전화 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자격 (○,×)
	주소			전화번호			
구분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대상지역 여부 (○,×)
	시·군	읍·면	리·동				
대상 농지							
		계					
친환경농업 교육훈련	교육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친환경농업기 재보유	기종명	용도	기종명	용도	기종명	용도	
비고 (친환경농업경영계획의 실천가능 여부 등)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직급	성명		

[별지 제3호 서식]

비료·농약 사용 기록장

- 성 명 : _____ ○ 주민등록번호 : _____
- 주 소 : 군 면 리 번지
- 경작면적 : 논 평, 밭 평
- 재배현황 : 벼 평, 기타 평

비 료					농 약				
월일	대상작물	면 적	비료명	사용량	월일	대상작물	면 적	농약명	사용량

※ 기재요령

- 재배현황 : 기타에는 벼 이외의 작물명과 재배면적을 기재

<비 료>

- 비료는 화학비료뿐 아니라 벼짚사용, 퇴비사용 등 포함.
 - 월 일 : 비료사용 월일을 기재
 - 대상작물 : 벼, 콩, 고추, 사과 등 작물명을 기재
 - 면 적 : 비료를 사용한 면적을 기재
 - 비 료 명 : 사용한 비료명을 기재(예 : 21-17-17 : kg)
 - 사 용 량 : 포 또는 20kg 등 사용량을 기재

<농 약>

- 비료와 동일한 형태로 기재하되 농약명은 상표명 또는 품목명을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작목반 현황

작 목 반 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	--	-------	--	------	--

2. 개인별 명단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재배품목 및 면적	보조금 예상액

년 월 일

시(도) 시장(군수) 인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장
농업기술센터 시(군)소장
 작목반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토양검정결과 보고서

일련 번호	작 목	작목반명	시 료 검 사				판정결과 (○, ×)
			총갯수	적합시료갯수	부적합시료갯수	적합시료비율 (%)	

농업기술센터소장

시(도) 시장(군수) 귀하

40512-15511일
'98. 12. 21 승인

210mm×297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잔류농약검사결과 통보서

일련 번호	작 목	작목반명	시 료 검 사				판정결과 (○, ×)
			총갯수	적합시료갯수	부적합시료갯수	적합시료비율 (%)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출장소장 인

시 · 도 시장(군수) 귀하

40512-15611일
'98. 12. 21 승인

210mm×297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1. 경영주체별 농가수 및 면적

시·군	합계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개별농가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합계										

※ ()내서하여 경영주체별(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갯수 기입

2. 작물별 농가수 및 면적

시·군	합계		벼		채소		과수		기타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합계										

40512-15711일
'98. 12. 21 승인

210mm×297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Ⅲ. 논농업 직접지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친환경농업과(과장 박중서, 행정사무관 김덕호)입니다.

1. 목 적

- WTO농업협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적용하여 주곡자급기반 확보 및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
- 홍수방지 및 경관유지 등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
- 비료·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을 확산함으로써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

2. 시책 및 추진방향

-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에 적합한 농지(논)를 대상으로 실시
 - * 최초 사업시행년도 이후 개간·간척등으로 새롭게 논농업에 이용되는 또는 이용될 토지는 지원대상이 아님
- 실질적인 농업경영자(실경작자)로서 지원요건을 이행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보조금 지급
- 마을(리·동)별 또는 영농회별로 마을대표를 선정하고 “마을협약”을 작성토록 하여 논의 공익기능유지 및 환경친화적 활동 유도

3. 근거 법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4. 2001년도 사업계획

가. 사업비 내용

구분	사업량 (천ha)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국고	용자	
합계		210,500	210,500		
○농업보조금	-면적:890천ha	207,300	207,300	-	
-진흥지역	·580천ha	144,700	144,700		·진흥지역(25만원/ha)
-비진흥지역	·310천ha	62,600	62,600		·비진흥지역(20만원/ha)
○사업관리비		3,200	3,200	-	·이행점검, 전산관리, 교육

나. 지원조건

- 농업진흥지역 : ha당 250천원(국고보조 100%)
- 농업진흥지역밖 : ha당 200천원(국고보조 100%)

다.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농림부
-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 : 시·군·구
 - 마을별 자율추진체계 구축 : 리·통(마을대표)
 -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및 대상자 관리 : 읍·면·동
 - 대상자 선정, 지급요건 이행점검 및 보조금 지급 : 시·군·구

※ 세부시행지침은 별도 시달할 예정임

49	농작물재해보험시범사업(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업정책과(과장 , 농업사무관 김원일)입니다.

1. 목적

최근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으나, 재해지원은 생계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농가소득안정 및 농업재생산능력확보에 한계

따라서 WTO농업협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허용정책인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농가소득안정망을 구축하여 농가경영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

2. 시책 및 추진방향

2001년에는 비교적 전업화되어 보험제도 도입여건이 양호하고, 농가의 가입 희망이 높은 사과, 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입여건이 성숙된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조기정착과 농가의 부담을 줄여 가입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

-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법」(가칭) 제정

3. 근거법령

농작물재해보험법

4. 2001년도 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대상작물 : 사과, 배

대상자연재해 : 태풍, 우박, 서리

보장수준 : 평균생산량의 70%보장하는 상품과 80% 보장하는 상품병행 실시

가입방법 : 농가 자율적으로 가입(임의가입 방식)

가입시기 : 2000년 3월부터

실시지역 : 전체재배면적 대비 50%까지 주산지 위주로 실시

손해평가 : 보험대상작물별 전업농가, 기타 관계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 실시

보험운영기관

-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민간보험사는 재보험담당)

나. 지원조건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지원

보험운영기관에는 보험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50%지원

다. 사업주관기관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 : 농림부

예산집행 : 농림부

※ 세부시행지침은 별도 시달할 예정임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과장 박성자, 행정사무관 이세열)입니다.

1. 목 적

-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예정)으로 인하여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출산농가의 신청에 의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도우미이용료의 일정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생산적 복지시책
- 2000년 농가도우미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01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개선·보완, 2002년에 전 시·군 확대 계획
 - (2001) 87개시군 →(2002) 163개 전 시·군 확대
- 시장·군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제도로 발전·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여성농업인의 육성)
-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모성보호의 강화)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2000	2001	2002
사업량	시군수	68	87	163
	대상인원	1,664	1,667	5,431
사업비 (백만원)	계	1,198	1,350	4,400
	국고보조	599	540	1,760
	지방비	-	540	1,760
	농가자부담	599	270	880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출산(예정)여성농업인

※ 임신 4월(85일)이후부터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농업인 :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축·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작 또는 경영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2) 지원액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하여 영농을 대신하게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1일 21,600원까지 지원(국고보조 10,800원, 지방비 10,800원)

- 1일 지원액은 영농작업 8시간 기준이며, 도우미이용료(노임)는 농가와 도우미(작업자)간에 합의 결정

(3) 지원일수 한도 : 30일(1일 8시간 기준)

○ 3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60일부터 출산후 60일까지 120일 기간 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중에 도우미를 이용(30일 한도)할 수 있음

나. 2001 사업비(예산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시군수	지원대상	합계	국고보조	지방비	농가자부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87시군	1,667명	1,350 (100%)	540 (40%)	540 (40%)	270 (2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시행지침 시달, 시·도별 예산 및 자금교부, 홍보
- 시·도지사 : 시·군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사업지역 선정 및 시·군별 사업비 배정 등), 사업내용 홍보, 해당시·군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 시장·군수 :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사업내용 홍보, 읍·면·동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 읍·면·동장 : 출산(예정)농가로부터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뒷면 계약서) 접수 및 사실여부 확인, 농가도우미 보조금 신청서(뒷면 영농일지) 접수 및 사실여부 확인, 시·군에 보조금 지급요청 등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여성정책담당관실(전화 : 02-503-7294, FAX : 02-503-7295)
- 시·도 및 시·군 : 농정업무 담당부서(농정관련과)
- 읍·면·동사무소 : 농가로부터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보조금 신청서 접수 및 확인

다. 사업시행절차

- 농가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있는 농가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서식 ①)”와 뒷면 “농가도우미 이용계약서(서식②)”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병원 및 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출산(예정)확인서 또는 기타 출산(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출산증명서 구비가 어려운 농가는 이장 또는 통장의 확인서 첨부)
 - ※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첨부서류 없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확인만으로 가능

- 농가도우미 이용 완료 후 “농가도우미 보조금 신청서”(서식④)와 뒷면 “농가도우미 영농일지”(서식③)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도우미 이용기간 중 10일 간격으로 신청가능)

○ 도우미 지정

- 농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
- 직계 존·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및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이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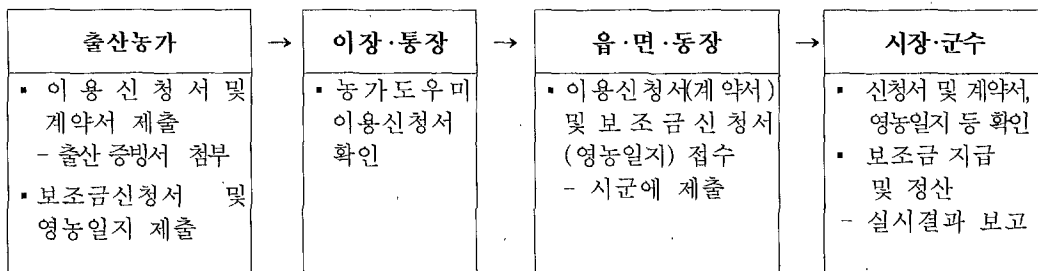
○ 읍·면·동장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뒷면 “농가도우미 이용계약서”) 접수 및 시·군에 제출(원본은 시·군에 제출, 사본은 읍·면·동에 보관)
- 농가도우미 보조금 신청서(뒷면 “농가도우미 영농일지”) 접수 및 시·군에 제출(원본은 시·군에 제출, 사본은 읍·면·동에 보관)

○ 시장·군수

-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뒷면 농가도우미 이용계약서) 및 “농가도우미 보조금 신청서”(뒷면 농가도우미 영농일지)등 관련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출산농가의 통장에 입금조치
- 보조금 집행 전에 농가도우미에게 영농작업의 사실여부 확인(전화 등)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절차도



라. 도우미 등록관리

-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농가도우미로 희망하는 자를 등록대장에 관리하고, 출산농가의 요청이 있을 때 농가도우미 공급
 - 도우미 등록기준은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자체 설정
 - 출산농가에서 시·군 또는 읍·면·동에 등록되지 않은 농가도우미를 자체 지정하여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제출 가능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사업비 신청

- 읍·면·동장 : 농가도우미 이용수요(인원수 및 이용일수)를 파악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1분기(12.15), 2분기(3.15), 3분기(6.15), 4분기(9.15)
- 시장·군수 :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비배정 요청
 - 1분기(12.20), 2분기(3.20), 3분기(6.20), 4분기(9.20)
- 시·도지사 : 시·군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농림부에 사업비 신청
 - 1분기(12.25), 2분기(3.25), 3분기(6.25), 4분기(9.25)
- 농림부 : 각 시·도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예산 및 자금 배정

(2) 사업비 집행

- 도우미 이용농가는 농가도우미 보조금 신청서(뒷면 “농가도우미 영농일지”)를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읍·면·동장은 농가에서 제출한 신청서의 사실여부 확인후, 시장·군수에게 제출(원본)하고 보조금 지급을 요청
 - (보조금 지급요청시 농가별 사업완료보고서 함께 제출 : 서식 ⑤)
- 읍·면·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가에 비치된 “농가도우미 영농일지”를 1회 이상 현지 점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확인 후 도우미이용 농가의 통장(출산여성농업인 명의)에 보조금(국고+지방비)을 입금 조치하고 읍·면·동장에게 통보, 읍·면·동장은 해당 농가에 통보

(3) 사업비 계산

- 보조금은 1일 8시간 이용(근로)기준으로 21,600원 지급
- 21,600원 중 국고 10,800원, 지방비 10,800원
- 지원금은 시간급으로 정산
- 1일 8시간 작업한 경우 : 21,600원
- 1일 4시간 작업한 경우 :
 $21,600\text{원} \div 8\text{시간} \times 4\text{시간} = 10,800\text{원}(\text{국고 } 5,400 + \text{지방비 } 5,400)$
- 출산여성농업인 1인당 총 지원액이 648천원(30일×21,6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계약의 무효·위반·변경 등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이용계약서 및 도우미의 영농일지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보조금 전액 환수
- 농가도우미 이용에 따른 손해(재산상 및 신체상)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발생을 유발시킨 농가 또는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손해비용 부담(계약서에 명시)

(5)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 익년도 1월 15일까지 사업비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서식 ⑥)
- 시·도시사는 익년도 1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서식 ⑥)
- 국고잔액 반납 : 정산보고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결과 보고
 - 회계 및 소관 : 농림부 일반회계 세입징수관
 - 과목 : 경상이전수입(12-59-591, 2001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반납금)

(서식 ① : 농가용)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신청인 (여성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출산일 (예정일)	월 일
	주소						전화	
농가도우미 (영농 작업자)	성명	연령		성별	남,여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	
영농작업기간 및 작업내용	기간	2001년	월	일	~	월	일	계약일수 일간
	내용							
<p>위와 같이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2001년 월 일</p> <p>(신청인) 성명 : (인)</p> <p>첨부 : 1. 농가도우미 이용계약서 1부(뒷면)(신청서와 함께 작성 제출) 2. 출산(예정)증빙서 1부(출생신고자는 증빙서 불필요, 출생미신고자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증거서류 제출)</p> <p>○ ○ 읍·면·동장 귀하</p> <p>(확인란)</p>								
○○ 이장(통장)		읍·면·동 담당공무원(직				성명 인)		
성명 (인)	출산(예정) 확인	농경지 경영 및 경작(평)확인						
<p>위 신청자는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예정)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p> <p>2001년 월 일</p> <p>읍·면·동장 (직인)</p>								

(서식 ② : 농가용)

농가도우미 이용계약서

출산여성농업인(이하“갑”이라 함)과 영농을 대신해 주는 농가도우미(이하“을”이라 함)간에 농가도우미 이용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적용범위 및 영농작업시간) 이 계약은 “갑”의 영농과 관련된 작업에 적용하며,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2조(영농작업기간) “을”의 영농작업은 2001년 월 일부터 월 일 기간 중에 일간 실시한다.

제3조(도우미 이용료) 농가도우미 이용료(노임)는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1일 원으로 하고, “갑”은 영농작업 일수에 따라 농가도우미 이용료(노임)전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4조(보조금 신청) “갑”은 농가도우미의 영농작업이 끝난 후 농가도우미 보조금 신청서와 영농일지(보조금 신청서 뒷면)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손해비용 부담) “갑” 또는 “을”의 잘못으로 손해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책임정도에 따라 손해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유효기간) 본 계약은 도우미이용료(노임)의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유효하다.

제7조(계약 이외의 사항) 본 계약 이외의 여타 사항은 관련 법률에 의한다

제8조(계약서 제출) “갑”은 본 계약서와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계약서 뒷면)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일 : 2001년 월 일

출산여성농업인(갑) : (인)

농가도우미(작업자)(을): (인)

(서식 ③ : 농가용)

농가도우미 영농일지

작업 일차	작업 월일	작업 시간	영농작업 내 용	작업 일차	작업 월일	작업 시간	영농작업 내 용
1	월일			16	월일		
2	월일			17	월일		
3	월일			18	월일		
4	월일			19	월일		
5	월일			20	월일		
6	월일			21	월일		
7	월일			22	월일		
8	월일			23	월일		
9	월일			24	월일		
10	월일			25	월일		
11	월일			26	월일		
12	월일			27	월일		
13	월일			28	월일		
14	월일			29	월일		
15	월일			30	월일		
계					일	시간	

위 같이 농가도우미 영농일지를 제출합니다

2001년 월 일

신청인(출산여성농업인) : (인)

농가도우미(영농작업자) : (인)

(서식 ④ : 농가용)

농가도우미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여성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 화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영농작업 주요내용	기간	2001년 월 일 ~ 월 일		작업 일수	일간
	내용				
도우미에게 지급한 이용료(노임)		원(1일 원×작업일수 일)			
보조금 신청액		원(1일 21,600원 ×작업일수 일)			
통장 계좌번호					
<p>위와 같이 농가도우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01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50px;">신청인 (인)</p> <p>첨부 : 농가도우미 영농일지 1부(뒷면)(보조금신청서와 함께 작성 제출)</p> <p style="margin-left: 150px;">○○ 읍·면·동장 귀하</p>					
<p>2001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확인) ○ ○ 읍·면·동장 (직인)</p>					

(서식 ⑤ : 읍·면·동 용)

사업 완료 보고서

- 사업명 : 2001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업비 : 원(보조금 원 + 농가자부담 원)
- 사업자 성명 :
 주소 :
 전화 :
- 사업자 출산(예정)일 : 2001년 월 일
- 사업기간 : 2001년 월 일 ~ 2001년 월 일
- 사업일수 : 일(1일 8시간 기준)
- 사업내용 : 별첨 보조금신청서 및 영농일지 참조
- 보조금 신청액 : 원(일×1일 21,600원)

상기 출산(예정)농가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붙임 : 1. 농가도우미 보조금 신청서(원본) 1부.
 2. 농가도우미 영농일지 1부(원본)(신청서 뒷면)

2001년 월 일

() 읍·면·동장 (직인)

○ ○ 시장·군수 귀하

(서식 ⑥ : 시·도 및 시·군용)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결과 보고

(단위 : 원)

시군별	예산액(A)		교부결정액(B)		정산액(C)		정산잔액(B-C)	
	이용 농가수	금액	이용 농가수	금액	이용 농가수	금액	이용 농가수	금액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합계	국비							
	지방비							
	계							

여 백

V. 소 득 원 개 발

여 백

51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정비과(과장 이승찬, 시설서기관 남궁박)입니다.

1. 목 적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하여 보전·개발하므로서 도·농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촉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지역특성에 맞게 농업활동과 연계·개발하여 자연 환경의 보전과 지역발전의 도모
- 농업과 연계된 건전한 개발·운영으로 도·농교류의 촉진과 농촌지역 소득증대에 기여
- 도시민이 농업·농촌을 이해할수 있는 농촌사회와 농업생산의 산교육장으로 조성·활용
-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유형의 다양화
 - 관광농원 : 농원으로서의 특성을 위해 일정규모이상의 작목입식을 하여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전하게 개발·운영
 - 휴양단지 : 지역개발계획과 연계될수 있도록 하고, 사전 공청회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 농촌민박마을 : 숙박위주의 조성보다 지역관광지와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원적 휴양마을을 조성
 - 주말농원 : 도시근교 유휴농지를 개발 도시민의 비영리목적 영농활동에 활용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6조, 농어촌휴양사업의 육성
-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농어촌휴양지의 개발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3조, 농어촌휴양지 지정·개발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2004	
사업량	622	17	30<11>	10<1>	307	
사업비	계	204,083	11,143	7,857	2,286	115,086
	국고용자	152,432	7,800	6,100	1,600	80,560
	자부담	51,651	3,343	1,757	686	34,526

※ 1) < >외서는 계속지구

2) 추진목표

- 관광농원('84~2004) : 시·군당 4개소기준 544개소 조성
- 휴양단지('89~2004) : 시·도별 2개소기준 22개소 조성
- 민박마을('91~2004) : 군당 3개마을 기준 408개마을 조성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경

-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이용,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유치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

(2) 지원대상자

- 관광농원사업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농협, 산협,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업인

- 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현지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자기 소유 토지를 관광농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로서 3호이상 공동참여

※ 현지의 개념 : 개발대상 토지가있는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영농하는 경우임.

공동참여방법 : 농원 조성·운영 및 작목입식, 부대·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지역특산품 등의 판매, 현물 출자등

- 영농조합법인은 5인이상 농업인으로 구성되고 설립후 1년이상 경과 및 출자규모가 3억원이상이며,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휴양단지개발사업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농협, 산협
- 농촌민박마을사업 : 마을당 5호이상 공동참여농가로서 민박을 목적으로 보유한 농가주택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이 필요한 농가
- 주말농원개발사업 : 시장·군수·구청장, 농업기반공사, 농협, 농업인

(3) 지원규모 및 조건

구분	관광농원개발	휴양단지개발	농촌민박마을
용자한도	○ 총사업비의 70%이내로서 지구당 450백만원이내 - 신규지구 : 200백만원 이내(1차년도) - 기성지구 : 250백만원 이내(2차년도 이후)	○ 총사업비의 100% 이내로서 지구당 2,500백만원이내	○ 총사업비의 70% 이내로서 마을당 300백만원, 농가당 15백만원이내
용자조건	○ 연리 8%, 5년거치 5년균분상환	○ 연리 5%, 3년거치 5년균분상환	○ 연리 5%,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지원대상	○ 지정된 농원내의 과수·가축등 다년생 작목입식 ○ 농원의 부대편의시설 설치, PC구입 및 도로등 기반 조성사업	○ 지정된 휴양단지내의 농업부대시설, 기반 조성시설 및 편의시설 등 설치	○ 민박대상 농가주택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 시설 및 소요자재비

- 관광농원사업은 신규지구 지원은 억제하고 시·도별 예산지원액 범위 내에서 기성(계속)지구의 시설자금에 한하여 지원하되, 규정면적이상 농장이 조성되어 있는 농원 지원
- 주말농원사업은 전액 자부담으로 시행

(4) 구비서류

- 관광농원개발사업 :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휴양단지개발사업 :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 농촌민박마을사업 : 사업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5) 세부사업내용

(가) 관광농원개발사업

○ 개발유형 : 사업지역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자 자율결정

- 별지 표1의 예시(유형 및 시설)내용을 참조

○ 사업규모 및 내용

- 지구지정면적 : 66,000㎡미만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농장면적(영농체험시설) : 작목입식면적등이 4,000㎡이상으로서 지구지정면적의 40%이상 조성

※ 대규모 양돈장등 공해유발사업은 제외

· 농특산물판매시설 : 30㎡이상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 규정에 의한 운동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시설등으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설로서 경영안정화를 위해 시설설치는 최소한의 적정규모로 설치

· 숙박시설은 관광농원의 취지상 취사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러브호텔의 형태로 설치되지 않도록 함.

· 편의시설의 설치는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관광농원 사업취지에서 벗어나는 유흥·위락시설 설치의 억제, 특히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은 영업불가

※ 관광농원이 위락시설 위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96년 이후 신규지정된 관광농원의 숙박·식당시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다음의 기준을 적용

- 숙박시설면적(건물연면적) : 농장면적의 10%이내

- 식당시설면적(건물연면적) : 농장면적의 5%이내

(준농림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상 행위제한등 관계법령의 기준 적용)

(나) 휴양단지개발사업

○ 사업규모 : 30,000m² ~ 100,000m²미만

○ 개발방법

-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문화등과 연계·조화되게 개발
-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전·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양하게 개발
 - 자연학습형, 청소년심신수련형, 주말휴양형등
- 농어촌정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관련시설등 기본시설은 반드시 설치·운영하여 일반관광지와 구분될수 있도록 개발

○ 시설규모 및 내용

- 기반시설 : 단지조성, 진입로, 주차장, 용수개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등
- 부대시설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농림어업전시관(60m²이상), 학습관(60m²이상), 지역특산물판매장(30m²이상)
 - 기타편의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설
(편의시설) 숙박시설, 휴게소, 식당, 예식장등
(체육·휴양시설) 놀이시설, 원두막, 낚시터, 수영장, 낚시매장, 미니골프연습장, 야영장, 자동차캠핑장등
(교양시설) 농업과학관, 농기구전시관, 영농체험학습관등

(다) 농촌민박마을사업

○ 사업규모 : 마을당 5호이상 농가 공동참여

○ 개발방법

- 기존의 농가주택을 호당 5실한도내에서 민박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또는 증·개축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기본시설인 취사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
- 농촌민박 이용객의 위생과 직접 관련된 화장실, 욕실(샤워장포함)등 시설의 개·보수등

(다) 주말농원개발사업

○사업규모 : 50,000㎡미만

- 이용객에게 임대하는 농지면적이 전체면적의 40%이상이고 임대농지를 포함한 영농이용 농지면적이 60%이상일 것

○사업내용

-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 영리목적이 아닌 영농 등을 목적으로 이용객에게 농지의 임대 또는 용역을 제공
- 기타시설은 주차장, 공중화장실, 농기구보관창고, 관리사무실등 주말농원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최소한 범위내에서 적정규모로 설치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개소,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농촌관광 휴양자원개발	10<1>	2,286	1,600	-	1,600	-	686

※ 1) < >내서는 기성지구

2) 2001년 예산내역(안) : 10지구 1,600백만원(자부담 686백만원)

- 관광농원 : 250백만원(자부담 107백만원 ; 1개 기성지구 마무리)
- 민박마을 : 1,350백만원(자부담 579백만원 ; 9개마을 조성지원)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02)504-9404,9405)
- 시·도 : 농정(농정산림, 농림수산)국 농업정책(농정유통, 농업특작)과
- 시·군 자치구 : 산업(농정)과, 농협(군지부 또는 단위농협)

다. 추진절차

- 농림부 : 기본계획수립 시달 및 예산내시
- 사업자 : 사업유형에 따라 사업자가 다름
 - 관광농원개발사업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생산자단체(농협,산협),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업인
 - 휴양단지개발사업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농협, 산협
 - 농촌민박마을사업 : 농업인
- ※ 사업자는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시·군에 제출
- 시·군 : 지구선정 및 사업계획심의(농정심의회 심의),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하고 그내용을 고시
- ※ 사업추진체계도 : 붙임 표2와 같음

라. 사업시행

(1)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가) 공통사항(농촌민박사업 제외)

-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비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시장·군수가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 지구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미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지구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사업자가 농어촌휴양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농어촌정비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학계, 협회, 전문연구기관등)의 의견을 들어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사업계획에는 연차별·공종별 공정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포함
-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보완·변경 또는 조건부 승인등
- 시장·군수가 지구지정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포함)한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4조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직접 지정하여 개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나) 농촌민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검토.

- 농촌민박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토지이용계획, 건축, 위생관련 부서등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협의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2) 사업계획변경

(가) 공통사항(농촌민박사업 제외)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목적달성 또는 현지여건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외에는 가급적 억제
-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작목입식변경중 작목종류 일부변경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전 신고후 실시가능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사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등 제반관련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여부등 면밀검토
 - ※ 사업계획변경내용이 국토이용계획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변경후 가능

(나) 개별사항

○ 관광농원개발사업

- 시장·군수는 면적변경이 수반되는 계획변경에 대해 변경코자하는 총 지정면적의 40%이상 농장조성여부를 사전 확인한 후 사업계획변경 여부 결정
- 사업자 경영상태에 비해 과도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강화
- ※ 기성농원의 경우에도 시설규모 등이 현행법령 및 지침에 부합되도록 유도
- 또한, 숙박·식당등 위락시설의 확대변경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소한도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

○ 농촌민박사업

-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추진

(가) 공통사항(농촌민박사업 제외)

- 시장·군수는 용자대상자로 확정된자가 일정기간안에 사업계획을 수립 하지 않거나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그 지연사유등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용자사업대상자에서 제외 할 수 있음을 용자사업자로 확정된자에게 통지하고 각서를 징구함.(민박사업 포함)
- 사업자는 당해연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예산액 또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공정계획은 인력·자재 수급계획뿐만아니라 기상여건 및 각종인허가절차 등을 감안하여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수립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지확인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사업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별지 제9-1호 서식)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준공검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사업자등이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준공후 시장·군수에게 사업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함(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제50호서식)
 - 사업준공검사와 사업자 지정 동시신청 가능
- 시장·군수가 사업자치정을 한때에는 사업자치정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별지제51호서식)
- 시장·군수는 사업준공 및 사업자 지정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그내용을 취합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개별사항

- 관광농원개발사업
 - 사업시행은 지구 지정년도부터 다음연도말까지 완료하여야 함
 - 다만, 사정변경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사업계획변경)을 얻어 1차에 한하여 1년간 연장가능
 - 식당·숙박시설등 대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하여 관광농원으로서의 특성유지와 시설 및 위생관련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작목입식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건축분야등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도·점검등 실시
- 휴양단지개발사업
 - 공공기관에 의한 사업시행임을 감안하여 공사발주 및 사업시행은 공공사업에 준하여 추진
 -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은 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함.

- 용지매수보상비는 공사비에 우선하여 가능한한 전액보상하고, 동일한 토지에 관한 보상은 일괄보상을 원칙으로 함.
-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 및 용지매수가 완료된 후 사업을 시행 하되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는 농어촌정비법 제97조에 의거 농업 기반공사 등에 위탁하여 시행가능
 -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비를 위탁할경우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제 49조(별표5)를 적용
- 지적공부정리 및 분양등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측량을 필한 후 지적공부를 정리
 - 휴양단지내의 부지 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현지농업인등 실수요자에게 우선분양(임대포함)
 - 분양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분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당해사업이 시행된 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및 당해사업을 위하여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에게는 조성원가로 분양할 수 있음. (지방비등 보조금이 투입된 경우에는 분양가 산정기준에서 보조금은 공제함)
- 민박마을조성사업
 - 사업추진은 예산이 지원된 당해년도말까지 완료하여야 함
 - 사업비지원은 민박을 위한 농가주택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기본시설인 취사 시설 포함)에 한하여 지원

마.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 별도 시·도별로 예산 내시

(2) 자금의 운용관리

-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공정계획 및 분기별 용자금 소요액과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정부자금형편을 감안하여 지원
- 관광농원개발 및 농촌민박사업은 자부담금 전액을 우선집행한 경우에 지원

(3)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이 공정계획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미집행액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당해 년도말 검정을 붙임서식(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실시

(4) 용자요령

- 용자금 대출은 신용대출, 농신보대출, 신용보증부대출 또는 담보대출(후취담보포함)중 사업참여자와 용자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실시하되, 사업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대출(시설물이 수반되는 경우 후취담보 적극 활용)
- 용자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용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통보한 사업진도(기성고)에 따라 진도 확인후 자금을 지원
 - 단, 농협중앙회등이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비는 제외
- 용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제 불허함.
- 기타 용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을 준용

<행정사항>

가. 사업자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자는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취지에 부합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 엄금
- 사업자는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등의 방지등에 노력하여야 함
 -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및 위생관리 철저
- 사업자능력을 벗어난 대규모, 호화시설등에 과도한 투자는 억제하여 내실경영 적극 도모
- 사업자는 시장·군수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2) 개별사항

○ 관광농원사업의 양도·양수등

- 관광농원을 양도·양수할 수 있는자는 농어촌정비법 제66조 내지 제67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등에 한함
- 관광농원을 양도·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 관광농원을 양수한 자는 관광농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

나. 사후관리

(1) 공통사항

(가)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단속강화

○ 관리주체 : 시장·군수

○ 점검자 점검내용

- 점검자 : 도지사, 시장·군수
- 점검시기 : 도는 년 1회이상, 시·군은 반기 1회 이상
- 점검내용
 - 공정계획등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 작목입식, 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등

○ 점검결과 조치

-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등 제반관련법령에 따른 지정조치 및 지구지정취소등 조치
- 시장·군수는 지구지정취소시 기지원된 융자금은 농협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전액을 회수조치하고, 농어촌정비법 제87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한 관계기관에 지정취소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2) 개별사항

(가) 관광농원개발사업

- 사업시행단계(조성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사업자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등 엄중하게 조치
 -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정의 변경으로 관광농원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운영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조치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사업이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게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 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4조의2 및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등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광농원사업의 건실화 도모
 -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 입식작목의 경작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때
 - 기타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또한, 관광농원의 시설 및 위생관리실태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령등 각개별법령에 따라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강화
 - 관광농원사업자 변경시에는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관광농원사업자는 필요시 경영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영입하여 운영할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소득증대는 농어민에게 귀착되도록 하여야 함.

○ 기타 사업장의 관리등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중 청소년수련활동에 이용되는 농원에 대하여는 수련활동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6조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로 지정이 되도록 적극 관리
- 양도·양수 및 임대 관광농원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령에서 규정한 적격 자격자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시정등 조치
- 관광농원 지도·관리카드를 정확히 작성하여 시·군에 비치 활용하고 정기적으로 지도

(나) 휴양단지개발사업

- 시장·군수는 휴양단지개발사업이 공공기관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임을 감안 사업시행 및 운영이 건실하고 건전하게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기반조성시설은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선량하게 관리
- 실수요자에게 분양된 편의시설은 실수요자 명의로 등기 이전
 - 시설 및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
- 기타 휴양단지의 지정 및 지구지정취소 등은 농어촌정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다) 농촌민박조성사업

- 시장·군수는 농촌민박사업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적절한 시설과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관리 강화

다. 자부담개발사업에 대한 적용

- 정부의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지않고 사업비전액을 자부담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참여자격 및 지구지정, 사업절차등은 농어촌정비법 및 제반관련법규정에 따라야 함.

라. 보고

- 도지사는 2001년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관광농원, 휴양단지, 농촌민박)의 예산지원에 따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제11-1,2호 및 제14호 서식)를 시장·군수로부터 받아 3월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신규 휴양단지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서 포함 보고)

- 도지사는 매년 12월말현재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추진실적보고서 (별지 제15-1, 15-2, 15-3, 15-4, 15-5, 15-6, 15-7)를 취합하여 다음해 1.25일 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부진지구에 대하여는 그사유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고
- 도지사는 매년 12월말현재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연도말 점정결과를 취합하여 농촌개발사업실행검정 및 결산요령에 따라 다음해 1.3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읍·면)

나. 신청자격 : 본사업시행지침 “5.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의 지원대상자”의 사업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자

다. 신청절차

- 신청자격을 갖춘자로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사업지원신청서를 읍·면장을 거쳐 시·군의 총괄부서에 제출
 - 단, 휴양단지개발사업 및 시장·군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군의 총괄부서에 제출
- 2002년 신규지정은 예산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라. 구비서류 : 사업유형에 따른 사업지원신청서(별지 제12호, 제13호, 제16-1호, 제16-2호 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농업진흥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상수도 보호법 등 제반 관계법령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거나 인·허가 등에 문제가 없는 지역

-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에 역사적 유물·유적·문화재등이 있는 지역
- 토산품·민예품등 지역특산물의 생산과 판매가 용이한 지역
- 농촌관광휴양자원으로의 개발특성을 갖춘 지역으로서 지역민의 호응이 높고 시장·군수가 지역개발과 지역농업인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관광농원사업의 경우 지구지정예정지에 지구지정 예정면적의 40%이상에 농장(과수원,목장,특수작목재배지등)이 기조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동일지역내 수개의 농원이 난립되지 않는 지역

(2) 우선순위

- 상기선정기준(1)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 농가참여호수 및 예상취업자수가 많은 지구
 - 작목입식규모 및 운영등에 있어 농업활동의 비중이 높은 지구
 - 지역농특산물의 판매액이 많아 농업발전 및 소득증대가 높게 예상되는 지구
 - 주변여건이 좋아 도·농교류의 촉진이 높게 예상되는 지구
- 기존 논외 타목적전용이 수반될 경우에는 가장 낮은 순위 부여
- 사업대상자 확정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가장 낮은 순위 부여
- 관광농원사업의 경우 관광농원사업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자는 가장 낮은 순위 부여
- 농촌민박사업의 경우
 - 영농규모가 적고 영세한 농가로서 5호이상 다수의 공동참여마을 우선 선정
 - 농가당 5실이하로 시설기준 제한
 - 전문적인 숙박업자, 상인등은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기존 농가주택의 개·보수, 증·개축이 아닌 주택신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3) 선정절차

- 시장·군수는 “다, 라”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지원 신청내용에 대해 현지확인등을 거쳐 사업타당성등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검토
 - 필요시 해당사업 관련기관(관광농업학회, 관광농원협회등)과 사전협의 검토
- 시장·군수는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을 결정
- 관광농원의 경우 농산물생산을 위한 농장구비여부를 확인한후 관련서류를 용자취급기관(단위농협 또는 농협군지부)에 송부하여 신용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 접수전 신용조사 우선실시 가능
 - 용자취급기관은 신용조사결과(별지 제6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바. 기타사항

- 기관별 보고일정

구 분	기 관 별	기 한	양 식
1. 농촌휴양자원개발 사업시행 지침시달	농림부→도	12월	
2. 농촌휴양자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시·군	매년1.1~2.21	별지제1,10,12호서식 별지제2-1,2-2,11-1,11-2,13,14호서식
3. 농촌휴양자원개발 사업계획서	시·군→도 도→농림부	3.10 3.20	별지제2-1,2-2호서식 별지제11-1,11-2호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4. 자부담개발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보고	도→농림부	6.30	별지제2-1,11-1호 서식준용
5. 농촌휴양자원개발 사업추진 실적 보고	시·군→도 도→농림부	1.15 1.25	별지제15-1,15-2,15-3,15-4,15-5,15-6,15-7호서식

○ 관광농원개발추진시 사업자, 시·군 및 농협에서 참고할 서식

구 분	작 성 자	제출처 (교부처)	양 식
1.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1호 서식
2.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3. 관광농원관리운영계획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3호 서식
4. 추천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4호 서식
5. 각 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5호 서식
6. 관광농원개발사업자 신용검토 의견서	단위농협 (농협군지부)	시·군	별지 제6호 서식
7. 지구지정의견서	시·군	시·군농정심의회	별지 제7호 서식
8.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승인서	시·군	사업자	별지 제8호 서식
9. 관광농원개발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9-1호 서식
10. 관광농원 사업자지정 신청서	사업자	시·군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11. 관광농원사업자 지정증서	시·군	사업자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표 1] 관광농원개발사업의 유형 및 시설(예시)

1. 사업의 유형

가. 기능별 유형

유형	조성예시
자연학습형	기본시설 + 동·식물원, 민속자료관, 식당, 캠프장, 운동장, 자연학습관찰장, 놀이터 등
주말농원형	기본시설 + 주말농원, 농기구창고, 숙박시설, 식당, 특산품판매장, 낚시터, 놀이터, 야영장 등
심신수련형	기본시설 + 야영장, 민속자료관, 운동장, 수영장, 기타
농촌휴양형	기본시설 + 숙박시설, 식당, 야영장, 휴게소, 특산품판매장, 기타
효도농원형	농장, 부속주택, 농업부대시설, 가공시설 등

※기본시설 : 일정규모이상의 특색있는 농장(과수원, 초지, 특수작물재배지등), 농특산물판매시설(판매장 또는 직판장)

나. 운영형태별 유형

유형	운영형태
농산물채취형	농가가 재배한 농작물을 내방객이 직접 채취토록 운영 · 과일따기, 감자캐기, 밤줍기등
생산수단대여형	농산물생산에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농장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그 토지와 작물(축사, 가축등 포함), 농기구등의 생산수단을 제공
장소 제공형	농장, 과수원, 화원등을 개방하여 감상, 견학토록 하고, 레크레이션시설 등을 설치, 휴양을 위한 장소로 제공

※ 효도농원 : 은퇴, 귀농인을 대상으로 관광농원내 시설등을 대여 또는 이용토록 하게 하거나 영농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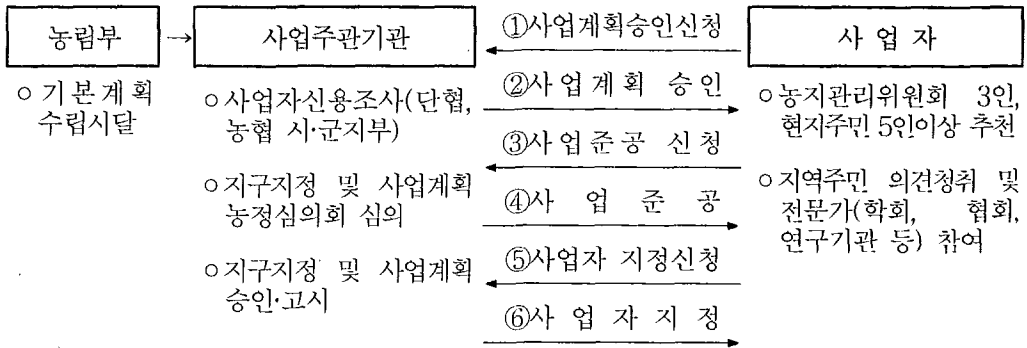
2. 관광농원지구내 설치하는 시설범위(예)

구 분		시 설 명 (작목명)
농 장 (작목입식)	작 물	식량작물, 채소, 특용작물, 약용작물, 과수화훼, 기타작물
	임 산 물	유실수(밤나무등), 버섯(단, 자연림은 제외)
	축 산 물	초지, 조류, 기축(조류,기축을 사육장에서 관상용으로 사육의 경우)
	수 산 물	어류(양어장등 생산시설에서 양식의 경우)
	농 수 산 생산시설	축사, 양어장, 하우스시설, 분재원, 조류·가축사육장 등
시 설 물	농 업 시 설	저장고, 농업창고, 집하장 등
	농특산물판매시설	농특산물판매장 등
	기 반 시 설	관리사무소, 상하수도, 전기통신, 관·배수시설, 오물처리장 등
	숙 박 시 설	농원이용객을 위한 숙소, 민박, 야영장등
	휴양·편의시설	식당, 휴게소, 매점, 휴식시설, 예식장, 목욕탕(일반목욕탕에한함), 건전오락실, 공중화장실, 잔디광장, 낚시터, 원두막 등(단란주점,유흥주점업은 영업불가)
	운 동 시 설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롤러스케이트장, 탁구장, 볼링장, 썰매장,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등
	교 양 시 설	영농체험학습관, 농업전시관 등
	기타시설 및 녹지	자연조경지, 조경시설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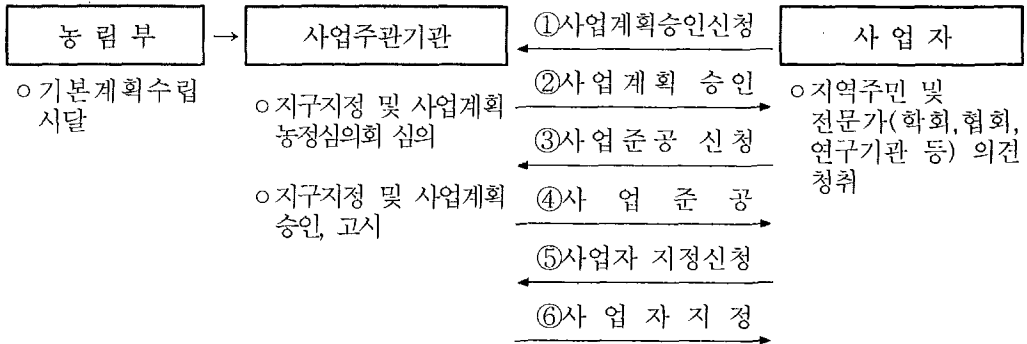
- 주) 1. 숙박시설중 민박은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민박개념임. 숙박시설은 관광농원의 취지에 맞게 취사시설을 갖추어 내방객이 직접 취사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러브호텔의 형태로 설치되지 않도록 함.
2. 편의시설중 예식장, 건전오락시설 및 목욕탕시설은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

[표 2] 사업별 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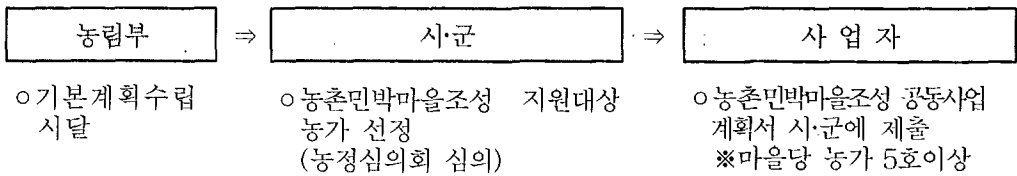
1. 관광농원개발사업



2. 휴양단지개발사업



3. 농촌민박마을조성사업



[별지 제1호 서식]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승인신청서			
사업자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구(농원)명			
소 재 지			
조 성 면 적		㎡(작목입식 농업부대시설 편의시설 기반시설 기타)	
사 업 비		백만원(읍자 지방비 자부담 기타)	
<p>농어촌정비법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사업자(대표자) (서명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시장·군수 귀하</p>			
<p>첨부서류 : 1. 관광농원 시설물 등의 조성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p> <p>2. 관광농원 관리·운영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p> <p>3.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p> <p>4. 시설물 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p> <p>5. 관광농원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등 교통여건</p> <p>6. 농지관리위원 3인(위원장 포함) 및 현지주민 5인이상 추천서 (별지 제4호 서식)</p> <p>7. 각서 (별지 제5호 서식)</p> <p>※ 지원신청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한 서류는 생략가능하나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함</p>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서

〈신규지구〉

(단위 : m², 백만원)

지구명	소재지	지구정지면적 (ha)	사업자 (대표자)	참여농가수	사업내용		총계획				2001계획				2001분기별 예산소요액				주변관광지	개발유형	비고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계	1/4	2/4				3/4	4/4	
					분야	세부사업명		합계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융자	지방비									자부담
0000 관광농원	00도 00군 00면 00리				합계																			
					작목 입식	합계																		
						유실수																		
						가축(축사)	마리																	
					농업부 대시설	특용작물																		
						농업창고																		
					편의 시설	직판장																		
						식당																		
						숙박시설																		
						테니스장																		
기 반 시 설	휴게소																							
	주차장																							
					상수도	식																		

※ 비고란에는 자부담개발사업여부 및 특이사항 기재

[별지 제2-2호 서식]

<기지정지구>

(단위 : m², 백만원)

지구명	소재지	지구지정면적	사업자(대표자)	참여농가수	사업내용 분야	총계획				2000까지실적				2001계획				2001분기별 용지소요액				주변관광지	개발유형	비고				
						사업명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계	1/4	2/4				3/4	4/4		
								합계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융자
00 관 광 농 원	00 도 00 군 00 면 00 리	ha			합계																							
					작 목 입 식	합계																						
						유실수																						
						가축(축사)	마리																					
						특용작물																						
					농 업 부 대 시 설	농업창고																						
						직판장																						
편 의 시 설	식당																											
	숙박시설																											
	테니스장																											
	휴게소																											
	주차장																											
	기 반 시 설	상수도	식																									

* 비고란에는 지구지정년월일 및 특이사항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관광농원관리운영계획서

1. 농원관리 운영계획 요약
2. 작목별·시설별 이용계획
3. 농수산물, 민예품, 전통음식, 토산품등 지역특산품 연계 판매계획
4.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계획
5. 참여농가가 있는 경우 참여농가 참여계획서
6. 구체적 운영계획

시기별	운영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및 운영내용	비 고

※ 운영프로그램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구분, 대표적인 프로그램 기준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도록 한다.

예시) 2/4분기 : 피서지 개장 - 농원내 설치된 원두막 등을 내방객에게 제공, 과일등 농원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직판

뉘시대회 개최 - 농원내 양어장에서 뉘시대회를 유치, 내방객 유치 확대

어린이 자연학습행사개최 - 유치원생 등을 유치, 농원내의 농장을 활용한 농사체험행사 개최

3/4분기 : 과수따기행사 - 과수원을 개방, 과실을 직접 수확할 수 있도록 함.

자매결연단체 유치 - 농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 유치, 농원특산품 등 판매행사 개최

버섯큰잔치 -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농원내 또는 인근마을에서 생산되는 버섯판매 또는 버섯요리를 판매

4/4분기 : 김장독 유치행사 - 도시민들이 농원에서 김장을 하여 보관해 주는 행사

[별지 제5호 서식]

각 서

○지 구 명 :

○소 재 지 :

○규 모 : m²(ha)

○사업참여대표자 : 외 명

○주요시설 설치계획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관광농원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대로 성실하게 추진하여 농촌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개발촉진과 도시민들의 산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원받은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 설치시설물의 타용도로의 사용,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입식작목의 미경작 등으로 인한 부실지구로 판명되어 지구지정이 취소될 때에는 융자금 전액 일시 상환은 물론, 관광농원과 관련된 인·허가의 취소, 전용농지 원상복구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0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사 업 참 여 자	주소	성명	인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 서식]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자 신용검토의견서

관광농원 대출현황 (20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대 출 누 계 액	
기 상 환 액	
대 출 잔 액(A)	
금차대출신청액(B)	
A + B	

대출제도초과여부

기대출금연체여부등

차 주 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대출신청금액			
	신용조사일자			
신 용 조 사 결 과	자기자금조달능력	(충분·적정·부족)	(충분·적정·부족)	(충분·적정·부족)
	담 보 제 공 능 력	(충분·적정·부족) ○ 담보부족금액 : ※ 담보부족시 신용보증부 대출 가능여부	(충분·적정·부족) ○ 담보부족금액 : ※ 담보부족시 신용보증부 대출 가능여부	(충분·적정·부족) ○ 담보부족금액 : ※ 담보부족시 신용보증부 대출 가능여부
	신 용 상 태	(충분·적정·부족)	(충분·적정·부족)	(충분·적정·부족)
	※ 종합의견	○ 대출가능 () ○ 대출불가능 () ※ 대출불가능사유	○ 대출가능 () ○ 대출불가능 () ※ 대출불가능사유	○ 대출가능 () ○ 대출불가능 () ※ 대출불가능사유

○ 종합의견

확인자 ○○단위농업협동조합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지구지정의견서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입지여건(도로, 교통, 환경등) 및 지역개발계획과의 관계
3. 농업여건 구비실태(지구내 연접지역)
4. 참여농가의 실질소득 연계 및 소득효과 여부
5. 지역특산품(희귀작물, 토산물, 민예품 등) 생산판매 연계여부
6.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법 등 타법령에 제한여부
7. 기타의견

20

○○시장·군수

인

승인번호 제 호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승인서

- 위 치 :
- 지 구 (농 원) 명 :
- 규 모 : m²(ha)
- 사 업 기 간 :
- 사 업 비 :
- 사업자(대표자)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농어촌정비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조건을 부하여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 다 음 -

- 지구지정후 용자금의 목적외사용, 설치시설물의 타용도로의 사용,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기타 관광농원개발사업 본래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구지정취소는 물론 관광농원을 목적으로 특한 관련 인·허가의 취소와 동시 원상 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 . . .

시장·군수

인

[별지 제9-1호 서식]

관광농원개발사업준공검사신청서

지구명 (지정번호)			위치			TEL	
대표자	한글			규모	평(m ²)		
	한문						
사업기간	.부터 .까지		완료일자				
신청인	주소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p>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관광농업개발지구내에 작목입식등 관련시설물을 별첨과 같이 설치 완료하였기 준공검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_____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 귀하</p>							

[별지 제9-2호 서식]

사업별 추진실적

○ 지구소재지 :

○ 대 표 자 :

구 분	계획물량	추진실적	증감	비고(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예시”				
○ 작목입식				
- 과수	1,000평	1,100평	100평	- 사과 300평, 배 100평, 감나무 100평, 밤 500평 - 자두 100평
- 축산	500평	500평	-	- 사슴 10두, 토종닭 50수, 흑염소 10두
○ 농업부대시설			-	
- 축사	100평/1동	100평/1동		
- 비닐하우스	200평/2동	200평/2동		- 고정식(철재) 100평/1동, 일반(죽제) 100평/1동
○ 편의시설				
- 식당및휴게소	50평/1동	40평/1동	△10평	- 주방5평, 식당25평, 휴게소10평

[별지 제11-1호 서식]

휴양단지개발사업계획서

<신규지구>

(단위 : m², 백만원)

단지명	소재지	지구면적 (ha)	사업자 (대표자)	참여농가수	사업내용		총계획				2000계획				2000분기별 투자소요액				주변관광지	개발유형	비고				
					분야	세부사업명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계	1/4	2/4				3/4	4/4		
								합계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융자	지방비									자부담	
00 휴양 단지	00도 00군 00면 00리				합계																				
					기	도																			
					반	하수정화																			
					시	시설																			
					설	전가통신																			
편의 시설	농수산 부대 시설	농업전시관																							
		직판장																							
		농산물 집하장																							
기 반 시 설	편의 시설	식당시설																							
		숙박시설																							
		휴게소																							
		주차장																							
			기	상수도	식																				

※ 비고란에는 지구지정년월일 및 특이사항 기재(자부담개발여부등)

[별지 제11-2호 서식]

<기지정지구>

(단위 : m², 백만원)

지구명	소재지	지구지정면적	사업자(대표자)	참여농가수	사업내용		총계획				'99까지실적				2000계획				2000분기별 용자소요액				주변관광지	개발유형	비고						
					분야	세부사업명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계	1/4	2/4				3/4	4/4				
								합계	용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용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용자									지방비	자부담		
000000000000리	00도	00000000리	ha		합계																										
					작목 입식	합계																									
						유실수																									
						가축(축사) 특용작물	마리 m ²																								
					농업부 대시설	농업창고																									
						직판장																									
					편의 시설	식당 숙박시설 테니스장 휴게소 주차장																									
기반 시설	상수도 식																														

* 비교란에는 지구지정년월일 및 특이사항 기재

[별지 제12호 서식]

농촌민박사업신청서

가. 신청인 주소

나. 성 명

다. 주민등록번호

라. 가옥소재지

마. 사업내용 및 자금소요

민박가능방수	사업내용	소요자금			산출근거
		계	용자	자부담	
○실	화장실보수				
	주방개량				
	방보수				
	계				

바. 경지면적 및 소득효과

경지면적 (㎡)					소득효과추정(년간)		
계	전	답	과수원	기타	농업소득	농외소득	계
					천원	천원	
						()	

※농외소득란의 ()는 민박으로 인한 소득액을 표시

위와 같이 농촌민박마을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_____ (인)

[별지 제13호 서식]

농촌민박마을조성계획서

민박마을소재지		참여농가수	호					
참여농가 주소·성명 (전화번호)	()	()	()					
	()	()	()					
	()	()	()					
	()	()	()					
	()	()	()					
사업규모	민박방수	실	수용인원	명	사업금액	천원	융자신청	천원

위와 같이 농촌민박마을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

○○읍·면장 _____ (인)

붙임 : 농촌민박마을조성사업계획서 1부.

시장(군수) _____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농촌민박마을조성사업계획서

(단위 : 천원)

마을명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참여농가명	민박마을		수용가능인원	년간정용수 년추이용객	세부사업 내용	자금조달계획							근광 원자			
			실	평				사업비			분기별용자금소요							
								계	음자	자부담	계	1/4	2/4	3/4		4/4		
					명	명												
계	호																	

- ※ 1. 민박규모는 농가별로 민박 제공가능한 방수와 총평수, 수용가능인원은 1회 수용가능인원기재
- 2. 세부사업내용은 개보수(방수리, 화장실, 샤워장등), 증·개축으로 구분 기재
- 3. 용자신청액은 소요자금의 70% 이내로 한다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추진실적

1. 관광농원개발사업추진현황

작성자 : 소속 직 성명 (인)

지구(농원)명		지구지정일 (개발사업기간)	○○년○○월○○일 (~)	지구지정 면적	ha (평)
소재지		사업자(대표자)			
참여농가수 (중사자수)	○○호 (○○명)	사업추진현황	준공(), 일부준공(), 사업추진중(), 사업중단()		
총사업비 (백만원)	계	지방비보조	국고용자	자부담	기타
면 간 이용자수	명	기능에의한 유 형			
사업내용					
구 분	세부사업명	단 위	사 업 량		운영현황
			계 획	실 적	
농장조성 (작목입식)	과 수 가 축(축사) 특용작물 양 어 장	주/평 두/평 평 평			
농업부대시설	참 고 집 하 장 지 직 관 고 판 장				
편의시설	숙 박 관 - 농 원 여 관 - 민 박 등 - 방 갈 로 등 식 휴 게 당 휴 낚 시 소 운 동 시 터 화 장 실	방수/평/동 평/동 평 평			
용 자 금 현 황 (백만원)					
용 자		상 환		용자금상환잔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지도·점검 및 평가결과	일자 ○○.○○.○○	지적 및 지도사항, 운영상 문제점 등			조치결과
부진사유					
향후대책					

- ※ 주 : 1.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을 경우 변경사업계획 기준이며, 총사업비는 관광농원개발계획상 총사업비임
2. 작성자는 시·군에서 서명 또는 날인
3. 사업단위는 주/평, 두/평 ...으로 구분하여 표기
4. 숙박시설은 농원여관, 여인숙, 여관, 민박 등의 유형별로 구분표기(단위는 방수/건평)
5. 부진사유 및 대책은 부진농원에 한해서 작성하되 상세하게 작성토록 할 것

[별지 제15-2호 서식]

2. 관광농원개발실태

《농원수》

(단위 : 설치농원수)

시도	관광농원수	숙박시설						음식점시설				농산물판매장	교양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농부사업대설	화설(오수리)정시(폐처리)
		숙박시설농원수	농원여관	여관	여인숙	민박	방갈로등	음점설치원	식점설치원	일음점	반식점						
(예시) 00도	20	15	1	10	5	1	5	10	10	-	20	19	10	20	20	10	
				(1 ¹)				(9 ²)									

※ ¹ : 건평이 100평이상인 여관을 설치한 농원수,

² : 토속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설치한 농원수

《농원시설규모》

시·군	농원명	지구지정면적(A)	작목입식						숙박시설(건평)					음식점시설			농산물전시판매장(건평)	교양시설(개소)	운동시설(개소)	편의시설(개소)	농부사업대시설(개소)	정화시설(개소)			
			계(B)	B/A(%)	작물, 임산물	양어장	사육장, 초지 등	하우스, 분재원	...	계(C)	C/B(%)	농원여관	여관	여인숙	민박	방갈로 등							계(D)	D/B(%)	일반음식점
(예시) 00	00	10000	5000	50	4000	500	200	300	100	2	1동/100(10실)					50	1	1동/50(50이)		30	2	3	3	2	1

※ ¹ : 토속음식판매여부(○, ×), ² : 수용가능인원

[별지 제15-2호 서식] 관광농원개발실태는 광역시·도에서 취합하여 작성보고

[별지 제15-3호 서식]

3. 휴양단지개발사업추진현황

작성자 : 소속 직 성명 (인)

단 지 명		지구지정일 (개발사업기간)	○○년○○월○○일 (~)		지구지정 면적	ha (평)
소 재 지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백만원)	계	지방비보조	국고용자	자부담	기타	
사업추진현황	개발·분양방법			추진현황		
	기반조성후 부지분양, 부지와 시설물분양, 시설물분양					
사업내용						운영현황
구 분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추진실적		분양실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기반시설						
농업부대시설						
편의시설						
보상비및 용역비						
용자금현황						
지방비보조		용 자		상 환		용자금 상환잔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운영관리상의 문제점						
부진사유						
향후대책						

- ※ 주 : 1.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을 경우 변경사업계획 기준
 2. 작성자는 시·군담당자
 3.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세부내역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4. 사업단위는 관광농원개발사업 추진현황과 동일
 5. 「추진현황」은 기반조성진도(%), 분양율(%), 준공·일부준공여부, 사업중단여부 및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운영현황」은 분양후 운영여부, 운영자(업체)수 등을 기재
 7.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추진일정, 분양계획 및 분양현황을 첨부할 것

[별지 제15-4호 서식]

4.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소득효과(관광농원, 휴양단지, 농촌민박마을)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재지	단지명(농원마을명)	지구지정면적	지정년도	사업시행자(대표자)	참여호수	종사자수(방수)	년간내방객수	자금투자내역				수입 (농업소득+농업외소득)					비용 (B)	순소득 (A-B)
									계	융자	자부담	기타	농산물판매	특산물판매	음식물판매	숙박	기타		
00																			
계																			

※ I. 관광농원개발사업

1. 수입·비용은 1년간의 농원운영과 관련된 사항만을 기재
2. 자금투자내역은 작목입식, 농업부대시설, 편의시설, 기반시설의 투자액 누계를 기재
3. 개원(일부 준공농원포함)된 농원과 미개원(사업추진중인 농원포함) 농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II. 휴양단지개발사업

1. 자금투자내역은 투자액 누계를 기재
2. 참여자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자 또는 업체수
3. 총종사자수는 휴양단지내에서 취업·종사하고 있는 인원수
4. 개장(일부개장포함)된 휴양단지와 미개장된 휴양단지로 구분하여 작성

III. 농촌민박마을조성사업

1. 지구지정면적은 기재하지 말고, 종사자수(방수)란에는 방수만을 기재.

[별지 제15-5호 서식]

5. 지정취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재지	단지명 (농원명)	지정년도	사업시행자 (대표자)	참여 농가 수	자금투자내역				취소 일자	취 소 사 유	비 고
						계	응 자	자 부 담	기 타			
00도												
계												

※ 관광농원, 휴양단지, 농촌민박마을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별지 제15-6호 서식]

6. 관광농원개발사업 지도·점검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 재 지	농 원 명	지정 년도	지적 일자	지 적 사 항	조치결과(시정내역)		비 고
						완 료	미 완 료	
00도								

※ 광역시·도에서 취합하여 농원별로 작성보고, 미완료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추진일정을 기재

[별지 제17호 서식]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 연도말 검정서

(단위 :천원)

시·군	지구명	구분	총사업비			'98까지			'99예산액			'99검정액			미집행액			미집행사유		
			계	응자자	기부담타	계	응자자	기부담타	계	응자자	기부담타	계	응자자	기부담타	계	응자자	기부담타			

※ 구분란에는 계속, 신규기재

52	농공단지육성사업(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정비과(과장 이승찬, 시설서기관 남궁박)입니다

1. 목 적

농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 공장유치를 촉진하여 농외취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기존 입주업체 및 신규지정 활성화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각종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
- 2004년까지 312개소(14백만평) 조성

3. 근거법령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3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 - '98	'99	2000	2001 (예산안)
사업량(개소)		54	1(4)	(1)	4
사 업 비	계	389,620	13,185	1,791	4,349
	국 비 보조	94,241	5,297	1,108	2,886
	국 비 용자	91,405	2,216	462	1,058
	지방비보조	14,726	518	221	405
	지방비용자	189,248	5,154	-	-

※ ()외서는 계속지구

5. 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1) 사업내용 : 부지조성비(용지취득비, 단지조성비, 부대시설 등) 지원
- (2) 지원대상 : 공영개발 농공단지
- (3) 지정대상지역

○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아래의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촌”지역의 시·읍 및 시·읍과 연결한 면지역으로 함(다만, 그외의 면지역도 도지사가 인력수급 및 기반시설 등이 양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정가능)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

시도	일반농어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강원	원주시(1)	강릉시, 춘천시, 삼척시, 황성군(4)	속초시, 태백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12)
충북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청원군(4)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6)	-
충남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연기군(5)	논산시, 공주시, 보령시, 예산군,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8)	태안군, 청양군(2)
전북	군산시, 익산시(2)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4)	부안군, 고창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7)
전남	광양시(1)	순천시, 나주시, 무안군, 영암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여천군, 완도군 (9)	영광군, 함평군, 화순군, 장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고흥군, 구례군, 진도군, 신안군(11)
경북	경산시, 경주시, 포항시 구미시, 칠곡군(5)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고령군(8)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봉화군, 울진군,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청도군, 울릉군(10)
경남	김해시, 거제시, 창원시, 마산시, 울산시, 함안군, 양산시(7)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밀양시, 창녕군, 하동군, 고성군, 합천군(8)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5)
제주	-	북제주군(1)	남제주군(1)
합계	25 (18시, 7군)	48 (22시, 26군)	48 (2시, 46군)

※도농복합형 통합시중 당초 농공단지 지정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시지역(춘천, 원주, 강릉, 충주, 제천, 천안, 군산, 익산, 순천, 광양, 안동, 포항, 경주, 경산, 구미, 진주, 울산, 창원, 마산, 거제, 김해)은 계속 제외함

※2000년까지는 일반농어촌중 충주시(중원군), 서산시, 아산시, 군산시(옥구군), 익산시(익산군), 광양시(광양군), 포항시(영일군), 구미시(선산군), 창원·마산시(창원군)은 추가지원농어촌으로, 추가지원농어촌중 춘천시(춘천군), 삼척시, 보령시, 남원시, 김제시, 안동시(안동군), 상주시, 문경시, 영주시, 진주시(진양군)은 우선지원농어촌으로 봄

※2개의 농공단지 지정대상지역이 통합된 시(17) : 삼척, 공주, 보령, 서산, 아산, 남원, 정읍, 김제, 나주, 영천, 김천, 상주, 문경, 영주, 밀양, 통영, 사천시

(4) 지정제외지역

- 경기도, 광역시, 광역시와 인접된 읍·면
- 동광양시, 장승포시 등 이미 공업화 되어 있는 시

(5) 시·군별 개발연면적 한도 및 단지당 규모

- 시·군별 개발연면적 한도 : 지정면적기준 1,000천㎡이내(2개의 농공단지 지정대상지역이 통합된 시는 1,500천㎡이내)
- 실수요자 부담으로 조성하는 경우 330천㎡이내에서 추가지정 가능
- 단지당 지정면적 : 65~330천㎡이내

(6) 지정 및 분양

- 지정개발주체 : 시장, 군수(도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정제한 : 시·군별로 기지정 농공단지의 미분양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미분양면적 및 분양대상면적 산정시 지정후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분양공고를 하지않은 농공단지면적과 입주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3년이내에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의 당해 공장용지 면적을 포함한다. 이때 분양대상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지는 총지정면적을 미분양면적 및 분양대상면적으로 본다)나, 휴·폐업업체가 입주업체수의 3분의1이상인 경우
 - 단,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5조 제2항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지정 가능
- 분 양 : 부지조성 공정이 30%이상일 때

나. 2001사업비(예산안)내용

사업량 (개소)	사 업 비(백만원)				
	계	예 산 액			지방비 보 조
		소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4	4,349	3,944	2,886	1,058	405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업자원부장관 : 농공단지 시책의 총괄, 농공단지의 관리
 - 농 립 부 장 관 : 농촌의 지역별구분, 농공단지의 조성지원
 - 건설교통부장관 : 농공단지의 지정 및 입지기준
 - 환 경 부 장 관 : 농공단지의 환경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그 관리
 - 중소기업청장 :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지원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을 참고

나 사업담당부서

○ 중 앙

- 농 립 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02-500-2664, 5)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입지환경과(02-500-2451~2)
- 건설교통부 토 지 국 입지계획과(02-500-4105~6)
- 환 경 부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02-500-4292~4)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국 벤처정책과(042-481-4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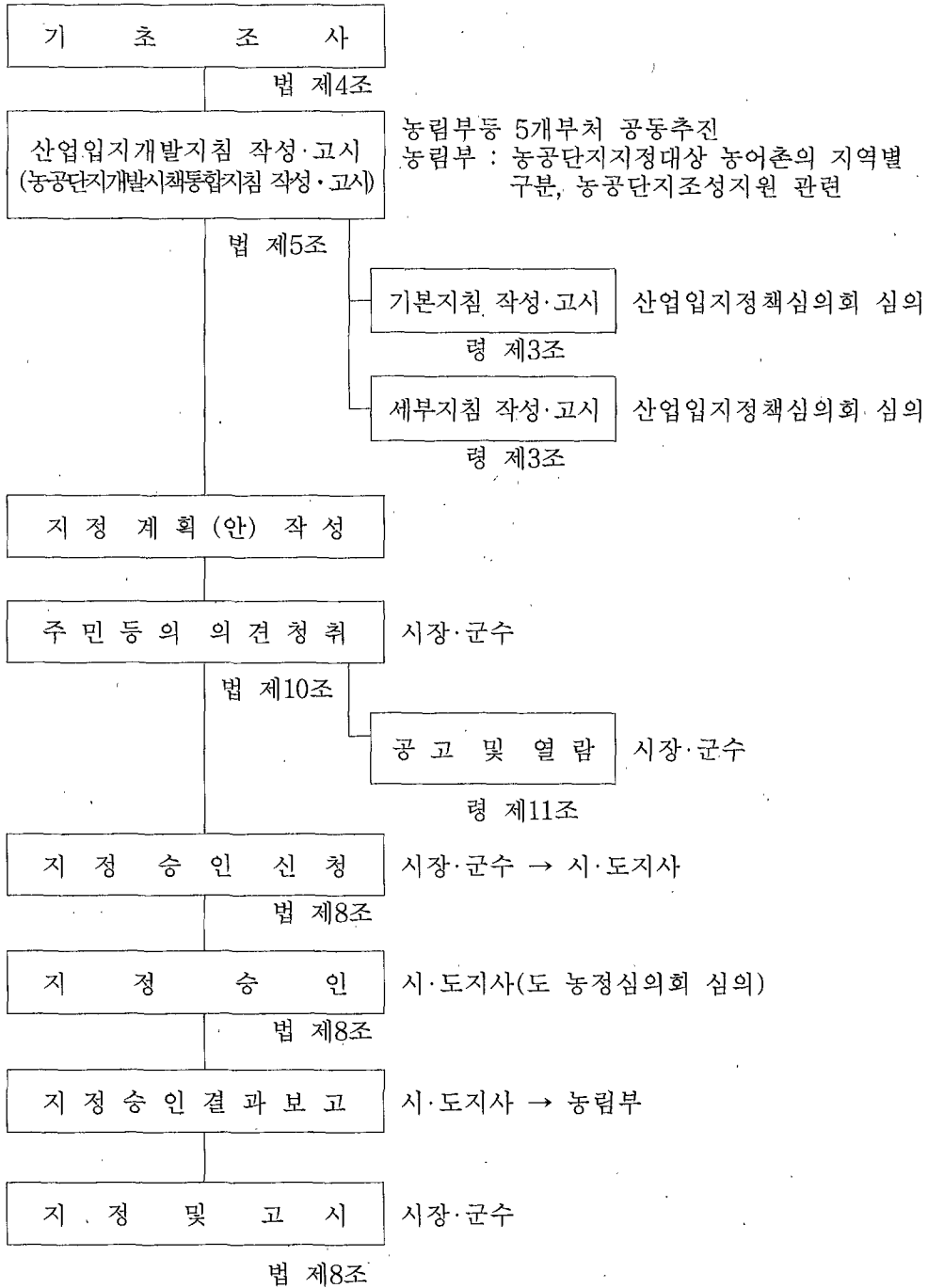
○ 시·도 : 경제통상(진흥)국 중소기업지원(공업(지원,기술), 기업지원, 투자통상
산업자원, 지역경제)과

○ 시·군 : 지역경제(공단조성)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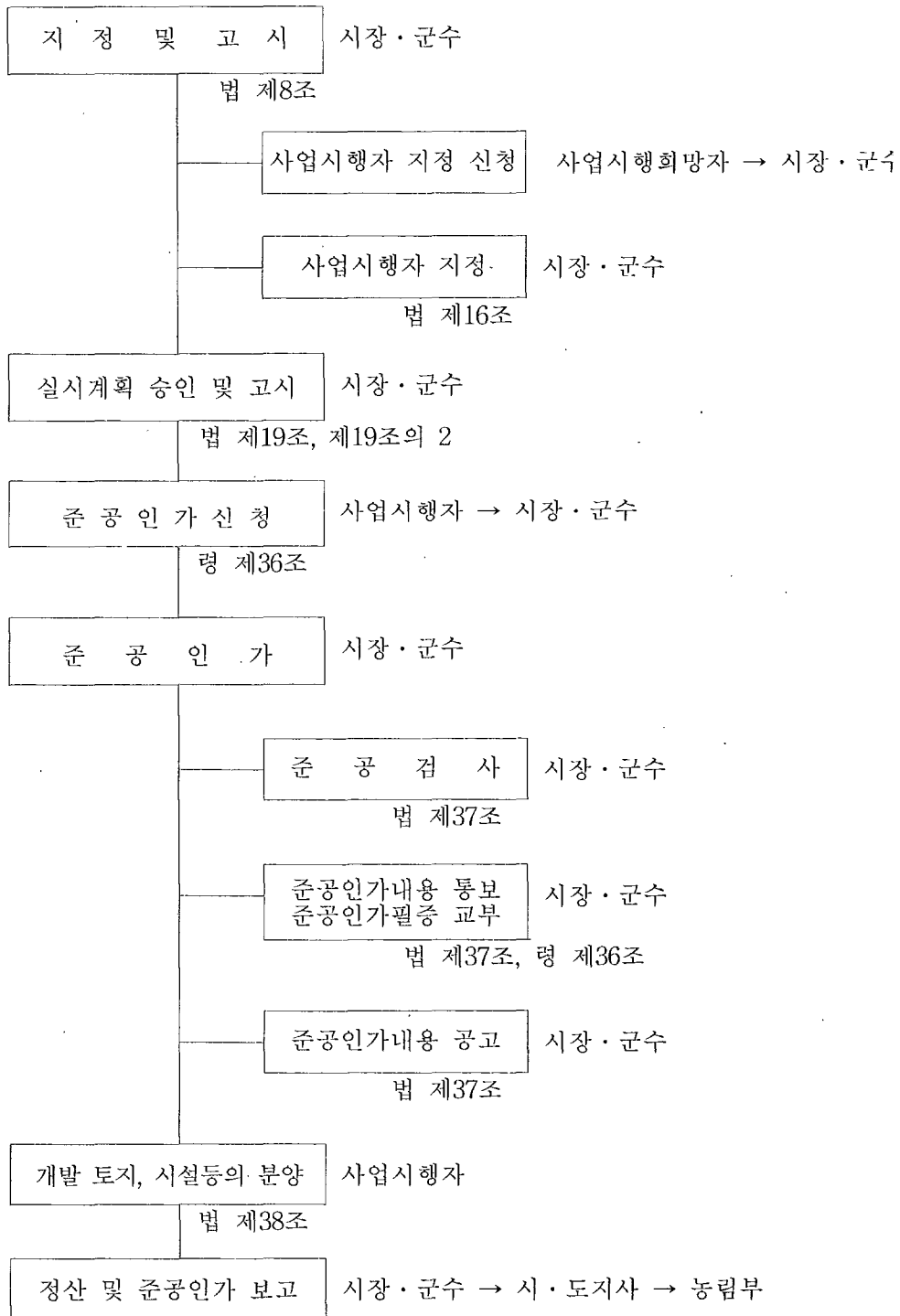
라. 사업추진절차

< 지정절차 >



※ 법 또는 령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

< 개발절차 >



마. 사업계획수립

(1) 사업대상지구 선정

(가) 사업대상지구 검토

- 시장·군수는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입지제외기준'과 지형적·지역적 여건 등 사업시행의 효율화를 위한 검토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공단지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

(나) 농공단지 입지제외 기준

-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 및 수산자원보전지구(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
-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및 완충지역
- 산림법상 임업진흥촉진지역, 채종림, 보안림, 천연보호림, 요존국유림과 산림훼손제한 지역
- 농업진흥지역(초지·임야의 편입비율은 100%까지 허용, 단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중 논은 60%까지 허용)
- 조류 및 희귀동식물의 서식처
- 관계 학술기관의 지표조사결과 매장문화재 분포가 확인된 지역
-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측 20km이내 지역
- 일반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측 10km이내 지역(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상류측 15km이내와 하류측 1km이내 지역)
- 저수지 등 농업용수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측 5km이내 지역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km이내)
- 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부터 1km이내지역(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반경 1km이내지역)
- 하류측으로부터 조수의 영향 등이 우려되는 지역

(다) 입지선정 대상지역

- 단지내의 고저차가 20m이하이고 평균 2m이하의 성토로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경사도가 10%이하이고 경암반이 많지 않은 지역
- 진입도로의 연장이 단지면적 33천제곱미터당 100m이내인 지역
- 100m이상 교량건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지역
- 동력고압선으로부터 200m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
- 단지의 오·폐수관로 연장이 1km이내인 지역
- 단지중심 2km이내에서 취토장 및 사토장 확보가 가능한 지역
- 단지의 지정면적 대비 분양가능면적이 70%이상 확보 가능한 지역
- 농공단지 배수로가 농업용 관개·배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또는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지역일 것
- 지상보상물 및 시설이전 등을 포함하여 평당보상액이 도지사가 지역별, 시·군별로 정하는 적정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
- 지하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거나 지상에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전보상이 필요없는 지역일 것
- 동일생활권 안에 농공단지외의 다른 산업단지(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업 지역 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있는 지역을 포함)가 없는 지역일 것. 다만, 인근 다른 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동일생활권 여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제반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국토건설종합계획, 도·군농업·농촌발전계획, 농촌정주생활권개발계획 등 중장기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일 것
- 농공단지 선정시에는 지역적특성을 살려 업종별,형태별, 입지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입주예정업체가 선호하는 적정지역일것.

(2) 예정지조사

- 시·도지사는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의 입지선정을 위한 현지 합동실사반에 농업기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문기술자를 참여시켜 입지의 적정성 및 개발의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게 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지선정기준에 의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농정심의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음

(3) 세부설계실시 및 실시계획수립

-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의 공간배분, 업종별 배치, 경관보전, 지원시설의 설치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 하여야 함.

바. 사업시행

(1)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농공단지 지정 및 고시후에 시장·군수는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9조에 의한 사업시행희망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2) 공정계획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별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진척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공사지연시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

(3) 실시계획변경

- 현지여건상 부득이하게 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는 시장·군수의 승인하에 계획변경

(4) 용지매수 및 보상

- 사업추진시 편입되는 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 수용
- 용지보상비 등은 공사비에 우선하여 지급

(5)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 보조금이 지원되는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조사설계는 농업기반공사가 담당하고 시공감리는 시장·군수가 지명하는 토목직공무원 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담당. 다만, 조성비 일체를 입주기업체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체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공사 설계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공동이용건축물의 건축설계는 건축사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담당
- 공동이용건축물의 시공감리는 시장·군수가 지명하는 건축직공무원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담당

(6) 사업준공

- 사업시행자는 농공단지의 조성 및 공동이용시설공사 등 농공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 신청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인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비정산 완료후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인가필증을 교부
-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준공인가 내용을 공고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사.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안)

<일반농공단지 지원기준>

(단위 : 천원/평)

구 분	일 반 농 어 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국비보조	15(-)	50(30)	70(50)
국비용자	10(-)	20(20)	20(20)
지방비보조	5(-)	10(10)	10(10)
합 계	30(-)	80(60)	100(80)

- ※1) 잔여사업비는 지방비용자(기채)로 충당
- 2) ()내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임
- 3) 예산지원 : 지원금(보조,용자)은 사업규모와 진도에 따라 2~3년간 분할지원
- 4) 용자조건 : 년리 5.0%,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광산촌농공단지 및 농촌부존자원활용농공단지>

(단위 : 천원/평)

합 계	국비보조	국비용자	지방비보조
85	50	30	5

- ※1) 광산촌농공단지 국비보조는 산업자원부에서 지원
- 2) 농촌부존자원활용농공단지는 부존자원을 원자재로 사용하거나 동부존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농업용기계제조업체가 2/3이상 입주하는 농공단지
- 3) 잔여사업비 및 국비용자금 상환조건등은 일반농공단지와 같음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전자금 용자지원(중소기업청)>

구 분	금 융 한 도	대출금리	상 환 조 건
시설자금	7억원이내 (소요자금의 70%까지, 단, 설비자금은 소요의 100%까지)	년 6.5% (변동가능)	10년이내 (거치기간 5년포함)
운전자금	3억원이내 (소요자금의 70%까지)	년 6.5% (변동가능)	4년이내 (거치기간 2년포함)
계	10억원이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환경부)>

(단위 : %)

일 반 농 어 촌			추 가 지 원 농 어 촌			우 선 지 원 농 어 촌		
합 계	보 조	용 자	합 계	보 조	용 자	합 계	보 조	용 자
100	30	70	100	50	50	100	70	30

- ※ 1)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에 한하여 지원
- 2) 용자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채 등으로 충당
- 3) 용자조건은 연 5.5%로써 3년거치 10년균분상환임.

(2) 자금의 운용관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조성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농공단지조성사업에 관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의 조성사업비 소요예산을 매분기별로 시·도지사에게 요구하고, 시·도지사는 매분기 20일전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방비용자금에 대한 기채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만, 기확보 내시된 국비소요예산에 대하여는 기채할 수 없음
- 시·도지사는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배정된 예산을 단지별로 재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재조정된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조금지원에 따른 지방비부담액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과 정산을 실시하고,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정산보고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공장용지 분양 : 시장·군수
- 공단 및 업체관리 : 시장·군수
- 환경관리 : 시장·군수

나. 보 고

- 시·도지사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근거 :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4개부 처공동고시)
 - 농공단지 지정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 농공단지 지정보고
 -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농공단지 추진현황보고(별지 3호서식)
- 시·도지사는 농공단지 지정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 오·폐수처리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농공단지 조성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별지 4호서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사업성 검토결과 및 자금지원 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
- 농업기반공사는 매분기말 익월15일까지 조성사업 진도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6. 2002년도 사업신청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나. 신청자격

- 공영개발인 경우

- 시장·군수

-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

- 민간개발인 경우

- 산업입지법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 다만, 대기업이 사업시행자이거나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수급기업을 포함)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이 직접사용하고자 하는 단지의 개발에 한함

-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이 정한 바에 따름.

다. 구비서류

- 농공단지 지정신청서

- 위치도

-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에 관한 서류

- 농공단지 인접지역의 공장분포, 취업 가능인력등 현황

- 농공단지의 개발에 따른 농어가의 고용과 소득증대 및 토지에 관한 서류

- 농어촌 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서(입지여건,입주예정업체 수요조사등)

※ 농림부에 예산신청시 농공단지지정신청서를 제외한 상기서류 제출

[별지 1호서식]

농공단지 예산 및 자금(국비) 요구내역

(단위 : 천원)

농공 단지명	지정 승인일	실시 계획 승인일	부지 조성			예산재배정액 (당해년도)	
			착공일	공정 (%)	준공 예정일	보조	용자
계							

예산 및 자금배정요구액								비고
전년도까지 배정액		(당해) 년 도						
		기배정액		금회요구액		소 계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별지 2호서식]

총공통-9

농공단지조성사업비 정산내역

가. 총괄

(단위 : 천원)

농공단지명			예산현액				집행액							
							합계				실집행액			
농공 단지명	지정 년월	면적 (평)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이월액					잔액 (불용액)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나. 국고보조금 불용액 조서

(단위 천원)

단지명	불용액	불용사유
		※ 불용사유를 구체적으로 6하원칙에 의거 작성

[별지 3호서식]

보조금제27조

농공단지 추진현황보고

□ **연간계획**

사업지구	사업기간	착수년도	완공년도	2001 사업비 (백만원)					
				합계	국비			지방보조	자담
					소계	보조	융자		
합계									
고창○○									
순창○○									
부안○○									

□ **0/0분기까지 계획 및 실적**

○ 사업추진실적

사업지구	0/0분기까지계획(A)	0/0분기까지 실적(B)	진도(B/A)
고창○○ (신규)	공사발주(100%) 정지토공(30%)	공사발주(80%) 정지토공(20%)	80
순창○○ (계속)	공동건축물(100%) 단지내 구조물(70%)	공동건축물(100%) 단지내 구조물(70%)	100
부안○○ (신규)	관계기관협의(100%) 농공단지승인(100%)	관계기관협의(50%) 농공단지승인(0%)	40%

○ 사업비 집행실적(국비)

사업지구	0/0분기까지 계획(백만원)			0/0분기까지 실적(백만원)		
	합계	보조	융자	합계	보조	융자
합계						
고창○○						
순창○○						
부안○○						

※ 사업비(국비) 집행실적은 집행기관(시·군)집행실적 기준

□ **추진실적**

○ 0/0분기동안 추진실적(건설공정 및 과정)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별지 4호서식]

자체 가26-49

농공단지 준공결과보고

○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단지명	농어촌 구 분	지정면 적(평)	지정 년월	사 업 비				조성 면적 (평)	비 고	
				계	국 비		지 방 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 준공현황

단지명	공사기간		시공회사	감 리 자 (감독공무원)	준공 검사자	하자보수 기간맞기한	비 고
	착공일	준공일					

53	한계농지정비사업(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정비과(과장 이승찬, 시설서기관 남궁박)입니다

1. 목 적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여건과 개발수요에 알맞게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정비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정비로 지역개발과 자연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
- 개발혜택이 최대한 지역주민에게 환원되도록 추진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76조 내지 제8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96~'98	'99	2000	2001(예산안)
사 업 량	5	5(1)	4(3)	1	1
사업비(융자)	16,328	10,366	2,762	350	2,850

※ 총 사업량은 5지구임. ()내서는 준공지구.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경 :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에 따라 '96부터 시행
- 지원대상자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농협·산협 및 그 중앙회
- 지원단가 : 지구당 40억원 수준 용자(농지관리기금)
- 용자조건 : 연리 3.0%, 2년거치 2년균분상환
- 정비유형
 - 농림수산업적 이용 : 과수, 원예, 특작, 축산단지, 양어장 등
 - 농어촌휴양자원이용 : 관광농원, 휴양단지, 주말농원 등
 - 다목적이용 : 농어촌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문화·체육시설 등

나. 2001사업비(예산안)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예산액			지방비
			소계	국고	용자	
계	계속1지구	2,850	2,850	-	2,850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 (전화 : 02-504-9404, 5)
- 시·도 : 농정국 농산지원과
- 시·군 :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농협·산협 및 중앙회

라. 사업추진절차

정비지구 지정고시	
○ 기본 방침 수립 :	농림부장관 ----- 법 제76조
○ 예정지 조사 :	국가, 지자체, 농업기반공사 ----- 법 제78조
○ 지구지정승인요청 :	도지사 ----- 법 제79조 제2항
○ 지구지정승인 :	농림부장관 ----- 법 제79조 제3항
○ 지구지정 및 고시 :	도지사 ----- 법 제79조 제2항



사업계획수립	
○ 정비 유형 :	농림수산업적이용, 농어촌휴양자원이용, 다목적이용 ----- 법 제77조
○ 사업계획수립 :	사업시행자 ----- 법 제81조 제1항
○ 사업계획 승인고시 :	승인권자 ----- 법 제82조 - 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사업시행 및 분양	
○ 사업시행 :	사업시행자 ----- 법 제81조 제1항
○ 사업준공검사 :	승인권자 ----- 법 제94조
○ 토지 및 시설분양 :	농림어업인 및 관련단체, 실수요자에게 분양 ----- 법 제83조

《사업계획수립》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한계농지의 기준>

-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 밖의 농지로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농림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농지를 제외
- 광업권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지정요건>

- 한계농지의 기준에 부합되는 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지구별 최대면적은 10만제곱미터이하로 하되,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 지나친 소규모 지정은 억제
 - 농림수산업적이용의 경우 농지의 최소정비규모는 3천제곱미터로 하고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있음
 - 다만 토지중 농지(한계농지를 제외한다)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으로 함.
-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은 제외
-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종류 및 토지이용계획은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 한계농지 등 정비사업의 무분별한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1개 시·군당 연면적을 30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정토록 함

<지구지정시 검토사항>

- 한계농지 해당여부
- 지역주민의 호응도(적극적 참여 및 개발의지)

- 사업시행을 위한 용도변경 가능성 및 용지매수 등 사업추진의 용이성, 지가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
- 발기반정비, 축산단지조성사업 등 타부문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 주변경관 및 환경보전과의 조화
- ※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도시계획구역등은 제외하며,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신중히 검토
- ※ 지구지정후 사업착수가 장기간 소요될 경우 지역주민 개발의욕 저하, 지가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지구지정후 차년도까지 개발착수가 가능한 지구를 우선 지정

나.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및 고시

(1) 도지사 직권에 의한 지정 및 고시

- 도지사는 한계농지등 중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 도지사가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지조사결과를 토대로 도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
- 다만, 한계농지정비지구의 명칭, 정비지구면적의 10% 미만의 변경, 정비지구 안에서의 시설물의 위치조정 등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2)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및 고시

(가) 신청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 시장·군수가 한계농지정비지구로 고시되지 않은 한계농지 등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지조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시·군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나) 신청자가 농업기반공사사장 또는 농협·산협 및 그 중앙회인 경우

- 한계농지정비지구로 고시되지 않은 한계농지 등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지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당해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
- 경유시 시장·군수는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에 따른 관련법 및 지역개발계획과의 관계, 정비지구 지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에 의견서를 첨부
- 도지사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접수된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신청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도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구지정 신청자에게 통보

다.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신청서류

- 사업시행자가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예정지의 위치도(축척 : 1/25,000)와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예정지조사 보고서
 - 정비사업의 내용 및 사업기간
 - 사업비추정액 및 부담(조달)방안
 - 정비지구 편입토지 조서
 - 토지소유자 3분의2이상, 또는 대상면적의 3분의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별지 제2-1호, 제2-2호 서식)
 - 관련법상 제약요건 검토서
 - 기타 지구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단, 다목적이용중 농어촌주택·택지 및 부속농지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첨부. 이 경우 예정지조사 보고서는 첨부하지 않음

라. 지구지정에 필요한 조사 등의 위탁

- 사업시행자는 지구지정에 필요한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음

마.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안에서 농어촌휴양자원이용이나 다목적이용으로 개발할 경우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규모 이상은 도지사가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 국토이용계획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시행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원칙

-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내용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시장·군수의 한계농지 정비사업 시행자는 한계농지 정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 정비사업 시행이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환경관련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공공성 확보 및 개발이익이 최대한 지역에 환원되도록 추진

나. 정비사업의 시행자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농협·산협 및 그 중앙회
 - 토지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비사업 참여허용

※ 토지소유자의 참여방법

- 농어촌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등 다목적이용, 농어촌휴양단지, 주말농원 등 농어촌휴양자원이용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대상지구의 토지소유자가 한계농지정비사업에의 참여를 원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정비사업에 참여토록 함. 다만, 농림수산업적이용의 경우에는 환지, 교환, 분합 등의 방법으로 참여

다.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 보상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

라.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필요한 때에는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를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음.

마.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5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기준을 적용

바. 준공검사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준공검사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도면
 - 사업의 명칭 및 규모에 관한 서류, 사업비 내역서, 시설물배치 및 시설 현황도,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준공도서(준공사진 포함), 시행전후 면적조서, 사업중 사업시행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
-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사. 수요자의 모집 및 분양

- 사업의 홍보 : 사업시행자는 한계농지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하고, 정비된 토지의 분양, 임대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참여, 토지분양, 임대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음.
- 수요자 모집 : 사업시행자는 정비된 토지 등의 수요자를 사전 확보하고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승인을 득한후 수요자를 모집할 수 있음

- 분양·임대절차등 : 한계농지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주택·기타 시설물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65조 및 제73조를 준용
- 분양가격의 결정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준용
- 분양시의 특례
 -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와 농촌주택(택지) 등에 부속된 농지를 분양·임대할 경우에는 농지 매매 등에 관한 제약을 받지 아니함
 -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농민이 농촌주택(택지) 등에 부속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 1,5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취득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아니함.

아. 선수금

- 사업시행자는 사업진도가 30% 이상인 때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을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음.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농업기반공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리·운영·이관
- 농어촌휴양자원개발, 다목적이용사업으로 조성된 도로, 상하수도 및 그 부대 시설 등 기반조성시설은 당해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 시장·군수가 관리
- 사업시행자는 시공전, 시공중, 준공후의 사진을 첨부한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
- 지하수개발은 지하수법 관련규정에 의한 오염방지그라우팅, 폐쇄공관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나. 보 고

- 사업시행승인(계획변경, 준공)결과 보고 : 시행계획 승인(계획변경, 준공)시 보고(자체심사가26-50)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말 추진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보고

6. 2002년도 사업신청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도지사

나. 신청자격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농협·산협 및 그 중앙회

다. 신청절차

- 예정지조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농업기반공사
- 지구지정 승인요청 : 시장·군수 → 도지사 → 농림부장관
- 지구지정 지정승인 : 농림부장관 → 도지사
- 지구지정 및 고시 : 도지사

라. 구비서류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신청서 (별지 1호서식)
- 위치도(축척 : 1/25,000)
- 예정지 조사보고서
- 정비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 사업비추정액 및 조달방안
- 정비지구 편입토지조서
- 토지소유자의 ⅔이상의 동의서
- 기타 지구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신청자	주소		
	대표자성명(법인명)		
지구현황	지구의 명칭		
	위치		
	대상면적 (㎡)	계	,농지 ,임야 ,기타
지정목적 및 사업종류	지정목적		
	사업의 종류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지구지정의 필요성			
주요사업내용			
사업시행여건			
추정소요사업비			
사업시행시의 효과			
<p>농어촌정비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인</p> <p>○○도지사 귀하</p>			
<p>첨부서류 : 1. 관련서류 2. 시장.군수 의견서 1부</p>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동의서

귀하

1. 귀 시.군(귀사)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에 동의하며 귀 시.군 (귀사)에서 선정한 대상지구에 본인 소유의 다음 토지 및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는바,
2. 향후 본인 소유 토지 또는 지장물이 한계농지정비지구에 편입될 때에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보상액으로 매각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 치			지 번	지 목	지적,가 옥,건물	편입예정 면 적	비 고
시.군	읍면동	리					

200

승 락 자 주 소 :

성 명(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동의서

귀하

1. 귀 시.군(귀사)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에 동의하며 귀 시.군 (귀사)에서 선정한 대상지구에 본인 소유의 다음 토지 및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는바,
2. 향후 본인 소유 토지 또는 지장물이 한계농지정비지구에 편입될 때에는 별도 협약에 의거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보상액으로 귀 시.군(사)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의 범위안에서 사업비로 투자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 치			지 번	지 목	지적,가 옥,건물	편입예정 면 적	비 고
시.군	읍면동	리					

200 . . .

승 락 자 주 소 :
 성 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

심사제외

○○지구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상황보고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획			2000까지			2001 계 획						2002이후			
							계 획			실 적						B/A (%)
	계	용자	자담	계 (A)	용자	자담	계 (B)	용자	자담	계	용자	자담				
1.순공사비																
○																
○																
○																
2.용지매수 보상																
3.관리비																
기타																
○조사설계																
○공사감리																
○잡지출																
○																
○																
○																

I. 농업경영자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협동조합과(과장 박현출, 사무관 김남훈)입니다.

1. 목 적

- 정부가 영농준비기에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농업경영을 원활하게 하고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벼 농사 위주의 농가에 대한 일반농업경영자금 지원
- 과수, 채소, 잡업, 원예 등 특작농가에 대한 전문농업경영자금 지원
- 쌀생산의욕 고취를 위하여 진흥지역에 간접지원

3. 근거법령

- 농업경영자금운용요령(농림부 훈령 제1016호)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계	'92-'96	'97	'98	'99	2000	2001
총 지원규모		억 원 311,700	126,700	33,000	38,000	38,000	38,000	38,000
사 업 비 (예산규모)	계	18,278	9,200	3,310	3,400	520	780	1,068
	재특회계	18,278	9,200	3,310	3,400	520	780	1,068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일반농업경영자(벼농사) 및 전문농업경영자(채소, 과수 등 특수작목)
- 농업경영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재해대상 농가

○ 지원조건

- 연리 5.0%, 1년 이내 상환(일반농업경영자금은 12월말)

○ 사업내용

① 일반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벼농사 위주 농가
- 자금용도 : 벼농사 위주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업경영비
- 지원금액 : 농가당 1,500만원 이내, 법인 및 단체는 3,000만원 이내
(전문농업경영자금 포함)

< 농업진흥지역 특별경영자금 >

- 지원대상 : 진흥지역 쌀생산농가 및 법인·단체
- 자금용도 : 진흥지역 쌀생산농가의 농업경영비

② 전문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보리등 맥류, 과수, 채소, 원예, 특작농가
- 자금용도 : 종자, 자재, 노임등 농업경영비
- 지원금액 : 농가당 1,500만원 이내, 법인·단체는 3,000만원 이내
(일반농업경영자금 포함)

③ 재해대책자금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상환연기 또는 특별 지원키로 한 재해농가와 그 해당금액

나. 2001사업비(예산안)지원계획

내 용 별	사 업 비					
	계	국 고 용 자			지방비	자부담
		계	용자	보조		
계	억 원 38,000	38,000	38,000			
○ 일반농업경영자금 (진흥지역 특별자금)	20,000 (4,000)	20,000 (4,000)	20,000 (4,000)			
○ 전문농업경영자금	8,300	8,300	8,300			
○ 농기업경영자금	7,000	7,000	7,000			
○ 재해대책 자금	2,700	2,700	2,700			

※ 예산액은 총지원규모 기준임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협동조합과(02 - 503 - 7218)

다. 대상자 선정

- 농가가 마을영농회를 통하여 지역농협에 신청하고 조합용자협의회에서 영농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 농림부에서 연간사업별 운영계획을 수립, 농협중앙회에 시달
 - 농협중앙회에서 구체적인 용자취급방침을 수립하여 계통조직을 통하여 지역조합까지 시달
 - 지역조합에서 자체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사업비 지원방법
 - 농림부에서 사업별·분기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분기별로 자금 배정
 - 농협중앙회에서 계통조직을 통해 지역별로 영농여건 및 소요자금을 감안하여 자금 재배정
 - 지역농협에서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지원계획 및 배정기준에 따라 농가 및 경영체에 자금배정

※ 농기업경영자금의 지원조건, 지원대상자, 지원방법등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농업경영자금운용요령에 의해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농림부가 지도·감독
- 정책사업 목적과 상이하게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 조치

나. 보고사항(농협중앙회 → 농림부)

- 농업경영자금운용계획 세부지침 보고
 - ※ 사업종류별 세부운용 지침 수립보고
- 농업경영자금 배정결과 보고(월별)

자체가 26-15

(단위:억원)

시도별	계			사업별		
	기배정	금차배정	배정누계	기배정	금차배정	배정누계

- 농업경영자금 용자실적 보고(월별)

자체가 26-14

(단위:억원)

	지원 규모	○년 ○월○일 현재			전년동기(○월○일)		
		자금 배정	대출 실적	대출 비율	자금 배정	대출 실적	대출 비율
계							
일반농업경영자금등							

6. 사업신청 안내

- 농림부 협동조합과(농업경영자금, 02-503-7218)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397-5986)
- 농협지역본부 저축금융과
- 농협시·군지부, 지역농협 및 전문농협

II. 축산경영자금 지원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과장 이상길, 행정사무관 이원희)입니다.

1. 목 적

-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게 사료구입비 및 동물약품구입비 등 가축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 전업규모의 축산농가, 단지, 영농조합법인 등 축산 경영체에게 가축사양비, 시설개보수 등의 운영자금을 저리 지원하여 축산업 경쟁력강화 제고
- 축산재해농가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재해복구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어주어 신속한 재활기반 구축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업 분야에 지원된 시설자금과 연계하여 자금의 효율성을 위해 품질향상 부존자원활용, 방역 및 분뇨자원화, 집유일원화 참여 등 정부시책 우수추진 축산경영체에게 인센티브 부여
- 축종별·사육규모별 지원규모의 차등화를 통하여 적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금의 생산성을 유도

3. 근거법령 및 사업추진 경위

- 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
 - '82 : 축산진흥기금에서 157억원 지원 시작(대출금리 연 10%)
 - '88 :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 시작(차입금액 200억원)
 - '94 : 정부의 한국은행 정책자금 지원 축소 방침에 따라 재정으로 점진적 전환
 - '97 : 양축자금을 축산경영자금으로 명칭변경 및 제도개선(일반·전업으로 구분 지원)
 - '98 : 한은자금 지원 종료
 - '99 : 축산시책 우수농가에 자금지원 인센티브 부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95	'96	'97	'98	'99	2000	2001	
지원규모	4,000	4,200	5,200	6,700	6,700	6,700	6,700	
재원별	재정자금 (신규)	1,416 (248)	1,724 (368)	2,382 (738)	3,095 (833)	3,095 (120)	3,095 (210)	3,095 (239)
	한은자금	624	416	208	-	-	-	-
	농협자금	1,960	2,060	2,610	3,605	3,605	3,605	3,605

5. 지원조건 및 자금의 용도

- 융자기간 : 1년 이내 (필요한 경우 1년 범위내 연장가능)
 - 금 리 : 5.0%
 - 자금의 용도 : 사료구입비, 동물약품비, 기존불량시설의 개·보수비 등 가축 사육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 ※ 신규시설투자, 가축입식비 및 토지구입비는 지원제외
단, 재해대책 경영자금의 경우는 가축입식비 지원 가능

6. 사업시행요령

가. 일반경영자금

- 1) 지원대상자 : 부업규모 축산농가
- 2)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 한(육)우·젖소 : 30두 미만, 단, 한우의 번식우 및 말은 20두 미만
 - 돼지 : 500두미만, - 닭 : 1만수 미만
 - 기타가축
 - 전업경영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준·전업 축산농가
 - 지원금액

구 분	5백만 이내	10백만원 이내
한(육)우·말	10두미만	10두이상
젖 소	20두미만	20두이상
돼 지	100두미만	100두이상
닭	7,000수미만	7,000수이상
기타가축	상기 사육두수를 감안 운용	

3)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읍·면·동 단위로 읍자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

○ 읍자협의회 구성(7인)

축산계장(또는 대의원), 양축가대표 4인(후계자 1, 일반 3)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1인, 축협 1(상무 또는 전무)

○ 선정절차

- 축협조합장은 자금지원 계획을 관내 시·군·구 및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여 축산농가에게 홍보
- 축산농가는 읍·면·동 축산계장(또는 대의원)에게 자금신청
- 축산계장(대의원)은 “읍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원순위와 지원액을 협의 조정한 후 그 결과를 축협조합장에게 제출
- 축협조합장은 추천된 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하고 자체간행물이나 조합게시판에 공고

< 시·군·구 단위로 읍자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

○ 읍자협의회 구성(7인)

축산계장(또는 대의원) 2, 양축가대표 3(후계자 1, 한우농가 등 2농가),

시·군·구 담당공무원 1, 축협 1(전무 또는 상무)

○ 선정절차

- 축협조합장은 자금지원계획을 관내 시·군·구 및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여 축산농가에게 홍보
- 축산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축협에 신청
- 축협조합장은 “읍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자, 지원순서, 지원액을 협의결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하고 자체간행물 및 축협게시판에 공고
- ※ 축협 조합은 관내 축산계장이나 대의원과 협의하여 상기 2가지 방법중 조합실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

4) 우수농가 우선지원

○ 읍자협의회 심의·결정시 축산시책에 적극 호응한 우수농가에게 자금 지원의 우선권 부여

- 가축질병예방 : 공방단 참여, 예방접종실시, 차단방역, 가축수송 차량소독 실시, 방역일지기록, 전염병 발생신고
- 품질개선 : 규격돈 생산출하, 거세축 생산, 종축등록, 우수축 출하
- 부존자원활용 : 초지조성, 사료작물 재배, 벃짚이용, 남은음식물 사료화
- 기 타 : 집유일원화참여, 송아지생산안정제 참여, 축산분뇨자원화, 경영장부기록유지, 축사시설현대화 등

나. 전업경영자금

- ※ 전업경영자금의 지원조건, 지원대상자, 지원방법등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다. 재해대책 경영자금

1) 지원대상자 : 축산농가중 재해를 입은 농가

2)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 법령에 의한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령 및 자연재해법령의 규정에 의해 재해로 판정된 경우

* 중앙지원(국고 + 용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해당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시장·군수가 본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법)에 해당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

* 기타사고의 유형 : 화재, 정전, 축사의 붕괴, 가축의 도난·폐사 등

※ 기타 사고의 경우 고의성 유무를 철저히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지원금액 : 호당 300만원~1억원 이내

※ 지원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법인의 경우 2억원까지 지원가능

- 호당 지원액

· 법령에 의한 재해 :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지원액(보조 + 용자)과 피해액과의 차액 범위내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보험금·공제금 및 정부지원액(살처분보상비 등)을 제외한 피해액의 50% 범위내

3)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법령에 의한 『재해』의 경우

- 시장·군수는 피해농가로부터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신청을 받아 피해 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별로 피해를 집계하여 농림부에 자금지원 요청, 농림부장관은 중앙재해대책본부 등의 피해복구계획에 의한 확정액과 피해액과의 차액범위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하고,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통지

- 농협중앙회장은 시·도별 한도를 배정하여 축협조합을 통하여 대출 실행

- 법령에 의하지 않는 재해의 경우
 - 피해농가가 시장·군수에게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을 요청
 - 시장·군수는 지역별(업종별) 축협조합과 공동으로 피해원인과 피해규모 등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동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증빙서류를 첨부, 농협 시도지역본부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
 - 농협 시도지역본부장은 중앙회장에 지원요청
 - 농협중앙회장은 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액을 결정, 시도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하고 농림부에 보고

4)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지원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한 재해,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순으로 하되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 우선지원

7. 자금운용관리

- 농협중앙회는 배정된 한도범위내에서 사육규모, 축산농가수 등을 기준으로 시·도별, 조합별 자금배정 운용
- 시·도별, 조합별 가축사육규모 및 축산농가수의 변동추세를 감안 자금한도는 탄력적으로 운영

8. 사업신청안내

- 농림부 축산정책과(02-504-9431~3)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축산자금지원팀(02-397-5952~6)
- 시·도 축산과, 농협 시·도지역본부
- 시·군 축산계, 시·군 축협조합
- 신청방법 : 농가 또는 단지·법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축협에 신청

9. 대출실행 및 채권보전

-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및 농협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하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의 신용대출 한도범위내에서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함

○ 대출제한대상

- 농협 여신관련 제규정에서 정한 대출부적격자(다만 보증채무 연체거래자는 대출 가능)
 - 지원대상자라 하더라도 사업중단자로 확인된 자(비양추가 또는 법인)
 - 중앙회 임직원, 조합장 및 조합의 상근임직원
 - 재해대책경영자금중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자
 - 기타 이지침 등에 의거 대출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 대출포기, 대출불가능한 자 등의 발생시에는 차순위 자로 대출실행

10. 기타사항(행정사항)

○ 사후관리

- 축산경영자금 운용요령에 의해 지원자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농림부)
- 목적외 사용여부 등을 수시확인하고, 정책목적과 상이하게 지원되었을 경우 자금회수 등 조치(농협중앙회, 축협조합)

-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축협조합이나 농협 시·도지역본부의 협조요청에 즉시 응하여 기관간 협의지연으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 농협중앙회장은 세부집행계획 및 용자 실행결과 등을 농림부에 보고
- 본 요령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관련 현행법령 및 고시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농협중앙회장은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 시행

여 백

VI. 생활 환경 개선

여 백

I. 정주권개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정비과(과장 이승관, 사무관 조홍제)입니다.

1. 목 적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농어촌의 먼지역을 대상으로 중심생활권에 주택정비, 편익시설, 도로,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 등을 집중투자하여 생활환경 개선

나. 장기사업목표

- 전국 1,227개면중 오지(399)면, 도서(53), 무인(10)면 등을 제외한 765개면을 대상으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정주권개발 및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구분 시행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92~'98	'99	2000	2001년 (예산안)	2002년 이후
사업량(면수)						
- 보조사업		294	56	66	60	289
- 용자사업		320	11	13	15	406
사업비	계	1,439,234	206,859	261,717	277,800	1,330,609
	국고(양여금)	734,766	126,679	164,526	205,600	686,335
	지방비	307,171	54,291	70,511	51,400	282,593
	용자	397,297	25,889	26,680	20,800	361,681

주1] 사업량은 완료면 기준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면개발계획수립

(1) 목적

- 정주권개발 대상면의 지역특성에 따라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복지시설등 중장기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 농어촌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로서의 역할
- 기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
- 농촌지역의 중장기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면단위지역개발의 지침서로서의 역할과 정주권개발 대상사업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도록 함.

(2) 연차별 계획수립

- 2001년까지 765개의 면개발계획 수립완료
 - 매년 시·군별 사업추진 진도를 참고하여 연간 계획수립 면수 결정

구 분	계	'99까지	2000	2001(P)	2002이후
면수	765	673	59	33	-

(3) 계획수립주체 : 시장·군수

- 농업기반공사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립함을 원칙으로 함.
- 면당 계획수립비 : 면당 50백만원

(4) 대상면 선정

- 농림부장관의 면개발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시장·군수가 대상면을 선정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정주권개발대상면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승격등 변경이 예상되는 면은 계획수립 대상 후순위로 조정

(5) 중심마을생활권 설정

- 중심마을생활권은 주민편익·서비스기능을 갖춘 중심마을과 그 배후의 농지·임야등 농업생산기반 및 산업기반을 포괄하며, 중심마을의 편익·공공서비스에 직접 의존하는 동일 생활권내에 위치한 소규모 자연부락을 포함하며, 다음의 사항등을 공유하는 권역
 - 공공 서비스시설(관공서, 농협등 금융기관, 의료기관, 학교등 교육기관등)
 - 도로 및 교통의 연계성 및 접근
 - 중심마을은 50호 수준의 규모 있는 거점마을
 - 시장·상가등 상업 및 유통기능
 - 생산기반 및 소득기반
 - 중심마을의 공공·편익시설에 의존하는 배후마을
- 중심마을은 주거 생활의 공간으로서 관공서 및 공공시설, 학교등 교육시설, 금융기관등 서비스시설, 시장 및 공동이용시설, 편익시설 등이 갖추어진 중심권역의 거점마을로 배후마을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마을
 - 마을 규모 50호 수준 이상으로 발전가능성이 큰 마을
 - 도로·교통등 접근성이 좋은 마을
 - 공공·기초서비스시설(관공소, 보건소, 농협, 의료시설, 학교등 교육시설)이 있는 마을
 - 시장, 상가등 유통기능이 있는 마을
 - 복지회관(마을회관)등 공동이용시설이 집중된 마을

(6) 계획수립절차

- 면개발계획 수립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역별 중·장기 개발방향과 지역주민의 개발수요 등을 조사하여 개발계획서(안) 작성
- 면개발계획은 1, 2단계로 구분 작성하며, 1단계 추진계획은 지원사업비 범위내에서 중심마을 생활권(지역실정에 따라 3개내외)을 대상으로 계획 수립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서(안)과 1단계 추진계획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승인요청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개발계획서와 1단계 추진계획이 중심마을에 집중투자 되도록 수립되었는지의 여부등을 검토조정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지역주민에게 열람

(7) 계획수립시 주민참여 확대

- 개발계획 수립시 마을기반정비계획은 해당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함
 - 해당마을의 장기구상 및 개발계획을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 추진계획을 수립
 - 지역의 문화전통, 상징적인 마을조성계획 반영

(8) 개발계획 수립 소요기간 : 1년으로 함

- 시장·군수는 1년 이내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기 계약체결, 예산의 조치등을 취하여야 함

(9) 개발계획의 내용

- 정주권개발의 중·장기 목표와 개발방향
- 지역현황
- 농촌 정주체계 정비계획
- 중심마을 정비계획
- 각·부문별 개발계획 :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복지시설 등
- 중·장기 투융자 계획 등(단계별 투융자계획)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자원조사 대상항목 중 농촌생활환경정비분야

(10) 개발계획의 변경

- 개발계획의 변경은 개발계획수립절차와 동일
- 다만, 아래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조정
 - 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 사업시행기간의 변경과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11) 개발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개발계획수립시에는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친화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함
 - 친수공간, 녹지공간, 자연공원, 주민여가 및 체육공간, 생태계보전 등 조성 및 유지보전
- 투융자계획은 사업내용, 성격, 규모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작성하되 개발계획등 정부의 중장기계획을 참고하여 타당성 있게 수립
 - 정주권개발대상사업 : 지원가능한 사업비 투융자규모를 기준으로 사업 대상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1,2단계로 구분
 - 타부문사업 : 단위사업별로 투융자계획 수립
 - 중심마을정비계획은 개발방향, 개발계획, 사업효과등을 상세하게 수립함
 - 도상계획(1:5,000도면)
 - 소요사업비
 - 상·하수도계획

- 개발계획 수립은 국토건설종합계획,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도시계획 등 타 부문 계획과 조화되도록 하고, 생산기반정비, 농공단지등 산업기반정비, 농업진흥지역정비 등과 연계하여 수립
- 경지정리, 생활용수개발,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유통가공시설, 농어촌 도로, 소하천정비 등 타부문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가능한 사업은 당해 사업으로 지원되도록 타부문계획으로 수립하고, 농발계획 및 투자계획에 반영하여 정주권개발사업과 연계추진되도록 함
- 개발계획서에는 반드시 개발계획수립 참여자 명기

(12) 개발계획 수립의 효과

- 농어촌정비법 제3조에 의한 자원조사 기초자료 활용
- 농촌지역의 중장기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면단위지역개발의 지침서로서의 역할과 정주권개발 대상사업계획 수립의 기준이 됨.

나. 정주권개발사업

(1) 사업내용설명

(가) 사업내용

- 마을기반정비 : 마을내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 농촌지역 도로정비 : 마을간 도로, 연결도로, 교량등
 - 농촌산업개발 : 공동영농어시설, 농로 등
 - 문화복지시설 :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 필요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회관내에 설치(농산물유통, 작목반등 활용 및 주민정보화수준향상 목적)
 - 정보화교육은 지자체가 기업체, 독지가를 알선, 무료교육 방안강구
 - 환경보전시설 :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 재해방지시설 : 하천정비, 마을안전시설 등
 - 주택정비 : 신축, 개량,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의 철거·정비
- ※ 타부문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

(나) 지원조건

- 지원규모 : 면당 45억원 수준(보조 30억원, 용자 15억원)
 - 보조사업비는 양여금 80%, 지방비 20%
 - 용자사업은 면당 15억원 수준에서 시행하되, 특별히 주택활성화 지역이 있어 추가소요가 발생할 경우 용자예산 범위내에서 면별 조정·시행 가능

- 지원방법 : 면단위별로 지원완료 위주로 지원
 - 보조사업 : 지방양여금을 시·군의 면수비율에 의해 배분
 - 용자사업 : 면당 15억원 수준
 - 주택신축(개축) : 호당 2천만원, 년리 5.5%, 5년거치 15년상환
 - 주택개량(부분개량) : 호당 5백만원, 년리 4.0%, 3년거치 7년상환

(다) 2001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면수)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국 고 (양여금)	용자 (농특회계)		
정주권개발		277,800	226,400	205,600	20,800	51,400	-
- 보조사업	60	257,000	205,600	205,600	-	51,400	-
- 용자사업	15	20,800	20,800	-	20,800	-	-

※ 사업량은 지원완료면 기준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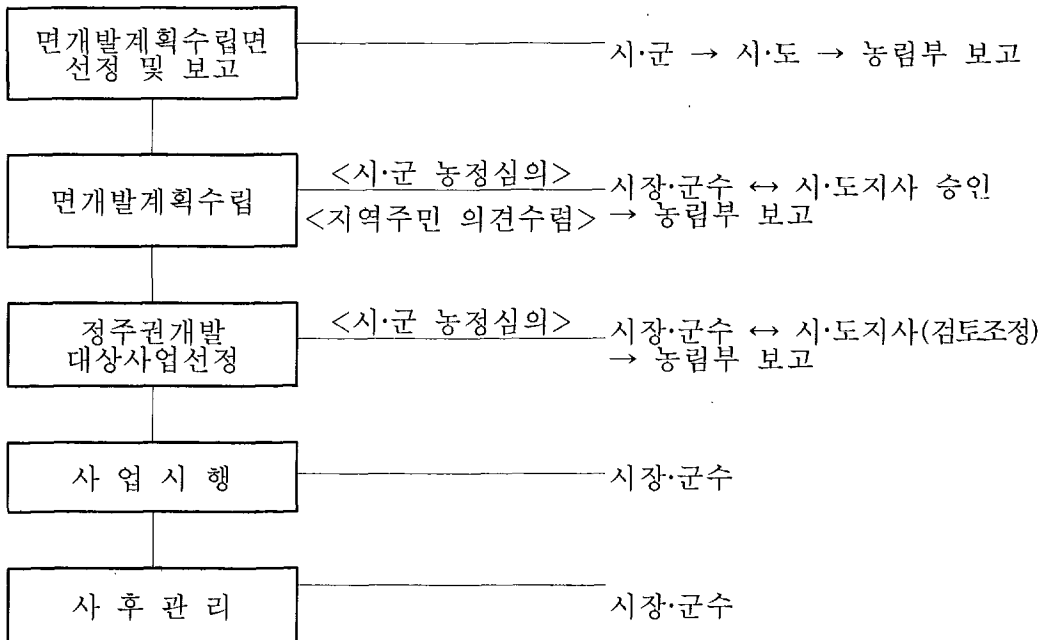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전화 02-504-9404~5)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농지개발과 또는 농정과(충북, 충남, 전북, 제주)
자치행정국 새마을과(경북),
건설도시국 주거환경개선과(강원), 지역계획과(경남), 주택과(경기, 전남)
지역경제국 또는 산업경제국 농정과(부산, 대구, 인천, 울산)
- 시·군 :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라.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가. 대상사업선정

(1) 사업대상면 선정

- 면단위 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면 중에서 면별 사업시행 순위에 따라 시장·군수가 완료위주로 사업시행 대상면을 선정
 - 신규착수 대상면은 전년도 사업완료 실적과 연계하여 선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기함
 - 사업기간이 6년이상 장기화 되는 면이 있는 시·군은 신규착수 억제
- 행정구역개편으로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지역중 개편당시 정주권 개발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지역은 계속 지원가능(보조사업비는 당해 시·군에 배분되는 지방양여금 범위내에서 지원)
- 시·군의 정주권개발 대상면 전체가 1단계가 완료된 시·군은 2단계 계획을 2001년 사업추진절차, 지원조건 및 규모로 수립·시행

(2) 대상지역 선정

- 면개발계획서에 의거 면당 3개내외의 중심마을생활권을 선정

(3) 대상사업 선정

- 개발계획서상의 중심마을 생활권에 대하여 1단계 추진계획 사업시행 우선 순위를 기초로 하여 생활기반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며, 생산기반정비, 소득원개발,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기계화경작로 등 타부문에서 재원조달이 가능한 사업은 대상사업선정시 제외하고 당해 개별사업으로 연계지원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에 의거 단계별 추진계획 범위내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기 선정된 중심마을 생활권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매년 당해년도에 착수할 대상사업과 전년도부터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정, 시·군 농정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
다만, 사용하지아니하는 빈집의 철거·정비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대상지에 한함
- 시·도지사는 매년 정주권개발계획과의 관계, 개발계획서상의 단계별 추진계획과의 관계, 별도의 재원확보가 가능한 타부문의 사업시행 여부, 중심마을 생활권에 대한 집중시행 여부 등 타당성을 검토·확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시달하고 그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나. 사업시행계획 수립

- 시장·군수는 대상사업이 확정되면 당해년도 투자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
- 농림수산 관련단체등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당해년도 완공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년도에 완공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설계, 용지매수, 공사준비 등을 실시하고 2차 년도에 완공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

(1) 보조사업

- 사업시행은 당해년도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행하며, 설계 도서에 맞게 실시하여야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시행과정에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사업선정절차에 따라 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시·도지사의 사전검토를 받은후 시행
다만, 사용하지아니하는 빈집의 철거·정비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 대상지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업무 담당부서에 협의·지원
- 정보통신기반시설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설치하되,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활용도, 사후비용부담, 편의성등을 마을주민과 협의후 시행
- 시장·군수는 공사시행과정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전·후의 현장사진등을 보관하여야 함

(2) 융자사업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및 주민(사업자)
- 사업내용
 - 농촌주택정비, 농촌용수시설, 주민편익시설등 지원
 - 발전가능성이 있는 중심마을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원(보조사업과 연계 지원)

○용자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용자희망자를 해당 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군농정심의회 의 심의등 공정한 방법으로 대상자 선정(대상자 선정시에는 기수혜 여부, 타부문용자와 중복지급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용자대상자 선정기관(시장·군수등)은 대상자 선정시 용자신청자의 신용 상태, 담보제공능력등 용자가능성에 대하여 용자취급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용자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않아 연내에 용자금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건축을 완료한 대상자 에게 우선, 용자대상자를 변경하여 시행

○용자방법

- 용자금 대출은 사업참여자와 용자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실시하되 용자 취급기관은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지원(시설물수반시 후취 담보 적극 활용)
- 용자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용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통보한 사업진도에 따라 진도(기성고) 확인후 자금지원 단, 용자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 기타 용자에 관한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준용

○용자금 사후관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점검 및 지도·감독 실시

○용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용자지원조건(별표 1)

나. 사업의 위탁

- 농어촌정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 관련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다.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는 시장·군수(또는 수탁시행자)가 담당
- 각종 시설용지의 확보는 매수·보상을 원칙으로 함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확보 및 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 례법』의 규정에 따름

라. 설계감리등 사업비 요율

- 실시설계 및 공사감독, 사업관리를 위탁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별표5)를 준용
-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별표5)의 사업관리비 요율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공사감독추진 출장비, 소모품비등)를 실비로 계상할 수 있음

<사업비 지원>

가. 예산의 지원

- 예산의 지원은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보조사업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하여 시·군의 면수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되, 시장·군수는 배분된 예산범위 내에서 완료면 위주로 집중지원
 - 융자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집중지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양여금지원에 따른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 사업비 예산의 년도말 검정 및 결산은 농림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의하여 실시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대상사업중 공동이용시설 및 수익시설은 사업비를 단위사업별로 동일지원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용자 또는 자부담시킬 수 있으며, 완공후 수익자에게 관리토록 할 수 있음
- 시장·군수(또는 수탁시행자)는 용지매수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수속등)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물의 관리자를 지정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반영, 시설물관리대장 및 시설물관리요령 작성등을 하여야 함
-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설치된 마을에 대하여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매년도별(별지 제4호 서식) 『면정주권개발 대상사업 추진실적』을 관리하여야 함
- 공사설명제
 -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요시설물(도로, 교량, 공동이용시설등)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제4항에 의거 준공전(공사중)·준공후 사업 안내문을 표시하여야 함

나. 보고

- 면개발계획승인 결과보고 : 면개발계획승인시(별지 제1호 서식)
- 면개발계획수립 대상면 선정 보고 : 당해년도 1.31까지(별지 제2호 서식)
- 생활환경정비사업 보조 및 용자사업 추진계획 보고 : 당해년도 1.31까지(별지 제3호 서식)
- 정주권개발 대상사업선정 결과보고 : 매년 3.10까지(별지 제4호 서식)
- 정주권개발 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지 제5호 서식)
- 정주권개발사업 완료 보고 : 익년도 1.31까지(별지 제6호 서식)

[별표 1]

용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용자지원조건

1. 용자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선정권자
○ 문화마을조성사업	○ 정주권개발대상지역에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시장·군수, 농기공) ○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실시하는 지구에 한함	시·도지사
○ 임대주택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내에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시장·군수, 농기공)	시·도지사
○ 주택신축	○ 정주권개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택을 신축(개축)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주민)	시장·군수
○ 주택개량	○ 정주권개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택을 개량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주민)	시장·군수
○ 농촌용수시설(상·하수도포함)	○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	시·도지사

2. 용자지원조건

사업명	금리 (%)	용자기간(년)			용자 한도	용자 비율
		계	거치	상환		
○ 문화마을용지매수	4.0	4	2	2	○ 사업지구당 100억원 이내	○ 소요사업비의 100% 이내
○ 임대주택	5.0	20	5	15	○ 지구당 5억원 이내	○ 전체사업비의 50%이내
○ 주택신축(문화마을)	5.5 (5.0)	20	5	15	○ 호당 2천만원 이내	○ 소요자금의 70% 이내
○ 주택개량	4.0	10	3	7	○ 호당 5백만원 이내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주민편의시설	5.0	5	2	3	○ 사업자당 3천만원이내	○ 소요자금의 50% 이내
○ 농촌용수시설(상·하수도포함)	4.0	20	5	15	○ 지구당 3억원 이내	○ 소요자금의 50% 이내

3. 자금의 용도 및 용자대상자

사 업 명	자 금 의 용 도	용자대상자
○ 문화마을조성 사업	○ 문화마을조성 사업지구의 용지매입등	시장·군수 (농기공)
○ 임대주택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에 건립되는 임대주택의 건축비	시장·군수 (농기공)
○ 주택신축	○ 주택신축(단독 또는 공동주택)에 소요되는 자금	주 민
○ 주택개량	○ 부엌·목욕탕·화장실·담장등 기존주택을 개량하는데 필요한 자금	주 민
○ 주민편익시설	○ 영농어지원시설, 시장정비 및 조성등 주민편익시설사업을 추진	사업자
○ 농촌용수 (상·하수도 포함)	○ 농촌지역의 용수(생활용수, 상·하수도등)사업을 시행하는데 부족한 지방비에 지원	시장·군수

[별지 제1호 서식]

심사제외

○○시(군) ○○면 면개발계획승인 보고

1. 지역 일반현황

면적 (m ²)	법정리 (개)	행정리 (개)	자연부락 (개)	가구수(호)			인구수(인)			비고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2. 토지이용현황

(단위 : ha)

총면적	경지면적				임야	대지	기타	비고
	소계	논	밭	과수원				

3. 개발지표

구 분	단위	총계획	현수준		1단계계획		2단계계획		비고
			물량	%	물량	%	물량	%	
계									
○도로부문									
-마을내도로	Km								
-농어촌도로	Km								
○하수도시설	Km								
○상수도시설	개소 (명)								
○하천정비	Km								
○복지회관	개소								
○마을회관	개소								
○주택정비	동								
○경지정리	ha								
○수리답을	%								

4. 부문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총계획	정구권개발계획			타부문 계 획	비고
		소계	1단계	2단계		
계						
1. 마을기반정비						
2. 농어촌도로정비						
3. 농어촌산업개발						
4. 생산기반정비						
5. 문화복지시설						
6. 농어촌용·배수시설						
7. 환경보전시설						
8. 재해방지시설						
9. 농촌주택정비						
10. 기타지역개발						

5. 1단계 부문별·사업별 추진계획

- 1단계 투자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총26-65

년도 면개발계획수립 대상면 선정 보고

(시·도)

시·군명	대상 면수	사업시행(면수)			개발계획수립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면수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획 면수 면 명	
계								

[별지 제3호 서식]

총26-61

2001년 생활환경정비사업 보조 및 용자사업 추진계획

(시·도)

(단위 : 백만원)

시군	대상 면수	시행면 (지구)	합 계		문화마을조성			정주권개발				비 고
			보조	용자	보조	용 자		보조	용 자			
						계	용지 매입		주택 신축 ()	계	주택 신축 ()	
계												

- ※ 1. ()는 주택호수등 물량
- 2. 보조사업비는 지방양여금, 지방비

[별지 제4호 서식]

자재가26-51

정주권개발 대상사업 선정결과(추진실적)

1. 부문별 총괄

(시·도, 시·군, 면)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사 업 별	단위	2000가 지			2001 계 획			비 고
			사업량 (개소/블럭)	계	보 조 용 자	사업량 (개소/블럭)	계	보 조 용 자	
계	소계								
마을기반정비	소계								
	내도로 마을기 상하수 관거	Km 개소 Km 개소	///			///			
농촌도로정비	소계								
	마을간 도로 정비 사업 비 리 수 리 기 타	Km 개소 Km 개소 Km 개소 Km 개소	/// /// /// ///			/// /// /// ///			
농촌산업개발	소계								
	농산물 산지 직접 판매 센터 등 기 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 /// /// /// ///			/// /// /// /// /// ///			
생산기반정비	소계								
	농촌 생산 기 타	Km 개소 개소 개소	/// /// ///			/// /// ///			
문화복지시설	소계								
	문화 복지 기 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 /// /// /// ///			/// /// /// /// /// ///			
농촌용수 배수시설	소계								
	저수지 배수 기 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 /// ///			/// /// /// ///			
환경보전시설	소계								
	수질 개선 기 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 /// ///			/// /// /// ///			
재해방지시설	소계								
	하수 처리 기 타	Km 개소 개소	/// ///			/// ///			
농촌주택정비	소계								
	주택 정비 기 타	동 동 동	/// /// ///			/// /// ///			
기타	소계								
	지역 개발 기 타	개소 개소 개소	/// /// ///			/// /// ///			

※ 작성방법 : 시·도총괄, 시군총괄, 면 별 순으로 작성, 2000까지는 기완료된면의 실적도 필히포함

2. 세부사업별

(면)

부 문 별	사 업 별	위 치 (마을명)	사 업 명	단 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합 계	보 조	읍 자

[별지 제5호 서식]

총26-63

정주권개발 추진상황 보고

1. 면별 추진상황 총괄

(금액 : 백만원)

시군	면	2001 계 획			추진실적(월말 현재)			진도 (B/A) (%)
		계(A)	보 조	용 자	계(B)	보 조	용 자	
계								

2. 부문별 추진상황

(시·도, 시·군, 면)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사 업 별	단 위	2001 계 획			추진실적(월말 현재)			진도 (B/A) (%)		
			사업량 (개소/물량)	사 업 비(A)			사업량	사 업 비(B)			
				계	보 조	용 자		계		보 조	용 자
계											
마을기반정비	소계										
	마을내도로 상하수도 기타	Km 개소 Km 식	/	/	/						
농촌도로정비	소계										
	마을간도로 농촌도로 마을내도로 기타	Km Km 개소 개소 Km 식	/	/	/						
농촌산업개발	소계										
	농산물산지 개발사업 농촌진흥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대식	/	/	/						
생산기반정비	소계										
	농경지정비 농촌진흥 기타	Km ha 개소 개소 개소 식	/	/	/						
문화복지시설	소계										
	문화복지 시설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	/						
농촌용수 및 배수시설	소계										
	농촌용수 및 배수 시설 기타	개소 개소 Km 개소 식	/	/	/						
환경보전시설	소계										
	오수처리 시설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	/						
재해방지시설	소계										
	하천정비 시설 기타	Km 개소 개소	/	/	/						
농촌주택정비	소계										
	주택정비 사업 기타	동 동 동	/	/	/						
기타	소계										
	지역개발 사업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	/						

※ 시·도총괄, 시·군총괄, 면별로 순으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자체가26-52]

정주권개발사업 완료보고

(시도 시·군 면)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사 업 별	단위	지 원 사 업 비				비 고
			사업량 (개소/불량)	계	보 조	용 자	
계						년도별사업비	
마을기반정비	소계					○계 :	
	마을도로 마을하천 마을기타	Km Km Km	/// /// ///			-보조 :	
농촌도로정비	소계					· 년 :	
	마을도로 마을하천 마을기타	Km Km Km	/// /// ///			· 년 :	
농촌산업개발	소계					· 년 :	
	농촌산업개발 농촌산업개발 농촌산업개발	개소 개소 개소	/// /// ///			· 년 :	
생산기반정비	소계					· 년 :	
	농촌산업개발 농촌산업개발 농촌산업개발	Km Km Km	/// /// ///			· 년 :	
문화복지시설	소계					· 년 :	
	문화복지시설 문화복지시설 문화복지시설	개소 개소 개소	/// /// ///			· 년 :	
농촌용수 배수시설	소계					· 년 :	
	농촌용수 배수시설 배수시설	개소 개소 개소	/// /// ///			· 년 :	
환경보전시설	소계					· 년 :	
	환경보전시설 환경보전시설 환경보전시설	개소 개소 개소	/// /// ///			· 년 :	
제해방지시설	소계					· 년 :	
	제해방지시설 제해방지시설 제해방지시설	Km Km Km	/// /// ///			· 년 :	
농촌주택정비	소계					· 년 :	
	농촌주택정비 농촌주택정비 농촌주택정비	동 동 동	/// /// ///			· 년 :	
기타	소계					· 년 :	
	기타 기타 기타	개소 개소 개소	/// /// ///			· 년 :	

※ 지원완료면에 대하여 작성

II. 문화마을조성

1. 목 적

농어촌 면지역의 중심거점마을(중심마을)을 대상으로 집중지원하여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생산기반정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연계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마을로 정비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발전가능성이 큰 면단위 정주권의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기반정비(마을내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주택단지조성, 공동이용시설(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주차장, 농기계보관소 등), 환경기초시설(마을하수도시설), 주택등을 종합정비하고,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소득원개발 사업등 연계 추진

나. 장기 사업목표 : 전국 정주권개발대상면에 대하여 면당 1개마을 선정하여 생활환경정비(문화마을조성)사업 시행

※ 정주권면 전체가 1개소씩 완료된 시·군은 추가시행 가능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29조 내지 제42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8	'99	2000	2001 (예산안)	2002~2004
사업량 (완료)		105 (72)	10 (22)	23 (11)	16 (8)	36 (77)
사업비	계	408,286	57,445	69,871	75,820	295,325
	국고(양여금)	142,744	28,225	36,798	49,200	147,741
	지방비	61,018	12,097	15,771	12,300	63,370
	융자	204,506	17,123	17,302	14,320	81,425

주1] 사업량은 착수지구 기준, ()는 단지조성 완료지구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면개발계획서상의 일정규모 이상의 중심마을생활권 지역의 거점마을(중심마을)에 대하여 마을여건에 맞도록 생활환경정비 및 현대화 추진
- 마을의 원지형을 기본 토대로 지역의 특성(전통성, 문화성)을 고려하여 마을정비
 - 기존마을의 토지·주택등의 합리적 재배치
 - 마을기반시설(마을진입로, 마을안길정비, 생활용수, 전기·통신시설등)과 농촌주택정비
 - 복지(마을)회관, 공동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공동작업장 등 주민편익 및 공동 이용시설
 - 필요시 회관내에 정보통신기반시설 설치가능(농수산물 유통, 작목반등 활용 및 주민 정보화수준 향상목적)
 - 정보화교육은 지자체가 기업체, 독지가를 알선, 무료교육 방안강구
 - 마을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 생산기반정비, 소득원개발, 농산물집하장, 농산물가공시설, 농기계수리소, 공동건조장, 보관시설등 산업시설 연계 지원
- 필요한 경우 마을기능보강을 위하여 기존중심마을내 또는 인접하여 소규모 주택용지 및 공동이용시설용지 조성

나. 지원조건

○ 지원규모

- 보조 : 20~30억원수준(마을기반정비, 공동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 지방양여금 80%, 지방비 20%
- 용자 : 10~20억원 수준(주택신축 및 주택단지 용지매수·보상)
 - 주택신축(개축) : 호당 2,000만원(연리 5.0%, 5년거치 15년상환)
 - 주택개량(부분) : 호당 500만원(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 용지매수보상(주택단지조성시) : 소요액(연리 4.0%, 2년거치 2년상환)
- 보조사업비 재원 : 지방양여금법시행령 제5조 제3항 [별표 3]에 의한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양여기준 적용
-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확보 추진

다. 2000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국 (양여금)	고 용자		
문화마을조성사업		75,820	63,520	49,200	14,320	12,300	-
○단지조성	47지구	69,500	57,200	49,200	8,000	12,300	-
○주택건축	316동	6,320	6,320	-	6,320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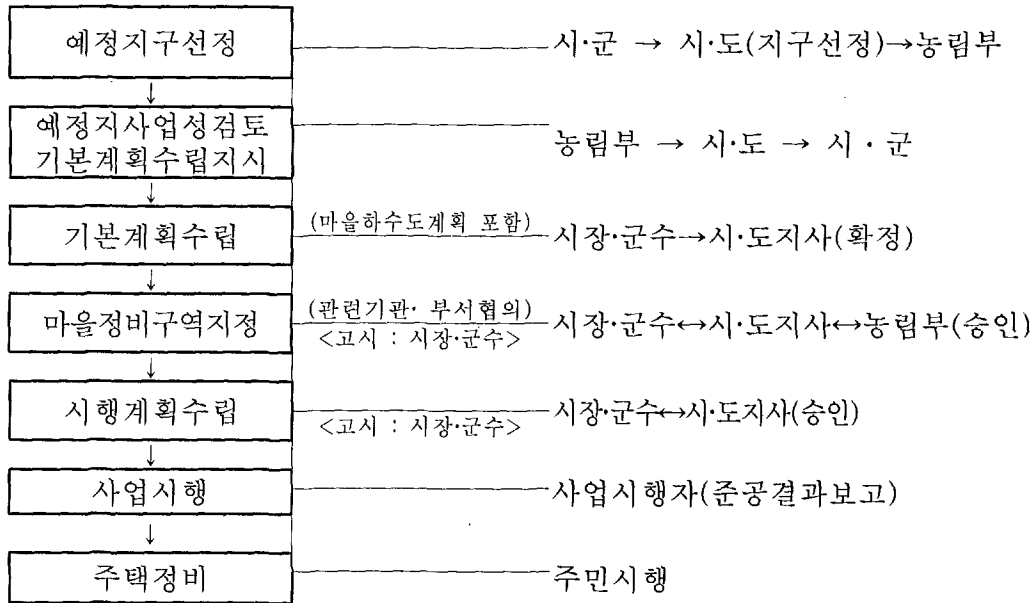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전화 02-504-9404~5)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또는 농정과(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자치행정국 마을과(경북), 건설도시국 주거환경개선과(강원), 지역계획과
(경남), 주택과(경기, 전남)지역경제국 또는 산업경제국 농정과(부산,
대구, 인천, 울산)
- 시·군 :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 사업시행자는 마을정비 및 현대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수립, 실시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업
기반공사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위탁시행시에는 가능
한한 기본계획수립, 실시계획수립, 사업시행등을 일괄하여 위탁하며, 이
경우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수탁시행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사항을 시·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사업시행자는 마을기반정비와 병행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이 동시에 설치
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기반정비사업 진척상황을 고려하여 설치시기를
조정·시행할 수 있음

라.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1) 선정기준

- 사업예정지 선정은 농림부 전체사업계획에 해당하는 시·사업량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선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면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된 면중에서 개발계획서상의 중심마을 중 다음 요건에 합치되는 마을중에서 선정
 - 교통·경제·문화등 중심생활권으로서 발전가능성이 있으며, 규모화가 가능한 마을
 - 농업생산기반정비, 농공단지등 산업기반정비, 농업진흥지역정비사업등과 연계하여 농촌 마을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발의지가 있는 마을
 - 타법에 의하여 개발에 제약요인이 없는 마을
 - 타부문 개발계획과 연계성이 높은 마을
 - 향후 도시화가 가능한 마을은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도시근교지역, 주변땅값이 비싼 지역등은 제외)
- 마을기능 보강을 위하여 주택용지조성 및 공동이용시설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 기반정비가 완료된 우량농지 및 농업진흥지역은 제외

(2) 선정절차(농어촌정비법 제32조)

- 사업시행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마을조성사업 예정지를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농업기반공사등 전문기관의 현지답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정지 조사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면당 1개지구. 단, 정주권면 전체가 1개소씩 완료된면은 추가 선정 가능)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예정지중 당해 시·도에 배분된 사업량을 선정하여 시·도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다만, 시군에서의 신청사업량이 많은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함.
- 예정지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현황(호수, 인구<농업인/비농업인>), 마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현황, 주소득원, 호당 연간평균소득, 공공기관 및 공동이용시설현황, 편익·복지시설현황 등)
 - 정비하여야 할 구역의 면적
 - 마을의 생활수준 지표 및 목표 설정
 - 위치평면도(1:25,000) 및 개발계획도(1:5,000)
 - 개발계획내용
 - 주택정비계획
 -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타부문 투자계획
 - 마을하수도 및 하수처리장계획
 - 사업시행후 마을의 발전 전망
 - 기타 필요한 사항
- 시·도지사가 추진할 사업지구를 선정하되, 농림부의 지구선정 적부성이나, 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할 검토사항등을 받은후 기본계획수립을 추진

나. 계획수립

(1) 기본계획

- 시장·군수는 다음년도 사업예정지구가 선정되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능한한 선정 당해연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정주권개발사업비로 계상된 보조사업비중 일부를 기본계획수립비로 전용하거나,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수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과목의 설정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기본계획에는 사업대상지구에 대하여 마을현황, 마을의 생활수준 지표 및 목표 설정, 기본계획의 개요, 주요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 포함), 마을하수도시설계획, 주택개발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기간등과 연관사업(생산기반정비, 소득원개발, 농어촌도로등)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필요시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제2항과 관련된 지구는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내지 제4호의 구비조건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수립시 필요한 경우 마을에 대한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이 경우 경관형성계획수립 및 문화재지표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본 계획수립비와 별도 실비로 계상
- 기존마을정비시 농촌주택개량계획은 사업시행되는 마을에서 주민신청에 의하여 소요물량을 정확히 판단하여야하며, 사업기간내 년차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마을회관, 농기계보관창고 등 공동이용시설용지와 건축공사비에 대한 재원 및 조달계획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로 선정된 지구에 대하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자(농어촌관련 연구기관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자)에게 위탁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 농림부소관 연관사업(생산기반정비, 생활용수개발, 유통·소득·가공 시설사업등)과 타부처소관 연관사업(농어촌도로, 소하천정비 등)은 “농·산·어촌마을 현대화사업통합지침(정비51370-216, '96. 6. 7)”에 의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계획 및 지원계획을 결정하며, 그 내용을 기본 계획에 포함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내용(사업계획 및 사업비조달계획등)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의, 다음 서류와 함께 농림부장관에게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신청함(별지 제1호 서식)
단, 기존마을만 정비하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기본계획서(필요시 환경성검토서 포함) 1부
 - 위치평면도(1:25,000) 및 사업계획평면도(1:5,000) 각 1부
 -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의견서
 - 사업비수지예산서 및 기본계획 검토내용
- 시·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이 되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고시토록 하여야 함

(2) 사업시행계획

-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및 사업비조달계획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수립 및 검토시 사업구역내에 국·공유지가 편입될 때에는 관련부서와 무상 증·양여에 관한 사항을 사전협의 하고 사업 완료시 농어촌정비법 제93조의 규정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이 승인되면 시행계획내용을 고시하고, 농어촌정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내용을 국토이용계획결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세부설계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사업비조달계획
 - 농촌마을정비계획 및 주택정비계획
 - 편·익복지 및 공동이용시설계획
 - 마을하수도시설 확충 및 하수처리계획

(3) 계획수립 시 유의사항

- 계획수립시 주민참여 확대
 - 계획수립시 마을기반정비계획은 해당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함
 - 해당마을의 장기구상 및 개발계획을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 추진계획을 수립
 - 지역의 문화전통, 상징적인 마을조성계획 반영
- 정보통신기반시설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설치계획을 수립하되,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활용도, 사후비용부담, 편의성등을 마을주민과 협의후 계획수립
-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수립
 - 계획수립 시에는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며,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함
 - 친수공간, 녹지공간, 자연공원, 주민여가 및 체육공간, 생태계보전 등 조성 및 유지보전

<사업시행>

가. 년도별 사업시행계획

-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확보된 사업비에 의한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년도별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나. 공정계획

- 사업시행자는 당해년도 예산에 의한 시행계획 수립시 공정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시행계획승인시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함

다. 시행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계획 수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함(농어촌정비법 제32조,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5조) 다만, 다음 각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결과 보고, 시·도지사는 변경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명칭의 변경
 - 마을정비구역지정면적의 10/100범위 안에서의 증감
 - 기타, 단순착오로 인한 사항의 변경

라. 용지매수 및 보상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제반규정에 따름
-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마을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용지매수보상을 추진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경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의서(별표 1) 징구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함

마. 주택건축

- 사업시행자는 기존마을정비시 마을기반정비와 병행하여 농촌주택개량(신축 및 개량)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주택등의 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분준공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기존마을정비시 농촌주택개량(신축, 개량)은 주민의 신청에 의하며, 주택개량의 용자지원기간은 분양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함 단, 대상자가 실직이나, 영농실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기존마을정비시 주상복합건물의 개축은 용자지원을 하지 않음
- 사업시행자는 주민이 주택건축을 할 경우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신규택지에 건축시 단지전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행정지도를 하며, 택지분양자를 중심으로 “주택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직접 주택등의 건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등의 건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름. 단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지로서 공급하여,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개별로 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외

바. 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를 행하고, 사업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사업시행자는 용지매수 및 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수속등)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
- 공사감리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업기반공사등에 위탁하여 감리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 제97조)
- 사업시행 및 공사감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서를 숙지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 등을 파악하여 시공중 철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여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함

사.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등 요율

-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 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별표5)에 의함
- 사업시행자가 직접시행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별표5)의 사업관리비의 요율범위 내에서 사업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공사감독추진 출장비, 소모품비등)를 사업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음

아. 공사준공 및 유지관리

-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군수는 도로, 상·하수도, 공동이용시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련부서 합동으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사업비정산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준공확인후 준공사업비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위탁시행자는 준공(부분준공 포함)후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당해 시장·군수에게 1개월 이내에 인계하고,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수를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위탁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설치된 마을에 대하여는 향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 시장·군수는 준공후 필요시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를 위탁관리자에게 지불하여야 함

<사업비 지원>

가. 예산 지원

- 보조사업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하여 사업규모에 따라 2~3년간 보정 지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양여금지원기준에 따른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 융자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사업지구내의 농어촌주택 및 신규택지조성을 위한 용지매수비 융자지원

나. 자금의 운용관리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시행자와의 계약에 의거 수탁시행자가 보조사업비를 신청시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일괄집행 할 수 있음
- 전체 소요사업비중 양여금 보정지원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해당 시·군(면)의 면정주권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구별 양여금 보정지원액이 소요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당해지구의 공동이용시설과 면정주권사업에 지원할 수 있음
- 농림부소관 관련 예산사업(생산기반조성, 생활용수개발, 유통·소득·가공시설사업 등)과 연계 지원
 - 농어촌도로, 소하천정비 등 타부처소관 연관사업이 당해 생활환경정비사업 지구에 상호연계하여 종합지원 되도록 추진

○용자사업추진

- 사업시행자는 주택개량자가 선정되면 용자대상자를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소요액을 보고하고, 용자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용자취급기관은 용자금이 공정에 따라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며,
- 용자취급기관은 사업시행자(위탁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후 용지매수·보상에 소요되는 용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실적 확인 없이 용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용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후 일정기간동안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않아 연내에 용자금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택건축이 완료된 대상자를 우선하여 조정 시행

○용자지원시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시에는 기수혜여부, 타부문용자 중복지급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주택자금 용자대상 : 단독주택(신규마을조성시 상가겸용주택 포함)에 한하며, 기존마을정비시 상가겸용주택 개량(개축)은 제외
- 시장·군수가 용자취급기관에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시에는 당해 시·군이 승인한 사업계획서 사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주택건축을 위한 개인일 경우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건축공사 착공확인서를 첨부하여 용자를 신청할 경우 용자취급기관과 사업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실시하되,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용자지원(후취담보 적극 활용)
- 용자금 취급기관은 용자금의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함
- 기타 용자에 관한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준용

○용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용자지원조건 : 정주권개발 용자사업의(별표1)참조

○사업비예산의 년도말 검정 및 결산은 농림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의하여 실시함

<행정사항>

가. 조성용지등의 분양

-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조성 및 설치한 택지, 주택과 시설물의 분양은 농림부가 정하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조성된용지및농어촌주택등의분양업무처리규정”(2000.4.4)에 따름
- 사업시행자는 택지나 주택등의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분양을 시행하며(수탁시행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와 협의),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분양계획 및 분양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자가 결정되면 시장·군수에게 분양대상자를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주택자금등 융자금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
- 조성용지 및 주택등의 분양을 위해 최초 분양공공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미분양된 용지등의 소유권은 용지매수보상을 집행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며(위탁시행자인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득한후 귀속) 사업시행자는 차입한 융자금을 기한내 상환하여야 함
단, 사업시행자(위탁시행자 포함)에게 귀속된 용지는 조성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용도변경 사용할 수 있다
- 농어촌정비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특별회계로, 농업기반공사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의 활용은 다음 순위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 시설물 인수인계전까지의 당해지구에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 당해 지구에 필요한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등의 설치
 - 농어촌생활환경정비를 위한 기술개발·연구 등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정비사업
- 분양을 시행한 지구중 공동주택용지등 최초 분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미분양용지가 있는 경우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단독주택용지등 필요한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사업비는 분양수익금 또는 기타(지방비등)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나. 보 고

- 문화마을조성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 시행계획승인시(별지 제2호서식)
- 문화마을조성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 시행계획변경시(별지 제3호서식)
- 정주권개발사업(문화마을조성)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보고 :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수립시(별지 제4호 서식)
- 문화마을조성 추진상황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지 제5호 서식)
- 문화마을조성 준공보고 : 준공시(별지 제6호 서식)
- 문화마을조성사업 분양계획 및 분양결과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지 제7호 서식)

다. 사업추진일정

- 예정지구 선정제출(시·군→시·도→농림부) : 6월 말까지
- 기본계획수립, 마을정비구역지정 신청(시·도→농림부) : 익년도 5월 말까지
- 마을정비구역지정승인(농림부→시·도) : 익년도 8월말까지
- 시행계획 수립(시·군→시·도 승인→농림부 제출) : 익년도 10월 말까지

라. 참고사항

- 시장·군수는 문화마을조성사업과 생산기반정비사업 및 소득기반사업이 종합적으로 연계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주권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함
- 기타, 중심마을현대화사업의 마을정비에 따른 제반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계규정에 의함.

[별표 1]

토지 및 지장물 매각동의서

_____ 군수(시장) 귀하

1. 귀 시·군(귀사)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마을정비사업(마을하수처리시설 포함)구역에 편입되는 본인 소유의 다음 토지 및 지장물 일체를,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등 관련법령에 따른 감정보상액으로 매각할 것을 동의합니다.(필요시 보상 전이라도 우선공사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 협의 내용 첨언함)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예정 면 적	비고
시·군	읍·면·동	리					

2001년

승락자 주소 :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별표 2]

문화마을조성사업의 재원 및 지원기준

(단위 : %)

구 분		재원별 비율		비 고
		보 조 (지방양여금)	용 자 (농특회계)	
문화마을 조성사업 (신규택지 조성)	○ 용지 확보	-	100	○ 발생이자등 포함
	○ 공사비	100	-	○ 자재대, 지장전주이설비, 토취장복구비등 포함
	○ 잡지출	100	-	○ 이전등기비, 토지감정료 분양공고비등 포함
	○ 관리비	100	-	○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분양·주택건축관리비, 사업관리비, 국토이용계획변경협의, 시설물관리비, 환경성검토비 경관형성계획수립비 문화재지표조사비 등
마을하수 처리시설	○ 용지 확보 및 제공사비	100	-	
기존마을 정비	○ 기반시설사업	100	-	○ 정주권개발비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 용지매수보상	100	-	

[별지 제1호서식]

마을정비구역지정승인신청서									
사업명	○○ ○○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대상 의 요 지 개	지정목적 및 필요성								
	위 치								
	면 적	㎡ (평)							
	토지이용 현황(㎡)	지목별 면 적	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비율(%)							
	용도지역 현황(㎡)	용도별	계	도시지역	준도시 지 역	농림지역	준농림 지 역	자연환경 보전지 역	
면 적									
용도지역 변경내용									
정비내용									
사업기간									
<p>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정비구역지정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1년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도지사(인)</p> <p style="text-align: center;">농 립 부 장 관 귀 하</p>									
<p><구비서류 : 각 3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 의견서(관련부서 의견첨부) 2. 정비구역 위치평면도(1/25,000~1/50,000) 및 국토이용계획도(1/5,000)<각 4부> 3. 토지이용계획 4. 매수 또는 수용하여야 할 토지조서 5. 기본계획서(환경성검토서 : 필요시) 6. 사업비확보에 관한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제외

문화마을조성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지구명 :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

2. 추진경위

- 예정지 지정
- 기본계획 수립
- 마을정비구역 지정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필지수	비 고
계				
○ 주택건설 용지 - 단독주택용지 - 근린시설용지				
○ 공동시설 용지 - 마을 회 관 - 정보통신기반 - 공동 작업장 - 농기계보관소 - 공 원 - 놀 이 터 - 주 차 장 - 정 차 대 - 배 수 로 - 도로 및 보도 - 녹지 및 사면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사업비수지예산서

(수입)

(단위: 천원)

구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승인 (B)	증감 (B-A)	비고
계				
○보조				
- 국고				
- 지방양여금				
- 지방비				
○용자				

(지출)

(단위: 천원)

구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승인 (B)	증감 (B-A)	비고
합계				
[마을기반조성]				
○공사비				
-				
-				
-				
-				
○자재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상				
○관리비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예비비				
○기타				
[농촌주택정비 등]				
○주택신·개축				
○주택개량				

4. 기타사항(승인조건등)

※ 관련문서 첨부(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제외

문화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지구명 :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

2. 주요변경내용

3. 토지이용계획

(면적 : m²)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B-A)	비 고
	면적(A)	구성비 (%)	필지	면적(B)	구성비 (%)	필지		
계								
○ 주택건설 용지 - 단독주택용지 - 근린시설용지								
○ 공동시설 용지 - 마을 회 관 - 정보통신기반 - 공동 작업장 - 농기계보관소 - 공 원 - 놀 이 터 - 주 차 장 - 정 차 대 - 배 수 로 - 도로 및 보도 - 녹지 및 사면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사업비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천원)

구 분	당초승인 (A)	금회승인 (B)	증 감 (B-A)	비 고
계				
○ 보 조				
- 국 방 양 여 금 비				
- 지 방 양 여 금 비				
○ 용 자				

(지 출)

(단위: 천원)

구 분	당초승인 (A)	금회승인 (B)	증 감 (B-A)	비 고
계				
[마을기반정비]				
○ 공 사 비				
-				
-				
-				
-				
-				
○ 자 재 대				
○ 용 지 매 수 비				
- 용 지 매 수				
- 보 상				
○ 관 리 비 등				
- 측 량 설 계 비				
- 공 사 감 리 비				
- 사 업 관 리 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 기 타				
[농촌주택정비 등]				
○ 주택신·개축				
○ 주택 개 량				

4. 기타사항(승인조건등)

※ 관련문서 첨부(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별지 제4호서식]

총26-63

정주권개발(문화마을조성)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총괄)

1. 총괄

(시·도)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승인액	년까지	년계획	년이후	진도(%)		월 별 공 정 계 획 (금액)																비고													
							1/4				2/4				3/4				4/4																	
					년	계	1	2	3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합계																																				

※ 이월 예산은 ()외서로 상단에 기재

3. 시행계획 수지예산서(지구별)

- 지 구 명 :
- 기본계획확정 :
- 시행계획승인 :
- 사업시행기간 : ~

(수 입)

(단위: 천원)

구 분	승인액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			금년도 예산	내년이후 잔사업비	비고
		소계	년	년			
계		()	()	()	()		
○ 보 조							
- 국 방 양 여 금 비							
- 지 방 양 여 금 비							
○ 용 자							

-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는 집행액 내서
- 2. 금년도 예산액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지 출)

(단위: 천원)

구 분	승인액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			금년도 예산	내년이후 잔사업비	비고
		소계	년	년			
계		()	()	()	()		
[마을기반조성]							
○공 사 비							
-							
-							
-							
-							
○자 재 대							
○용 지 매 수 비							
- 용 지 매 수 상							
- 보							
○관 리 비 등							
- 측 량 설 계 비							
- 공 사 관 리 비							
- 잡 지 출							
○예 비 비							
○기 타							
[농촌주택정비등]							
○주 택 신 · 개 축							
○주 택 개 량							

-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는 집행액 내서
- 2. 금년도 예산액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3. 공정계획(지구별)

시공회사 : (인)
 작성자 : (인)

지구명 : 지구
 착공년월일 :

사업기간 : (단위 : 백만원)

과목	승인액	(전년)까지	(금년)계획	(금년)이후	진도(%)		월 별 공 정 계 획 (금액)																비고			
					당년	누계	1/4				2/4				3/4				4/4							
							1	2	3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합계																										
[마을기관조정] ○공사비																										
-부지조성																										
-도로																										
-상수도																										
-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기타																										
○자계대																										
○양매수																										
-용지매수																										
-보상																										
-이자																										
○사업관리비등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사업관리비																										
-잡지출																										
-기타																										
○에비비																										
○기타																										
[농촌주택정비등]																										
○주택신·개축																										
○주택개량																										

※ 이월 예산은 ()외서로 상단에 기재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상황보고

(시·도)

1. 총괄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지정 년 도	조성 면적 (m ²)	주택 호수 (호)	총 계획 (A)			2000까지(B)			2001계획						누 계 진 도 (B+ D)/ A (%)	비 고			
시 군	면	리				계	보 조	용 자		계	보 조	용 자		계 획(C)		()월말까지 실적(D)				진 도 (D /C) (%)		
								단 지 조 성	주 택 건 축			단 지 조 성	주 택 건 축	계	보 조	용 자					용 자	
																소 계	주 택 건 축				소 계	주 택 건 축
계																						

- ※ 1. 이월 예산은 ()외서로 상단에 기재
- 2. 비교란에는 사업이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분양계획등 기재

2. 문화마을 주택건축 추진상황

시·군	지구명	사업개요			추진상황			자금집행상황(백만원)		
		계 (동)	신·개축 (동)	개량 (동)	착공 (동)	완료 (동)	미착공 (동)	예산	자금배정	집행 (대출)
계										

[별지 제6호 서식]

자체가26-52

문화마을조성사업 준공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지구명 :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
-
-
- 시공회사 :

2. 추진경위

- 예정지 지정
- 기본계획 수립
- 마을정비구역 지정
- 시행계획 승인
- 공사착수
- 사업준공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필지수	비 고
계				
○ 주택건설 용지				
- 단독주택용지				
- 근린시설용지				
○ 공동시설 용지				
- 마을회관				
- 정보통신기반				
- 공동작업장				
- 농기계보관소				
- 공원				
- 놀이터				
- 주차장				
- 정차대				
- 배수로				
- 도로및보도				
- 녹지및사면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사업비수지예산서

(수입)

(단위: 천원)

구분	당초사업비 (A)	준공사업비 (B)	증감 (B-A)	년도별 내역				비고
				년	년	년	년	
계								
○보조								
- 국 지방 양여 고금비								
- 지방 양여 고금비								
○용자								

(지출)

(단위: 천원)

구분	당초사업비 (A)	준공사업비 (B)	증감 (B-A)	년도별 내역				비고
				년	년	년	년	
계								
[마을기반조성]								
○공사비								
-								
-								
-								
-								
○자재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상								
○관리비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예비비								
○주택정비								
○기타								
[농촌주택정비등]								
○주택신·개축								
○주택개량								

[별지 제7호 서식]

자체가26-53

문화마을조성사업 분양계획 및 분양결과보고

1. 조성용지 분양 현황

구분	시군	지구명 (면)	착수 연도	분양 개월	분양계획(필지)					분양현황(필지)					분양 율 (B/A)	분양 실시 예정
					계 (A)	단독 주택	근린 시설	공동 주택	업무 시설	계 (B)	단독 주택	근린 시설	공동 주택	업무 시설		
계																
분양계																
계획계																

※ 분양율은 분양이 실시된 지구 기준으로 작성, 분양계획지구는 분양계획과 예정일만 기재

2. 단독주택용지 분양 현황

시군	지구명 (면)	착수 연도	분양 필지	거주지별(필지)			직업별(필지)					비고	
				면지 역	군지 역	기타 지역	농업	회사원	공무원	상업	기타		
계													

3. 지구별 조성용지 평균 분양가

시군	지구명 (면)	착수 연도	단독주택용지			근린시설용지		비고
			계획필지	조성원가 (천원/평)	감정가 (천원/평)	계획필지	감정가 (천원/평)	
계								

※ 위탁시행자는 매월 말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Ⅲ. 농촌마을하수처리시설

1. 목 적

농촌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배출 초기단계에서 처리함으로써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유지·보전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전국 면단위 이하의 마을에 하수관로 설치를 하거나 하수관로를 통하여 수집한 하수의 처리시설 설치
 - 문화마을조성사업등 생활기반시설이 정비된 마을 우선 지원
 - 기존마을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생활하수의 처리가 가능한 지역

나. 장기사업목표

- 전국 정주권개발대상 면단위지역의 문화마을조성사업 지구에 1개소씩 연차적으로 설치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31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8	'99	2000	2001 (예산안)	2002~2004
사업량(개소)		68	23	9	9	81
사업비	계	26,800	8,400	3,600	3,600	19,600
	국 고	26,800	8,400	3,600	3,600	19,600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설명

(1) 사업내용

- 문화마을조성지구와 기존마을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 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수집·처리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
 - 하수도를 통해 수집한 생활하수의 처리를 위한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2) 지원조건

- 사업비 지원 : 지구당 4억원 수준(국고 100%)

나. 2001사업비(예산안)내용

구 분	사업량 (지구)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계	예 산 안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용자		
마을하수처리시설	9	3,600	3,600	3,600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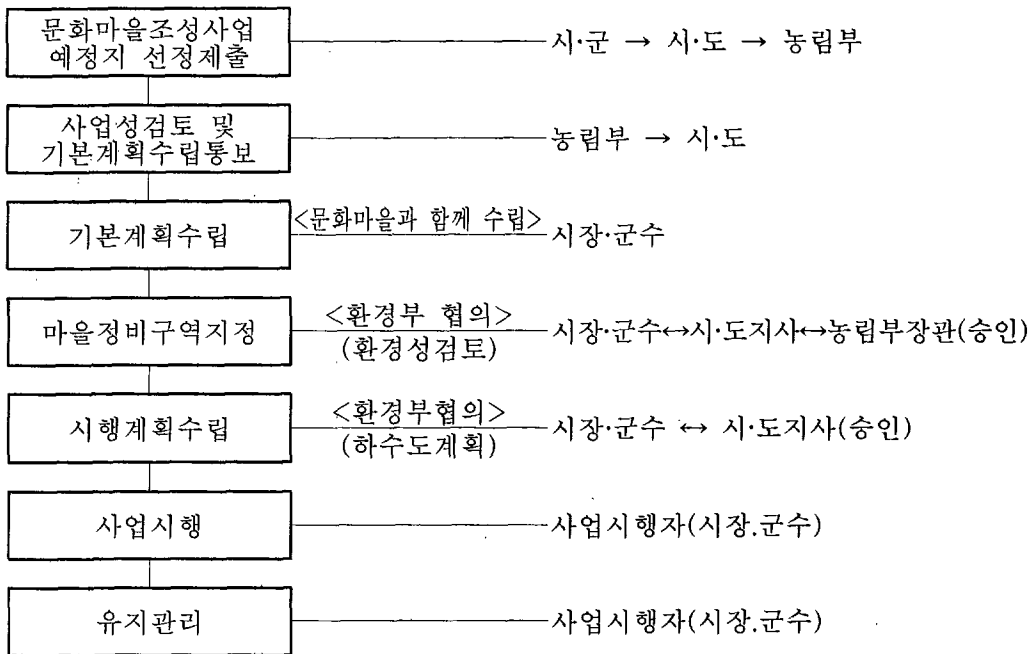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전화 02-504-9404~5)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농지개발과(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자치행정국 새마을과(경북),
건설도시국 주거환경개선과(강원), 지역계획과(경남), 주택과(경기, 전남)
지역경제국 또는 산업경제국 농정과(부산, 대구, 인천, 울산)
- 시·군 :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일 경우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업기반공사등에 위탁하여 시행(농어촌정비법 제33조제2항)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마을하수처리시설사업의 시행 및 유지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하수도담당부서에서 설계·시공등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를 전담 하도록 부서간에 업무를 협의 조정할 수 있음
- 문화마을조성사업 시행부서에서는 마을하수도 사업시행을 하수도담당부서에서 추진할 경우에도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추진상황, 사업비정산보고등)을 총괄함

라.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로 기선정된 지구와 하수체계상 병행처리가 가능한 인근마을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가 아닌 지역은 가급적 마을규모가 50호 수준이상인 지역으로써
 - 기존마을의 하수체계,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환경개선 효과가 큰 마을
 - 환경오염이 심하여 하천수질오염이나, 영농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마을

나. 기본계획

- 계획수립(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은 마을하수도업무편람(환경부 1996) 및 하수도시설기준(1997. 12)에 맞게 수립
- 하수처리시설의 계획수립시에는 하수도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고, 처리효율이 우수한 시설로 계획하며, 무인·자동화가 가능하도록 함
- 마을하수도시설의 처리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1)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만족하도록 계획

< 마을하수도에서의 방류수 수질기준>

(단위: mg/l)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부유물질량 (SS)	비 고
집중처리시설	20이하	40이하	20이하	총질소 : 60이하 총 인 : 8이하
현장처리시설	30이하	40이하	30이하	

※ 총질소, 총인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소 등의 지역에 적용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의 마을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은 문화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함. 단,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가 아닌 지역의 기본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직접시행하거나 농업기반공사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립할 수 있음
- 마을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기본계획에 다음 사항등이 포함되어야 함
 - 하수도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 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서에 관한 사항
 - 슬러지처리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름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가 아닌 기존마을의 하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붙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 시행계획

-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하수처리시설의 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32조 및 제87조 제3항의 규정과 하수도법 제6조의2 및 하수도법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하여 마을정비구역 지정후 또는 시행계획승인전에 지방환경관리청장과 협의
- 시·도지사는 현지여건, 계획의 타당성, 재원마련대책 등을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행계획의 수립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업기반공사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립할 수 있음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

- 사업시행은 문화마을조성사업(단지조성) 준공시기와 연계하여 추진하며, 위탁시행할 경우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문화마을 조성사업 위탁시행자에게 일괄위탁토록 함

나. 용지매수 및 보상

- 문화마을조성사업에 준하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매수한 토지는 시장·군수 명의로 등기함.
- 용지매수는 가능한 한 문화마을조성사업 용지매수시 일괄매입 함

다.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사업계획수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문화마을조성사업과 관련법 조항 동일) 다만, 다음 각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군수가 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결과 보고
 - 관련되는 다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 물량변경으로 인한 5% 이내의 공사비 증감
 -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
 - 기타, 단순착오로 인한 사항의 정정

- 사업계획의 내용중 처리공법의 변경이나 처리용량의 변경(10%이상일 경우)에 대하여 사업시행 인가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5%를 초과하여 공사비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지방비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라. 설계감리등 요율

- 마을하수도처리시설설치사업(오·폐수처리시설)의 조사설계, 공사감리, 관리비등의 요율은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 [별표5] 에 준함

마. 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용지매수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수속 등)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입주시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

- 공사감리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업기반공사 또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감리할 수 있음

- 사업시행 및 공사감리를 위탁할 경우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서를 숙지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 등을 파악하여 시공중 철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여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함

바. 사업의 준공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되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사업비정산서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준공확인 후 준공사업비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사업비 지원>

가. 예산의 지원

- 사업비의 예산은 지구당 4억원(농특회계)을 보조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구별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당해년 예산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조정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재원(지방비 등)확보 추진
- 사업비 지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화마을 단지조성 준공년도(문화마을조성 2~3차년도)에 단지조성과 연계하여 준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나. 자금의 운용 및 관리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시행자와의 계약에 의거 수탁시행자가 보조사업비를 신청할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일괄 집행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동의서 징구 및 관련계획의 변경, 지도·감독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사업관리비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사업비 예산의 년도말 검정 및 결산은 농림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의하여 실시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준공)되면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시설물을 인계함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공사준공 후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위탁사업자로부터 인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인수하지 않을 경우 준공시부터 인수인계시까지의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위탁시행자에게 지불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성실하게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부서 및 해당 기술부서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필요시 시·군 조례를 정하여 조달 가능)
- 현지 상주직원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마을주민중 명예관리자를 지정하여 일상점검 및 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토록 하고, 주민에 대하여도 시설의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함

- 시설관리자는 유입 및 방류수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수질을 측정·관리하여야 하며, 전년도 월별 수질검사 결과를 매년 1월 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설물관리자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시설물점검대장을 비치하고, 항시 기록 관리하여야 함

나. 보고

- 마을하수도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 시행계획수립시(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마을하수도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 시행계획변경시(별지 제2호 서식)
- 마을하수도시행계획 및 공정계획 보고 :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수립시(별지 제3호 서식)
- 마을하수도추진상황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지 제4호 서식)
- 마을하수도준공결과보고 : 준공시(별지 제5호 서식)
- 마을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결과보고 : 매년 1월말까지(별지 제5호 서식)

다. 참고사항

- 시·군에서의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를 하수도업무 담당부서로 일원화할 경우 “마을하수도사업통합지침(행정자치부, 농림부, 환경부 공동)”을 참고
- 사업시행자는 하수도법 개정 이전에 설치한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마을하수도사업통합지침에 의하여 지방환경관리청과 협의하여 공공하수도로 등록 관리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심사제외

마을하수처리시설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지구명 :
- 위치 :
- 시설규모 : m³/일(부지면적 : m²)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
-
- 설계기관

2. 추진경위

- 예정지지정 :
- 기본계획수립 :
- 마을정비구역지정 :
- 마을하수도계획협의 :

3. 계획처리용량(시설용량)

구분		처리규모	단위오수량	유입하수량	비고
문화마을	인구(인)				
	근린시설(m ²)				
	소계(A)				
기존마을	인구(인)				
	근린시설(m ²)				
	공공기관(m ²)				
	소계(B)				
계(C=A+B)					
여유수량(지하수량등)(D)					
합계(C+D)					

4. 계획공법 및 처리수질

- 계획처리공법 :
- 계획처리수질

(단위 : mg/l)

유입수질					방류수질				
BOD	COD	SS	T-N	T-P	BOD	COD	SS	T-N	T-P

5. 사업비수지에산서

(수 입)

(단위: 천원)

구 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승인 (B)	증 감 (B-A)	비고
계				
○ 보 조				
- 국 고				
- 지방양여금				
- 지방비				

(지 출)

(단위: 천원)

구 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승인 (B)	증 감 (B-A)	비 고
계				
○ 공 사 비				
- 토목공사				
· 하수관로				
· 처 리 조				
· 조경공사				
· 부대공사				
· 기 타				
- 기계공사				
- 전기공사				
- 건축공사				
○ 자 재 대				
○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 사업 관리비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 기 타				

5. 기타사항(승인조건등)

※ 관련문서 첨부(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제외

마을하수처리시설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지 구 명 :
- 위 치 :
- 시설규모 : m³/일(부지면적 : m²)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
 -
 -
 -
 -
- 사업시행자(위탁시행자) :
- 설계기관 :
- 공사감리기관 :

2. 주요변경내용

3. 사업비수지예산서

(수입)

(단위: 천원)

구분	당초승인 (A)	금회승인 (B)	증감 (B-A)	비고
계				
○ 보조				
- 국고				
- 지방				
- 지방				

(지출)

(단위: 천원)

구분	당초승인 (A)	금회승인 (B)	증감 (B-A)	비고
계				
○ 공사비				
- 토목공사				
- 하수관로				
- 처리조				
- 조경공사				
- 부대공사				
- 기계공사				
- 전기공사				
- 건축공사				
○ 자재대				
○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상				
○ 사업관리비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 예비비				
○ 기타				

4. 기타사항(승인조건등)

※ 관련문서 첨부(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3. 시행계획 수지예산서(지구별)

- 지 구 명 :
- 기본계획승인 :
- 시행계획승인 :
- 준공 예정일 :
- 처 리 용 량 : m³/일(처리계획호수 : 호, 처리계획인구 : 명)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승인액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			금년도 예산	내년이후 잔사업비	비고
		소계	년	년			
계		()	()	()	()		
○ 보 조							
- 국 고							
- 지방양여금							
- 지방비							

-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는 집행액 내서
- 2. 금년도 예산액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승인액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			금년도 예산	내년이후 잔사업비	비고
		소계	년	년			
계		()	()	()	()		
○ 공사비							
- 토목공사							
· 하수관로							
· 처리조							
· 조경공사							
· 부대공사							
· 기타							
- 기계공사							
- 전기공사							
- 건축공사							
○ 자재대							
○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상							
○ 사업관리비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일반관리비							
- 잡지출							
○ 예비비							
○ 기타							

-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는 집행액 내서
- 2. 금년도 예산액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3. 공정계획(지구별)

시공회사 : (인)
 작성자 : (인)
 지구명 : 지구, 사업시행기간 : , 착공년월일 :

(단위 : 백만원)

과 목	승인액	(전년 까지)	(금년) 계획	(금년) 이후	진도(%)		월 별 공 정 계 획 (금액)												비 고					
							1/4			2/4			3/4			4/4								
					당 년	누 계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합 계																								
○공사비																								
-토목공사																								
·오수관로																								
·오수처리조																								
·조경공사																								
·부대공사																								
·기타																								
-기계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자재대																								
○용지매수																								
-용지매수																								
-보상																								
○사업관리비등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사업관리비																								
-잡지출																								
-기타																								
○예비비																								
○기타																								

※ 이월 예산은 ()외서로 상단에 기재

마을하수처리시설 추진상황보고

(시·도)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처리계획			주요시설		총계획(A)			'00까지(B)			'01 계획						누계 진도 (B+D)/A (%)	비고				
시군	면리	처리용량 (m ³ /일)	처리호수 (호)	처리인구 (명)	처리장 (m ³)	하수관로 (m)	계	국고	양여금	지방비	계	국고	양여금	지방비	계획(C)			()월말까지 실적(D)						
															계	국고	양여금	계			국고	양여금	계	국고
계																								

- ※ 1. 이월 예산은 ()외서로 상단에 기재
- 2. 비고란에는 사업이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착공시기, 완료시기, 미착공시 추진상황 (설계중, 발주준비중, 협의중 등)등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자체가26-52

마을하수처리시설 준공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지구명 : _____
- 위치 : _____
- 시설규모 : _____ m³/일(부지면적 : _____ m²)
- 사업기간 : _____
- 주요공사 : _____
- 설계기관 : _____
- 시공회사 : _____

2. 추진경위

- 기본계획 수립
- 마을정비구역 지정
- 마을하수도계획 협의
- 공사착수
- 사업준공

3. 계획처리용량(시설용량)

구 분		처리규모	단위오수량	유입하수량	비고
문화마을	인구(인)				
	근린시설(m ²)				
	소계(A)				
기존마을	인구(인)				
	근린시설(m ²)				
	공공기관(m ²)				
	소계(B)				
계(C=A+B)					
여유수량(지하수량등)(D)					
합계(C+D)					

4. 처리공법 및 처리수질

- 처리공법 : _____
- 처리수질 : _____

(단위 : mg/l)

유입수질					방류수질				
BOD	COD	SS	T-N	T-P	BOD	COD	SS	T-N	T-P

5. 사업비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천원)

구 분	당 초 사업비 (A)	준 공 사업비 (B)	증 감 (B-A)	년도별 내역			비 고
				년	년	년	
계							
○ 보 조							
- 국 고							
- 지방양여금							
- 지방비							

(지 출)

(단위: 천원)

구 분	당 초 사업비 (A)	준 공 사업비 (B)	증 감 (B-A)	년도별 내역			비 고
				년	년	년	
계							
○ 공사비							
- 토목공사							
- 하수관로							
- 처리조							
- 조정공사							
- 부대공사							
- 기타							
- 기계공사							
- 전기공사							
- 건축공사							
○ 자재대							
○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상							
○ 사업관리비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 예비비							
○ 기타							

[별지 제6호 서식]

◻ 심사제외

마을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결과보고

- 지 구 명 :
- 위 치 :
- 처 리 용 량 :
- 설 치 연 도 :
- 가 동 개시일 :
- 처 리 공 법 :
- 유지관리부서 :

수질검사 년 월 일	시설용량 (m ³ /일)	처리용량 (m ³ /일)	유입수질(mg/ℓ)					방류수질(mg/ℓ)					
			BOD	COD	SS	T-P	T-N	BOD	COD	SS	T-P	T-N	
'99평균													
20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년평균													

※ 수질검사기관의 성적표 첨부

IV. 농가주거환경개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과장 김화남, 생활지도관 박영자)입니다.

1. 목 적

- 농촌 수질환경 오염 방지로 생태환경 보전
- 편리한 주거시설 설치로 농가주부의 가사노동 절감
- 쾌적하고 위생적인 농가주거환경조성으로 농촌생활의 활력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에 의거 추진
- 농가의 주거환경 중 부엌개량+목욕실설치, 환경친화형 화장실개량을 중심으로 추진
- 행정자치부의 마을환경개선사업과 연계
-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발굴 지원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
-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 세부추진계획('94.9)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92~'98	'99	2000	2001 (예산안)	2002- 2004년	비 고	
사업량	82,500	6,000	2,570	1,497	4,491	2001년부터는 환경친화형 화장실개량 포함	
사	계	296,000	31,800	15,420	8,142.0		24,426.0
업	용자	207,200	22,260	10,794	5,699.4		17,098.2
비	자부담	88,800	9,540	4,626	2,442.6		7,327.8

※ 2001년 부엌+목욕실 : 1,077호, 사업비 6,462(용자 4,523.4)백만원
 화장실 개량 : 420호, 사업비 1,680(용자 1,176)백만원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지원배경

- 농촌에서 가장 취약한 시설이 하수도 시설임('94 농진청)
 - 수질오염으로 인해 낙동강 및 팔당상수원은 '90년 1급수에서 '99년 2급수로 전락(2000. 1. 한국일보)
 - 하수도나 정화조가 필요 없는 환경친화형 화장실개량이 절실함
- 상대적으로 미흡한 농가의 주거실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
 - 부엌개량 73%, 목욕실설치 74%, 화장실개량 55% ('98 농진청)
 - * 예전보다 상당히 좋아졌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임

(2) 지원사업의 내용

- 부엌개량+목욕실설치, 화장실개량
 - 부엌개량 : 실내화, 상하수도시설, 작업대설치, 환기·채광시설 등
 - 목욕실설치 : 상하수도시설, 욕조·샤워기 설치, 방수·환기시설 등
 - 화장실(환경친화형)개량 : 분뇨저장탱크(퇴비조), 컴포스트베드, 배기팬, 배기굴뚝 등

(3) 지원대상자 : 전국의 농가

(자부담 능력과 융자금에 대한 상환능력이 있으며 융자수혜가 가능한 농가)

(4) 지원단가

- 부엌개량 : 농가당 420만원 융자
 - 화장실개량 : 농가당 280만원 융자
- (사업비부담비율 : 융자 70%, 자부담 30%)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 부엌개량+목욕실 설치

(단위 : 호,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사 업 비 합 계	예산액(농특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1,077	6,462.0	4,523.4	-	4,523.4	-	1,938.6

* 용자조건 : 연리 4.0%, 3년거치후 7년상환

○ 환경친화형 화장실

(단위 : 호,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사 업 비 합 계	예산액(농특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420	1,680.0	1,176.0	-	1,176.0	-	504.0

* 용자조건 : 연리 4.0%, 3년거치후 7년상환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기술지원국 생활개선과 (031-299-2679)

○ 시 · 도 : 도 농업기술원 생활개선(기술)과·팀

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기술)팀·담당

○ 시군자치구 : 시·군 농업기술센터내의 생활개선(기술)팀·담당

다. 자금지원대상자

○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을 신청한 농가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실시 후 농가별 사업평가서 작성(별지 제3호 서식)
- 사업비정산은 농가별로 자체 정산토록 하고 총사업비 소요량을 파악·평가서에 기재

바. 기타사항

-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본 사업용으로 지원된 용자금이 당초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타 목적에 전용하였을 경우에는 용자 취급기관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 용자금을 회수 조치함

<행정사항>

-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보고(별지 제1호 서식)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전국의 농가

다. 신청절차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서면으로 신청

라. 구비서류 : 사업계획 및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희망농가의 가옥상태, 시설개량 가능성, 자부담 능력, 용자금 상환능력 등을 검토한 후 선정

(2) 우선 순위

- 각종시범사업이 투입된 지역이나 농가에 우선 지원

(3) 농가 선정시기

- 전년도 사업신청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지역의 주거실태 등을 참고로 사업량 만 신청하고, 당해 년도에 농가신청을 받아 농업발전심의회에서 총 사업량만 심의
- 농가선정에 대한 농업발전위원회 심의는 사업년도 초(1/4분기)에 실시

(4) 선정절차

-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희망농가에 현지 출장하여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된 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확정, 농가에 통보
-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소액용자사업으로서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변경 농가 심의는 해당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결재로 대신할 수 있음

바. 기타사항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단, 위의 경우 시도별로 사업의 종류를 1~2가지로 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하여 중앙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선정의 배경, 목적, 추진방향, 사업내용, 세부추진계획, 기대되는 성과,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등

[별지 제1호서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0/4분기)

○ 부엌개량 + 목욕실 설치

- 개량실적

(매분기말)

시도별	개량실적(호)			사업비(천원)			
	계획	실적	비율	총소요액	용자액	자부담	기타

- 시설설치내용

(단위 : 호)

시도별	개량실적	개량비용(만원)				작업대배치				목욕실유형	
		600 이하	601~700	701~1,000	1001 이상	-자형	ㄴ자형	ㄷ자형	=자형	온냉수	냉수

○ 화장실 개량

시도별	개량실적			사업비(천원)				비고
	계획	실적	비율	총소요액	용자액	자부담	기타	

※ 개량지도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평가 실시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 및 신청서

마을명 : 읍면 리

농가명			사업규모(평)				투자계획(천원)			사업시기 (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부엌	목욕실	화장실	기타	계	음자	자부담	

위와 같이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평 가 서

주 소	농가명	사 업 규 모(평)				소요사업비(천원)			완료일	평가
		부엌	목욕실	화장실	기타	계	용자	자부담		
							(%)	(%)		

첨부 : 개량후 사진 1매. 끝.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직 성명 (인)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권한은 농림부 농촌정비과(과장 이승찬, 사무관 조홍제)입니다.

1. 목 적

-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의 공급이 어려운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94~2004년까지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5,000개소의 암반관정을 개발
-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고소득 작목 포함) 외 축산용수, 농산물 세척가공용수 등 다목적으로 겸용 공급
- 상수도계획과 중복되지 않고, 주민들이 물부족으로 시설을 원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유지관리조직을 운영하여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
- 관정의 지하수 수질을 보전하고 위생적인 물을 공급하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
- 시설규모는 공급측면의 지하수부존량과 수요측면의 마을인구나 필요한 농업용수량 등 수요와 이용측면의 전기료 등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정함.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6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계	'94~'98	'99	2000	2001 (예산안)	2002~ 2004	
사업량(개소)	5,000	2,021	425	425	480	1,649	
사	계	800,000	321,000	72,250	72,250	81,600	252,900
업	국	400,000	160,500	36,125	36,125	40,800	126,450
비	지방교부금	400,000	160,500	36,125	36,125	40,800	126,450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1) 사업내용

- 사업추진배경 : 면단위 이하 농어촌지역 자연마을은 상수도 공급이 어렵고 기존의 우물·샘·간이상수도등은 수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암반지하수를 개발하여 용수문제 해결
- 사업내용
 - 수원공 개발
 - 지하수조사·개발 :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오염방지 그라우팅 포함), 영향조사, 착정, 우물자재설치, 우물소독, 수질 검사 등
 - 수원공시설 : 수중모타펌프, 양수장옥, 전기시설
 - 이용시설 : 송·배수관, 수조(물탱크), 정수시설, 계량기, 소화전 등
 - ※ 농가별 내부배관시설은 수혜자 부담(수도법 제 23조)

(2) 지원조건

- 지원대상 : 면단위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 중 우물, 하천수 등 자연수 또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로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오염된 마을
- 지원단가 : 1지구당 평균 170백만원
 - 수원공개발(지하수조사 포함)과 이용시설 설치 및 폐공처리비가 포함된 것으로 시·도지사가 지역여건(관정심도, 마을인구등)에 따라 조정지원
- 재 원 : 국고보조(농특세) 50%, 지방교부금 50%

나. 2001 사업비(예산)내용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산액(백만원)			지 방 교부금	자부담
		계	국 고	용 자		
480	81,600	40,800	40,800	-	40,8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 (전화 : 02-500-2665)
- 시·도 : 기반조성과, 농업기반과, 지역계획과, 농정과, 농축산과, 주택과, 주택지적과, 농지개발과, 수자원 개발사업소
- 시·군 :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라.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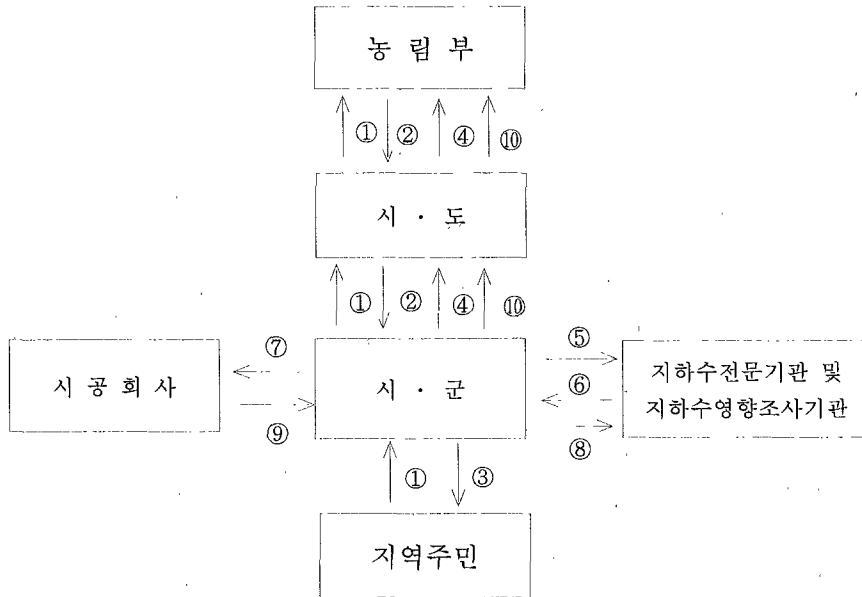
(1) 선정절차

- 사업희망마을(신청) → 면 → 시·군(예정지 선정) → 시·도(확정)
 - ※ 시군에서 수혜대상자의 의견수렴(마을회의) 후 사업예정지 선정
 - 생활용수 : 마을규모, 전기료부담 가능호수(호, 인) 및 인구
 - 농업용수 : 공급면적(논, 밭 구분), 필요시 축산용수 등 추가
 - 유지관리조직 구성가능성 및 대표자 선정

(2) 사업시행순서

- 사업지구선정 → 사업시행인가 → 공사계약 → 지하수조사 → 지하수개발(우물) → 수원공시설(수중모터펌프, 전기시설, 압상관) → 이용시설 → 송수관(수조 및 배수관시설) → 사업준공 → 간이상수도 등록 → 시설유지관리

(3) 사업시행 체계도



- ①사업후보지 선정 ②예산내시 및 실시요령 시달 ③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설명
 ④사업지구 선정 보고 ⑤기초조사 및 영향조사 의뢰 ⑥조사성과품 제출 ⑦공사시행
 ⑧공사감독 위탁 및 승인 ⑨사업준공 및 정산 ⑩사업 준공보고

마. 사업대상지구 선정

(1) 선정기준 (사업지구 적정성 검토)

- 상수도계획수립 또는 수립예정지는 중복개발방지를 위하여 제외 (상수도 부서와 협의하고 중복이 안된다는 확인을 받음)
- 댐수몰예정지 또는 공해로 마을이전을 해야하는 지역은 제외
- 우물, 샘등 자연수 이용마을이라도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오염이 안된 지역은 제외
- 주민의견 수렴시 호응도가 높아 농가부담 내부배관시설을 적극 설치하고, 자체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하며, 전기료등 관리비용을 부담하여 시설물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지역만 사업추진
- 장기적으로 지하수 수량 및 수질의 변화가 적은지역을 개발하도록 주변 개발지역을 검토하여 지하수부존 및 수질이 적합한 지역 선정 (섬, 해안, 간척지, 특수지질지역은 염분함유, 수량부족에 유의)

(2) 지구선정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중)

- 대상지 5000개소에 해당하는 지구 우선추진(정비51370-10150호(2000.9.29))
- 수혜가구수가 많은 마을 (50호 이상)을 우선
- 제한급수지역등 상습적으로 식수가 부족하거나 수질이 오염되어 시급히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
-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등 다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마을
- 주민호응도가 매우 높고 개발후 시설을 활용,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마을
- 기존의 생활용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마을
- 정주권개발등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마을

(3) 사업지구 확정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의 지구선정이 기준(상수도계획과 중복여부 및 개발후 이용저조 예측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주인구에 따라 적정시설규모로 계획하면 사업시행지구를 확정
- 시설완공후 이용이 저조하거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유지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이 미진한 마을이 있는 시·군에 대하여는 전년대비 사업량지원 축소방안 강구 (역 인센티브제)

바. 사업시행

(1)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사업시행인가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시 농어촌정비법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관련부서(도의 수도과 및 당해 시·군 수도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 인가를 의제 처리
- 사업시행인가시에는 마을회의에 따른 공급대상자 및 수혜농지와, 개발후 시설관리운영계획(주민자체 유지관리조직 및 비용부담등에 관한사항)을 첨부함
- 공사발주 : 시장·군수

(2) 공정계획

- 수 립 자 : 시장·군수
- 수립방법 : 당해연도 예산규모를 감안 지하수조사 및 개발 (지하수영향조사 포함), 수원공시설 및 이용시설로 공종을 구분 수립 (별지 제 2호 서식)
 - 사업시행자는 공사진척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시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함

(3) 시행계획 변경

- 현지여건상 계획보완을 요하는 경우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시행하고 결과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함. 다만, 사업지구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명시)를 농림부에 보고

(4)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함
- 농작물보상 등은 용지매수 및 공사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함.

(5) 조사·설계 및 시공

(가) 지하수조사·개발

- 지하수조사는 일반적으로 답사 → 물리탐사 → 착정위치선정 → 시추(케이싱 설치 및 그라우팅) → 양수시험 및 간이수질검사 → 수중TV검층 (필요시) 순으로 하고 시추 결과, 성공공인 경우 확공하고 실패공일 경우 폐공처리함.
 - ※ 시추조사는 적정심도까지 1공을 시행후, 실패시는 1공을 추가시추
- 시장·군수는 지하수 부존조사가 안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질조사, 원격탐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등 지하수조사를 하여야 하고,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지하수조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지하수 개발로 영향권내 지하수의 수량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지하수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지하수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지하수개발에 따른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공시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 및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 그라우팅 등 지하수의 보전조치를 하여야 함.

※ 암반관정에서의 케이싱과 오염방지그라우팅 시공

- 암반관정의 케이싱 관입깊이는 견고한 암반선까지 하며, 일반적으로 연암층의 0.5m 정도 깊이까지 설치
- 그라우팅은 지표의 오염수 유입방지를 위해 미고결층과 암반접속부 안정을 주목적으로 함
- 그라우팅을 한후 주입재가 소요의 강도로 굳을때 까지 암반층에 충격을 주는 보링작업을 하지 아니함.

- 그라우팅시에는 사업시행자, 공사감독원, 이장 등 마을주민을 입회시켜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을 필히 확인하고, 입회자 대표가 날인
- 지하수(수자원)의 개발은 지역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표로 하고 생활용수공급기준은 1인당 1일 300~350ℓ(특별한 경우 250~400ℓ)로 하며 농업용수는 지하수부존량과 가뭄피해 농지를 고려하여 정하고 필요시 축산용수나 농산물 세척·가공용수도 공급
- 지하수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대수층이 발달한 곳에 관정을 시설하며, 일반적으로 적정양수량은 1일 150톤 이상, 관정(우물자재)직경은 20cm로 함. 이 때 적정양수량 산정을 위한 단계양수시험 (3~4 단계)은 48시간 이상 연속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일반적인 우물기준심도는 150~200m로 적정양수량 확보심도까지 굴착하고, 산간, 해안, 도서지역 등 특수지역은 시·도지사가 조정함

- 마을규모(상주인구)가 적고 농업용수 수요가 적으나, 용수원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서 대수층이 발달되지 않아 지하수개발가능량이 1일 150톤 이하인 경우에는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으면 폐공처리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음.
- 지하수부존량이 적은 지역(1일 개발가능량 150톤 이하)인 경우에도 상주인구 1인당 1일 350ℓ의 생활용수를 상시 공급할 수 있어야 함. 이 때 지하수 수량감소 및 수질악화 예방을 위하여 계획양수량은 단계양수시험량의 50%(안전율 2.0배)로 낮춤

- 다만 해수침입 영향을 받는 도서 및 해안지역과 유역이 작은 산간지역 또는 상습 제한급수지역 등은 공급기준을 1인당 1일 250ℓ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음.
- 대수층이 발달되지 않은 지역(개발가능량 1일 150톤 이하)에서 시추공의 성공여부 판단은 적어도 그 지역의 선구조도, 3지점의 물리탐사(쌍극자 및 수직탐사) 자료와 당해 시추공 및 단계별 양수 자료(필요시 과거 시추실패공 자료 포함)를 시공회사로부터 제출 받아 도·시군 담당공무원, 농업기반공사 지하수부장 각 1인 계 3인이 심의하여 합의로 판단함.
- 우물의 확공은 안정수위 이하 심도까지 적절하게 계획·시공하며, 확공 후에는 공내청소(에어써징)를 하고 우물자재 설치후 공내소독을 실시하며 이때 공사감독자가 반드시 입회하고, 수질검사용 원수채취를 확인한다.
- 우물을 완공한후 지하수(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수도법 관련규정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에 의한 46개 전항목검사를 실시함.
 - 검사결과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관정시설을 폐쇄하거나 농업용수 등으로 전환하여 이용토록 하고, 대체시설을 추진
- 각종 시설 및 자재는 수도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 단가적용 : 농업용지하수사업비산정기준(수리 51322-478, '94. 10. 12)을 참고하고 동일공종의 공인품셈이 있는 경우 비교하여 적은값 적용

(나) 수원공시설

- 관정 및 이용시설계획은 마을규모등에 의한 계획수량에 따라 적정규모의 수중모타펌프, 송수관, 수조, 배수관 별로 각각 산정하며,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비 51370-246('95. 7. 21)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계획설계요령”을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정함.
- 수중모타펌프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양수시험결과에 의한 안정수위, 양수량, 전양정길이 등을 고려하여 안정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 수중모타펌프의 용량은 필요한 용수공급측면과 이용자의 비용부담여력 측면이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함.

- 지하수법 규정에 의한 유량계,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등을 설치
- 식수부족은 심각하고, 유지관리비(전기료 등) 부담이 어려운 영세한 마을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중모터펌프 및 전기시설을 생활용수 부분만 우선 계획하여 전력기본요금 부담을 줄이고 나중 농업용수분 등의 용량확대에 대비 전선 및 수전반 판넬을 계획할 수 있음
(극심한 가뭄시 수전반 내의 마그네트와 브레이크 등 일부 부품교체로 용량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구조)

<참고 : 수중모터펌프 규격 예시>

가 구 수(호)	50호 이하	51~100	101~150	비고
펌프규격(HP)	5HP	7.5HP	10HP	

- ※ 수중모터펌프 용량별 전기시설은 10HP 이하에서는 Δ 직입기동 (전선 3가닥), 15HP 이상은 Y- Δ 방식(전선 6가닥)으로 전기배선이 상이에 유의
- 압상관은 계획수량을 충분히 통수할 수 있는 단면으로 하고 소켓형에서는 사용중 관체간 분리 위험성을 사전 대비토록 함.

(다) 이용시설

- 송수관은 생활용수공급을 주 대상으로 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축산용수, 농산물세척가공용수를 포함할 수 있음.
- 송수관이 긴 경우 관마찰손실수두가 증가하므로 적정유속으로 관경을 계획하여 모터펌프의 동력이 과대하게 되지않도록 함(모터펌프 기종과 연계하여 계산).
- 수조(물탱크)의 용량은 생활용수를 주 대상으로 하고, 수조의 재질은 위생, 내구연한 등을 감안 스테인레스 제품을 우선 고려하며 수질유지를 위하여 저류시간 단축 및 공기접촉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한다. 종래의 콘크리트 수조, FRP 수조의 선택은 신중을 기함.
- 수조(물탱크) 용량은 관정의 고장시 인구 1인당 식수 80~100ℓ 정도를 공급할 수 있고 또한 Peak 시간대의 수급 조절용(1일 사용량의 20~30%)으로 사용하며, 수조의 용량은 지역특성에 맞게 정하되 마을상주인

구에 비하여 과대크기로 설치하지 않도록 함. 다만, 고장시 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섬지역 등은 예비펌프를 확보하고 수조는 다소 크게 할 수 있음

<참고 : 수조 용량 예시>

가 구 수(호)	30~39	40~59	60~79	80~99	100~120호
인 구(명)	90~121	122~183	184~245	246~307	308~372
수조용량(m ³)	10	15	20	25	30

- 수조(물탱크)는 물공급이 원활하도록 충분히 높은 곳에 설치하되 동파 및 수온변화가 없도록 설치하고, 송·배수관 등은 동결심도 이하 및 중차량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 정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비는 최고 10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되는 비용은 지방비 등을 투입토록 함.
- 수조(물탱크)는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토록 하고 (필요시 울타리시설) 출입문과 물탱크덮개는 시건장치를 하여 안전을 도모함.
- 지역주민이 천재지변, 화재등 긴급 재난시 비상급수 시설을 희망할 경우 민방위 시설 규격의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음.
- 수량부족 또는 수질불량으로 발생한 폐공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폐공처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암반관정 개발시 발생한 폐공처리 (부록1 참조)

(6) 공사감리

- 시장·군수는 수도법 제14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감리를 실시토록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함

(7) 사업준공

- 공사완료 후 계약서, 설계서 등 이행여부 확인 검사
- 시설완공후 생활용수공급을 개시하기 전에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규칙”에 따른 전항목(46개) 수질검사를 재실시하여 수질기준에 적합 여부를 재확인함.
- 완공된 수원공, 이용시설 및 폐공발생 및 처리사항등의 인수인계에 철저히 하고 지하수법 등 제규정에 따라 조치
- 공사착공, 시공중,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시공대장에 첨부 비치

사. 사업비 지원

- 지구당 평균지원단가 170백만원
 - 국고보조(농특세) 50%, 지방교부금(농특세) 50%
- 시·도지사는 마을규모, 관정심도, 송수관로 길이 등에 따라 지원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조정집행할 수 있음.
- 추가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지방비를 지원하여 설치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시설관리자 : 시장·군수

- 수도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적격한 공무원 (시·군 수도과 등)을 담당자로 지정하고 생활용수유지관리조직대표 1인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

(2) 관리방법

- 시설물의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함.
-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급배수시설을 수도법 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시설로 등록하고 시·군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조례에 따라 유지관리
- 일반적인 시설운영은 마을자체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함.

-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유지관리비(전기료, 소독약품대, 시설
개보수비 등)를 징수하여 발생한 비용을 지불하고 일정액을 적립(지역
주민자치로 운영)토록 지도함.
- 또한 시장·군수는 유지관리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질검사나 고장수리
서비스지원 등으로 정상 운영시까지 편의를 제공하고, 수시로 시설이용상
황을 파악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지원함.
- 시설점검정비 : 관리조직이 우선실시하고, 자체 점검정비가 불가능한 시설물은
시장·군수가 기술인력을 지원(농업기반공사 등 전문기관 활용)
- 유지관리조직은 관정개발 후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영향구역 내 잠재
오염원 (축산폐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 노력을 함.
- 수질검사 :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 수질검사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2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방법에 의거 시행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수질검사 횟수)의 규정에 따라
냄새·맛·색도·탁도·일반세균·대장균군수·암모니아성질소 및 질산
성질소에 관한 검사는 매분기 1회이상 실시하고, 전항목검사(46개)는
매년 1회이상 실시.(검사비용은 시·군 부담)
 - 개발완료후 이용시설의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는 사용을 중지
토록하고 대체시설 개발 등 사후조치후 결과보고
- ※ 참고 : (별표1) “먹는물 수질기준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시설물 보호 : 시설물이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관정 및 수조에는 안내판을
제작설치하여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방지(별지 제6, 7호 서식)
특히, 양수장, 물탱크, 염소소독기 관리철저
- 유지관리 실태확인
시장·군수는 수시로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반기별(6월말, 12월말기준) 이용실태 (이용하지 않거나 저조한 시설은 지구명,
위치, 미사용 또는 저조한 이유 및 대책) 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3) 이용이 저조한 시설 또는 수질·수량 변화시설등에 대한 대책

- 전기료등의 비용부담을 하지않아 이용이 저조한 시설은 전력기본요금을 낮추기 위하여 시·군지원으로 소형모타펌프로 대체(기 설치된 모타펌프는 가뭄 대비 보관, 타지구로 활용 전배 등)하는 방안을 검토함.
- 지역여건변화로 상수도가 개발되었거나 관정만 시설을 하고 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시장·군수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후 농업용수용으로 전환
- 지하수가 먹는물수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수량부족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농업기반공사등 전문기관에 원인조사(우물검층 등 대수층조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보강공사(우물그라우팅, 정수지설치 등) 또는 사용량을 조정하며, 조사결과가 농업용수용으로 전환등 계속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후 시·군에서는 시·도에 보고하고 대체수원을 개발 함.

나. 보고

- 익년도 사업대상지 보고 : 별지 제1호 서식, 매년 8. 30까지
- 사업시행 인가 결과보고 : 별지 제1호 서식, 매년 3월말까지
- 공정계획 수립 결과보고 : 별지 제2호 서식, 매년 3월말까지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별지 제3호 서식, 매월말 추진현황을 익월 10일까지
- 시장·군수는 매분기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12월말 현재 전항목에 대한 수질검사결과를 익년도 1월 15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다. 기타

- 시장·군수는 농림업무 지방자치단체 평가지침서에 명시된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공공) 평가내용과 항목을 준수하여 효율적 사업추진이 되도록 한다.
- 선개발시설 이용 : 가뭄 등 긴급한 사유로 공사중에 지하수를 우선 식수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질검사를 실시한후 이용함.
- 기타 본 요령에 명시되지 않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수개발실시요령,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 지하수관계법령, 상수도 공사표준시방서, 상수도 시설기준 등 제규정을 적용

6. 2001년 사업신청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나. 신청자격

- 면단위 이하 농어촌지역의 자연마을중 우물, 하천수 등 자연수 이용마을
- 간이상수도 이용마을중 필요수량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오염된 마을

다. 신청절차

- 희망마을 → 면 → 시·군 → 시·도

라. 구비서류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신청서 (별지8호 서식)
- 위 치 도
- 시설현황 및 생활용수대상 현황

암반관정 폐공처리 유의사항

1. 관정개발 관련 법령 및 지침서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조항

-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법 제82조, 영 13조, 시행규칙 82조)
- 지하수 영향조사 (법 제7조, 영 제9조 및 제12조)
- 허가 사항의 변경(시행규칙 제7조)
- 원상복구 (법 제15조, 영 제24조)
- 준공신고 (법 제9조)

지하수관련 지침서

- 농촌지역지하수오염방지대책 ('99. 12 농림부, 농진공 발간)
- 지하수업무수행지침서 ('99. 6 건설교통부 발간)
- 방치된폐공관리지침 ('99. 12 환경부 예규 제195호)

2. 폐공발생 예측 및 사전대비

- 착정위치는 지적도(1/1200 등)에 정확히 표시
- 폐공처리비 확보는 지구당 1개소를 우선 설계에 계상하거나 입찰차액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최종정산시 시도에서 일괄 가감정산처리 방안을 검토
 - ※ 참고 : 농업기반공사 폐공처리 단가 78만원
- 시·군에서 지하수전문기관(농업기반공사등)에 위탁하지 않고 공사감독등을 직접시행할 경우는 착정의 주요공정인 케이싱 외부 밀크액 주입상태(그라우팅) 검사 및 폐공처리시 모래의 충전과 밀크액 주입상태 검사(표면처리공사 직전)에 대하여 공사감리를 일부 용역하는 방안을 강구
 - ※ 시군에서 전문기술 또는 인력 부족시 시·도는 농업기반공사(지사)가 지하수오염방지의 공익에 기여토록 실비로 주요공정만 감리를 협조 요청
- 폐공처리 작업시기는 착정장비 이동직전에 실시, 불확정공(수량 일부부족 및 수질관련)은 성공공에 대한 우물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실시하고 폐공처리 전경과 근접사진을 필히 촬영하여 보관

- 지하수전문기관에 공사감리를 위탁하지 않은 지구는 시공업체가 착정 장비를 현장투입한 때부터 철수시까지는 작업일지(착정위치, 공정, 착정심도, 실패공 되메움등 기재)를 매주 1회 이상 시·군에 제출토록 함
- 사업지구별로 사업관리자(군1인, 면1인)를 지정하고 담당자는 가능한 착정장비 투입시부터 각자 주1회 이상 현지를 출장하여 시추위치 및 변경위치를 확인하고, 폐공처리 마무리는 표토를 되메움하기 전에 시공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전문기술이 필요하면 농업기반공사(지사)에 지원요청

3. 폐공처리방법

- 폐공처리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은 농촌지역지하수오염방지대책('99.12 농림부, 농진공 발간) page44~49와 지하수업무수행지침서('99. 6 건설교통부 발간) page250~262를 적용
- 케이싱은 가능한 인양하여 제거하되, 인양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표하 1m이상을 절단하며, 되메움 방법은 공의 구조, 지층의 성질, 재료 및 장비의 확보조건, 주변 우물에의 영향, 주변오염원까지의 거리, 비용 등을 고려함.
- 폐공 전구간을 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불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및 표면처리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로 적합하게 되메움을 실시
- 폐공처리 작업기간은 케이싱 제거, 모래충진, 밀크액(시멘트1:물1) 주입 등에 2일 이상 실시하며, 공내 되메움은 공동이 발생되기 쉬우므로 주입재(모래 등)를 2~3회에 나누어 충진하고, 24시간 경과 후 다짐상태 및 공동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표면처리공사를 시공
- 주입재가 분리현상이 심하거나 균열된 틈새로 침투가 어려우며, 빈틈메우기에 체적팽창이 필요한 경우 벤토나이트를 혼화재로 사용할 수 있고, 시멘트중량의 2%(부피의 3%)를 일반적으로 사용

4. 방치된 폐공의 처리

□ 폐공유무의 확인

- 개발을 신고한 지점과 준공처리 지점의 상이 여부를 우선 확인
- 폐공처리비가 당초(계획보완을 포함) 설계서에 계상여부를 확인
- 지하수전문기관(농업기반공사등)에 위탁하여 시행하지 않고, 민간업체 시공분은 철저히 확인하며, 특히 폐공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지구는 주민청문조사를 실시(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및 주민에게 탐문 확인)

⇒ 시·군은 미처리폐공을 발견한 즉시 규정대로 폐공처리 조치

□ 폐공처리의 적정시공 여부 확인 및 조치

- 폐공처리의 부적정 유형에는 모래·시멘트 주입은 했으나 상부매움콘크리트 두께부족 및 타설불량, 모래·시멘트주입량이 부족하거나 처리깊이 부족, 모래·시멘트 주입없이 콘크리트 타설하는 경우등이 있음
 - 시공상태에 대하여 주민 청문조사를 실시(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
- 폐공처리대장 비치 및 기록을 확인하고 작업일지 등에서 폐공처리 작업 기간(2일이상 여부)과 폐공처리 사진을 검토하여 전경과 근접사진 2매 유무및 내용을 확인
- 준공정산서에서 폐공처리비 내역을 확인하고, 공법(투입재료 및 양)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 미흡한 곳은 포크레인등으로 굴착 확인하고 제대로 폐공처리 실시

<별표 1>

먹는물 수질기준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미생물에 관한 기준(3항목)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1 일반세균	100CFU/ml	하수오물, 폐기물, 인간 및 동물의 배설물	수처리 효율의 지표로 이용되며, 세균에 의한 오염여부의 판단자료
2 대장균군	불검출/50ml	인간 및 동물의 배설물	병원성 미생물의 존재가능성에 대한 지표
3 여시니아균	음성/2ℓ		병원성 미생물의 존재가능성에 대한 지표

○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10항목)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4 납(Pb)	0.05mg/ℓ	안료, 도료, 활자제조업, 연관제조업, 인쇄공장, 유리제조공장 등의 폐수 및 납관에서의 유출	0.5mg/day 이상 섭취시 축적성 만성중독 - 정신착란, 심근마비, 악성빈혈 급성중독 - 복통, 구토 소아 : 신경, 면역장애
5 불소(F)	1mg/ℓ	지하수중의 천연상태 (불소인회석), 살충제, 방부제, 불소화학	1mg/ℓ 이하 - 충치예방효과 만성중독(1mg/ℓ 이상) - 반상치 신장 : 지방산 산화효소활성저하, 간 : 질소, 지방함량 감소
6 비소(As)	0.05mg/ℓ	광산제련공업, 의약품 및 비소계 살충제 제조공장 폐수, 안료 및 도료공업 유기, 무기상태 (3, 5가 : 독성크다)	만성중독(0.21mg/ℓ 이상) - 수족지각장애, 수족각화증, 빈혈, 흑피증, 손톱, 모발의 위축, 급성중독(성인 : 5~50mg 섭취) - 구토, 설사 100~150mg : 경구치사량
7 셀레늄(Se)	0.01mg/ℓ	전기부품(광전지), 정류기제조에 이용	위장장애, 피부의 황달성착색, 치아장애, 위장관으로 93%흡수, 알칼리병, 혈운증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8	수 은 (Hg)	불검출	8소다공업, 농약제조, 수 은정제공장, 도료공장폐 수, 폐건전지 무기상태(1,2가염 : 15% 흡수), 유기수은(메틸수 은 : 미생물에 의해 생 성, 100% 흡수되어 먹이 사슬에 축적)	만성중독 : 언어장애, 지각이상, 신경쇠약, 난청유발, 생식선 자극(돌연변이) 급성중독 : 위장병, 구내염, 신장 장해(단백뇨) 유기수은이 축적된 담수어의 섭취 (일본 : 미나마타병)
9	시 안 (CN)	불검출	도금공장, 가스공업, 코 크스공장, 정유공장 등 폐수 염소처리에 의한 무해한 시안산염으로	세포호흡저해, 질식성경련, 의식장 해, 뇌의 젖산함량증가로 인한 혼수 상태와 뇌손상 50~60mg : 경구치사량 0.05mg/l 이상 : 물고기에 유해
10	6가크롬 (Cr)	0.05mg/l	염색공업, 피혁제조, 석 유화학공업, 도금공장폐 수	만성중독 - 피부궤양, 폐암유발 급성중독 - 미각장해, 위장염 0.1mg/l : 음용수로써 유해
11	암모니아성 질소 (NH ₄ -N)	0.5mg/l	가정하수, 산업폐수, 동 물배설물, 비료, 폐기물 의 침출수, 자동차 및 연소기관, 대기중의 낙 진, 토양내의 유기물질	
12	질산성질소 (NO ₃ -N)	10mg/l		유아 : 10mg/l 이상의 물과 우유는 청색중독(Blue baby) 유발 (Methemoglobinemia : 혈액과 반응 하여 호흡장애)
13	카드뮴 (Cd)	0.01mg/l	광산(갱내수의 산성화에 의한 용출, 광재, 습식제 련공정중 가용성염의 용 출, 도금공장폐수 및 급 수설비에 의한 오염)	간, 신장, 갑상선, 뼈에 축적 만성중독 - 내분비, 칼슘대사, 신장, 위장장해, 골연화증 카드뮴에 오염된 쌀의 섭취 (일본 : 이따이 이따이병)

○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17항목)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14	페놀 (C-H-OH)	0.005mg/ℓ	석탄, 석유정제, 도시가스, 제약, 페놀계 합성수지공장폐수, 살충제의 미생물 분해	소독용 염소와 반응하여 클로로페놀 생성(독성보다 악취가 문제) 만성중독 : 중추신경계 마비
15	총트리할로메탄 (THM) CHCl & CHBr Cl & CHBr	0.1mg/ℓ	자연유기물(폴빈산, 휴민산)이 소독용 염소와 반응하여 발암성물질(THM) 생성	발암성 물질 만성중독 - 불안, 불면, 흥분, 간위축, 신장장애 급성중독 - 중추신경계 마비, 피부탈지
16	다이아지논	0.02mg/ℓ	유기인계 농약물질, 살충제 합성제조, 석유제품 촉매	맹독성, 발암성물질, 신경과 뇌신경계 마비증상, 근육경련
17	파라티온	0.06mg/ℓ		
18	말라티온	0.25mg/ℓ		
19	페니트로티온	0.04mg/ℓ		
20	카바릴	0.07mg/ℓ		구토, 설사, 기관지수축, 경련, 시력감퇴, 혼수, 호흡곤란
21	1,1,1-트리클로로에탄 C H D1	0.1mg/ℓ		눈 점막자극 고농도 : 마취
2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CE) C Cl	0.01mg/ℓ	금속탈지공업, 드라이클리닝용매, 염소화탄산수소류 생산공장	중추신경계 억제, 불쾌감, 마취 고농도 : 의식불명, 반사기능 저하, 간장장애, 다발성신경염, 간종양유발(새앙쥐)
23	트리클로로에틸렌 (TCE) C HCl	0.03mg/ℓ	금속산업 : 비윤활용매, 드라이클리닝 용매, 식품추출용매, 흡입마취제	급성중독 - 중추신경계억제, 두통, 간장해, 관절이상, 간종양유발(새앙쥐)
24	디클로로메탄 CH Cl	0.02mg/ℓ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25	벤젠 CH	0.01mg/ℓ	화학공장 : 페놀, 사이크로hex산 생산의 중간물질 공업 : 플라스틱, 페인트 경화제의 합성을 위한 중간물질이나 용매, 기체코크생산의 부산물	만성중독 - 빈혈, 백혈구감소, 면역기능저하
26	톨루엔 C H CH	0.7mg/ℓ		중추신경계 기능저하, 기형, 발암, 변이성은 없음
27	에틸벤젠 C H C H	0.3mg/ℓ		현기증, 호흡곤란
28	크실렌 CH ₄ (CH ₃) ₂	0.5mg/ℓ		메스꺼움, 구토, 의식불명 유발, 신장 및 간장손상
29	1,1-디클로로에틸렌	0.3mg/ℓ 이하		
30	사염화탄소	0.002mg/ℓ 이하		

○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16항목)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31	경도	300mg/ℓ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서 유래 (Ca, Mg, Sr, Ba)	세탁, 보일러용수 장애 다량존재시 불쾌한 맛
32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mg/ℓ	폐기된 유기물	유기물 오염정도 지표
33	냄새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이외는 무미무취	용수원의 수질변화 물처리공정의 결함, 급수관의 화학적 부식, 미생물 성장을 암시	
34	맛			
35	동(Cu)	1mg/ℓ	동제련공장, 금속표면(도금)업소, 수도용 동관	1mg/ℓ : 청색, 착색 1.5~3mg/ℓ : 금속성 맛 5mg/ℓ : 텁은 맛 80~170mg/ℓ 섭취 : 간장장애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36	색도	5도	미생물, 플랑크톤의 번식 용해성물질, 오수 등의 혼입	심미적 나쁜영향
37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	0.5mg/l	합성세제	1.0~1.5mg/l : 기름기있고, 생선 냄새 규제이유 : 맛, 거품
38	수소이온농도 (pH)	5.8~8.5	알칼리폐수 또는 산폐수	낮은 pH : 수도시설의 부식 높은 pH : 쓴맛, 미끈미끈한 느낌, pH8.0이하에서 염소소독이 효과적
39	아연(Zn)	1mg/l	광산제련공업, 지하수중 천연유래	20~30mg/l : 금속맛, 떼은맛 급성중독 : 구토, 탈수 근육조절불능, 전해질 불균형
40	염소이온 (Cl)	150mg/l	세균소독을 위해 투입	불쾌한 맛, 부식유발
41	중발잔유물	500mg/l	맛, 경도, 부식성에 영향	급수시스템의 부식, 스케일의 형성
42	철(Fe)	0.3mg/l	지하수나 저수지 심층 수중에서 천연유래	0.3mg/l : 황갈색, 적갈색 0.5~1mg/l : 금속성맛 급성중독 - 설사, 구토, 혈액증
43	망간(Mn)	0.3mg/l	지하수나 저수지 심층 수중에서 천연유래	0.05mg/l : 흑색, 흑갈색 0.5~1mg/l : 금속성맛 56mg/l : 개의 치사량
44	탁도	2도	가정 및 산업용수의 일반적인 수질오염지표	살균소독방해, 유기체의 의한 질병 감염 우려, 부유물질의 함유의미
45	황산이온 (SO ₄)	200mg/l	산업폐수, 대기방출, 화석연료의 연소	1000mg/l : 설사유발 알카리도 낮은 물에서 급수계 금속 부식
46	알루미늄	0.2mg/l	산업폐기물, 광물, 토양 침출, 응집처리	0.1mg/l 이상 : 변색(퇴색) 경구섭취시 거의 배설(배제외), 호흡기 흡입시 허파와 임파선에 축적

자체가26-54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상지(시행인가, 계획변경)보고

우선순위	지구명	위치			개발공수	급수대상							사업비(백만원)			선정기준		수맥조사		비고			
		군	면	리		총이용량	생활용수			관개용수			축산수산업등	계	국고	지방교부금	기타	정주권지구	일반지구		실시	미 실시	
							이용량	가구수	급수인구	이용량	답작	전작											m/일
계					공	m/일	m/일	호	명	m/일	ha	ha	m/일										

- ※ 1. 생활용수는 250 l -300 l /인/일 기준
- 2. 개발공수는 필요수량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1지구당 사업비(수원공 및 이용시설)는 170백만원 계상
- 3. 선정기준, 수맥조사는 해당란에 ○표
- 4. 비고란에는 기타 참고자료 기재
- 5. 1:25,000 지형도 원도에 지구위치 표시(도면을 자르지 말 것)

자체가26-55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공정계획

○○군 ○○면 ○○마을

사업시행년월일 :

착공년월일 :

(단위 : 천원)

	승인액		○년도 까지			년도계획		년도이후		분기별 공정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공정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계														
○ 수원 공	공													
○ 이용 시설														
- 양수장	m ²													
- 물탱크	m ³													
- 송수관	m													
- 기타														
○ 용지매수 및 보상비														
○ 측량설계비														
○ 공사감독비														
○ 관리비														
○ 기타														

심사제외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진도보고

지구명	위 치			급 수 계 획				사업계획			사업비(백만원)			진도(%)			특기사항		
	군	면	리	생활용수		관개용수		기타용수	개발공수	배수지	송배수관	계	국고	지방교부세	기타	계		수원공시설	이용시설
				가구수	인구	답작	전작												
				호	인	ha	ha		공	m ²	m								

[별지 제4호 서식]

지하수개발사업 시설물 대장

코드번호: 지구명: 위치: 도 군 면 리 지번: 관리자:								
○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비	계					국고	지방비	기타
이용현황	○ 급수면적 : ha - 답 : ha - 전 : ha					○ 생활용수 : 호(명)		
	○ 기타용수 :							
주 요 시 설 내 용								
○ 착 정			주 상 도					
- 관 정 : 구경 m/m, 심도 m			심 도	총 후	주상도			
- 양수량 : m ³ /일			m	m	지 질			
- 우물자재설치 : 파이프 m, 유공관 m					비 고			
- 수 위 : 자연수위 m, 안정수위 m								
○ 이용시설								
- 물 탱 크 : m ³								
- 양 수 장 : 평								
- 송·배수관 : m								
○ 시공업체								
○ (수중)모타펌프								
- 구경 ()m/m, 설치심도 ()m								
- 마력 ()HP								
- 제품명 :								

○ 오염방지시설 조치현황

구 분	규 격
상부보호공	높이 : cm, 가로 : cm, 세로 : cm
	지표면에서 보호공까지의 거리 : cm
케 이 싱	구경 : cm, 심도 : m
그라우팅처리	처리심도 : m, 처리두께 : cm
기 타	유물자재 및 관정내 소독여부 (○, ×)
	유량계 설치 (○, ×)
	출수장치 설치 (○, ×)
	지하수위 측정관 (○, ×)
	상부보호공 반경 1m내 경사도 : 도

○ 수질검사 실시현황

실시일자	검사의뢰기관	수질검사기관	검사결과	검사결과 조치사항

- 주) 1. 검사결과는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 작성
 2. 조치사항란은 불합격시 조치사항을 기재

○ 이용현황 및 수위측정현황

이 용 현 황			수 위 측 정 결 과		
년·월·일	이용량(톤)	기록자	측정일자	수위(EL.m)	측정자

[별지 제5호 서식]

자체가26-1-6

농촌 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 결과보고

1. 검사결과 총괄

시·군	시설수 (개소)	급수인구 (명)	검체수 (개)	검사결과(개)		비 고 (검사미실시 건수, 사유)
				적 합	부적합	
계						
○○시						
○○시						
○○군						
○○군						
○○군						

2. 부적합 내역

지구명	소재지	1일 평균 이용차수	부적합 항목 및 검사결과	조치내용	비 고

[별지 제6호 서식]

농촌 농업 · 생활용수용 암반관정 시설 안내판

시 설 명	○○ 지구 농촌 농업 · 생활용수용 암반관정				
관리번호			개발년도		
위 치	시·군		면		리
					번지
관정구경	m/m	심 도	m	자연수위	m
					안정수위
모타설치심도	m	동 력	HP		양수량
					m³/일
관 리 자	○○ 시·군 ○○ 면 ○○ 리 ○○ 번지				
	성명 ○○○ (TEL)				
	○○ 시·군 ○○ 과 ○○ 계				
	성명 ○○○ (TEL)				
수질검사 실시현황	일 자	의 퇴 자	검 사 항 목	검 사 기 관	검 사 결 과
<p>협 조 사 항</p> <p>1. 이곳은 농림부의 농어촌특별세 지원으로 설치한 농촌 농업 · 생활용수용 암반관정 시설입니다.</p> <p>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와 관계자 이외의 무단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오염행위 및 시설 이상을 발견시에는 ○○ 시·군 ○○ 과 또는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군 수 (시장)</p>					

- 규 격 : 가로 40cm , 세로30cm
- 재질 및 두께 : 스텐레스강판 1.5mm(STS 304(27종) A급)
- 글 씨 : 검정색
- 부 착 장 소 : 양수장 출입문 좌측 상단

농촌 농업 · 생활용수 배수지 시설 안내판

알 림

1. 이곳은 농림부의 농어촌특별세 지원으로 설치한 농촌 농업 · 생활용수 급수 시설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행위와 관리자 이외의 무단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명 : ○ ○ 지구 농촌 농업 · 생활용수 배수지 시설
- 관리번호 :
- 위치 : ○ ○ 시·군 ○ ○ 면 ○ ○ 리
- 시설용량 : 톤
-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사업시행자 : ○ ○ 시장·군수
- 관리자 : ○ ○ 시·군 ○ ○ 면 ○ ○ 리 ○ ○ 번지
 성명 ○ ○ ○(TEL)

○ ○ 시·군 ○ ○ 과 ○ ○ 계
성명 ○ ○ ○(TEL)

※ 오염행위 및 시설이상을 발견시에는 ○ ○ 시·군 ○ ○과 또는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군 수 (시장)

- 규 격 : 가로 100cm , 세로80cm
- 재질 및 두께 : 스텐레스강판 1.5mm(STS 304(27종) A급)
- 글 씨 : 검정색
- 부 착 장 소 : 배수장 울타리 출입문 옆 지상 1.2m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신청서

(○○시 · 군 ○○면 ○○지구)

1. 마을 작성용

<input type="checkbox"/>	마을위치 :	도	시군	면	리(○○마을)
<input type="checkbox"/>	마을규모 :	호	명		
<input type="checkbox"/>	현재 이용시설현황				
	○ 간이상수도	개(인),	우물	개, 샘	개, 소형관정
	○ 수질상태 :	양호	,	수질기준미달	
<input type="checkbox"/>	마을회의 (일시 :	장소:			
	○ 참석 :	대상	호, 참석	호(%)	
	○ 회의결과				
	- 희망가구 :	호,	인 (마을인구대비	%)	
	- 농업용수 :	논	ha, 밭	ha, 기타 :	
	- 자체 유지관리조직(계)	(대표 :			
	- 전기료 등 부담 가능여부:	호(인)			
* 월사용료 : 시군에서 이용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르고. 추정금액을 해당마을 실정에 맞추어 사전 설명.					

2. 시 · 군 작성용

<input type="checkbox"/>	대상지 적정여부 검토				
	○ 5000개소 대상지에 포함 여부(정비51370-10150호(2000.9.29))				
	○ 상수도 계획 수립 또는 예정지인지 여부				
	○ 수혜인구수가 충분한지 (사업타당성)				
	○ 완공후 시설이용 가능성(전기료 부담 등)				
<input type="checkbox"/>	시설규모 계획				
	○ 생활용수 :	톤/일 (호, 인)			
	○ 농업용수 :	톤/일 (논	ha, 밭	ha, 기타)
	○ 시설규모 :	수중모터펌프	HP		
		송수관 구경	mm, 길이	m	
		수조용량	m ³ (재질		
	○ 추정사업비 :	총	백만원(수원공:	,이용시설:)	

* 상수도부서의 상수도계획 중복여부 확인서 공한사본 첨부

**친환경·품질인증 농산물은
벌레가 먹고 못생겨도 더 맛 있고 안전해요**

유기재배



농약·화학비료 사용않고 재배

무농약재배



농약 사용않고 재배

저농약재배



농약 1/2이하 사용 재배

일반재배



농약·비료 적정사용 재배

품질인증 농산물은 정부가 안전성을 보증합니다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